



총회 사전 청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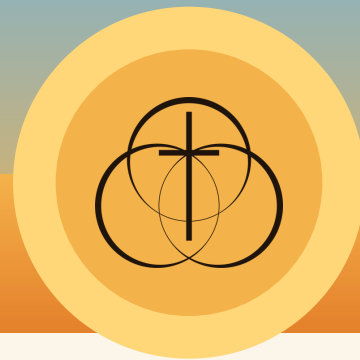
한국어

Rev. Lamar C. Oliver

청원 비서

2026년 7월 1일

(v1.30 · 2026-07-24)



숫자로 보는 청원 현황

글로벌 감리교회 · 2026년 총회

제출된 청원 총계

471

제출 기간 · 2026년 1월 5일 ~ 5월 1일

처리 현황



448 심의 대상
18 철회
5 무효

9

발행 언어

77

고유 청원 제출자

127

영향을 받은 교리와 장정 ¶ ¶

1302

최다 관련 단락 (18)

입법 위원회별

헌법, 연대 조직, 재정	123
개체교회	122
사역	50
감리직	44
연회	39
교리와 성례전	34
사회적 증언	20
사법 행정	16

제출자 유형별

총회 대의원단	270
개인들	98
총교회 위원회/이사회	54
개체교회 이사회/협의회	13
연회 이사회 및 협의회	7
연회	4

상위 단락군

하위 단락 포함(예: ¶ 302.7은 ¶ 302에 포함하여 계산)

¶ 302	18
¶ 610	11
¶ 449	10
¶ 807	10
¶ 208	10
¶ 446	10

교리와 장정 색션별

I	교리적 기초	19
II	헌법	30
III	사회적 증언	18
IV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144
V	부름 받은 자의 사역	49
VI	감리직	44
VII	연회	39
VIII	연대 조직	71
IX	사법 행정	16
X	재산	9
	결의안	7



글로벌 감리교회

2026 총회

2026년 7월 1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청원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우리 교회가 웨슬리안 전통과 성경적 기초에 최대한 충실하도록 돕고자 하는 깊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4년 교리와 장정(장정)의 모든 부분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셨으며, 이는 그 안에 공포된 언약 가운데 주목하고 숙고할 가치가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코스타리카에 모인 이후, 우리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와 더불어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리고 그 이후 오랫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대화에 자신들의 목소리와 관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동감 넘치는 믿음을 더하게 되는 기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우리의 언약을 명확히 하고 사도행전 15장의 첫 총회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함께 살도록 부르시는지 함께 분별하는 이 신성하고 거룩한 입법 과정의 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에 이 서신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감리교회(GMC) 청원 절차를 바닥에서 부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웨슬리안 전통의 일부로서, 이번 절차의 반복이 그 과정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은 여러분께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산호세에서 자동으로 이월된 청원들을 포함하여, 2026년 총회를 준비하며 총 471개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확인하실 수 있는 수많은 수치들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이 보고서와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신규 사항

- **입법 위원회 색인** — 각 입법 위원회의 색인은 해당 섹션의 맨 앞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섹션만 인쇄하기를 원하거나 위원회 색인을 훨씬 더 쉽게 찾고자 하는 대의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24년 입법 위원회 의장 및 비서들과의 사후 검토 회의에서 나온 가장 많이 요청된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 **청원 순서** — 각 섹션 내에서 청원은 단락(및 하위 단락)별로 정렬됩니다. 위원회가 특정 단락을 다루는 법안을 심의할 때, 대의원들은 관련된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줄 번호** — 9개 언어 모두에 정확히 동일한 줄 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특히 긴 청원서를 작성할 때 구성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조치 머리글** — 각 청원의 본문 상단에 굵은 글씨로 해당 청원이 단락 또는 하위 단락을 수정, 대체, 삭제 또는 추가하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 **단락 번호 색인** — 기본 단락 참조에 따라 청원을 나열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는 해당 단락이 주로 다루어지는 단락이 아니더라도 그 단락에 영향을 미치는 청원을 보여주는 이탤릭체 청원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결의안** — 2026년판 장정이 출판될 때, 본회의에서 승인된 모든 결의안은 책의 뒷부분에 인쇄될 것입니다.
- **추가 언어** — 우리 운동의 상당한 성장을 고려하여, 기존 6개 공식 언어 외에 암하라어, 러시아어, 태국어로도 출판합니다.
- **전체 문장 삭제선** — 단어 하나에 삭제선을 긋는 것은 언어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며, 더 많은 언어가 추가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과정이 우리 운동의 글로벌한 특성을 반영하고 번역 작업을 돕도록, 한 단어의 변경이라도 전체 문장에 삭제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읽으실 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용 현행 장정** — 2024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청원이 총회에 상정되었으므로, 공간과 인쇄/제작 비용의 좋은 스튜어드가 되기 위해, 청원의 일부로 전체 단락 또는 하위 단락에 삭제선이 그어진 많은 경우에 해당 삭제선 단락을 제외했습니다. globalmethodist.org에서 무료 디지털 장정을 이용할 수 있고, 인쇄된 장정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모든 대의원 여러분께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2026년 총회 위원회 및 본회의 기간 동안, 특히 장정의 기존 문구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려는 청원을 다룰 때 장정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문서 형식** — 이 문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일간 저널 준비 및 배포 작업을 돕기 위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직함/경칭** — 모인 교회는 만인제사장직을 구현하며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므로, 청원자 이름에서 모든 직함과 호칭을 삭제하였으며, 목회자·평신도 신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계속됨

- **완전한 하이퍼링크** — 이 보고서를 디지털로 열람하는 분들은 모든 바닥글(footer)과 모든 색인이 완전히 하이퍼링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보고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온 부분이었으며, 여러분의 성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잘 반응하도록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언어 간 페이지 번호 일치** — 2024년에 받은 긍정적 평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든 언어에서 페이지 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우리의 의도적 노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90% 이상의 경우에 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청원은 어떤 언어에서든지 동일한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에서 이월된 청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각 청원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청원에 관해 문의하고, 계속해서 청원을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는 원하지 않았고, 일부는 올해의 과정이 시작되면서 추가

숙고 끝에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청원들은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참조했기 때문에 오래된 단락 번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청원인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단락 참조 번호만 변경된 청원서 초안이 제공되었으며, 본 보고서에 포함된 단락 참조 번호는 최초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심의를 위해 제출된 청원을 작성, 편집, 공동 서명 또는 자문함으로써 이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과정 참여 덕분에, 제출된 청원의 90% 이상이 2026년 총회 대의원들의 심의를 위해 상정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의 작업물을 읽으면서, 지난 3월에 있었던 사도행전 2:42 컨퍼런스에서 젊은 목회자 그룹과 나누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토론은 분열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와 기도, 선교, 축하, 그리고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성도들이 모두 부름받은 언약을 정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록하고 신성한 입법 사역을 수행할 때까지 불과 두 달 남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이 사역에 뛰어들 때 아주 적절합니다 —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램머 C. 올리버 목사 (미국: 웨스트 플레인스)

청원 비서 / 총회 부비서

추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입법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청원 수가 훨씬 적다고 해서 그들의 업무량이 더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원 과정 개요

2026년 총회

청원 절차 일정표

2025년 12월 5일	청원 절차 발표
2026년 1월 5일	청원 제출 포털 개설
2026년 4월 14일	참조 위원회 회의
2026년 5월 1일	청원 제출 포털 마감
2026년 5월 18일	참조 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1일	참조 위원회 회의
2026년 7월 1일	모든 언어로 청원 보고서 발행

위원회별 분류

- 123 헌법, 연대 조직, 재정
- 122 개체 교회
- 50 사역
- 44 감리직
- 39 연회
- 34 교리 및 성례
- 20 사회적 증언
- 16 사법 행정

제출자 유형별 청원

- 269 총회 대의원단
- 101 개인들
- 54 총교회 위원회/이사회
- 13 개체교회 이사회/협의회
- 7 연회 이사회 및 협의회
- 4 연회

처리 현황 분류

- 471 제출된 청원 총계
- 448 심의 대상 청원
- 18 철회
- 5 무효

참조 위원회

John Howard, Jr. (US: North Carolina) - 목회자, 의장
Jay Allred (US: North Georgia) - 평신도
Bill Brown (US: Heartland) - 평신도
Jana Fox (US: Mid-Texas) - 평신도
Greg Stover (US: Allegheny West) - 목회자
Christian Mwite Mwango (DR Congo) - 평신도
Rosette Ngoy Kalumba (DR Congo) - 목회자
Bonface Wanyama (Kenya) - 목회자
*Stephen Gambo (Central Nigeria) - 평신도
*Khen Su Andrei Kim (Northwest Russia-Belarus) - 목회자
*Rev. Tom Lambrecht - 총회 비서
*Rev. Lamar C. Oliver - 청원 비서 / 총회 부비서
*투표권 없는 회원 +투표권 없는 직원

목차

섹션	페이지
통계 페이지	
환영사	
청원 과정 개요	
목차	
교리 및 성례	1
교리 선언 · 모든 ¶ 100 · ¶ ¶ 412-421	
사회적 증언	50
사회적 증언 성명 및 결의안 · 모든 ¶ 300	
개체 교회	75
¶ ¶ 401-411, 422-448, 450-456	
사역	224
500번대 모든 단락	
감리직	308
600번대 모든 단락	
연회	365
모든 ¶ 700 · 연회 및 지역 연회 경계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15
¶ 449 · 모든 ¶ 200, ¶ 800 및 ¶ 1000	
사법 행정	567
모든 ¶ 900 · 사법 절차와 과정	
단락 번호 색인	618
청원 번호순 색인	625

아홉 개 언어판 모두 페이지 번호가 동일합니다.
모든 청원은 모든 판에서 같은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줄 번호는 청원 본문에 적용되며 각 언어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리 및 성례

Doctrinal Statements · all ¶ 100s · ¶ 412-421

번호	¶	제목	페이지
1324	¶ 102.2	웨슬리안 구원의 길에서 피조물에 대한 '타락한' 용어 삭제	3
1325	¶ 102.3	웨슬리안 구원의 길에서 "원죄" 함의 제거	4
1056	¶ 103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를 구함	5
1409	¶ 103	언약적 연대	6
1461	¶ 103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예배	8
1403	¶ 103.2	글로벌 통일성과 지역적 유연성: 열망 그 이상	9
1404	¶ 103.8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지역 교회를 위하여	10
1060	¶ 104	성경 권위에 대한 입장 강화	11
1441	¶ 106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조항	12
1231	¶ 106.1	개정된 믿음 총칙	17
1321	¶ 106.1	제7조 - "원죄 또는 출생죄"를 "아가페 사랑과 죄"로 대체	22
1322	¶ 106.1	제8조 - 자유 의지에 관한 조항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하기	23
1323	¶ 106.1	제2조 - 말씀, 곧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원죄"라는 구절을 삭제함.	24
1326	¶ 106.1	제20조 -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물에 관하여...에서 "원죄" 제거...	25
1446	¶ 106.3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26
1077	¶ 107	웨슬리 저작에 대한 포괄적 해석 명확화	27
1443	¶ 107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대한 이해 명확화	28
1434	¶ 108	장정 기초 원리 섹션에 개정 총칙 배치	29
1061	¶ 109 (신설)	"제1부: 교리"에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문답" 추가	33
1011	¶ 413	성례 권한에 관한 청원	34
1062	¶ 413	훈련받은 평신도에게 성례전 권한 확대	35
1300	¶ 413	집사목사에게 성례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명확화	36
1428	¶ 416	세례 서약에 성결을 향한 성장 조항 추가	37
1140	¶ 418	고백 교인 멤버십 단락 간소화	39
1405	¶ 418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인 자격 기대사항	40
1315	¶ 419	제자를 삼음	41
1430	¶ 419	회원 서약에 성결 성장의 추가	42
1406	¶ 420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신실한 교인 자격	43

번호	¶	제목	페이지
1013	¶ 421	성찬의 의미	44
1331	¶ 421	포도즙을 요구하지 않고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권한	45
1240	Resolution	교리적 언어와 경계 명확화	46
1454	Resolution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운동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기	47
1455	Resolution	글로벌 감리교회 총칙과 신앙 고백에 관한 주해서 제정 결의안	48
1462	Resolution	회중 찬송 자료의 인정	49

웨슬리안 구원의 길에서 피조물에 대한 '타락한' 용어 삭제

청원자: Victoria Campbell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타락' 또는 '타락한 피조물'과 관련된 신학적 개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 문서(¶ 105)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성경에서 사용되거나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 104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이 믿음, 도덕, 그리고 예배와 봉사의 기본 규칙이자 권위임을 명시합니다. '타락' 및 '타락한 피조물'과 관련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죄가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에스겔 18장의 내용과 모순됩니다. 그 가르침들은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출애굽기 20장 2-6절과 모순됩니다. 이 가르침은 욥기 38-41장, 로마서 1:18-20, 시편 8편, 19편, 104편, 148편에 나타난 선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모순됩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어떤 저자도 타락한 피조물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2.2을 개정한다

- 1 타락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그의 삶과 사역, 죽음, 그리고 육체적 부활에서
- 2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그의 생애와 사역, 죽음, 육신의 부활에서
- 3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에는 성령을 통해 신자들이
- 4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임재가 포함된다. 이 과분한 선물은
- 5 인류를 죄의 죄책감과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 6 합니다. 웨슬리의 고전적인 표현에 따르면,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서 시작하여 우리 삶 전반에
- 7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웨슬리안 구원의 길에서 "원죄" 합의 제거

청원자: Victoria Campbell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원죄"('타락' 및 '전적 타락'과 함께)라는 신학적 구성 개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 문서(¶ 105)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성경에서는 결코 사용되거나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 104는 성경이 믿음과 도덕, 섬김을 위한 최우선적인 규칙이자 권위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원죄/전적 타락 신학과 관련된 가르침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들은 죄가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에스겔 18장과 모순됩니다. 그 가르침들은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출애굽기 20장 2-6절과 모순됩니다. 그 가르침들은 인간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신 28-30장; 잠 1-9장; 마 5-7장),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의인들과 모순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2.3을 개정한다

- 하나님의 선행적 혹은 예방적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에도 원죄의 영향을 완화하는 "영혼의 첫 번째 은혜의 여명"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으로 인한 완전한 결과를 막고 양심을 일깨우며,
- 도덕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첫 인식을 주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자유를 어느 정도
- 회복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아 모든 것이 생명을 향한 첫 성향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능력보다 먼저
- 받은 앞서가는 은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준다.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를 구함

청원자: 마크 배로우

조직: Hendersonville Christ (US: MidSouth)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청원 취지:

글로벌 감리교회는 “은사중지론” 교단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를 따라, 우리는 성경에 나열된 성령의 은사 중 어떤 것이라도 마지막 사도의 죽음이나 성경 정경의 완결과 함께 “중단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적이 사도 시대의 한계 내에, 또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의 길고 짧은 어떤 기간으로든 국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작 전집 제8권, 감리교인의 원리 추가 해설, 465쪽.] 찰스 웨슬리, “오순절 찬송” 5절 “이제 우리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주의 사랑의 새롭고 놀라운 언어로.”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103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하위 항인 103.4항을 추가하고, 이후의 항들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4항을 추가하고 나머지 목록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2 4.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은사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며”[고전 14:1], 예언, 치유,
- 3 방언, 지식의 말씀과 그 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인식합니다[고전 4:20].
- 4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과 행함에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 5 선포하기를 구한다[롬 15:18-19].

언약적 연대

청원자: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Russellville (US: North Alabama)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이 청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상호 사랑, 책임감, 거룩한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언약적 삶에 대한 헌신을 단언합니다. 이 청원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웨슬리안 제자도에 참여하고, 지역 교회와 회의를 강화하며, 언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서번트 리더십 구조에 제출하도록 하는 공동의 기대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목 책임이 신실한 목회적 감독을 받게 하며, 모든 지도자가 최고 수준의 훈련과 사역 탁월성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구조가 아닌 신학적 언약에 대한 웨슬리안적 이해로 우리 자신을 재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정치 구조를 재정렬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3의 제목을 수정하고, ¶ 103의 본문 전체를 대체하며, ¶ 101.2 및 101.5를 수정합니다

- 1 ¶ 103. 함께하는 우리의 언약적 삶의 원리.
- 2 웨슬리는 "사회적 성결 없이는 거룩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성결"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길을
- 3 홀로 갈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신앙 공동체가 참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 4 공동의 사명을 통해 함께 묶인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회원 서약(¶ 419)에서 비롯됩니다.
- 5 우리는 (지역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 6 우리가 신앙에 대한 웨슬리안적 이해에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역사적 신조와 우리의 총칙 및 신앙 고백에 정의된 성경과
- 7 기독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터를 둡니다.
- 8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즉 온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 9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 헌신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사명이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 10 것을 인식하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열망합니다.
- 11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 12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증명되는 성령을 받도록
- 13 헌신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웨슬리안 속회와 밴드 모임 같은 제자도 및 책무 그룹을 통해 언약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
- 14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도록 격려합니다.
- 15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 16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는 데 헌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정기적인
- 17 동료 검토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목회자는 목회자에게, 교회는 교회에게, 모든 신자는 서로에게 책무를 짐). 요한복음
- 18 21장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양 떼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 19 서로를 돌봅니다. 마침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된 왕국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까지
- 20 그렇게 합니다.
- 21 평신도를 세례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고,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 같은
- 22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기도, 참여, 은사, 봉사, 증거로 교회를 굳건히 하겠다는 헌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 23 격려하고 구비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연령의 사람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인정하며,

24 평신도가 우리 목회자와 완전한 동역 관계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25 성경의 권위 있는 증거에 기반을 두고, 교회에 의해 구별되었으며, 우리의 확립된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고 책무를 지는
 26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아 목회자로 세워진 이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격려하고
 27 확증하며, 이들이 서번트 리더십의 소명을 추구하면서도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소명을 결코 잃지 않음을
 28 이해함

29 보편적 교회에 대해 “보편적 정신”을 보여주며, 상호 존중, 협력 관계, 그리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다른 이들과 사명을
 30 공유함으로써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이가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자원을
 31 얻고 배우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사역 동안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그의 보편적 교회에 주신
 32 과업들(복음 선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함, 병든 자를 치유함, 약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옹호함 포함)을 완수하는
 33 글로벌 교회를 지향합니다.

34 교리와 장정을 이러한 제안된 변경 사항에 더욱 부합시키기 위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35 ¶ 101. 우리의 신앙 유산.

36 2. 이 믿음은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빈 무덤의 여인들에 의해 선포된 이후 시험되고 입증되었습니다.
 37 사도들이 가르치고 초대 교회의 여성과 남성들이 옹호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간증했다. 그들의 수고는
 38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과 영감을 받았으며, 그 결과 신앙과 실천 모두를 위한 충분한
 39 규칙으로서 성경 정경이 확립되었습니다(그리스어 '카논'은 규칙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40 위해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와 같은 신조를 공식화했다.

41 5. 영국의 많은 감리교인들, 특히 요한과 찰스 웨슬리의 노력으로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한 뚜렷한 감리교적 표현을 낳은
 42 조직과 문헌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감리교는 보편적인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거듭남, 그리고 구원의
 43 충만함, 즉 (신도회, 밴드, 속회와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온전한 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알려진
 44 것들에 특별한 강조를 두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기존 교회와 함께 "국가,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성경적 거룩함을
 45 전파하는" 사명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과 공동체를 만들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예배

청원자: Jeff Jacob

조직: 로레토 (미국: 미드사우스)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우리의 교리에는 새로운 창조에 관한 성명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 대중적인 기독교 문화의 서사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유사한 관점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성명서는 우리의 사역이 온전한 소망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찬송가, 설교, 안수 요건, 그리고 성찬, 세례, 장례를 위한 예배 예전의 작성에 영감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상은 글로벌 감리교회로부터 나오는 종말론적인 희망의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3.9를 추가하여 ¶ 103을 개정합니다

- 1 새 피조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원의 범위는 창조에서 새로운 창조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 2 바로 세우고 계신다는 담대한 낙관론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 3 새 피조물 백성으로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께서 하늘에 머무시는 동안 기다립니다. 그때에 죽었든지 살았든지
- 4 예수께 속한 모든 이들은 새 몸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정의와 아름다움을 주시는
- 5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새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광으로 반드시 가득
- 6 차게 될 것이라는 표징입니다.

글로벌 통일성과 지역적 유연성: 열망 그 이상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삭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의 소명에서 소망적인 모호성을 제거하고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3.2를 대체합니다

-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사명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와 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 인도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온 세상에 가서 아버지와
-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것을
- 약속합니다.
-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지역 교회를 위하여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수정안은 우리의 구조가 지역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총회에 명확히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3.8 전체를 대체합니다

- 1 교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구조를 제공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모든 사람의 은사에 힘을
- 2 실어주고 증식시킬 수 있는 연대적 정책체제를 이룬다.
- 3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은사에 힘을 실어주고 증대시키는 연대적 정치로 지역 교회를 지원하는
- 4 것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조직과 구조를 제공한다

성경 권위에 대한 입장 강화

청원자: 스콧 볼츠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코코모 자이언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현행 장정 제104항의 문구는 성경 전체의 정확성과 권위에 대해 더 강력한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역사적인 교리 논쟁은 변화하는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성경의 정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롭거나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정경의 완전한 정확성과 권위를 더 강력히 선언하지 않는다면, 우리 새 교단은 연합 감리교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바로 그 내부적 싸움을 다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4을 개정한다

- 1 ¶ 104.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정경은(신앙 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권위 있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원문에서
- 2 정확합니다. 그것은 신앙, 도덕, 봉사를 위한 주요 최종적인 규칙이자 권위이며, 다른 모든 권위는 이것에 비추어
- 3 측정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조항

청원자: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근거: 본 신앙 조항은 2024년 총회에서 제자도, 교리 및 공의로운 사역 위원회에 감리교회 신앙 조항(AR)과 복음주의 연합 형제회 신앙 고백(CF)을 단일 신앙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지시한 후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조항들은 제외되었으며, 우리의 사회적 증언의 일부로서 ¶ 302에 수정과 함께 포함될 가능성을 위해 참조용으로 보내졌습니다: AR 21, 23, 24, 25; CF 15, 16. 다음 조항은 참조 없이 제외됩니다: AR 14. 앞서 언급한 조항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조항들은 제안된 신앙 조항에 통합되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6 전체를 다음 내용으로 대체을 삭제합니다

1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조항

¶ 106.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조항. 신앙 조항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적 교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 조항은 보편 교회의 신조 전통과 일치하며, 우리 교회의 특별한 웨슬리-감리교적 강조점과 관심사,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믿음의 유산을 표현합니다. 신앙 조항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유다서 3)을 선포하는 구성 기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신실한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7 I. 성삼위일체

우리는 한 분이시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시며, 몸이나 부분이 없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 정의, 선함, 사랑이 무한하시며, 모든 이의 안녕과 구원을 은혜롭게 돌보시며 다스리시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 위격, 즉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고, 존재와 위엄과 능력과 영광에서 영원히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12 II.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할, 혼동, 또는 변화 없이 완전하고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의 신성에 관하여는,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십니다. 그의 인성에 관하여는, 그는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성부의 영원히 독생하신 아들이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케 하셨음을 믿는다. 단번에 드러진 그리스도의 제물은 온 세상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한 완전한 속죄, 구속, 화목제물, 그리고 만족이며, 죄에 대한 다른 만족은 없습니다.

21 III. 성령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며 위엄과 능력과

23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은
 24 세상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그에 대한 믿음으로
 25 인도하시며,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교회가 세상에서 그
 26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장차 올 영광을 보증하는 보증금으로서, 그는 신실한 자들을
 27 위로하고 지탱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28 증언하십니다.

29 IV. 창조와 섭리

30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31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그는 그의 완전한 사랑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32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창조물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유지하십니다. 인간의
 33 자유 의지와 책임은 이 섭리적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34 V. 인간의 본성

35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존엄성이 부여되었음을
 36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선을
 37 위해 바라고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의 선한
 38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타락에 빠져 원래의 의의 상태에서 매우 멀리
 39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40 VI. 죄와 자유로운 은혜

41 우리는 인간이 원래의 의에서 타락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42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의 부패인 원죄는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상태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성의 모든 부분을
 43 부패시킵니다. 선행 은총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4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의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 옵니다.

45 VII. 교회

46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신실한 자들의 교제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과 소명에 있어서
 47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례가
 48 정식으로 집행되는 구속의 교제입니다.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은 감독의 안수를 통해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
 49 안수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는 성삼위일체의 예배와 영화, 신자들의 덕을 세움, 그리고 세상의 구속을 위해
 50 존재합니다.

51 VIII. 성경

52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믿습니다. 구약은 신약과 반대되지 않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두 성경
 53 모두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확인하는 모든 것에서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54 무오한 규칙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거나 성경에 의해 확립되지 않은 것은

55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56 성경에 영감을 주신 바로 그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해석을
57 조명하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선포의 기초이며, 그것을 듣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58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깨우고, 회개로 부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59 하십니다.

60 구약의 정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61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62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63 신약의 정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4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65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66 IX. 성례에 관하여

67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68 서약이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69 역사하시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고, 강화하며, 확증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70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 즉 세례와 주의 만찬만을 믿는다.

71 세례에 관하여

72 우리는 세례가 보이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시한다고 믿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73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권속으로 편입되는 표징이자 인치심이다. 세례는 회개, 죄로부터의 정결케 됨,
74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거듭남을 의미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들이 신자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유아들을 기독교
75 세례의 합당하고 받아들여지는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세례 받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76 그들이 공적인 신앙 고백과 평생의 제자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으로서 세례를 확증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특별한
77 책임입니다.

78 주의 만찬에 관하여

79 우리는 주의 만찬이 우리의 구속의 성례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80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기념이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서로 간에 가지는 사랑과 연합의
81 증표입니다. 성찬물 자체를 예배해서는 안 되지만, 각 성찬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성령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82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비롭게 전달하십니다. 이 성찬을 받는 자들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83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경건하게 참여합니다.

84 X. 공중 예배와 주일

85 우리는 거룩한 예배가 교회의 삶에 필수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은 공중 예배와

86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영적 성장과
87 우리의 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중 예배의 순서가 예배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교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88 믿습니다. 예배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성경과 일치하게,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89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90 XI. 회개

91 우리는 성령께서 세상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92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며,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93 표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칭의를 위한 준비로,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94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지속적인 은혜로 주시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95 XII. 칭의와 종생

96 우리는 칭의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초로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하나님의
97 은혜로운 선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98 옵니다. 칭의는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개인의 장점의 결과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외에는
99 아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원죄나 자범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100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이시요 구원자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101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은혜롭게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102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큰 위로가 됩니다.

103 우리는 종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갱신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104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신성한 성품에
105 참여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의 의지와 애정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종생은
106 우리의 최초의 성화이며, 그 후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추구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거룩함 안에서
107 새로워집니다.

108 XIII. 선한 행위

109 우리는, 선행이 신생에 따른 믿음의 필수적인 열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는 효험이
110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111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 그리고 선한 행위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명백해집니다. 성경에서 명령된 것 이상의
112 행위는 신자들에게 요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의무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113 공로를 쌓는 것은 아닙니다.

114 XIV. 완전 성화

115 우리는 완전 성화가 완전한 사랑, 의, 그리고 참된 거룩함의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116 은혜의 역사입니다. 완전 성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으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117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미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원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생각과
118 말과 행실에서 그 오염으로부터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은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119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서 흠 없이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120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화시키는 은혜를 받을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나
121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연약함, 무지, 또는 실수로부터, 또한 더 이상의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122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거룩함에 거함으로써, 특히 영적 교만의
123 형태로 나타나는 계속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124 XV. 심판과 미래의 상태

125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악인은
126 정죄에, 의인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영생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개정된 믿음 총칙

청원자: C.Chappell Temple

조직: 슈가랜드 트리니티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1968년 연합 감리교회가 창립된 이래, 감리 교회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회 지역 사회의 보완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두 개의 믿음 성명서가 공존해 왔습니다. 새로운 화폐 단위로서, 두 성명서를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총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글로벌 감리교회 내외의 모든 이가 그 교리의 기초와 핵심 믿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 및 기타 관계자들의 제안서 외에도, 다음의 내용은 글로벌의 감리교회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간결한 요약を提供하며, 1784년에 채택된 우리 역사적 표준의 신학적 개념과 언어를 유지하고 조항들을 보다 논리적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6를 수정합니다

- 1 ¶ 106. 웨슬리안 증인을 위한 규범적 기준. 많은 기독교 공동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편적 교회의 신조 전통과
- 2 일치하지만 우리 교회의 특별한 강조점과 관심사, 신학적 신앙 유산을 표현하는 추가적인 신앙 고백을 인정합니다.
- 3 이러한 구성적이고 규범적인 표준은 "성도에게 단번에 맡겨진 믿음"(유다서 3장)을 구현하며 거짓 가르침에 대한 보루
- 4 역할을 하며, 우리의 가르침(정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적 신학의 발전과 우리의 삶과 봉사(정확한 행동)의
- 5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감리교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회 신앙 공동체의 상호 보완적인 흐름을 인식하여, 통합된 신앙 강령이
- 6 교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은 모두 우리 교회의 교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 7 1. 감리교회의 종교 강령. 영국 교회/성공회의 총칙이 최종 형태로 1571년 엘리자베스 1세 통치 동안 비준되었으며, 이는
- 8 영국 종교개혁의 관심사와 기성 교회의 포괄적 성격을 반영합니다. 미국이 독립 국가로 등장함에 따라, John Wesley는
- 9 1784년 미국 감리교 사역을 위해 총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의 스물네 개 조항은 그의 신학적 헌신과 교리적 명확성에
- 10 대한 열망을 반영하고, 일부는 39개 조항 중 일부를 단축하며, 전부 쉽게 오해될 경우에는 삭제했습니다. 감리화
- 11 감독교회는 시민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루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25개 조항은 1808년 감리교회 총회에서
- 12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때 최초의 제한 규칙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곧이어, 연합 형제교회의
- 13 독일어권 웨슬리안들은 1815년에 유사한 신앙 고백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성명서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고, 성화와
- 14 시민 권위에 관한 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통합 과정과 함께, 아래의 신앙총칙은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 15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요소에 대한 신학적 합의를 반영합니다.
- 16 ¶ 106.1 및 106.2 삭제
- 17 Article I—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한 분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 18 ARTICLE XVI—CIVIL GOVERNMENT. 우리는 시민 정부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 19 믿습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자라가서 속한 정부에 윤리적 능력과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
- 20 시민의 의무라고 믿는다.
- 21 다음을 추가함:
- 22 글로벌 감리교회 믿음 총칙

23 제1조 – 삼위일체 하나님

24 우리는 한 분 살아 계시고 거룩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
 25 주권자, 보존자이십니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정의와 선함과 사랑에 무한하시며, 모든 이를 위해 은혜롭게 규칙으로
 26 통치하시어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니, 각
 27 위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 본질과 권능, 영원을 지니십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28 제2조 –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2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30 사람이십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독생자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
 31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2 장사되었으며,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고,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실제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33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다시 자신의 몸을 받으신 후 하늘에 올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장차 영광
 34 중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남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35 제3조 – 성령

36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며,
 37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신자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38 지탱하며, 장애가 된 자에게 권능을 주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39 제4조 – 성경

40 우리는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41 믿음과 실천에 있어 유일하고 충분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고 믿으며,
 42 두 성경 모두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모든 이에게 헌금됨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즉 교회가
 43 오랫동안 받아들인 정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되지 않았거나 확립되지 않은 것은 믿음 총칙이 될 수
 44 없으며,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의식적 의식이나 시민적
 45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나, 그 안에 포함된 도덕적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46 제5조 – 원죄와 자유의지

47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의에서 심히 벗어나 있으며, 원죄로 인해 거룩함이 결핍되고 본성상 악에 기울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48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의 상태는, 우리의 자연적 힘이나 행위로는 믿음으로 전환하거나 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49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50 하나님의 왕국/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영향과 장애가 된 능력 안에서, 선을 위하여 자신의
 51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52 제6조 - 회개

53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성령의 촉구로 인한 죄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와 행위로부터

54 돌이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확신이 따라야 하며, 이어 자백, 악의 단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55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갱신된 헌신이 요구되고,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로 이어집니다.

56 제7조 –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57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58 드린 헌금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나 장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며,
 59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칭의에
 60 이른다고 믿습니다. 영적 중생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고 정의 안에서 새로워지며,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되며, 의지와
 61 감정 모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62 제 X조 – 선한 행위

63 우리는 선한 행위가 믿음의 필수적 열매로서 칭의 이후에 따르지만, 그 행위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신성한 판단을
 64 피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를
 65 통해 믿음이 증거되나니, 나무가 그 열매로 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66 제 X조 – 구원의 확신

67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으나, 새 생명을 얻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68 따르지 않고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삶을 수정하고
 69 정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용서의 길이 결코 닫히지 아니합니다.

70 제 X조 – 온전한 성화

71 우리는 성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72 것임을 믿습니다. 거듭난 이들은 성화로 구별되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73 이루어짐으로써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모든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온전함에 이르는 것으로도 불리며,
 74 이 생에서 점진적으로나 혹은 순간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인 약점, 무지, 실수로부터 혹은
 75 하나님에 대한 추가적인 반역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고 성령의
 76 능력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죄가 무력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77 제11조 – 교회

78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지역 사회이며, 하나이고, 거룩하며,
 79 사도적이고, 보편적, 로마 카톨릭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는 남녀 회중으로 구성된 지역 사회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80 충실하게 설교되고,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파송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인, 행정인에 의해 집례되는 곳입니다.
 81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유지하고, 신자들의 교화/세워줌과 세상의 상황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82 제12조 – 공예배

83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모든 이의 의무이자 권한이며, 교회의 생명에 필수적임을 믿습니다.

84 따라서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로서, 사적 및 공적 예배와 불필요한 일에서의 쉼을
85 위하여 신적으로 안수받은 것이며, 영적 성장, 그리스도인 교제, 그리고 예배, 봉사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현지
86 교회, 회중에 적당한, 충당하다(동) 언어와 형식으로 드러져야 하되, 반드시 성경과 더 넓은 교회의 규율에 부합하여야
87 합니다.

88 제13조 – 성례

89 우리는 성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적 은혜의 외적 표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안수받은 것임을 믿으며, 이를 통하여
90 그분께서 우리 믿음을 강화하고 확증하시는 사역을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안수받은 두 가지 성찬은
91 세례와 성찬식(성찬)입니다.

92 제14조 - 세례

93 우리는 세례가 회개와 믿음의 가족에 들어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94 표지됨을 믿습니다. 이는 또한 영적 중생 혹은 거듭남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95 신자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세례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합당한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96 교회의 특별한 책임으로 양육되어 그들이 세례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한 서약을 스스로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97 인도하여야 합니다.

98 제15조 – 주의 만찬

99 우리는 주의 만찬, 곧 성찬식 또는 유카리스트(감사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간 갖추어야 할 사랑의 표징이자 징표일 뿐
100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우리의 상황을 나타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합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101 그리스도의 영적 몸과 피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누게 됩니다. 비록 빵과 잔에 물리적 변화가 없으나, 성찬의 두 요소를
102 통해 우리는 온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식탁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열려
103 있습니다.

104 제16조 – 심판과 장래 상태

105 우리는 모든 이가 지금도 마지막 날에도 그리스도의 의로운 판단 아래 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106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 악인에 대한 신적 판단, 의인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제7조 - "원죄 또는 출생죄"를 "아가페 사랑과 죄"로 대체

청원자: Victoria Campbell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원죄/출생죄라는 용어는 글로벌 감리교회 규범 문서(¶ 105)에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성경에서도 사용되거나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 104는 친구약 성경이 신앙, 도덕, 봉사의 최고의 규칙과 권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원죄”는 죄가 유전된다는 가르침(에스겔 18장에 위배)과 아담으로부터의 영원한 저주(출애굽기 20:2-6에 위배)를 주장함으로써 이것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BODD에서 “원죄”와 “출생죄”에 대한 모든 참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는 죄를 예수님의 두 가지 큰 명령(마가복음 12:28-34; 신명기 6:5; 레위기 19:18)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명령들은 모든 도덕법을 요약합니다(마태복음 22:40). 죄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의지적 불순종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6을 수정합니다

1 제7조 — 원죄 또는 출생죄에 관하여

2 원죄는 (펠라가우스파 사람들의 망령된 말 같이) 아담을 따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에게
3 자연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각 사람의 본성이 부패한 것을 가르침인데, 이로 인해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4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한다.

5 ¶ 106 – 아가페 사랑과 죄

6 우리는 모든 인간이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음을
7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연결하셨으며, 사랑의 의미로서 “아가페” 즉 하나님께
8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이 두 가지 큰
9 명령임을 말씀하셨고,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으며, 이 명령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모두 요약하며, 이를 따르는 자에게
10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믿음의
11 열매임을 믿습니다.

12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거부하고 말과 행동, 혹은 무행동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13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적 분리를, 내세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14 초래합니다.

15 하나님의 은혜와 죄로부터의 회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16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의 희생과 성령의 재생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죄
17 사함으로부터 이 절박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18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거룩함 가운데 선을 행하고 악을 거부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제8조 - 자유 의지에 관한 조항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하기

청원자: Victoria Campbell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아담의 타락, 원죄,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적 문서(¶ 105)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성경에서도 전혀 사용되거나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교리와 헌법(BODD)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104는 성경을 믿음의 주요 규칙이자 권위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들은, 유전적 죄책(에스겔 18장에 반함), 아담으로부터의 영구적인 저주(출애굽기 20:2-6에 반함), 선을 택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이는 하나님의 예방적(앞서 가는) 은혜와 신명기 28-30장, 잠언 1-9장, 마태복음 5-7장을 무시함—을 주장함으로써 성경과 상충합니다. 따라서 타락, 원죄, 전적 타락에 관한 모든 참조는 교리와 헌법(BODD)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인간의 본성" 조항은 예수와 성경의 유대인적 세계관에 일치하는 명확하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6을 수정합니다

- 1 제8조—자유 의지에 관하여
- 2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상태가 그와 같아 되어, 자기의 본연의 능력과 행위로써 마음을 돌아키고 준비하여 믿음에
- 3 이르러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의지를 얻게
- 4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 5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 6 ¶ 106 – 인간의 본성
- 7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선과 악의 성향 모두에 영향을 받으나 근본적으로 선함을
- 8 지녔다고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택할 도덕적 능력을 받았습니다.
- 9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선함을
- 10 위하여 갈망하고 힘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으며, 가정, 지역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 11 선하신 창조에 대한 스튜어드십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2조 - 말씀, 곧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서 "원죄"라는 구절을 삭제함.

청원자: Victoria Campbell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원죄”와 “원죄의 죄책”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 문서(¶ 105)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성경에서도 결코 사용되거나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 104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이 믿음, 도덕, 그리고 예배와 봉사의 기본 규칙이자 권위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죄책이 세습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에스겔 18장)에 위배되고, 아담의 죄로 인한 영구적인 저주가 있다는 주장으로 출애굽기 20:2-6과도 상충합니다. 이 개념들은 유대 성경 본문 위에 겹쳐진 그리스·로마의 "잃어버린 낙원" 패러다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죄책"과 "원죄"에 대한 모든 참조는 교리와 장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106을 수정합니다**

- 1 제2조 - 말씀, 곧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 2 성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어신 성부의 말씀이요, 성부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셨으나, 복 받은 동정녀의 모태에서 인성을
- 3 입으시어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한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분에게서 나누어질 수 없이 합하여 자신 분이다. 이로 인하여
- 4 그는 참 하나님어시요 참 사람이 되신 한 분, 그리스도로 진실로 고난을 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5 장사되셨으나, 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지은 죄를 위하여
- 6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다
- 7 ¶ 106 – 제2조 - 말씀, 곧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 8 성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정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본질이 하나이시다. 복 받은 동정녀의
- 9 태중에서 인성을 취하여,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완전하고 온전한 본성이 한 인격 안에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셨다.
- 10 그러므로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참 하나님어시요 참 인간이 계시니, 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11 장사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제20조 -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물에 관하여...에서 "원죄" 제거...

청원자: Victoria Campbell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원죄"라는 신학적 구성 개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 문서(¶ 105)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거룩한 성경에서도 사용되거나 정의되지 않습니다. ¶ 104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이 믿음, 도덕, 그리고 예배와 봉사의 기본 규칙이자 권위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원죄와 관련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죄가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여호와와 말씀에 위배됩니다. •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와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6.1을 개정한다

- 1 그리스도의 제물은 단번에 온 세상의 모든 원죄와 실제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 속죄, 그리고 성취이며, 그것 외에는 죄에
- 2 대한 다른 속죄법은 없다. 단번에 드러진 그리스도의 제물은 온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화목과 만족이며,
- 3 그것 외에는 죄를 위한 다른 속죄는 없습니다. 이따라서 “미사”제를 드리며 사제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어 산 자와 죽은
- 4 자의 고통과 범죄를 면하게 한다 함은 불경스러운 우화요 위험한 꾀계(說計)다.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청원자: John Lomperis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이는 웨슬리안 신학 전통에 속한 우리 지역 사회가 다른 이들과 함께 이것이 중요한 교리적 분계선이어야 함을 분별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기관에 우리 교리에 부합하도록 요청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부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회적 증언이 아닌) 우리의 교리적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위상을 높이며, 향후 어떤 총회라도 이를 자유화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총회는 이 내용을 통합 신앙 조항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 하위 항 ¶ 106.3을 추가하여 ¶ 106을 수정합니다

1. 감리교회의 총칙.

2. ...

3.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의 신앙 고백.

4. ...

5. 3. 결혼에 관한 교리 조항

6.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행사될 때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7. 그러한 결혼 생활에서의 진실함 또는 독신으로서의 순결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이를 향한 하나님의
8. 부르심임을 확인합니다.

웨슬리 저작에 대한 포괄적 해석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BODD의 일부에는 여성에 대한 포괄성이 부족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단락 106에 있는 종교강령과 단락 107, 108에 있는 웨슬리의 인용문. 우리는 역사적 문서를 변경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7을 수정합니다

107. 기독교 제자도를 위한 웨슬리의 기본 표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감리교의 표현의 규범적 기여와 강조를 대표하는
- 웨슬리 표준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끄는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적 후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종교강령과 존 웨슬리의 저작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웨슬리안 신앙고백이 쓰여진
- 당시의 '남자'라는 대명사가 사용된 맥락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 구원, 설교 등에 적용될 때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에게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며, 우리 공동체의
- 가르침은 이러한 기준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대한 이해 명확화

청원자: John Lomperis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널리 알려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며, 명확하고 일관된 교리적 경계를 갖는 새로운 문화를 매우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태아의 귀가 듣지 못한다고 말하거나('새로운 탄생' II.4), 십자가의 강도는 '강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거나('성경적 구원의 길' III.2), 막달라 마리아가 회개한 매춘부였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III.6)과 같이 정통성의 리트머스 시험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진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교와 주석에 있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한 다른 의견이 면직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7을 수정합니다

- 1 ¶ 107. 기독교 제자도를 위한 웨슬리의 기본 표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감리교의 표현의 규범적 기여와 강조를 대표하는
- 2 웨슬리 표준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끄는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적 후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 3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준들은 우리에게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 4 주며, 우리 공동체의 가르침은 그 주요 교리적 주제, 신학적 가르침, 그리고 경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에게
- 5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며, 우리 공동체의 가르침은 이러한 기준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 6 웨슬리안 표준들은 우리의 신학적 토대를 위한 중요한 문서로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 7 목회자들과 다른 교사들의 믿음과 사역을 형성해야 하며, 모든 글로벌 감리교인들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 8 자료로서 그것들을 참고하도록 권장됩니다. 다루는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고 비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존 웨슬리의
- 9 개인적인 의견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감리교회는 이 웨슬리안 기준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 10 역사적 혹은 웨슬리안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흔들지' 않고, 이 문서들의 핵심 신학적 가르침 및 주제와 모순되지 않으며,
- 11 우리의 다른 교리 기준들과 계속 부합하는 한, 이 특별한 웨슬리안 기준에 나오는 모든 진술에 대해 이전 항들의 교리적
- 12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일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웨슬리안 기준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3 1.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14 ...

15 2. 신약성경 주석.

16

장정 기초 원리 섹션에 개정 총칙 배치

청원자: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2024년 총회는 감독회에 2026년 총회에 총칙 개정안을 상정할 과정을 감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감독회는 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자도, 교리, 공의로운 사역 위원회와 협력했습니다. 총칙은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총회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합니다. 총칙은 ¶ 21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 의해 확립되고 우리의 구성 기준 내에 구현된 우리의 교리적 기초”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총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언약”을 설명하는 단락 바로 뒤의 “기초 원리”라는 섹션에 위치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8 및 그 내용을 다음에 배치 새 ¶ 404, 번호를 다시 매김 현행 ¶ 404 및 이후 항을 삭제합니다

- 1 2024년 교리와 장정에서 ¶ 108을 삭제하십시오.
- 2 다음 내용을 ¶ 403 다음에 새 단락으로 삽입하고, 이어지는 단락들의 번호를 다시 매기십시오.
- 3 글로벌 감리교회의 본질, 목적 및 총칙
- 4 1739년 말, 런던에서 여덟 명 내지 열 명가량의 사람들이 웨슬리 씨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죄에 대해 깊이 깨달은 듯
- 5 보였고,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2, 3명이 더 와서 그리한 것처럼, 그들은 웨슬리가
- 6 시간을 내어 그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며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닥쳐올 천벌로 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가르쳐
- 7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큰 일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그는 그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하루를 정하여
- 8 그 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 9 다 오게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고를 그때 그때 해 주었고, 항상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기도로 그
- 10 모임을 끝맺었다.
- 11 이것이 처음 유럽에서 시작되어 그 후에 미국에서 모이게된 연합 신도회의 시작이었다. 그러한 신도회는 다음 아닌
- 12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 각자의 구원을
- 13 이루도록 서로 돕기 위해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 14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고 있는가를 더 쉽게 알기 위하여 각 신도회를 속회라고 부르는 작은 모임으로 주거
- 15 지역을 따라 나누었다. 한 속회에는 약 열두 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속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속장의 의무는
- 16 다음과 같았습니다:
- 17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속회의 각 사람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 (1)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 18 묻기 위해; (2) 필요에 따라 조언, 책망, 위로 또는 권면하기 위해; (3) 설교자, 교회,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구제를 위해 각
- 19 개인이 기꺼이 내는 것을 받기 위해.
- 20 2.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와 신도회 청지기들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 (1) 아픈 사람이나,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 21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목사에게 알리기 위해; (2) 지난주에 각 속회에서 받은 것을 청지기들에게 지불하기
- 22 위해.

23 이 신도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요구되었던 조건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고
24 자기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 그들 마음속에 진실로 원한다면 그것은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25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감리교인들 사이에서 속회는 널리 폐지되었고, 이 책임 있는 소그룹들을 위한 웨슬리의 총칙은
26 헌신에 대한 진지한 기대 없이 입으로만 존중받는, 점점 더 흔적만 남은 죽은 문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27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회와 신도반 모임을 부활시키는 데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28 동력은 역사적인 감리교 전통을 이어가며, 기본적인 교리적 정통성, 교회 행정의 온전함, 선교적 효과성, 웨슬리안 영성과
29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의도성에 굳건히 헌신하는 새로운 교단으로서 글로벌 감리교회가 형성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이
30 시기에 존 웨슬리가 작성한 감리교 신도회를 위한 총칙의 일부가 18세기 영국이라는 그의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을 많이
31 반영하고 있거나, 많은 글로벌 감리교인들이 일관되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관찰되었습니다.
32 2024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글로벌 감리교회 창립 총회에서는 “역사적인 총칙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면서도
33 오늘날의 현실을 더 잘 다루고,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하며, 모든 목회자가 안수식에서 '우리 교회의 총칙을
34 지키겠다'고 서약할 때 우리가 그들이 실제로 지키기를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개정 총칙 제정
35 과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36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총칙을 갖게 되었습니다:

37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에 대한 우리의
38 열망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39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이며,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것들을 피할
40 것입니다.

41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는 것.

42 공동 예배에 참석할 책임을 무시하거나 다른 이들이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43 날을 더럽히는 것.

44 술 취함: 오락을 위한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에 취하는 것; 생각과 행동이 더 이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
45 알코올이나 기타 향정신성 또는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또는 절제 없이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46 가혹한 경제적 착취, 특히 노동자에 대한 모든 착취적, 모욕적 또는 비인간적 대우, 성매매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노예화
47 참여, 그리고 본질적으로 부도덕하고 착취적인 음란물 및 성매매 산업에 대한 모든 참여 또는 후원.

48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언약 밖에서 어떠한 형태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49 싸움, 말다툼, 소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와 사소하거나 앙심을 품은 소송을 벌이는 것; 타인에 대한 학대 또는 괴롭힘;
50 인종차별적 언행에 가담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51 상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금을 회피하는 것, 또는 모든 사업 거래, 세금 납부 및 기타
52 재정 문제에서 양심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

53 자비심이 없거나 무익한 대화 또는 험담; 특히 정부나 영적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54 자들에 대해 가혹하거나, 중상적이거나, 과장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의 거룩함에 해로운
 55 대화에 참여하는 것.

56 거룩함 및/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행동들:

57 단정치 못하게 옷을 입거나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

58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에 해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

59 우리 안에 죄악된 정욕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외에 거룩함에 해로운 미디어 및 기타
 60 사교적 오락에 참여하는 것.

61 게으름 또는 과도한 자기 방종.

62 탐욕: 은퇴 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상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 자신을 위해 부를
 63 축적하고, 도덕의 경계를 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부를 얻으려 하며, 과도한 쇼핑, 도박을 하고,
 64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와 자선 단체에 관대하게 헌금하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적 자원을 신뢰하는 것.

65 대금을 지불할 확률 없이 빌리거나 대금을 지불할 확률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66 나아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계속해서
 67 증명해야 합니다:

68 둘째: 선을 행함으로, 즉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69 함께 지닌 자로 존중하며, 우리의 힘이 닿는 한 모든 종류의 자비를 베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선을,
 70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행함으로:

71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교회와 궁핍한 자 모두에게 관대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72 주며, 병들거나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거나 돕고,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의 몸을 위하는 것.

73 우리가 교류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할 적절한 방법을 찾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선을 행해서는 안
 74 된다”는 잘못된 교리를 발 아래 짓밟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것.

75 특히 믿음의 식구이거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76 고용하고, 서로의 것을 사주며, 사업상 서로 돕고, 세상은 자기 사람만을 사랑할 것이므로 더욱더 그렇게 함으로써.

77 복음이 비난받지 않도록 끊임없는 근면과 검소함을 통해.

78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리며, 제자도의 대가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79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비판과 학대를 받으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거짓으로 하는 것을 감수함으로.

- 80 이 신도회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의 열망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81 계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82 셋째: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의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83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기독교인의 친교
- 84 말씀 사역은 읽거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 85 주님의 만찬.
- 86 가족 및 개인 기도.
- 87 성경 연구
- 88 금식 또는 금욕.
- 89 이것이 우리 교회의 총칙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90 그 말씀은 우리 믿음과 실천 모두에 대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규칙입니다.

“제1부: 교리”에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문답” 추가

청원자: 존 하워드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매디슨 베데스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교리문답은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표현하는 교육적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교육받고 이해해야 합니다. 평신도와 목회자 회원이 알고 고백해야 할 교회의 모든 핵심적인 가르침과 교리는 교리와 장정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정 제1부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설립된 기반이 되는 교리와 기초 표준을 포함합니다. 교리문답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리와 장정 제1부에 수록되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로운 ¶ 109를 추가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문답”을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제109항으로 추가한다.

성례 권한에 관한 청원

청원자: Tera Ertz

조직: Williamsburg Daybreak (US: Virginia)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마태복음 28:19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선교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순종과 제자 삼음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일관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19를 통해 사명을 부여하면서, 평신도가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집례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찬 집례자는 누구든 웨슬리안 교리 안에서 그 의미를 새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직:

미국: 버지니아

본문:

¶ 413. 성례전의 권위. 영국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성례전이 정식으로 집행되는 공동체로 정의되었습니다(감리 교회 총칙 XIII). 글로벌 감리교회는 이 역사를 존중하며 성경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장로목사들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관습에 따라 교회의 성례 생활을 감독하도록 안수받으며, 따라서 거룩한 세례와 성찬식을 집례할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마태복음 28:16-20)과 글로벌 감리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여, 감독은 웨슬리안 세례와 성찬 교리를 훈련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집사목사와 평신도에게 성찬 집례 권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례 권한은 개체 교회의 목사직 또는 다른 전문적인 목회 환경에 파송된 목회자에게 성례 집례 목적으로 부여됩니다. 집사목사의 이러한 성례 권한은 임명된 사역 환경으로 제한되며 감리사의 감독과 권위 아래 행사됩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마태복음 28:16-20)과 글로벌 감리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여, 감독은 웨슬리안 세례와 성찬 교리 교육을 마치고 사명 부여를 받은 집사목사와 평신도에게 성찬 집례 권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례 권한은 감리사의 감독과 권위 아래 행사됩니다.

- 1 감독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에 양호한 상태로 소속된 평신도 회원들이 다양한 사역 맥락에서 성찬 집례자로서의 부르심을
- 2 감당하고자 할 때 일관된 훈련 및 사명 부여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훈련받은 평신도에게 성례전 권한 확대

청원자: 알.씨. 물바이어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Muncie Garden at Gethsemane (US: Great Lakes)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지역 교회로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를 삼는 자들의 글로벌 운동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은 성례 집례입니다. 장로목사는 성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장정은 만인 제사장직(¶ 512), (¶ 510)과 집사목사(¶ 413)를 "인정하여"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목사는 교회의 생활을 질서 있게 하고(¶ 503.2) 선교적 통찰력을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엡 4:12)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목사가 훈련받은 평신도에게 유사하게 성례전 권한을 확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감리교회가 다양한 규모와 구조로 교회가 존재하는 전 세계에서 교회의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13을 개정한다

- 1 성례전의 권위. 영국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정식으로 집행되는 공동체로
- 2 정의되었습니다(감리교 종교조례 제13장).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관행에 따라, 장로목사는 교회의 성례전 생활을
- 3 감독하도록 안수받으며, 따라서 성례전과 성찬식을 주재할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감독은 성례전을 거행할
- 4 목적으로 개체교회의 목사직에 파송된 집사목사나 다른 전문 목회 환경으로 성례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 집사목사의
- 5 이러한 성례전적 권한은 파송된 사역 환경에 국한되며 지방 감리사(PE)의 감독과 권위 아래 행사된다. 장로목사는 다음의
- 6 요건을 충족하는 평신도에게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는 성례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7 평신도는 장로목사가 파송된 교회의 고백하는 회원입니다
- 8 평신도는 파송받은 장로목사에 의해 성례 집례 훈련을 받도록 추천됩니다
- 9 평신도는 연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례 집례 훈련을 이수합니다
- 10 평신도는 특정 사역 상황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집례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장로목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 11 받습니다.
- 12 평신도의 이러한 성례전 권한은 권한을 부여하는 장로목사가 파송된 구역의 사역 환경에 한정되며, 권한을 부여하는
- 13 장로목사의 감독과 권한 하에 행사됩니다. 평신도에게 부여된 이러한 성례전 권한은 권한을 부여한 장로목사 또는 해당
- 14 구역에 파송된 후임 장로목사의 재량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장로목사는 자신의 감독 하에 성례전 권한이 부여된
- 15 평신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 권한이 철회될 때에 감리사와 구역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집사목사에게 성례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집사목사에게 성례전적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은 감리사에게 있지 않고, 감독에게 있습니다. 이 단락은 적절한 권한에 대해 올바르게 언급하며, 반드시 감리사의 감독 아래에서 행사되어야 함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감독에 의해 부여된 경우, 이를 "감리사의 권한 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13을 수정합니다

- 1 감독은 성례전을 거행할 목적으로 개체교회의 목사직에 파송된 집사목사나 다른 전문 목회 환경으로 성례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 집사목사의 이러한 성례전적 권한은 파송된 사역 환경에 국한되며 지방 감리사(PE)의 감독과 권위 아래 행사된다.
- 2
- 3 집사목사의 성례전적 권한은 지정된 사역 환경에 한정되며, 감리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행사됩니다.

세례 서약에 성결을 향한 성장 조항 추가

청원자: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일반적으로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과 특히 성결 안에서의 성장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멤버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려는 헌신을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감리교회의 세례 서약과 회원 서약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안들은 우리의 서약을 사명 선언문에 부합하게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16을 수정합니다

- 1 마귀와 그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거부합니까?
- 2 포기합니다.
- 3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 4 그렇습니다.
- 5 성결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할 것을 서약합니까?
- 6 그렇습니다.
- 7 신구약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하십니까?
- 8 그렇습니다.
- 9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과 불의, 억압에 저항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나요?
- 10 그렇습니다.
- 11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순종적으로 지키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 그 안에서 행하시겠습니까?
- 12 그렇게 하겠습니다.
- 13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세례 후보자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 14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 어린이(사람)들을 양육하여, 여러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 15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 16 내(우리)가 하겠습니다.

- 17 그런 다음 목사는 회중에게 세례 후보자를 믿음으로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 18 이 서약을 증인되신 여러분은 [이 사람들] 을 믿음 안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을
19 살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 20 그렇게 하겠습니다.
- 21 그런 다음 세례 후보자(또는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후보자)는 신구약 성경에 담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22 요청받습니다.
- 23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 2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 25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 26 저는 그의 외아들 우리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27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으로 내려 가셨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28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 29 성령을 믿으시나요?
- 30 저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31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 교인 멤버십 단락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현재 고백 교인 멤버십에 관한 단락에는 전송하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후 단락에서 반복 및 확장되어 다루어집니다. 이 정보는 불필요하며, 고백 교인의 의미에 대한 성명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단락에서 전송하다 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18을 수정합니다

- 1 ¶ 418. 고백 교인.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개체 교회의 목회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아직 세례를
- 2 받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언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 서약에 동의함으로써 가입할 수
- 3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을 받는 목회자에게 이를 알리고,
- 4 이전에 적을 두었던 교회에 이적 요청서를 보내면 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서 전입을 통해 영접할
- 5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인 서약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담임목사에 의해 유예된
- 6 사람은 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에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랑으로 서로를
- 7 지키라"는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의는 고백 교인들이 교인 서약 이행의 핵심 부분으로 속회, 소그룹 모임,
- 8 제자훈련, 혹은 여타 책임 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반드시 권장되어야한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인 자격 기대사항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삭제는 암시적이고 제한적인 표현을 제거합니다. 원래의 제안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교인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18 삭제하여 다음 내용 문장을 수정합니다

- 1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의는 고백 교인들이 교인 서약 이행의 핵심 부분으로
- 2 속화,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혹은 여타 책임 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반드시 권장되어야한다.

제자를 삼음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버지니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정체성은 오늘날 세계에서 중요한 영적 전장입니다. 저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정체성을 제공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제자로 칭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2024년 『교리와 장정』 419항의 마지막 서약에 단어 변화를 주는 것이,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제자의 정체성을 구현함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으며, 405항에는 제자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나, 대표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되기를 질문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19를 수정합니다

- ¶ 419. 교인 서약. 세례 서약(¶ 416)을 하는 것에 더하여,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교회에
- 입회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리고 성령을
-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 섬기겠다고 약속합니까?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 거룩한 뜻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충실한 교인으로서 평생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글로벌
- 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전 세계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 [아름] 글로벌 감리교회(또는 [아름], 글로벌의 감리교회 지역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 되어, 기도와 출석, 헌금, 예배, 봉사,
-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로서의 증언을 통해 그 사역을 온 힘을 다해 강화하겠습니까? [이름] 글로벌
- 감리교회(또는 [이름], 글로벌의 감리교회)의 신실한 회원이 되어, 기도와 출석, 헌금, 예배, 봉사, 그리고 이 세상에서
-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언을 통해 그 사역을 온 힘을 다해 강화하겠습니까?

회원 서약에 성결 성장의 추가

청원자: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일반적으로 제자도를 향한 부름과 특히 성결 안에서의 성장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멤버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려는 헌신을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감리교회의 세례 서약과 회원 서약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안들은 우리의 서약을 사명 선언문에 부합하게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19를 수정합니다

- 1 ¶ 419. 교인 서약.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 서원(¶ 416)을 하는 것 외에도 교회에
- 2 입회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받아야 한다:
- 3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으시나요?
- 4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 5 약속합니까?
- 6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나요?
- 7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충실한 교인으로서 평생 그
- 8 안에서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 9 성결함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 10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여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 11 노력하시겠습니까?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 12 제자를 삼고 전 세계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시겠습니까?
- 13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동의하십니까?
- 14 당신은 [이름] 글로벌감리교회(또는 [이름] 글로벌감리교회 개체교회)의 충실한 교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 15 대표자로서 기도, 임재, 은사, 봉사, 증거를 통해 그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신실한 교인 자격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삭제는 웨슬리안 관점에서 볼 때 암시적이고, 시행 불가능하며, 불충분하게 표현된 문구를 제거합니다. 지역 교회에서의 신실한 교인 자격은 우리가 함께 은혜의 수단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화시키는 은혜입니다. 현행 문구는 교인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0을 삭제합니다

- 1 개체 교회에 충실한 교인은 개인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교인들은
- 2 사적 및 공적 기도, 예배, 성례전, 연구, 그리스도인 행동, 체계적인 헌금, 거룩한 훈련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 3 역사와 자연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성장한다. 신실한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 4 동료 지체들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교인은 신성한 언약에 따라 짐을 짊어지고
- 5 ,위험을 분담하며, 동료 교인의 기쁨을 축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엡
- 6 4:15), 용서와 조정의 정신으로 항상 갈등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

청원자: Joe Stallings

조직: Lucama (US: North Carolina)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현재 버전은 성례적으로 약하고 실질적으로 모호하며 존 웨슬리의 가르침과 철저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웨슬리안-감리교적 표현을 형성해 가는 가운데 있으며, 성만찬이 웨슬리 형제들과 초기 감리교 운동 안에서 지녔던 그 비범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만큼은—이 모든 것 가운데서—기초부터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청원이 이를 제공합니다.

조직: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본문:

단락 421. 성찬의 의미. 성찬, 즉 성만찬과 유카리스트라고도 불리는 성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참여적 교제(헬라어 코이노니아: 고린도전서 10:16-17)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떡과 잔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성찬 참여자들과도 능동적이고 성례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더욱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참여자들을 권면하시고 용서하시며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많은 영적 열매와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례를 계속해서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친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을 지탱해 주는 양식이 됩니다.

1 성찬은 통상적으로 함께 모인 회중, 즉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인 교회 안에서, 살아 계신 몸의 머리이신 예수
2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심리적·역사적 회상, 곧 과거의 한 사건을
3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헬라어 밈네스코마이) 이상입니다. 성찬은 신적·카이로스적 기억, 곧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살아
4 있는 표적으로 불러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헬라어 아나므네시스). 따라서 성례는 교회와
5 교회의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초자연적인 만남입니다. 성례 안에서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6 이들은 자기의 상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고린도전서
7 11:23-26).

8 신성한 예배에서 웨슬리안 제단예배로의 초청으로 행해지는 성찬은 말씀 선포 후에 이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말씀과
9 성찬은 개체 감리 교회의 주된 예배에서 실제로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웨슬리안 감리교의 요구에 따라 목사와
10 개체교회 회중은 사람들이 최소한 주간 말씀과 성찬 모임에서 거룩한 성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11 그리스도를 만날 “항상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101번 “끊임없는 성찬의 의무”를
12 참조하십시오.) 말씀과 성례를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은 거룩함과 제자도의 성장에 있어 최고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13 그러므로 각 개체 교회는 가능한 자주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14 정기적인 주간 예배에 신체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적법하게 축성된 성만찬의 요소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15 신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하여, 무알코올 주스와 글루텐 프리 빵을 대안으로 제공하는 것
16 역시 신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포도즙을 요구하지 않고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권한

청원자: Ethan Gross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lear Lake (미국: 중서부 북부)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이 개정안은 성찬식의 성례전적 온전성을 보존하면서 지역 교회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포도즙에 대한 선호를 없애고 대신 두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목회적 리더십과 3분의 2의 회중 투표를 통해 교회가 포도주 또는 포도즙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교회는 전통과 실제적인 목회적 돌봄을 모두 확언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건강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포도즙을 계속 허락함으로써 완전한 포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찬상을 차리는 모든 경우에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앱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1을 수정합니다

- 어떤 이유가 있어, 빵과 포도주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축복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도록
- 권고한다. 성찬 요소는 몸이 불편하여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성찬식에 무알코올 포도주나
- 주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 포도주 외에 무알코올 주스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한다.
- 교회는 지역 교회의 관례와 분별력에 따라 성찬식 거행 시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관련 우려로
- 인해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목회적 지도 하에 포도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 1240

교리적 언어와 경계 명확화

청원자: John Lomperis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우리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 문화를 구축함에 있어, 우리 교리의 의미와 목회자/사역자 후보자 및 기타 이들에게 단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단락에서는 "규범적 기준", "구성 기준", "교리적 기준", "교리적 기초", "우리의 교리", 혹은 글로벌 감리교회에 의해 "제정된 교리" 등의 용어를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 제한 규칙(¶ 212.1)의 역사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네 개의 문서 외에 무엇이 보호되는지, 100번째 단락의 나머지 부분의 지위, 그리고 교리적 기준에 추가로 조항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다양한 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확성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결의안입니다

- 1 총회는 본 결의에 따라 제자도, 교리, 정의로운 사역 위원회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조직한 태스크 포스에, 교단의
- 2 교리가 교리와. 장정의 각 부분에서 어떻게 식별되고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전체
- 3 연대 내에서 교리의 경계, 교리적 기대, 제1 제한 규칙의 영향, 그리고 제1 제한 규칙에 의해 변경으로부터 보호받는
- 4 대상·대상이 아닌 것의 구체적 경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법안을,
- 5 (¶ 212.1 개정안 포함, 이에 한정되지 않음) 차기 정기 총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과정에는 교리와. 장정의 언어가
- 6 각각의 글로벌 감리교회 신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는 절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7 이는 위원회가 우리 교리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의무가 아니라, 더 큰 명확성으로 이끌기 위한 지침임을
- 8 의미합니다.

청원 1454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운동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기

청원자: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본 결의안은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운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결의안입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운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 2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운동이 되도록 권능을 주셨으므로
- 3 글로벌 감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전 세계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 4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은 “운동”이라는 단어를 아홉 번 이상 인용하여, 교회가 단순히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 5 부름받은 선교적 역량임을 단언하고 있으므로
- 6 운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성은 리더십, 구조, 훈련 문화, 교회 개척, 예산, 목회자 양성, 회중의 기대, 그리고 글로벌
- 7 미션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 8 그러므로 글로벌 감리교회는 이에 다음과 같은 운동의 정의를 채택하기로 결의합니다:
- 9 제자 양성 운동은 최소 4세대까지 재생산에 이르도록 제자를 삼는 제자들의 급속하고 기하급수적인 배가를 특징으로
- 10 합니다.
- 11 교회 개척 운동은 특정 인구 통계 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생적 교회들의 급속하고 기하급수적인 배가를 특징으로 하며,
- 12 최소 4세대의 재생산에 이릅니다.
- 13 최종 결의하는 바입니다
- 14 글로벌 감리교회는 모든 연회, 위원회, 협의회, 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회원들이 운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 15 자신들의 사역, 우선순위 및 관행을 평가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온 세상에 성경적
- 16 거룩함을 전파하는 사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원 1455

글로벌 감리교회 총칙과 신앙 고백에 관한 주해서 제정 결의안

청원자: 윌튼 T.A. 오동고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감리교회의 역사적 유산에 따라, 감리교인들과 창시자들은 “거룩한 대화”라고 불리는 총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감리교 운동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 청원은 저명한 고전 신학자들을 선정하여 총칙과 신앙 고백의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주석을 훌륭하게 저술할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합니다. 이 주석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교단의 진정한 교리적 입장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결의안입니다

- 1 이 주석은 시편 78편 1-11절과 유다서 3-4절을 참조하여, 우리 창시자들이 가르친 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 진정한 교리적
- 2 믿음의 신학적 성경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교단의 신앙 고백을 보호하고, 감독, 총리사, 감리사,
- 3 장로목사, 집사목사 및 설교를 담당하는 다른 모든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제시되고 웨슬리안
- 4 관점에서 해석된 사도적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자도, 교리 및 공의로운 사역 위원회는 감독회에서 지명하고
- 5 연대 협의회에서 승인한 저명한 정통 신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감독할 것입니다. 총회 기간 중 십이(12)년마다
- 6 새로운 태스크 포스가 임명되어, 상황화에 비추어 글로벌 감리교회 총칙과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적 기준의 관련성을
- 7 검토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회중 찬송 자료의 인정

청원자: Sterling Allen

조직: 휴스턴 코너스톤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교리 및 성례

근거:

장정 ¶ 703.12는 총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음악 자료와 예배 의식을 승인하고 수정하며, 그러한 자료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특정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될 다양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웨슬리안 증언의 초기부터 찬송가는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용할 예배의 서정적 신학을 형성함으로써 제자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가 그러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결의안입니다

- 1 전제로서, 웨슬리안 증언의 초기부터 찬송가는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용할 예배의 서정적 신학을 형성함으로써
- 2 제자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 그러하였으므로;
- 3 전제로서, 공인된 찬송가와 기타 교단이 승인한 자료 없이 나아가는 것은 분별력 있는 회중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 4 전제로서, 감리교인들은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이며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므로;
- 5 전제로서, 존 웨슬리는 제자도의 수단으로서 찬송가 사용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껴 스물여섯 권 이상의 찬송가를
- 6 자비로 출판하였으므로;
- 7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총회에서 공식 예배서가 개발되고 채택될 때까지 포함된 예전의 승인을
- 8 제외하고) Seedbed에서 출판한 Our Great Redeemer's Praise(2022)와 O For a Heart to Praise My God(2024)를
- 9 회중 찬송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합니다;
- 10 또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는 웨슬리안 전통에 따른 회중
- 11 찬송을 위해 다른 찬송가를 평가할 때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12 이에 추가로 결의한다 본 결의 사항을 공식 총회 의사록에 기록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사회적 증언

Social Witness Statements & Resolutions · all ¶ 300s

번호	¶	제목	페이지
1156	¶ 302	우리의 증언 갱신	51
1044	¶ 302.3	교리와. 장정 302.3항을 수정하는 청원입니다.	55
1111	¶ 302.3	태아와 산모의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문구 보완	56
1238	¶ 302.3	낙태에 대해 명확하게 생명 존중 입장을 채택하십시오	57
1305	¶ 302.3	장애인의 신성한 가치를 확인함	58
1306	¶ 302.3	우생학을 피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함	59
1448	¶ 302.3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항상 반대해야 합니다	60
1125	¶ 302.4	조력자살 반대	61
1258	¶ 302.4	태아 - 인식, 교육, 그리고 결의 사항	62
1307	¶ 302.4	근로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명확화	63
1308	¶ 302.5	빈곤의 원인에 대한 비난 삭제	64
1006	¶ 302.7	인간의 성 정체성과 결혼	65
1020	¶ 302.7	기독교적 혼인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66
1467	¶ 302.7	거룩한 결혼 축하	67
1007	¶ 302.8	부정한 형태의 성적 행동 및 성 정체성 표현	68
1021	¶ 302.8	기독교적 혼인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69
1127	¶ 302.8	성 및 성별 정체성	70
1468	¶ 302.8	거룩한 결혼 축하	71
1457	¶ 302.9	성과 젠더에 있어서의 성경적 인간론과 성화	72
1466	Resolution	글로벌 감리교회의 인증 신학	73

우리의 증언 갱신

청원자: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조직: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올네이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우리 중 몇몇이 교회에서 이 성명서를 설교한 후, 일부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회적 증언 성명서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원칙을 성경의 맥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경을 제안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302.1, ¶ 302.2, ¶ 302.5, ¶ 302.7, ¶ 302.8, ¶ 302.9, ¶ 302.11, 및 ¶ 302.12, 및 대체 ¶ 302.3, ¶ 302.4, ¶ 302.6, ¶ 302.10, ¶ 302.13, 및 ¶ 302.14를 수정합니다

1. 우리는 삶의 지위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존엄성, 정의,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인종 차별, 성차별, 그리고 누구에게든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표현을 죄로 규탄합니다.

3 (창세기 1-2, 신명기 16:19-20, 누가복음 11:42, 19:9, 골로새서 3:11)

4 (창세기 1:26-31; 창세기 2:4-7; 사무엘상 16:7 (16:1-13); 스가랴 7:8-10; 마태복음 25:31-40; 누가복음 18:15-17; 골로새서 3:11 (3:8-11); 야고보서 2:1-4, 12-13).

2.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과,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짐을 믿습니다. 또한 태아, 장애인 중병을 앓는 이들, 노인을 포함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9 (창세기 2:7, 레위기 19:32, 예레미야 1:5, 누가복음 1:41-44)

10 (창세기 2:7; 레위기 19:32; 사무엘상 2:6 (2:6-8a); 시편 39:4-5; 잠언 22:22-23; 예레미야 1:5; 누가복음 1:41-44; 야고보서 1:26-27 (1:22-2:26); 요한계시록 22:12-13).

3.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관행에 저항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과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보살핌, 조언 또는 자원 없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할 것을 요청한다(출 22:22-23, 사 139:13-16, 야고보서 1:27).

16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또는 자녀의 생사가 위협받는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충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의 관행에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충분한 돌봄, 상담, 자원이 없는 임신(의도된 임신 및 그렇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기도로 고민할 것을 촉구합니다.

20 (창세기 35:16-20; 출애굽기 1:15-18; 출애굽기 3:18-22; 출애굽기 21:22-23; 시편 139:13-16; 예레미야 1:4-10; 아모스 6:1-7; 마태복음 2:13-18; 마태복음 5:43-48; 누가복음 1:26-38; 고린도전서 9:7-10; 데살로니가후서 3:6-13; 디모데전서 4:11-14).

23 4.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한 힘든 노동이나 착취가 없는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24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25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자유롭게 따르도록 허락되기를 기도한다. 특히 진리와 지식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과
26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27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상호 증언으로서 신앙과 과학 간의 대화를 장려한다 (신명기
28 5:12-14, 눅 10:7, 고린도전서 10:31, 디모데전서 5:18).

29 우리는 일이 거룩한 행위임을 믿으며, 모든 이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타인에 의한 과도한 노동이나 착취 없이 안전한
30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행위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31 됩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32 소명을 자유롭게 따르도록 허락되기를 기도한다. 특히 진리와 지식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과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33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34 사실을 인정하며, 신앙과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상호 증언이 되도록 대화를 장려합니다.

35 (신명기 5:12-15; 열왕기상 12:3-16; 마태복음 20:1-16; 누가복음 15:25-32; 디모데전서 5:18).

36 5.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나누고, 개인별로 국가별로 엄청난 부와 자원의 불균형을
37 초래하여 빈곤을 야기하는 조건과 정책을 완화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38 전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알리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39 (레위기 19:9-10, 마태복음 25:37-40, 누가복음 6:20-25, 야고보서 2:1-5)

40 (레위기 19:9-10; 신명기 14:28-29; 느헤미야 5:1-19; 시편 24:1-2; 이사야 61:1-9; 마태복음 25:37-40; 누가복음
41 6:20-26; 사도행전 6:1-7; 고린도후서 8:1-9; 야고보서 2:1-7).

42 6. 우리는 모두가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고, 그 자원을 관리하고, 풍요로움을 나누며, 모두에게 충분할 수 있도록 책임감
43 있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창세기 2:15, 레위기 26:34-35, 시편 24:1).

44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받았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며 그 자원을 맡은 청지기로서 풍요를 나누며,
45 모두를 위해 충분함이 보장되도록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해야 함을 믿습니다.

46 (창세기 1:26-31a; 창세기 2:4b-17; 레위기 26:34-35; 시편 24:1; 마태복음 7:24-27; 로마서 8:18-25; 고린도전서
47 9:1-18; 요한계시록 21:1-7).

48 7.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이고 영적 언약 안에서 행사될 때 하나님이
49 주신 선물임을 확인합니다.

50 (창세기 1:28; 창세기 2:18-25; 출애굽기 20:14; 아가 ~ 8:3-7; 마태복음 19:3-9; 에베소서 5:22-33; 고린도전서 7:1-9).

51 8. 우리는 외설물, 일부다처제, 난잡한 성행위 등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 학대, 거부,
52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성적 행동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53 성과 성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인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환영하며, 성적 삶에서

54 상처받은 이들에게 피난처와 영접, 치유의 안전한 장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55 (창세기 1:27, 창세기 2:24, 고린도전서 6:9-20)

56 (창세기 1:27, 2:24; 레위기 18:1-30; 이사야 11:6-9; 마태복음 19:3-9; 고린도전서 5:9-13; 고린도전서 6:7-20;

57 고린도전서 13:4-7).

58 9. 우리는 출생이든 입양이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선물임을 믿으며, 인류 가운데 가장 어린 자들을
59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특히 강제 아동노동, 비자발적 징집, 인신매매, 기타 세상에서 행해지는
60 관행과 같은 학대로부터 지켜야 함을 천명합니다.

61 우리는 자녀가 출생 또는 입양, 또는 돌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령에
62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특히 강제 아동노동, 비자발적 징집, 인신매매 및
63 세상의 그 밖의 관행에 맞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습니다.

64 (출애굽기 21:16; 신명기 4:9-10; 시편 127:1 3-5; 마태복음 2:14-23; 마태복음 7:9-11; 마태복음 18:5-10; 디모데전서
65 3:8-13; 디모데전서 5:3-16).

66 10.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절제와 거룩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함과 친절을, 삶의
67 모든 문제에서 은혜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로마서 12:9-21, 갈라디아서 5:22-23).

68 우리는 하나님의 추종자들이 성령 안에서의 공동의 삶을 통하여 개인적 · 사회적 성화를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다.
69 이러한 삶은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사랑, 기쁨, 평화, 오래참음,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통해
70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든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모범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습니

71 (레위기 19:2; 잠언 25:28; 이사야 1:17; 미가 6:6-8; 마태복음 5:16; 로마서 12:1-21; 갈라디아서 5:16-25; 베드로전서
72 1:15-16).

73 11. 우리는 사회에서 정의와 법의 지배,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권리, 국가
74 사이와 개인 사이의 평화 추구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넘쳐나는 쓰라림을 줄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75 헌신합니다.

76 (창세기 12:1-3, 이사야 11:1-9, 고린도후서 13:11, 에베소서 2:19-10)

77 (창세기 12:1-3; 창세기 31:45-55; 창세기 47:1-12; 신명기 26:1-11; 이사야 11:1-9; 예레미야 34:12-22; 다니엘
78 4:28-37; 요한복음 1:9-13; 요한복음 17:13-19; 로마서 13:1-10; 고린도후서 13:11).

79 12. 우리는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는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황금률의 실천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비즈니스 관계를
80 효과적으로 인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마 7:12, 롬 12:1-2)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타인을 위한 마음을 계발하기 위해
81 힘씁니다.

82 (마태복음 7:12, 로마서 12:1-2)

83 (열왕기하 6:8-23; 잠언 25:21-22; 마태복음 7:9-14; 누가복음 6:27-36; 로마서 12:1-20).

84 13. 우리는 각 사람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적 신앙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더 큰
85 사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성별, 경제적 지위,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
86 연령,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누구에게든 가해질 수 있는 차별과 박해를 비난합니다.

87 우리는 각 사람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적 신앙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더 큰 사회
88 내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성별, 경제적 지위,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
89 연령, 언어, 국가 소속, 과거 상처와 보상, 교육, 전통, 종교적 및 정치적 견해로 인해 누구에게든 가해질 수 있는 차별과
90 박해를 비난합니다.

91 (이사야 1:17, 마태복음 5:44, 로마서 8:35)

92 (룻기 4:2-12; 이사야 1:17; 예레미야 29:4-9; 마태복음 5:43-48; 마태복음 25:31-46; 마가복음 9:14-29; 마가복음
93 10:13-16; 요한복음 15:18-25; 사도행전 9:1-6; 로마서 8:31-37; 갈라디아서 3:23-29; 디모데전서 2:1-8; 야고보서 2:1-7;
94 베드로전서 2:18-25; 베드로전서 4:12-19).

95 14. 우리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그 때, 하나님의 정의의 최종적 승리를 믿으며, 그 목적을 위해
96 그리스도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받아들입니다.

97 우리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승리하게 됨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빛과
98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목적을 위해 일하라는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99 (마태복음 5:13-16, 요한계시록 11:15-17, 요한계시록 21-22)

100 (출애굽기 15:1-21; 출애굽기 19:3-6; 마태복음 5:13-16; 고린도전서 5:1-5; 요한계시록 11:15-19; 요한계시록 21-22).

교리와. 장정 302.3항을 수정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자: Shreve Community

조직: US: Allegheny West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 301.2는 “모든 신분과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완전한 정의”를 요구하는 사회적 신조로 살아온 우리의 유산을 일깨워 줍니다. ¶ 302.1은 “모든 사람은 삶의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존엄과 정의, 그리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 우리는 [...]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부당한 차별을 하는 다른 모든 표현들을 죄라고 규탄합니다.” 따라서 태중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옹호하는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존엄성과 정의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개정된 문구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주장을 재확인하며,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직:

슈리브 지역 사회 교회 (미국: 오하이오)

본문:

¶ 302.3 우리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발달 정도나 능력과 상관없이 신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엄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낙태 행위를 거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에 대한 모독으로서 낙태 행위를 규탄합니다. 단, 어머니와 아이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는 예외로 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탄합니다. 다만,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생명과 생명 간의 비극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배려,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치 않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과 어머니, 아버지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속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의도치 않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에 직면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배려와 상담, 그리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세기 9:5-7, 출애굽기 22:22-23, 시편 139:13-16, 야고보서 1:27).

태아와 산모의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문구 보완

청원자: 셸리 반 안트워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Avon Bartlett Chapel/바틀렛 채플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미국 생명옹호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낙태는 의료적으로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산모와 분리되어야 할 경우, 조기 분만을 통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의도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4.3을 수정합니다

- 1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관행에
- 2 저항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낙태 행위에 저항하도록 촉구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 3 안녕이 위태로운 생명과 생명 사이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에는, 조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기는 별도의 환자로
- 4 배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주님의
- 5 제자로서 적절한 배려, 염려, 걱정,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 6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22:22-23; 시편 139:13-16; 야고보서 1:27).

낙태에 대해 명확하게 생명 존중 입장을 채택하십시오

청원자: John Lomperis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산모의 “웰빙”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낙태를 용인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낙태법 판례에서 실제로 아무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하게 만든 특정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버려야 할 UMC의 모호성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감리교회에 속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전 교단의 사회적 원칙에 생명 존중 임신 센터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점점 더 강압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입장에서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본문:

본 청원은 ¶ 302.3을 수정합니다

- 1 3.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 2 관행에 저항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오직 생명과 생명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비극적인 경우를
- 3 제외하고는 낙태의 행위를 거부하도록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 4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적절한 배려,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치 않은 임신에 직면한
- 5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들이 여성들이 자비롭게
- 6 낙태의 대안을 찾도록 돕는 생명 존중 자료 센터와 생명 존중 임신 클리닉을 지원할 것을 확인하고 격려합니다 (출애굽기
- 7 22:22-23, 시편 139:13-16, 누가복음 1:41-44, 야고보서 1:27).

장애인의 신성한 가치를 확인함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버지니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 302.2는 “믿는 자의 의무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이들, 즉 태아와 장애인을 포함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02.3은 ¶ 302.2를 더욱 설명하며, 피임이나 성별 선택을 위한 낙태의 사용도 포함합니다. 전 세계적인 자료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검사와 체계적인 임신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302.3을 “장애 예방”을 위한 낙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도록 수정하는 것은 태아와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표현은 또한 장애를 가진 태아를 포함하여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사회적 증언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302.3을 수정합니다

3.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 관행에 저항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 생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적절한 배려, 염려, 걱정,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22:22-23; 시편 139:13-16; 야고보서 1:27). 우리는
- 낙태를 피임, 장애 예방, 또는 능력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의 제자인 모든
-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배려,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 마음으로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애굽기 22:22-23; 시편 139:13-16; 야고보서 1:27).

우생학을 피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함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우생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념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으며, 태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죽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제거하는 등의 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302.3을 수정합니다

- 1 3.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 2 관행에 저항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또는 우생학적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 3 없으며, 생명의 주님의 제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배려, 상담 또는 자원이 없는 예상치 못한 임신 상황에 처한
- 4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 성별 선택,
- 5 그리고 모든 형태의 우생학적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 6 적절한 배려와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치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 7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 22:22-23, 시 139:13-16; 야고보서 1:27).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항상 반대해야 합니다

청원자: Michael Cooper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게일로드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1.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운, 생명과 생명이 비극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합니다. 2. 우리 장정의 문구에 따르면 모든 낙태는 "비극적인" 상황이나 산모의 "안녕"이 위태로운 경우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태아의 기형으로 인해 출생 후 한 달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부터, 학대하는 파트너가 있는 산모, 궁핍한 산모, 심지어 계획에 없던 임신이 산모의 학업이나 경력에 지장을 주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이것이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100% 생명 옹호 교회로 시작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302.3을 수정합니다**

- 1 3.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 2 관행에 저항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우리는 낙태를 산아 제한이나 성 감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의
- 3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적절한 돌봄,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치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 4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낙태는 하나님께 신성한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 5 것이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반대하는 항상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 6 돌봄,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치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줄
- 7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가 과거에 낙태를 선택했거나 과거의 낙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 8 자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 22:22-23; 시 139:13-16; 눅 1:39-44; 약 1:27).

조력자살 반대

청원자: David Watson

조직: Lexington St Luke (US: Allegheny West)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MAID(PAD) 및 PAS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이제 이 관행은 말기 환자가 아닌, 자신의 삶이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그렇게 판단된 환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질병, 장애 또는 노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302.4를 추가하고 이후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신설 제302.4 단락 추가
- 2 우리가 낙태 행위에 반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든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시행되는 안락사를 거부한다. 또한
- 3 우리는 MAID, 즉 의료인이 도와 시행하는 죽음(PAD) 및 그 하위 개념인 의료인(의사) 조력 자살(PAS)이라 불리는 관행을
- 4 통한 인간 생명 의도적 종료를 거부한다. 이는 회복의 희망이 없고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말기 환자에게서 생명
- 5 유지 장치 제거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자연사로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혹은
- 6 자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종료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태아 - 인식, 교육, 그리고 결의 사항

청원자: Fulshear Union Chappel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세계보건조직(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300만 건의 인공 임신중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 45%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이는 태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임신중절이 안전하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WHO 임신중절 8-Sept 2025).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수치를 알지 못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보아도 이것은 인류의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임신중절 위기에 대한 인식과 교육은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삽입 조항은 ¶ 302.3 이후에 추가되는 것으로, 이는 믿는 이들에게 배우고, 목소리를 내며, 목소리가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도록 행동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302를 수정하여 새 ¶ 302.4를 추가하고 이후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새로운 ¶ 302.4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우리는 매년 수천만의 태아가 임신중절로 인해 생명을 잃는 영적이며 도덕적 위기 속에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 3 임신중절 위기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높이고, 믿는 이들이 논의하고, 돕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도록
- 4 영감을 줌으로써, 목소리가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며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잠언 24:10-12, 잠언 31:8, 에베소서
- 5 2:10)

근로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임금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협상하도록 언급하는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조합 및 관련 제도와 관행만을 지원하는 편향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임금과 복지제도에 대해 고용주와 논의할 때 스스로 혹은 집단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반적인 방침을 촉진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302.4를 수정합니다

-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한 힘든 노동이나 착취가 없는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임금과
- 2 복지제도를 고용주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 3 자유롭게 따르도록 허락되기를 기도한다. 특히 진리와 지식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과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다른
- 4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 5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의 상호 증인으로서 신앙과 과학 사이의 대화를 장려합니다(신명기 5:12-14;
- 6 누가복음 10:7; 고린도전서 10:31; 디모데전서 5:18).
- 7

빈곤의 원인에 대한 비난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우리는 이곳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부적으로 불화를 조장하지 않도록 언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표현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며 특정 이념적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는 빈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며, 빈곤의 원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302.5를 수정합니다

- 1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분의 관심을 나누고, 개인과 국가들 사이에서 부와 자원의 막대한 격차를 낳아
2 빈곤을 야기한 조건들과 정책들을 완화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3 그분의 관심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국가들에서 조건과 정책들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도록 우리를
4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모든 하나님의
5 백성의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시키도록 부르받았습니다 (레위기 19:9-10; 마태복음 25:37-40; 누가복음 6:20-25;
6 야고보서 2:1-5)."

인간의 성 정체성과 결혼

청원자: Springfield Oaks

조직: US: South Georgia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우리는 결혼이 무엇인지, 누가 결혼할 수 있는지를 재정의하고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더 정밀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외의 모든 형태의 인간의 성적 지향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조직:

미국: 사우스 조지아

본문:

7. 우리는 결혼과 성적 친밀함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사랑과 단 하나의 결혼 속에서 법적이고 영적인 언약 안에서 그들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실행될 때 고백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형태의 인간 성은 무오한 성경과 성경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웨슬리안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출애굽기 20:14 마태복음 19:3-9 에베소서 5:22-33).

기독교적 혼인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청원자: Jonathan Le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많은 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글로벌 감리교회를 설립하거나 합류했는데, 그 이유는 연합 감리교회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 언약이며 이 언약 밖의 성적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혼인에 대한 이 정의를 확인하지만, 동성애 행위가—모든 성경적 혼인 밖의 성행위와 마찬가지로—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죄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 청원은 혼인, 죄, 회개,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징계 기준을 안내해야 함을 확인하는 교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조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미국: 상부 중서부)

본문:

7.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과 합법적이고 영적인 언약 안에서 행사될 때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합니다(출 20:14; 마 19:3-9; 엡 5:22-33).

- 1 7. 우리는 혼인이 하나님께서 창조 중에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자 한
- 2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상호 사랑과 신실함 그리고 지원의 평생 언약임을 확인합니다(창 1:27-28; 2:18-24; 마 19:4-6; 엡
- 3 5:31-32). 성적 행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 언약 안에만 속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다른 형태의 성은 성경과
- 4 전통적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결혼 축하

청원자: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조직: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제302.7항은 인간의 성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 외의 인간의 성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단순하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도움이 됩니다. 302.7항은 간결하고 아름답게 기술되어 있지만, 인간의 성과 별개로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현재의 형식에서는 모호함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저는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에서 결혼에 대한 5개의 다른 성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체적인 정의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302.7을 수정합니다

- 1 7.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이 넘치는 일부일처 결혼이라는 법적이고 영적인 언약 안에서 행사될
- 2 때 확인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법적이고 영적인 언약이라고
- 3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이 사랑이 넘치는 일부일처 결혼 안에서 행사될 때 확인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 4 (출애굽기 20:14, 마태복음 19:3-9, 에베소서 5:22-33).

부정한 형태의 성적 행동 및 성 정체성 표현

청원자: Springfield Oaks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US: South Georgia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와 성별 정체성의 표현을 마치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립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성적 행위와 성별 정체성의 표현에 대한 목록을 ¶ 302.8에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조직:

미국: 사우스 조지아

본문:

8.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 및 성별 정체성의 표현—곧 결혼 밖에서의 성적 친밀함, 간음,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소아성애, 포르노그래피, 일부다처제, 그리고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깊이 슬퍼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을 착취·학대·대상화·비하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무오한 성경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성 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환영하며, 성생활에서 깨어짐을 경험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 환대, 치유의 안전한 장소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 한다.

¹ (창세기 1:27, 창세기 2:24 레위기 18:22, 레위기 20:13, 로마서 1:26-28, 고린도전서 6:9-20 디모데전서 1:8-11, 유다서 1:7)

기독교적 혼인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청원자: Jonathan Le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많은 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글로벌 감리교회를 설립하거나 합류했는데, 그 이유는 연합 감리교회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 언약이며 이 언약 밖의 성적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혼인에 대한 이 정의를 확인하지만, 동성애 행위가—모든 성경적 혼인 밖의 성행위와 마찬가지로—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죄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 청원은 혼인, 죄, 회개,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징계 기준을 안내해야 함을 확인하는 교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조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미국: 상부 중서부)

본문:

8. 우리는 외설물, 일부다처제, 난잡한 성행위 등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 학대, 대상화,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성적 행위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성과 성별에 대한 관점을 단언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기를 환영하며, 성생활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난처, 환대와 치유의 안전한 장소가 되기 위한 사명을 다 합니다 (창세기 1:27, 창세기 2:24, 고린도전서 6:9-20).

- 1 **8. 성경은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 학대, 대상화,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 2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LGBTQI, 외설물, 일부다처제, 난잡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모든 성적 행위에**
- 3 **대하여 일관성 있게 가르칩니다. (레위기 18:22; 로마서 1:26-27; 고린도전서 6:9-11; 디모데전서 1:9-10). 그러나 복음은**
- 4 **모든 죄인들이,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에 의해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며**
- 5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6:11). 글로벌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 6 **변화시키는 은혜를 모두에게 제공하고, 누구나 회개, 믿음, 마음과 생활의 거룩함으로 초청합니다.**

성 및 성별 정체성

청원자: David Watson

조직: Lexington St Luke (US: Allegheny West)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식별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죄로 규정합니다. 일부 도덕적 문제들은 자연 질서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은 창조질서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구 문화에서 발생한 젠더 정체성의 위기를 고려할 때, 두 개의 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일치성을 우리가 인정하며, 인터섹스인의 조건이 이러한 규범적 범주들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302.8 전체를 대체합니다

- 1 우리는 외설물, 일부다처제, 난잡한 성행위 등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 학대, 거부,
- 2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성적 행동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 3 성과 성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아가 경험하도록 환영하며, 성생활에서
- 4 깨어짐을 입은 아들에게 피난처와 영접, 치유의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헌신합니다 (창세기 1:27, 2:24; 고린도전서
- 5 6:9-20).
- 6 우리는 타인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려는 모든 성적 행위를 죄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 7 포르노, 일부다처제, 문란한 성행위, 성 노예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가해자와
- 8 피해자 모두를 편화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각 남성과 여성에게 의미 있는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인간으로서 총만함과
- 9 번영을 누리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것을 훼손합니다. 성적 행위의 올바른 표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결혼(¶
- 10 302.7)입니다.
- 11 따라서 우리는 두 성(sex)이 있음을 단언합니다. 우리는 드물게 나타나는 인터섹스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호함을
- 12 인정하지만, 그들의 상태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규범적 범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란한
- 13 상태이며, 모든 질병이나 장애와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도 그 사람은 혼란한 상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 14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후 2차 성징을 외과적 또는 약물적으로
- 15 변경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신체적 아동 학대로 간주되어야
- 16 합니다
- 17 성(sex)'과 '젠더(gender)'와 같은 용어들을 둘러싼 논쟁은, 남성과 여성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격의 범주라는
- 18 사실을 흐리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 성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단언하면서, 성정체성 장애나
- 19 동성애적 성향을 포함하여 모든 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환영하며, 성적 삶에서 상처를 경험한 모든
- 20 이에게 피난처와 영접, 치유의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헌신합니다(창 1:27, 2:24; 고전 6:9-20)."

거룩한 결혼 축하

청원자: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조직: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302.8항은 각 선언적 진술과 함께 나오는 현재의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도입부에서 벗어나는 불필요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슬픔을 느낀다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수정된 302.8항은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에는 없는 성적 행위에 관한 제1 고린도전서 6:9-20의 핵심적인 문화적 사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찬양하며, 세상과 명확하고 사랑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302.8을 수정합니다

- 1 8. 우리는 포르노, 일부다처제, 난잡함 등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을 착취, 학대, 대상화, 비하하거나
- 2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성적 행동의 표현에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동성애,
- 3 음란물, 일부다처제, 난잡함을 포함하여,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을 착취, 학대, 대상화 또는
- 4 비하하려는 모든 성적 행위의 표현이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 5 믿습니다. 성과 성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구속적 은혜를 경험하도록
- 6 환영하며, 자신의 성생활에서 깨어짐을 경험했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피난처와 영접과 치유의 안전한 장소가 되기
- 7 위해 헌신합니다 (창세기 1:27, 창세기 2:24, 제1 고린도전서 6:9-20).

성과 젠더에 있어서의 성경적 인간론과 성화

청원자: 제프리 릭먼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Yazoo City (US: Mississippi-West Tennessee)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본 청원은 성과 젠더에 관한 교리를 하나님의 창조 설계와 구속, 성화시키는 은혜를 존중하는 성경적 인간론에 근거함으로써 글로벌 감리교회의 증거를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로운 하위 단락을 추가하여 ¶ 302.9를 수정합니다

- 1 ¶ 302.9 — 성과 젠더에 있어서의 성경적 인간론과 성화
- 2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타락한 욕망, 성향 또는 유혹으로
- 3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성화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유혹이나 무질서한 욕망을 개인의 정체성과
- 4 결부시키는 어떠한 신학적 또는 목회적 틀도 거부합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한 변화를 선포하며, 성령께서는 성과 젠더를
- 5 포함한 삶의 모든 차원에서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청원 1466

글로벌 감리교회의 인종 신학

청원자: 제프리 릭먼

조직: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회적 증언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의사 결정 기구 내에 인종에 관하여 분명히 다른 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종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단적 접근 방식을 정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인종적 긴장으로 인해 제기되는 질문들을 둘러싼 미래의 결정과 가정에 근거가 될 신학적 틀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결의안입니다

- 1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그러한바,
- 2 교회의 사명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바,
- 3 인간이 서로를 비인간화하고 악마화할 때 악한 자가 영광을 받는바,
- 4 분리는 불평등을 낳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그 다음에는 증오를 낳는바,
- 5 인종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권세가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유지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위적이고
- 6 무익한 구성물인바,
- 7 주관적인 정체성 지표는 공동체적 현실을 결정하는 정당한 수단이 아닌바,
- 8 경쟁하는 민족 집단들로 구성된 기독교 기관을 조직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쾌하고, 불필요하며, 기록하지 않은 일인바,
- 9 사람들은 구성 집단의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받는바,
- 10 세상에서의 정체성주의의 부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키려 작용하는바,
- 11 민족 집단들 간의 유전적 차이는 개인의 가치나 자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요소가 아닌바,
- 12 인종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다루도록 부름받은 계급, 문화, 국적, 지리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종종
- 13 가리는바,
- 14 교회의 역할은 전 세계의 민족 집단들을 나누는 벽을 허물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의 공통된 정체성으로 연합시키는 것인바,
- 15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적인 척도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바,
- 16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개념으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바,
- 17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된 정체성이 유일하게 중요한 정체성 지표인바,

18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소명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고수하는 것인바,

19 글로벌 감리교회는 집단적으로 세속적인 인종의 틀을 거부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계급, 문화, 국적, 지리가 모든
20 사람의 완전한 포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하지만, 사랑받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성공이나
21 실패를 측정하는 유효하거나 유용한 척도로서 인종 할당제와 계량 지표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속적인 차이, 특히
22 인종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부를 서로 분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종에 대한 세속적이고
23 재분배적인 신마르크스주의적 이해를 거부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의 차별이 실행되어야
24 한다고 가르치는 반인종주의의 틀을 거부합니다.

25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결의한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교회에 들어와 섬기는 모든 사람이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고 자기
26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조건 하에, 교단 내 모든 수준의 사역에 모든 민족 집단을 보편적으로 포용하는 성경적
27 생활 방식을 지지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다른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들보다 우리 자신의 내집단을 계속해서
28 선호하는 단체가 되지 않기로 결의해야 합니다. 타인을 등용하는 데 있어 실력이나 은사보다 친분 관계에 반복적으로
29 의존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부는 생활 방식으로서 습관적으로 다른 민족, 계급, 문화, 국적의
30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자신의 세속적인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31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터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2 우리를 분열시키는 세속적 구성물에 힘을 실어주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언젠가 주위를 둘러보며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33 단체들은 이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취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34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연령, 민족, 국가의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개체 교회

¶ ¶ 401-411, 422-448, 450-456

번호	¶	제목	페이지
1359	¶ 401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비전 성명서 언어 명료화	79
1361	¶ 40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중복되는 신학적 성명서 제거	80
1363	¶ 40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방법론적 및 설명적 언어 제거	81
1364	¶ 401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비지시적 언어 제거	82
1365	¶ 402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서술적 언어 제거	83
1373	¶ 402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글로벌 교회 정체성 명확화	84
1376	¶ 402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확성: 이상적이고 설명적인 언어 제거	85
1378	¶ 408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지역 교회 정의의 간소화	87
1138	¶ 409	모든 교회를 위한 장로목사	88
1199	¶ 409	사목 책임의 정의 명확화	92
1380	¶ 409.1-2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목회 책임의 구조 명료화	93
1299	¶ 409.3	담임 사역의 집행이 아닌, 촉진의 역할에 대한 명확화	94
1389	¶ 409.3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평신도 임명 및 계발에 대한 명확화	95
1098	¶ 411.1	세례교인 정의의 명확화	96
1139	¶ 411.2	고백 멤버십 정의의 명확화	97
1031	¶ 411.4	회원 자격 명확화	98
1410	¶ 422	언약적 연대: 평신도	99
1401	¶ 422.1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확성: 회원 참여 기대 사항의 간소화	103
1400	¶ 422.2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목회적 제자도 책임의 단순화	104
1399	¶ 422.3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회원 책임감과 복원 명확화	105
1398	¶ 422.4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비활성 회원 조항 간소화	106
1397	¶ 422.5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연례 멤버십 갱신 요구 사항 폐지	107
1142	¶ 423	멤버십 전송 과정 명확화	108
1396	¶ 423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타 교단으로부터의 영접 간소화	109
1395	¶ 424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협동 회원 및 준 회원 자격 단순화	110
1145	¶ 425	구성교인 명부의 정의	111
1394	¶ 425	글로벌 통합, 지역적 유연성: 규정적인 구성교인 명부 요구 사항 제거	112
1146	¶ 426	비지역 환경을 통한 교회 가입 방법에 대한 명확화	113

번호	¶	제목	페이지
1393	¶ 426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비지역 교회 환경에서의 멤버십 간소화	114
1392	¶ 427	글로벌 통합과 지역적 유연성: 회중이 없는 환경에서의 교인 자격 부여 간소화	115
1147	¶ 428	교적부, 교회 기록 및 기타 재산의 위치에 대한 명확화	116
1391	¶ 428	글로벌 통합, 지역적 명확성: 폐쇄된 지역 교회로부터의 교인 이적 간소화	117
1388	¶ 429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불필요한 명부 목록 제거	118
1390	¶ 429.1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멤버십 기록 요구 사항 간소화	119
1387	¶ 429.6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공유 교회의 보고 간소화	120
1386	¶ 430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확성: 멤버십 보고 간소화	121
1149	¶ 431	대학생 신고 의무를 지역 교회 또는 학원 선교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대체	122
1385	¶ 43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강제할 수 없는 보고 조항 삭제	123
1150	¶ 432	이동한 회원을 위한 절차 명확화	124
1384	¶ 432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멤버십 이전 및 목회적 감독의 단순화	125
1383	¶ 43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회 간 교인 이적 절차 간소화	126
1144	¶ 433 / ¶ 423	글로벌 감리교회 멤버십 전송을 위한 새로운 과정	127
1151	¶ 434	다른 화폐 단위로 전송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다	128
1302	¶ 436.6	이 사안에서의 안전 확보	129
1158	¶ 437.2	교회 위원회의 멤버십 명확화	130
1382	¶ 437.2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료성: 교회 리더십 자격 명확화	131
1159	¶ 437.4	모든 교회 위원회의 정족수를 정의하다	132
1032	¶ 438.2	잘못된 참조 제거	133
1160	¶ 438.2	구역회 멤버십에서 디아코날 목회자 및 시니어 목회자를 제거합니다.	134
1161	¶ 438.5	어떤 목사가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함	135
1411	¶ 438.5	구역회 권한과 전교인 투표	136
1162	¶ 438.7	전자 구역회를 허락하는 새로운 섹션	137
1163	¶ 438.8	구역회의 소집 권한 명확화	138
1164	¶ 438.9	교회 총회에 관한 규정 명확화	139
1416	¶ 438.9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 438.9항 삭제	140
1200	¶ 439.2	구역회의 멤버십과 의무 명확화	141
1201	¶ 439.4	구역회 비서 선출	142
1379	¶ 439.4	글로벌 통합과 지역의 명확성: 구역회 기록 관리 간소화	143
1203	¶ 439.5	구역회의 교회 위원회 멤버십에 관한 권한 명확화	144
1204	¶ 439.7	임면 후보자 심사에 있어 구역회의 책임 명확화	145
1377	¶ 439.7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후보자 추천 과정 명료화	146
1205	¶ 439.10	구역회에서 신고를 명확히 함	147
1206	¶ 439.11	구역회의 목회자 보상 결정 권한 명확화	148
1207	¶ 439.12	구역회가 연대 기금에 대해 설명할 의무 명확화	149

번호	¶	제목	페이지
1165	¶ 440	지역 교회 지도자의 기간 명확화	150
1374	¶ 440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료성: 교회 지도자 선거의 단순화	151
1166	¶ 441	지역 교회 지도자의 기간 명확화	152
1167	¶ 442	지역 교회 지도자의 의무 명확화	153
1168	¶ 442	재무와 재정 비서의 필요성 명확화	156
1124	¶ 442.1	평신도 지도자의 공인평신도 사역자 요건	157
1296	¶ 442.1	지역 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임기 제한 설정	158
1372	¶ 442.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 단순화	159
1303	¶ 442.2	연회 평신도 대표에 대한 멤버십 기간 요건 삭제	160
1371	¶ 442.2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료성: 연회 대표 파송 간소화	161
1298	¶ 442.3	교회 협의회 의장의 기간 제한 설정	162
1079	¶ 442.4	대체행정 체제에 있어서의 구성원 기준 명확화	163
1169	¶ 443.1	교회 협의회 역할 명확화	164
1370	¶ 443.2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프로그램 사역 설명 제거	165
1170	¶ 443.3	교회 협의회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다	166
1369	¶ 443.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회 협의회 회의 간소화	167
1171	¶ 443.4	주택 및 복지제도 검토 명확화	170
1172	¶ 443.4	주택 및 복지제도 검토 명확화	168
1368	¶ 443.4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교회 협의회 책임의 단순화	169
1367	¶ 443.5; 443.6	글로벌의 단결, 지역의 유연성: 위원회 멤버십 및 정족수 간소화	171
1173	¶ 444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의 멤버십 및 목적 명확화	172
1366	¶ 444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료성: 리더십 개발 구조 단순화	173
1080	¶ 445	목사 교체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투표를 요구합니다.	174
1209	¶ 445.1	PPRC 멤버십 명확화	175
1362	¶ 445.1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목회 협력 위원회 구조 단순화	176
1210	¶ 445.5	PPRC 회의 명확화	177
1360	¶ 445.6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유연성: 위원회 회의 요구 사항 간소화	178
1211	¶ 445.8	PPRC의 의무 명확화	179
1246	¶ 445.8	목회 협력 위원회 의무 명확화	182
1301	¶ 445.8	SPRC/감리사 협력을 통한 지역 교회 담임목사 평가	184
1358	¶ 446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구조 간소화	185
1435	¶ 446	비교인을 허용하도록 재단 이사회 구성원 자격 개정	186
1212	¶ 446.1	재단 이사회의 멤버십 및 목적	187
1357	¶ 446.1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 선거 간소화	189
1356	¶ 446.2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명료성: 재단 이사 공석 및 제거 단순화	190
1213	¶ 446.3	재단 이사회의 조직 명확화	191

번호	¶	제목	페이지
1355	¶ 446.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조직의 단순화	192
1214	¶ 446.4	재단 이사회 회의 및 책임 명확화	193
1354	¶ 446.4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회의의 간소화	196
1353	¶ 446.5; 446.6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단 이사회회의 권한과 책임 단순화	197
1174	¶ 447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198
1352	¶ 447.1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정위원회 구조의 단순화	201
1351	¶ 447.2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정 스튜어드십 책임 단순화	202
1350	¶ 447.3	글로벌 통일성, 지역 명확성: 예산 및 재정 감독 단순화	203
1349	¶ 447.6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정 정책 요구 사항 간소화	204
1348	¶ 447.7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명확성: 재정 감사 요건 간소화	205
1347	¶ 447.11	글로벌 연합, 개체 교회의 유연성: 보고 및 위원회 구성 간소화	206
1176	¶ 450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요구 사항 명확화	207
1178	¶ 452	지역 교회 폐쇄	208
1345	¶ 452.1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협동 본당 구조 단순화	209
1179	¶ 452.2	협동 본당 창설 명확화	210
1344	¶ 453.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에큐메니컬 회중 정의 단순화	211
1342	¶ 453.2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에큐메니컬 회중을 위한 언약 요구 사항 단순화	212
1341	¶ 453.3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연대 책임의 단순화	213
1180	¶ 455	교회의 신앙적 충실성 보장 과정 명확화	214
1304	¶ 455.2	감독 참여에 관한 유연성	216
1099	¶ 456	연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개체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과정 명확화	217
1181	¶ 456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절차 명확화	218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비전 성명서 언어 명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1을 수정합니다

- 1 비전 선언문: 글로벌 감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담대하게 증거할 때
- 2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번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하는 것을 꿈꿉니다.
- 3 비전 성명서: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적 거룩함 안에서 살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예수
- 4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중복되는 신학적 성명서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1 삭제하여 다음 내용을 수정합니다

- 1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가톨릭적이며(보편적), 사도적이다.
- 2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명의 확장이다. 어떤 연령이나 상태에 있든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 3 사람들에게 배푸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방법론적 및 설명적 언어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1에서 다음 문장들을 삭제합니다

- 1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 예배, 설교, 가르침, 성례전, 자비사역, 경건 사역,
- 2 교제를 통해 그 일에 동참한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마태복음
- 3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 4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 5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비지시적 언어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1 삭제하여 다음 내용을 수정합니다

- 초기 감리교인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일으켰으며, 요한
- 웨슬리가 믿었던 신앙의 "위대한 예치금"을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으며 온전한 성화를
- 위해 계속 노력한다.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서술적 언어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2 삭제하여 다음 내용을 수정합니다

- 1 요한 웨슬리는 1739년 6월 11일 일기에서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기며, 그 어느 곳에 있든, 듣고자 하는 모든
- 2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맞고 옳으며, 나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 3 이후로 감리교인들은 우리 교회 사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영국에서
- 4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먼저 온 감리교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 5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우리 사명은 이 풍성한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글로벌 교회 정체성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2를 수정합니다

- 1 우리는 전 세계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구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여러 대륙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전진해 나가도록 힘쓰며,
- 2 우리 신앙 공동체는 계속 그렇게 행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각 부분의 은사와 헌신을
- 3 인정하고, 동등한 목소리와 지도력을 가진 복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는 글로벌 교회이다.
- 4 글로벌 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종사하는 글로벌 교회입니다.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확성: 이상적이고 설명적인 언어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2 삭제하여 다음 내용을 수정합니다

- 1 서로에게서 배우고 문화 전반에 걸쳐 최고의 실행을 공유하며, 우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 2 하심이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려
- 3 하심이라”는 것을 공유합니다 (1 고린도 12장). 글로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상호 사랑, 관심, 나눔, 책임으로
- 4 특징지어 지는 것이다.

거룩한 결혼 축하

청원자: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조직: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은 결혼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성경적 결혼에 대한 기술은 유익하고 명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조항의 결혼에 대한 기술이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의 다른 결혼 관련 언급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3.1을 수정합니다

1 ¶ 503. 사역의 서열

- 2 1. 집사 목사 직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 섬김, 긍휼, 정의의 사역인 집사목사의 사역으로 부름을
- 3 받는다. '집사목사', '여집사', 그리고 '집사직'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공통의 그리스어 뿌리인 '디아코노스' 즉 '종'과 '
- 4 디아코니아' 즉 '봉사'에서 유래합니다. 이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종의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 5 교회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인도한다. 집사목사들은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 6 세우기 위해 세상에서 공동체의 봉사를 구현하고 이끌어야 한다. 지역 교회 안팎에서 집사목사는 다른 사역들 가운데서도
- 7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주례하고, 장례를 집례하며, 병들고 궁핍한 자들을
- 8 돌보고, 세상의 필요를 교회에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사 목사도 ¶ 313에 따라 성찬을 봉헌하거나 성찬을 도울
- 9 수 있습니다. 집사목사는 개체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체교회 안팎의 다양한 직분으로
- 10 봉사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증거하고 봉사할 책임을 유지합니다. 집사목사 안수는 평생직으로,
- 11 이후에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영구 집사목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지역 교회 정의의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8을 대체합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개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조로
- 2 나아가는 전략적 기반이며,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참된
- 3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전파되고 성령이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에
- 4 따라 정식으로 집행되는 구속적 교제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예배의 유지, 신자의 계발, 세상의 구속을 위해
- 5 존재한다. 개체 교회의 기능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 6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일상 생활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개체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 7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훈련과 양육을 제공하며, 다른 지역 교회와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 8 수호하고 생태적으로 책임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에 대한 최소한의
- 9 기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체 교회는 교인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전도, 양육 및 증인 책임과 지역 및 글로벌
- 10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전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개체 교회는 회원이 어디에 살든, 그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선택한
- 11 사람들을 섬길 책임이 있다. 교단 내에 있고 그 규율에 종속되는 그러한 신자들의 신도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 12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보편적 교회의 고유한 부분이다.
- 1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성령이 집례되는 구속의 교제입니다. 각 지역
- 14 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과 규율에 따라 소속 회원과 지역 사회를 위해 사역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장로목사

청원자: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올네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청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상호 사랑, 책임감, 거룩한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언약적 삶에 대한 헌신을 단언합니다. 이 청원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웨슬리안 제자도에 참여하고, 지역 교회와 회의를 강화하며, 언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서번트 리더십 구조에 제출하도록 하는 공동의 기대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목 책임이 신실한 목회적 감독을 받게 하며, 모든 지도자가 최고 수준의 훈련과 사역 탁월성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구조가 아닌 신학적 언약에 대한 웨슬리안적 이해로 우리 자신을 재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정치 구조를 재정렬합니다. 자세한 사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bOiGPVAH58lZk0d6j2au6lmFTkAVuALG1OCECLEIPQ/edit?usp=sharing>

본문:

본 청원은 ¶ 409.1-2를 통합하고 ¶ 409.3을 대체하며 ¶ 437.1, ¶ 437.2, ¶ 443.1, ¶ 443.3, ¶ 443.5, ¶ 501.2, ¶ 603.8 및 ¶ 609.11을 수정합니다

1. 목회 책임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조직되고 따르는 하나 이상의 교회로 구성되며, 구역회가 있고
2. 목사가 봉사하도록 파송된다.
3. 1. 사목 책임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조직되고 그에 속한 하나 이상의 교회(이는 순회 및/또는 협동
4. 본당일 수 있음)로 구성되며, 구역회가 있고, 장로목사가 그 책임을 감독하도록 파송됩니다.
5. 2. 두 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목회 책임은 순회 또는 협력 교구로 지정될 수 있다.
6. 3. 안수 또는 인가를 받은 목사가 목회적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cabinet)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7.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를 배치하여 해당 책임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 평신도는 책임을 맡는 지방 감리사(PF)나 그 직무를
8. 감독하도록 파송된 다른 안수 받은 목사에게 책임을 저야 하며, 책임 맡은 이들은 성찬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9. 임무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평신도는 연회 안수(목회) 위원회의 보살핌을 받아 인증된 사역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10.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평신도는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 2. 임명된 장로목사가 상주 목회자가 아닐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의 권고에 따라 자격과 훈련을 갖춘 평신도를 지정하거나,
12. 본당 목사를 파송하거나, 또는 집사목사를 파송하여 그 책임 내에서 감독 또는 감리사의 사역을 확장하는 목회 사역을
13.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은 그 사목 책임을 감독하도록 파송된 감리사 또는 감독 장로목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14. 해당 감독자는 성찬 사역과 현세적 감독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15. 이러한 ¶ 409의 변경을 통해, 다음 ¶ 437, 443, 501, 603, 609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6. ¶ 437. 조직.
17. 1. 개체교회를 위한 기본 조직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양육, 전도 및 증거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18. 회중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교회에는 구역회 외에도 교회 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집행 기구가 있어야 한다. 구역회는 본
19.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다른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20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다른 책임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체교회를 위한 기본 조직
 21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양육, 전도 및 증거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회중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22 교회는 구역회 외에도, 임명된 장로목사와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교회 협의회 또는 유사한 통치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23 하며, 이 장로목사는 지역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집니다.

24 2. 교회의 집행 기구 또는 임원회 구성원은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받았으며 교회 생활에서 포용의 사명에
 25 헌신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성하며 교회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기독교인이어야
 26 합니다. 여기에는 성인과 동일한 표준에 따라 선택되고 확인된 청소년 및 청년 성인 교인을 포함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27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섬기게 될 개체 교회와의 관계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목사는 교회의 행정
 28 책임자로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 이사회, 임원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의 당연직
 29 위원이다.

30 교회의 집행 기구 또는 임원회 구성원은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받았으며 교회 생활에서 포용의 사명에
 31 헌신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성하며 교회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기독교인이어야
 32 합니다. 여기에는 성인과 동일한 표준에 따라 선택되고 확인된 청소년 및 청년 성인 교인을 포함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3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섬기게 될 개체 교회와의 관계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임명된 장로목사는
 34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 위원회, 임원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
 35 포스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기타 파송된 모든 목회자나 교회에 배정된 평신도 또한,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36 않는 한, 임명된 장로목사의 권한 아래 모든 회의, 위원회, 임원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의 표결권을 가진 당연직
 37 위원이 됩니다.

38 ¶ 443. 교회 임원회 1. 교회 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리회는 개체교회에서 양육, 전도, 증거, 자원을 통해 성경적
 39 거룩함을 전파하고 복음화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직과 현세적 생활에 대한 관리도
 40 규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구상, 계획, 실행하고 매년 평가합니다. 교회 임원회는 구역회의 행정 기관으로
 41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2 교회 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리회는 개체교회에서 양육, 전도, 증거, 자원을 통해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고
 43 복음화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명된 장로목사와 협의하여 조직과 현세적 삶의
 44 관리에 대한 조항도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구상, 계획, 실행하고 매년 평가합니다. 교회 임원회는 구역회의
 45 행정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6 3. 회의

47 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의장 또는 담임목사는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8 위원회는 임명된 장로목사와 정기적으로 회합하여야 합니다. 의장 또는 담임목사는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명된
 49 장로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임명된 장로목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후 임명된
 50 장로목사가 참석한 다음 회의에서 비준되어야 합니다.

51 5. 임원회 회원 - 구역회에서 교회 임원회의 규모를 결정한다. 교회 임원회 회원은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52 임원회의 구성원은 최소 8명 또는 구역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만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는 목회자-교구
 53 협조, 교회의 재정, 교회의 재산 및 자산 관리, 평신도 대표, 연회의 평신도 대표, 임명된 모든 목회자가 포함되며 이에

54 국한되지 않는다.

55 임원회 회원 - 구역회에서 교회 임원회의 규모를 결정한다. 교회 임원회 회원은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56 임원회의 구성원은 최소 8명 또는 구역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만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는 목회자-교구
57 관계 위원회, 교회 재정 위원회, 교회의 재산 및 자산 관리 위원회의 의장, 평신도 지도자, 연회의 평신도 회원(들), 파송된
58 모든 목회자, 그리고 감독이 배정한 평신도 지도자가 반드시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59 ¶ 501. 교회에서 사역.

60 2. 장로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감독과 감리사 직분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는 다양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직분은
61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한다.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62 목사, 교사, 관리자, 기적의 사역자, 치유자, 도우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엡 4:11-13 및 고전 12:28).
63 성령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교회의 분별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신다.

64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한다.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65 전도자, 목사, 교사, 관리자, 기적의 사역자, 치유자, 도우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엡 4:11-13 및 고전
66 12:28). 성령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교회의 분별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신다.
67 교회의 질서를 정리하는 일은 장로목사에게 인수된 직임에 속하는 고유 업무이며, 감독, 감리사, 감독 장로목사 직무를
68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 교회는 임명된 장로목사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69 ¶ 603. 일반 책임. 교회의 총감독으로서 감독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부여된다:

70 8. 총리사 및 연회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각 연회의 목회자 파송을 수정결정합니다. 이는 반드시 ¶ 501에 따라 각 지역
71 교회에 한 명의 장로목사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72 ¶ 609. 감리사의 책임. 감리사는 감독 및 연회 감리사 직분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임명된 지방의 지역사회에서 목회자와
73 교회의 사역을 감독합니다. 지방감리사(PE)는 목회 공백이 발생하거나 목회자가 임명되지 않은 모든 목회 책임의 대리
74 관리자이다. 지방감리사(PE)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

75 11.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목회자 파송의 재조정, 더 큰 교구, 협동 교구, 복수 직원 구성, 새로운 교회개척,
76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등 지방회에서 가능한 최선의 목회자 전략적 배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77 감독, 총리사,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사목 책임의 재편성, 더 큰 교구, 협동 본당, 복수 직원 구성, 새로운 교회개척,
78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에서 목회자의 최상의 전략적 배치를 수립하고자 힘써야 하며, 각 지역
79 교회마다 교회의 질서 유지와 ¶ 409에 따라 성례를 집행하는 장로목사가 파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ደ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사목 책임의 정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의 여러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고 다른 장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협동 본당을 ¶ 452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는 없는 정의되지 않은 "순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 609에서는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평신도를 지칭할 때 "평신도 사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평신도 사역자가 무기한으로 섬기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수를 받기보다는 작은 농촌 교회를 섬기려는 의지를 가진 평신도들도 많습니다. 현재 평신도 사역자가 1년 후 바로 후보자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너무 짧습니다. 대신 평신도 사역자들이 즉시 후보자 과정을 시작하도록 격려하되, 과정 시작까지 2년이 주어져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09.1 및 ¶ 409.2를 수정합니다

- 1 2. 두 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목회 책임은 순회 또는 협력 교구로 지정될 수 있다. 안수 또는 인가를 받은 목사가 목회적
- 2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cabinet)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를 배치하여 해당
- 3 책임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 평신도는 책임을 맡는 지방 감리사(PE)나 그 직무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다른 안수 받은
- 4 목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맡은 이들은 성찬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배정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 5 평신도는 연회 사역 위원회의 돌봄을 받으며 공인 목회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배정된 평신도는
- 6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 7 2. 사목 책임을 임명된 성직자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평신도
- 8 사역자(연회 사역 위원회에서 정의한 자)를 해당 사목 책임에 사역하도록 총당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평신도 사역자는
- 9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지정한 다른 장로목사에게 책임을 지며, 해당 목회 책임을 감독하고 성례전 사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10 평신도 사역자는 즉시 사역 인증 후보자 과정에 들어가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사역 인증 후보자 과정에
- 11 돌입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한 사목 책임에 배정될 수 없습니다. 배정된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이 배정된 연회의
- 12 정책과 절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목회 책임의 구조 명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9.1-2를 대체합니다

1. 목회 책임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조직되고 따르는 하나 이상의 교회로 구성되며, 구역회가 있고
2. 목사가 봉사하도록 파송된다. 2. 두 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목회 책임은 순회 또는 협력 교구로 지정될 수 있다.
3. 1. 목회 책임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조직되고 그에 따르는 하나 이상의 교회로 구성되며, 그곳에 목사가
4. 파송됩니다. 두 개 이상의 교회로 이루어진 목회 책임은 순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담임 사역의 집행이 아닌, 축진의 역할에 대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의 표현은 해당 평신도가 “사역”을 “행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가 이에 의해 암시됩니다: 1. 우리는 "사역"이 해당 책임을 맡은 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보며, 이 경우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암묵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 우리는 배정된 이 평신도가 파송된 성직자가 제공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교회 지도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더 나은 사역 철학을 반영하도록 그 표현을 변경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09.3을 수정합니다

3. 안수받거나 인가를 받은 목사가 사목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 평신도를 그 책임에서 사역을 수행하도록 배정할 수 있습니다. 안수받거나 인허받은 목사가 목회 책임을 맡을 수 없는
-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의 추천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를 임명하여 해당 책임지에서 사역들을 원활히
-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책임을 맡는 지방 감리사(PE)나 그 직무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다른 안수 받은
- 목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맡은 이들은 성찬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임무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 평신도는 연회 안수(목회) 위원회의 보살핌을 받아 인증된 사역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 평신도는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평신도 임명 및 계발에 대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09.3을 대체합니다**

- 1 3. 안수 또는 인가를 받은 목사가 목회적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cabinet)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 2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를 배치하여 해당 책임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 평신도는 책임을 맡는 지방 감리사(PE)나 그 직무를
- 3 감독하도록 파송된 다른 안수 받은 목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맡은 이들은 성찬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4 임무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평신도는 연회 안수(목회) 위원회의 보살핌을 받아 인증된 사역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 5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평신도는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 3. 안수받거나 허가받은 목사가 목회지를 섬길 수 없는 경우, 감독은 자격을 갖춘 평신도를 임명하여 감리사의 지도 아래
- 7 섬기게 할 수 있으며, 감리사는 성례 사역의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신도는 연회의 정책에 따라 사역을 위한 적절한
- 8 훈련과 계발을 추구하도록 권장됩니다.

세례교인 정의의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의 세례교인 정의는 세례교인을 교회로 전송하는 기능과 별개로 "다른 곳"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어디서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 정의는 전송을 위해 세례가 기독교 세례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11.1을 수정합니다

- 1 개체교회의 세례 받은 교인은 지역 회중이나 다른 곳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지역
- 2 교회로 교인 자격이 이전된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 3 지역 교회의 세례교인에는 해당 지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과 다른 회중에서 그리스도인 세례를
- 4 받은 후 멤버십이 지역 교회로 이전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고백 멤버십 정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고백 교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란을 초래합니다. 1 - "의식, 예식"을 언급하고 있으나, 장정(BDD) 어디에도 별도의 정의나 인שה가 되어 있지 않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을 위한 멤버십 서약이 ¶ 419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 멤버십 전승에 대한 의미를 약간 다르게 정의하며, 전승을 정의하는 ¶ 423을 직접적으로 참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11.2를 대체합니다

- 1 2. 개체 글로벌감리교회의 고백 교인 의식에서 세례 언약의 적절한 예식을 통해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전하여 신앙
- 2 고백으로 회원이 된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과 ¶ 419의 회원 서약을 고백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 3 2. 지역 교회의 고백 멤버십은 ¶ 419에 따른 멤버십 서약을 통해 해당 지역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세례받은
- 4 이들과, ¶ 423에 따라 다른 교회에서 멤버십을 전승하다 온 이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회원 자격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회원 자격 명확화 (미국: 대호수지방)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개체 교회는 개인의 회원 자격이 세례교인인지 고백교인인지를 명시합니다. 해당 진술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세례교인을 고백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11.4를 수정합니다

- 모든 글로벌 감리교회 개체 교회의 세례 교인 또는 입교인은 글로벌 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의 세례 교인
- 또는 입교인인 동시에 보편적 교회의 지체입니다.

언약적 연대: 평신도

청원자: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조직: Russellville (US: North Alabama)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청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상호 사랑, 책임감, 거룩한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언약적 삶에 대한 헌신을 단언합니다. 이 청원은 평신도가 웨슬리안 제자도에 참여하고 교회의 서번트 리더십 구조에 순종함에 있어 그들에게 기대되는 바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조가 아닌 신학적 언약에 대한 웨슬리안적 이해로 우리 자신을 재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정치 구조를 재정렬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 ¶ 422, ¶ 411, 및 ¶ 908.2.f를 수정하고, ¶ 403, ¶ 405, ¶ 408, ¶ 419, 및 ¶ 420을 대체합니다

1 ¶ 422. 교인의 참여와 책임

2 각 교인은 세례와 교인자격 서약을 이행하고, 각 교회가 제공하는 영성훈련, 예배, 청지기직 및 봉사 기회에 충실하게
3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복음의 동반자 관계(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교인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를 확립하고 전달하는
4 것은 각 교회의 책임이며(빌립보서 1:5),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각 교인 또는 동역자의 책임이다.
5 지역 교회의 지도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참석, 여러분의 헌물, 여러분의 봉사,
6 그리고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 교회의 사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을 지역 공동체에 설명하는, 우리의 언약적 친교
7 원칙을 이행하는 회원 언약을 수립해야 합니다.

8 각 회원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언약적 결혼 안에서의 신실함 혹은 독신으로서의 순결 중
9 하나의 삶을 살며 서로 더불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추후 번호 재지정)

10 교리와 장정을 이 제안된 변경 사항들과 더욱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 조항들 또한 명확히 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403,
11 405, 408, 411, 419, 420, 및 908

12 ¶ 403.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우리의 성약.

13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신실한 성약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14 믿는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우리가 확언하는 것은, 성경은 “나 홀로 종교”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다른 동반자들과 함께
15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그러한 나눔과 책임을 격려하기 위한 연대 조직에
16 헌신하며,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전 세계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의
17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대는 우리의 공통된 교리적 이해에 기초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보편적 교회는 우리가
18 완전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모든 사람이 웨슬리안 속회와 밴드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서로 언약적 책임 안에서 살아가는
19 사람들(평신도와 목회자)의 지역 교회들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언어, 문화, 관습, 사회적 및 경제적 구분의 모든 경계를
20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주님의 식탁에서 서로의 연합을 기념합니다.

21 ¶ 405. 변혁적 제자도.

22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언약에 비추어,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경과 우리의 웨슬리안 유산에 기초한
23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계명을 이행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제자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24 반영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확장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자의

25 성품과 실행은 성경을 통해 알게되고, 신앙 공동체에 의해 양육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된다. 제자는 일상생활의 모든
 26 측면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27 연합하여 성육신 때 시작된 사명과 사역(가르침, 봉사, 번성, 자비, 정의의 사역을 포함하여)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28 감리교회에서 변혁적 제자도 사역의 목표는 결국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고,
 29 개발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웨슬리안 책임(속회, 밴드, 그리고 다른 소그룹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30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실천, 성품, 사명을 반영하는 성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 초대받고, 도전을 받으며, 지원을 받고,
 31 책임을 지게 됩니다.

32 제자도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33 우리는 우리의 참된 영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책임 구조인 감독, 총리사, 감리사, 지도 장로목사,
 34 그리고 장로목사들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파송된 집사목사, 교구 목사, 그리고 임명된 평신도는 파송된 장로목사의 권위
 35 아래에서 이 리더십을 확장합니다. 지도하도록 파송되고 임명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27절의
 36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37 ¶ 408. 개체 교회의 역할.

38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개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조로
 39 나아가는 전략적 기반이며,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참된
 40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에
 41 따라 성찬이 정식으로 집례되는 구속적 언약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예배의 유지, 신자의 계발, 세상의 구속을
 42 위해 존재한다. 개체 교회의 기능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43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일상 생활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개체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44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훈련과 양육을 제공하며, 다른 지역 교회와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45 수호하고 생태적으로 책임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에 대한 최소한의
 46 기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체 교회는 교인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전도, 양육 및 증인 책임과 지역 및 글로벌
 47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전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 교회는 모든 회원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든 목양할 책임이 있으며, 그
 48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단 내에 있고 그 규율에 종속되는 그러한 신자들의
 49 신도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보편적 교회의 고유한 부분이다.

50 ¶ 411. 교인 자격의 정의.

51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원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했으며, 자신의 회중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기로 헌신한 모든
 52 사람을 포함합니다.

53 개체교회의 세례 받은 교인은 지역 회중이나 다른 곳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지역
 54 교회로 교인 자격이 이전된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55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은 예식서의 세례 언약에 따른 적절한 예식을 통해 신앙 고백으로, 또는 다른 교회에서
 56 전입하여 회원이 되었고 ¶ 419의 회원 서약을 고백한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57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은 예식에서 세례 언약의 적절한 예식을 통하거나 다른 교회로부터 이명하여 신앙
 58 고백으로 교인이 되고, ¶ 419의 교인 서약을 고백하고 지키며, 개체 교회의 언약적 교제 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세례 받은

59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60 통계 목적으로, 교회 교인 자격은 고백 교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와 동일시됩니다.

61 모든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의 세례교인 또는 고백교인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원이며 보편적 교회 회원이다.

62 ¶ 419. 교인 서약.

63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 서약(¶ 416)을 하는 것 외에, 교회에 입회하기 전에 가급적 다른
64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음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65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으시나요?

66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67 약속합니까?

68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나요?

69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충실한 교인으로서
70 평생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71 당신은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전 세계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72 것입니까?

73 당신은 [이름] 글로벌감리교회(또는 [이름] 글로벌감리교회 개체교회)의 충실한 교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74 대표자로서 기도, 임재, 은사, 봉사, 증거를 통해 그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75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돌보며, 이 지역 공동체의 언약적 친교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힘을
76 다하겠습니까?

77 ¶ 420. 충실한 제자도의 성장.

78 개체 교회에 충실한 교인은 개인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회원들이
79 개인 및 공적 기도, 예배, 성찬, 학습, 그리스도인의 실천, 체계적인 헌금, 상호 책임 및 거룩한 훈련에 참여함에 따라
80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역사와 자연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성장합니다.
81 신실한 제자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회원들과 함께
82 회중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교인은 신성한 언약에 따라 짐을 짊어지고, 위험을 분담하며, 동료
83 교인의 기쁨을 축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항상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84 갈등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85 ¶ 908. 사법 고소

86 2. 개체교회의 고백교인은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로(아래 나열된 시효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87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88 언약적 친교를 저버리는 행위 (¶ 403, ¶ 405, ¶ 422).

89 (추후 번호 재지정)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확성: 회원 참여 기대 사항의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2.1을 대체합니다

- 1 각 교인은 세례와 교인자격 서약을 이행하고, 각 교회가 제공하는 영성훈련, 예배, 청지기직 및 봉사 기회에 충실하게
- 2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복음의 파트너십(코어노니아)에 참여하는 교인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를 수립하고 전달하는
- 3 것은 각 교회의 책임이며(빌. 1:5), 또한 그러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각 교인 또는 동역자의 책임입니다.
- 4 각 교인은 교회의 생활과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세례 서약과 교인 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각 교회는 소속 교인에 대한
- 5 기대 사항을 수립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목회적 제자도 책임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2.2를 대체합니다

- 1 목회자는 교인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온전함에 이르도록” (히 6:1)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제자훈련 과정을 시행함으로써 교인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마 22:37-39).
- 3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가르침으로써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엡 4:11-13).
- 5 목회자는 제자도를 통해 교인들이 돌봄을 받고 사역을 위해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회원 책임감과 복원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2.3을 대체합니다

- 1 교회의 모든 교인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어떤 교인이 교인 서약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 2 그 교인이 활동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고, 사랑으로 교회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격려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마
- 3 18:15-17). 각 개체 교회 협의회는 태만한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한 절차를 수립해야
- 4 한다. 태만한 교인은 교회 임원회의 2/3 투표로 비활동 교인 명단에 올릴 수 있다.
- 5 교회의 회원들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습니다. 회원이 회원 서약을 소홀히 하면, 회중은 적극적인 참여로의 복원을
- 6 격려해야 합니다. 각 지역 교회 협의회는 회원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회원은 교회 협의회 3분의 2
- 7 투표로 비활동 명단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비활성 회원 조항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2.4를 대체합니다

- 1 비활동 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활동 회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된다. 비활동
- 2 명단에 있는 교인은 해당 기간 동안 교회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교회 문제에 대한 투표가 정지된다. 비활동 회원이 회복
- 3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더 활동적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구역회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 4 받아 2/3 투표로 해당 회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 5 비활성 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활동 회원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 6 명부의 회원은 지도직과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역회는 목사의 추천에 따라 삼분의 이 찬성으로 비활성 회원을
- 7 제명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연례 멤버십 갱신 요구 사항 폐지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22.5를 삭제합니다**

- 1 구역회의의 승인에 따라, 교회는 개인의 교인 자격을 매년 갱신하도록 의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교회에서 현신을
- 2 갱신하지 않는 교인은 교회의 비활동 교인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422.3-4), 그 후 구역회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 3 2/3의 투표로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멤버십 전송 과정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회원 전송하다 과정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 418에서는 목사/목회자가 누군가의 교회 가입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 423에서는 다른 교회의 회원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사/목회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백 교인으로 오는 경우, 반드시 세례를 증명하고 ¶ 419의 멤버십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본 단락에서 "기독교 세례"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성세"를 정의하는 ¶ 415를 참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방식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을 어떻게 상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으므로 마지막 문장은 삭제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23를 수정합니다

- 1 ~~¶ 423. 다른 교단에서 이적.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양호한 상태의~~
- 2 ~~교인은 세례 또는 고백 교인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전 교회에서 이적 통지를 받거나 기독교~~
- 3 ~~세례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통해 세례 받은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선언하는 서약을 할 때~~
- 4 ~~고백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411, 418, 419 참조). 유효한 기독교 세례는 권한 있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 5 ~~아름으로 물로 집행한다. 담임목사는 해당 교인의 접수 날짜를 이전 교회에 보고한다.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신앙,~~
- 6 ~~일, 정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적 서류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는 교회에서 받은 사람은 "다른 교단에서~~
- 7 ~~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8 ¶ 423. 다른 교단에서 이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어떤 기독교 화폐 단위의 회원이 ¶ 415에 정의된 대로 성세를 받고
- 9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할 경우, 세례교인 또는 고백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전
- 10 교회로부터의 멤버십 전송 통지 또는 성세에 대한 증서/자격증을 통해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위
- 11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기독교 믿음을 선언하는 서약(¶ ¶ 411, 418, 419 참조)을 한 후 고백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 12 있습니다. 목사/목회자는 모든 전송된 회원의 접수를 해당 회원의 이전 교회에 신고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 13 글로벌의 감리 교회의 믿음, 일, 정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타 교단으로부터의 영접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3을 대체합니다

- 1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양호한 상태의 교인은 세례 또는 고백 교인으로
- 2 받아들여 진다.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전 교회에서 이적 통지를 받거나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통해 세례
- 3 받은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선언하는 서약을 할 때 고백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411,
- 4 418, 419 참조). 유효한 기독교 세례는 권한 있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집행한다. 담임목사는 해당
- 5 교인의 접수 날짜를 이전 교회에 보고한다.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신앙, 일, 정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 6 권고한다. 이적 서류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는 교회에서 받은 사람은 "다른 교단에서 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7 다른 기독교 교단의 양호한 상태의 세례교인이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경우, 지역 교회의 규례에 따라 세례
- 8 교인 또는 고백 교인으로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협동 회원 및 준 회원 자격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러한 삭제는 본래의 의도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서술적이고 통치와 무관한 언어 및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강화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4를 대체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 자매 자치 감리교회 또는 연합 교회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와 협정을 맺은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 본
- 2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또는 지역사회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요청 시 임시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글로벌 감리교회
- 3 소속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담임목사에게 제휴 회원 자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인 자격은 그
- 4 사람에게 그 교회의 친교, 목회적 돌봄과 감독,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개체교회는 협동교인이
- 5 직분을 포함하여 개체교회 리더십을(지도자로) 섬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협동교인은 연회의 평신도
- 6 회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협동교인은 소속 교회의 고백교인으로만 계수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다른 교단의 교인은 동일한
- 7 조건으로 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협동교인 또는 준회원 교인이 있는 교회 근처에서 아사할 때 협동교인 또는
- 8 준회원 교인으로 있는 교회의 재량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 9 지역 교회는 연회의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 사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협동 회원 또는 준 회원 자격을
- 10 둘 수 있습니다.

구성교인 명부의 정의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는 중복되는 범주가 있는 네 개의 별도 명부 대신, 구성의 명확한 정의와 함께 하나의 목록으로 상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전체 단락은 "구성교인 명부"를 참조하고 있으나, 네 가지 범주 중 오직 두 번째(4)만이 명확하게 "구성 요소/구성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Cradle Roll" 항목(1)은 "세례받지 않은 영아"만을 참조하고 있지만, 이 단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더 이상 영아가 아니어도 상장될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번과 4번 항목은 매우 유사한 "구성"의 정의를 사용하여,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으나, 요구 사항은 더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25를 삭제합니다

- 1 세례받지 않은 영아("Cradle Roll");
- 2 만 18세를 초과하였으나 고백 교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고백 교인의 배우자 및 성년 자녀를 포함함);
- 3 그러나 지역 교회가 Pastoral 책임을 지고 있는 자("구성 요소/구성원");
- 4 지난 12개월 동안 두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였거나, 교회 사역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자("예배 회원");
- 5 커리 또는 다른 믿음 서약으로 인해 교회에 가입할 가능성은 적으나, 여전히 교회, 회중의 Pastoral 배려 아래 있으며
- 6 교회의 더 넓은 지역 사회의 일부로 인정되는 자("교회의 벗들"). 구성교인 명부는 매년 검토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글로벌 통합, 지역적 유연성: 규정적인 구성교인 명부 요구 사항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5를 삭제합니다

- 1 각 회중에는 네 가지 범주의 사람들로 구성된 구성교인 명부가 유지되어야 한다: (1) 세례받지 않은 유아("요람 명부"); (2)
- 2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고백 교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고백 교인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 3 지역 교회가 목회적 책임을 지는 자들("구성교인"); (3) 지난 12개월 동안 예배에 두 번 이상 참석했거나 교회 사역에 두 번
- 4 이상 참여한 사람("잠재적 회원"); (4) 거리나 다른 신앙적 현신으로 인해 교회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 5 불구하고 회중의 목회적 보살핌을 받고 더 넓은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되는 사람("교회의 친구"). 구성교인 명부는 매년
- 6 검토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지역 환경을 통한 교회 가입 방법에 대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설명에서 잘못된 단락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422는 회원 책임감을 참조하고 있고, ¶ 411과 ¶ 423은 교회 가입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또한 체플린과 캠퍼스 목사를 장관/목사(기관목회/연장사역 목사)와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기관목회/연장사역 범주 중 하나를 의도치 않게 누락하지 않기 위해, 상장된 범주 목록을 삭제하고 오직 기관목회/연장사역 장관/목사를 사용하며, ¶ 610.10을 참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 세 문장은 기관목회/연장사역 장관/목사가 지역 교회가 없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첫 문장의 정의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며, 언제 및 어떻게 멤버십이 글로벌 감리교회에 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26 전체를 대체합니다

- 1 ~~¶ 426. 개체 교회가 아닌 환경.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목회자가 어떤조직, 기관 또는 군대의 목사로~~
- 2 ~~봉사하는 동안, 연장사역 목사로, 또는 캠퍼스 목사로, 또는 지역교회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동안, ¶ 422의 조건에~~
- 3 ~~따라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으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세례예식이나 신앙고백 서약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한~~
- 4 ~~파송된 목사는 관련자의 선택에 대해 개체교회의 목사(근처에 있는 경우)와 상의해야 한다. 목사의 합의에 따라, 그러한~~
- 5 ~~성찬이 집행되었거나 그러한 서약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발행되어야 한다. 세례를 받거나 고백 교인은 개체~~
- 6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아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 7 ¶ 426. 개체 교회가 아닌 환경. 글로벌 감리교회에 적법하게 파송된 목회자는 기관목회/연장사역
- 8 장관/목사(¶ 610.10)로서 사역하는 동안, ¶ 411 및 ¶ 423의 조건에 따라 글 로벌 감리교회 멤버십으로 한 사람을 받을
- 9 수 있습니다. 해당 인원이 받아들여진 후, 기관목회/연장사역 장관/목사는 그 성명과 상황을 기관목회/연장사역이 소속된
- 10 연회에 신고하고, 가능한 경우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도록 그를 격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비지역 교회 환경에서의 멤버십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26을 대체합니다**

- 1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목회자가 어떤조직, 기관 또는 군대의 목사로 봉사하는 동안, 연장사역 목사로, 또는
- 2 캠퍼스 목사로, 또는 지역교회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동안, ¶ 422의 조건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으로 사람을
- 3 받을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세례예식이나 신앙고백 서약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한 파송된 목사는 관련자의 선택에 대해
- 4 개체교회의 목사(근처에 있는 경우)와 상의해야 한다. 목사의 합의에 따라, 그러한 성찬이 집행되었거나 그러한 서약이
- 5 아루어 졌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발행되어야 한다. 세례를 받거나 고백 교인은 개체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이 서류를 사용할
- 6 수 있다.
- 7 비지역 환경에서 사역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정식으로 파송된 목회자는 ¶ 422의 조건에 따라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 8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는 멤버십을 위한 적절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의 지속적인 돌봄을
- 9 위해 지역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글로벌 통합과 지역적 유연성: 회중이 없는 환경에서의 교인 자격 부여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7을 수정합니다

1. 정당한 이유로 회중 앞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인이 되기 원할 경우 담임목사의 재량에 따라 우리 교회의 의식에 따라
2. 교회 밖에서도 교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평신도 교인들이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의
3. 이름은 교회 명단에 기재하고, 교회에 그들의 영접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은 교회 명부에 기재되어야
4. 하며,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회중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5. 회중 앞에 설 수 없는 교인 자격 후보자는 목사의 재량에 따라 교회의 의식에 맞추어 다른 장소에서 입교할 수 있습니다.
6. 입교 사실은 기록되어야 하며 회중에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교적부, 교회 기록 및 기타 재산의 위치에 대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장정에는 교회를 폐쇄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폐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절차나 장치는 없지만, 헌법에는 지역 교회가 강제로 폐쇄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장정의 나머지 부분도 이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폐쇄"의 용어 변경을 위해 "중단됨(discontinued)"이라는 단어가 ¶ 1005.2.c.에도 등장하므로, 일관성을 위해 해당 부분에서 단어를 변경해야 하며, ¶ 428과 ¶ 429.7에는 교적부 및 기타 기록의 이관 사유로 ¶ 1005.2.c.의 다른 법적 가능성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 429.7에서는 다수의 회원이 전입한 지역 교회로 교회 기록을 이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회원들이 글로벌 감리교회가 아닌 교회로 전입하면, 기록은 연회로 이관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28, ¶ 429.7, 및 ¶ 1005.2.c를 대체합니다

- 1 ~~¶ 429.7. 모든 세례, 입교, 결혼, 장례 기록은 개체 교회의 재산이며 판매할 수 없다. 교회가 폐쇄되면 이러한 기록은~~
- 2 ~~연회에서 관리한다.~~
- 3 ~~¶ 1005.2.c. 법인이 유가, 중단 또는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법인 자산의 수령인을 지정한다.~~
- 4 ¶ 428 폐쇄된 지역 교회에서의 전입. 지역 교회가 폐기되거나, 폐쇄를 선택하거나,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5 감리사는 그 회원들을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교회로 전입해야 합니다.
- 6 ¶ 429.7. 모든 세례, 입교, 결혼, 장례 기록은 개체 교회의 재산이며 판매할 수 없다. 교회가 폐기되거나 폐쇄를
- 7 선택하거나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기록들은 감리사가 다수의 회원을 전입시킨 지역 교회의 관리하에
- 8 두어야 합니다. 어떤 회원도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들은 연회의 관리하에 두어야 합니다.
- 9 ¶ 1005.2.c. 법인이 폐기되거나, 폐쇄를 선택하거나,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법인 자산의 수령인 지정.

글로벌 통합, 지역적 명확성: 폐쇄된 지역 교회로부터의 교인 이적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28을 수정합니다**

- 1 ~~개체교회가 중단되었을 경우, 지방감리사(PC)는 교인을 다른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교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교회로~~
- 2 ~~전입해야 한다.~~
- 3 지역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 감리사는 해당 교인들과 협의하여 그 교인들을 다른 교회로 이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불필요한 명부 목록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9.2, ¶ 429.3, ¶ 429.4, 및 ¶ 429.5를 삭제합니다

- 1 2. 비활성 회원 멤버십 룰 (¶ 422.3-4). 3. 구성교인(예비 교인) 명부 (¶ 425). 4. 협동 교인 명부 (¶ 424). 5. 준회원 교인
2 명부 (¶ 424):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멤버십 기록 요구 사항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9.1을 대체합니다

- 1 각 개체교회는 세례 또는 고백하는 각 교인에 대한 영구 교인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a) 그 사람의 이름,
- 2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세례 날짜, 주례 목사 및 후원자; (b) 신앙 확인 또는 고백 날짜, 목사 및 후원자; (c) 다른 교회에서
- 3 전입하는 경우, 접수 날짜, 교회 파송 및 목사 영접 날짜; (d) 다른 교회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접수 교회 및 접수 교회의
- 4 주소; (e) 제명 또는 철화 날짜 및 이유; (f) 고백 교인의 회복 날짜 및 주례 목사; (g) 사망일, 장례식/추모 날짜 및 장소, 매장
- 5 장소 및 주례 목사.
- 6 각 지역 교회는 세례 교인 또는 고백 교인 각각에 대해, 세례, 멤버십, 전송 및 신분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 7 멤버십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공유 교회의 보고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해당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명확성, 일관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와 지배 구조를 보존하면서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29.6을 대체합니다

- 1 다른 교단과 연합 또는 협력교회의 경우,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는 조직은 전체 교인의 공평한 몫을 각 교단 법적 구조에
- 2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런교인들은 보고서가 연합 또는 협력교회의 보고서라는 취지의 메모와 총 실제 교인 수의 기록과 함께
- 3 각 교회의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 4 다른 교단과 공유하는 교회의 경우, 교인 자격 보고는 참여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확성: 멤버십 보고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절차적 세부 사항과 지나치게 규정적인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개정안은 필수적인 보고 요구 사항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적응을 허용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0을 수정합니다

- 1 목사는 작년도 구역회 이후 자신이 책임진 교회(들)의 교인으로 접수된 사람들의 이름과 삭제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해야 하며 이로써 어떻게 접수 또는 삭제되었는지 나타낸다. 교회는 매년 회원 기록을 감사하도록 권장된다.
- 3 목사는 자신이 사목 책임을 맡은 교회 또는 교회들의 멤버십 변동 사항을 구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멤버십 기록이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생 신고 의무를 지역 교회 또는 학원 선교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대체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에 소속된 학원 선교가 매우 적으므로, 신고 조항은 소수의 교회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 432에 있는 조항을 참고하여, 타 지역에서 학생이 되는 모든 교인에게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본문:**본 청원은 ¶ 431을 대체합니다**

- 1 ~~¶ 431. 대학에 재학 중인 교인의 연례 보고서. 목사는 매년 대학에 재학 중인 고백하고 세례받은 교인들의 이름과 연락처~~
- 2 ~~정보를 교회의 사역이 존재하는 기관의 교목 또는 캠퍼스 목사에게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 3 ¶ 431. 다른 지역 사회의 학교,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회원들.
- 4 지역 교회의 회원이 학교, 대학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지역 사회로 이동하는 경우, 목사/목회자는 해당 회원이
- 5 인근 글로벌 감리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 근처에 글로벌 감리교회가 없다면,
- 6 목사/목회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교회나 학원 선교를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강제할 수 없는 보고 조항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비지시적이고 상황 특정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임의적 언어와 사역 구조에 대한 가정에 의존합니다. 이는 행정에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사역 관행을 통해 다루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1을 삭제합니다

- 1 목사는 매년 대학에 재학중인 고백하고 세례받은 교인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교회의 사역에 존재하는 기관의 교목
- 2 또는 캠퍼스 목사에게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이동한 회원을 위한 절차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중복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간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주소"만 제공하는 것보다 주소를 포함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2를 수정합니다

1 ~~¶ 432. 이사하는 교인. 개체교회의 교인이 모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공동체로 이사하여 예배와 활동에~~
2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 교인은 새로 정착한 거주지 공동체의 글로벌감리교회로 교인 자격을 옮기도록~~
3 ~~권장된다. 담임목사가 실제 또는 고려 중인 이러한 거주지 변경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 즉시, 교인이 앞으로~~
4 ~~살게 될 집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교회 생활이 확립되도록 돕고, 그러한 지역 사회의 글로벌감리교 목사 또는~~
5 ~~지방감리사(PE)에게 편지를 보내어, 관련자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소를 제공하고 지역 목회 감독을 요청하는 것은~~
6 ~~담임목사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목회자가 자기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우리 교단의 교인이 거주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7 ~~있어 예배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발견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목회 감독을 제공하고~~
8 ~~구성교인 명부에 이름을 추가하고(¶ 425), 회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글로벌감리교회로 교인 자격을 이전하도록 권고하는~~
9 ~~것이 목사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10 ¶ 432. 이사하는 교인. 지역 교회의 회원이 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사회로 이주하여 예배와 행사에
11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본 교회 목사는 그 회원이 새로 자리 잡은 지역 사회의 글로벌 감리교회로 멤버십을
12 이전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본 교회 목사는 또한 회원의 새 지역 사회에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목사나 감리사에게
13 회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적 목회 감독을 요청하며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목사/목회자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14 글로벌 감리교회 회원이 그 거주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15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 인물에게 목회 감독을 제공하고 그 이름을 구성교인 명부(¶ 425)에 추가하며 인근의 글로벌
16 감리교회로 멤버십 이전을 권고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멤버십 이전 및 목회적 감독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명료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향상시키지 않는 반복적인 지침과 지나치게 상세한 절차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특정 행정 절차의 중복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하며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서의 적응성을 제한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2를 대체합니다

- 1 캐체교회의 교인이 모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공동체로 이사하여 예배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2 아 교인은 새로 정착한 거주지 공동체의 글로벌감리교회로 교인 자격을 옮기도록 권장된다. 담임목사가 실제 또는 고려
- 3 중인 이러한 거주지 변경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 즉시, 교인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교회
- 4 생활이 확립되도록 돕고, 그러한 지역 사회의 글로벌감리교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에게 편지를 보내어, 관련자의 가장
- 5 최근에 알려진 주소를 제공하고 지역 목회 감독을 요청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목회자가 자기 지역
- 6 사회에 거주하는 우리 교단의 교인이 거주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예배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교회에
- 7 다니는 것을 발견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목회 감독을 제공하고 구성교인 명부에 이름을 추가하고(¶ 425), 회원이
- 8 거주하는 지역의 글로벌감리교회로 교인 자격을 이전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 9 지역 교회의 교인이 자신의 본교회 예배와 생활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교인은 그
- 10 지역 사회에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로 멤버십을 이전하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 회중과
- 11 관계를 맺도록 돕고 적절한 목회적 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회 간 교인 이적 절차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에는 상세한 절차적 단계와 상황적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고 다양한 사역 환경에서의 유연성을 제한합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구체성과 주관적인 조건들은 삭제하는 한편, 적절한 소통과 기록 보관이라는 핵심 요구 사항은 유지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3을 대체합니다

- 1 목회자가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로 교인 자격 이전 요청을 받으면, 해당 목회자는 교인이 이전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직접
- 2 또는 목회자가 없는 경우 지방감리사(PE)에게 적절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목사 또는
- 3 지방감리사(PE)는 공개 리셉션 후 정규 예배에 그렇게 전임한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러한 예배에서
- 4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내는 교회의 목사에게 해당 교인을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5 교인이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로 이적할 때, 각 교회의 목사들은 적절한 소통, 환영 및 교인 기록 갱신을 보장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멤버십 전송을 위한 새로운 과정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장정에는 한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로 멤버십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간소화된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418에는 주석이 있고, ¶ 433에는 전송 교회를 위한 지침이 있으나,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멤버십 전송을 받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은 없습니다. ¶ 433 또한 멤버십 전송 요청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는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때때로 발생하므로, 이는 한 사람이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려는 요청을 좌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단락은 실제 경험과 멤버십 전송을 다루는 다른 단락들을 참고하여 이러한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단락은 현재 ¶ 423 바로 앞에 배치되고 현행 ¶ 433을 대체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3을 삭제하고 새 ¶ 423을 만들며 이후 모든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한 사람이 한 글로벌 감리교회 교회, 즉 글로벌 감리교회 소속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멤버십을 전송하고자 할 때, 수임
- 2 교회의 목사/목회자는 해당 인의 준비 상태, 곧 세례와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 멤버십의 확인 등 준비 여부를 점검하여야
- 3 합니다. 그 후 목사/목회자는 정기 예배 중에 그 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어서
- 4 해당 사실을 예배 중에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해당 인이 고백 교인으로 멤버십을 전송하고자 할 경우, ¶ 419에 명시된
- 5 멤버십 서약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수임 교회의 목사/목회자는 해당 인을 교회 멤버십에
- 6 등록하고, 전송 교회 목사/목회자에게 통지하며, 전송 교회 목사/목회자는 그 인을 교적부에서 삭제하고 이러한 조치의
- 7 확인서를 수임 교회에 전달합니다.

8 삭제:

- 9 ¶ 433.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로 이전. 목회자가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로 교인 자격 이전 요청을 받으면, 해당 목회자는
- 10 교인이 이전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직접 또는 목회자가 없는 경우 지방감리사(PE)에게 적절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11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는 공개 리셉션 후 정규 예배에 그렇게 전임한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야
- 12 하며, 상황에 따라 그러한 예배에서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내는 교회의 목사에게 해당 교인을 명부에서
- 13 제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다른 화폐 단위로 전송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과정에는 개인의 전송하다에 대한 확인/신앙 고백(유아 세례 받은 이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과정)을 기다리는 불필요한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전송하다 사실을 다음 구역회에 신고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으나, 다른 전송하다나 멤버십 수령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모든 다른 멤버십 변경에도 유사한 조항이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사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다른 멤버십 변경 관련 문단에는 변경 사항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모든 변경에 대한 표기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것 역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4를 수정합니다

- 1 ~~¶ 434. 다른 교단으로 이전. 담임 목사는 교인으로부터 다른 교단의 교회로 전입 요청을 받거나 다른 교단의 목사 또는~~
-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교인의 동의 하에) 전출 통지를 발행해야 하며, 교인이 다른~~
- 3 ~~교회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교인의 전입 사실을 개체교회 교인 기록에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교인이~~
- 4 ~~예고 없이 타 교단 교회에 소속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부지런히 조사하여 보고가 확인되면 교인 명부에 해당 교인의~~
- 5 ~~이름 뒤에 "타 교단 교회로 전출"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구역회에 보고해야 한다.~~
- 6 ¶ 434. 다른 교단으로 이전. 목사/목회자는 회원이 다른 화폐 단위의 교회로 전송하다를 요청하거나, 다른 화폐 단위의
- 7 목사/목회자 또는 적절한 관계자가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 (회원의 동의 하에) 수신 교회에 전송하다 통지서를 발급하고,
- 8 해당 회원의 전송하다 사실을 지역 교회의 멤버십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목사/목회자가 회원이 아무런 통보 없이 다른
- 9 화폐 단위의 교회와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을 경우, 부지런히 조사하고, 신고가 확인되면 그 전송하다 사실을
- 10 멤버십 롤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의 안전 확보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저희는 지역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든지 간에 안전이 핵심 요소로서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표현도 적대시되는 국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특히 그러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6.6을 수정합니다

- 1 그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포용성과 안전을 추구함.

교회 위원회의 멤버십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일부에서는 교회 협의회만을,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위원회를 참조하고 있어 혼란을 줍니다. 이 규정은 모든 위원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타 몇 가지 변경 사항: 1.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2. 여기에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을 포함하는 것은 ¶ 440에 더 포괄적인 목록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3.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라는 표현은 장정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현직 회원임을 요구하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4. 여러 명의 목사가 있는 교회의 경우, 오직 “담임 목사”만이 당연직 회원임을 명시하고, 필요시 다른 목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장정은 담임 목사가 당연직 회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7.2를 수정합니다

- 1 2. 교회 집행기구 또는 임원회 구성원은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되고, 교회 생활에서 포용성의 요구에 사명감을
- 2 갖고, 글로벌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실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 3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인과 동일한 표준에 따라 선택되고 확인된 청소년 및 청년 성인 교인을 포함해야
- 4 한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섬기게 될 개체 교회와의 관계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 5 목사는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 아사회, 임원회, 위원단, 위원회 및
- 6 태스크포스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 7 2. 지역 교회의 모든 위원회, 협의회, 사명/위원회, 위원회, 태스크 포스의 회원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도덕적으로
- 8 훈련되고, 교회 생활에서 포용성의 요구에 헌신하며, 글로벌 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실하며, 그 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 9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닌 자이어야 합니다. 투표권이 있는 모든 자는 자신이 섬기는 지역 교회의 멤버십 룰에
- 10 등재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자 현직 회원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지역 교회의 행정 책임자이며, 교리와
- 11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 위원회, 협의회, 사명/위원회,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의 투표권이 있는
- 12 당연직 회원이 됩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에 파송된 다른 목사를 당연직 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료성: 교회 리더십 자격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행정에 적합하지 않은 주관적이고 시행 불가능한 인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필수적인 구조 및 멤버십 요구 사항은 유지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502.2를 수정합니다**

- 1 교회 집행기구 또는 임원회 구성원은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되고, 교회 생활에서 포용성의 요구에 사명감을
- 2 갖고, 글로벌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실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 3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인과 동일한 표준에 따라 선택되고 확인된 청소년 및 청년 성인 교인을 포함해야
- 4 한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섬기게 될 개체 교회와의 관계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 5 목사는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 이사회, 임원회, 위원단, 위원회 및
- 6 태스크포스의 당연직 위원이다.

- 7 교회의 운영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원은 자신이 섬기는 지역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 8 합니다. 지역 교회는 관례에 따라 청소년 및 젊은 성인 회원을 리더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행정
- 9 임원으로 섬기며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그 리더십 기구의 당연직 회원이 됩니다.

모든 교회 위원회의 정족수를 정의하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구역회, 교회 협의회, 재단 이사만 정족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그렇지 않아서 모호함이 생깁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 438.4 및 ¶ 443.6을 재단 이사(Trustees)를 제외한 교회 위원회의 보편적 규칙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위원회, 회의 및 기타 단체의 정족수를 다루는 새로운 ¶ 437의 하위조항을 만드는 것을 권고합니다. ¶ 437.4에 정족수 규칙을 두는 것은 우리가 ¶ 437.4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규칙과 다른 점을 명시하지 않는 한, ¶ 443.6 및 ¶ 438.4의 요구 사항을 삭제하도록 허락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7.4를 신설하고 ¶ 443.6 및 ¶ 438.4를 삭제합니다

- 1 4. 정족수. 교리와. 장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거나 현지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지역 교회에서 정식으로 공고된 모든
- 2 회의,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사명/위원회, 태스크 포스의 모임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들은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3 삭제:

4 ¶ 443.6

5 ~~6. 정족수-정식으로 공자된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6 삭제:

7 ¶ 438.4

8 ~~4. 정식으로 발표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교인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잘못된 참조 제거

청원자: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조직: US: Great Lakes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글로벌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다이애코날 미니스터스(diaconal ministers)”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은퇴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퇴한 안수 목사와 은퇴한 다이애코날 미니스터(diaconal ministers)”라고 언급된 것은 이전 교단 문서에서 남겨진 것으로 보이며 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에 임명되지 않은 모든 안수 목사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면, 은퇴한(비활동 선임 지위) 목회자와 개체 교회를 넘어 임명된 목회자들도 포함하게 되며, 이는 모든 글로벌 감리교 목회자가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조직:

총회 대표단 (미국: 대호수 지역)

본문:

구역회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으로 개체 교회의 교회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모든 회원들과, 해당 구역회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안수 목사 및 기타 교리와 장정에 지정된 자를 포함합니다.

- 1 구역회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인 개체 교회의 교회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모든 회원과, 개체
- 2 교회에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구역회와의 연대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안수 목사 및 기타 교리와 장정에 지정된 자를
- 3 포함합니다. 만일 두 교회 이상이 한 목회자의 책임하에 있다면, 각 교회 협의회 모든 회원들이 구역회의 회원들이 됩니다.

구역회 멤버십에서 디아코날 목회자 및 시니어 목회자를 제거합니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 438.2는 현재 “은퇴한 안수 받은 목사”와 “은퇴한 디아코날 목회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은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니어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현재로서는 장정 어디에도 시니어 목회자가 자신의 멤버십을 갖거나 공식적으로 지역 교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참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디아코날 목회자라는 지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참조도 삭제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38.2를 수정합니다**

- 1 2. 구역회의 회원은 교회 임원회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모든 교인이며, 해당 구역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 2 선택한 은퇴한 안수 목사 및 은퇴한 평신도사역자와 함께 교리와 장정에 지정된 기타 모든 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
- 3 이상의 교회가 한 목회자의 책임하에 있는 경우, 각 교회 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구역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구역회
- 4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인 개체 교회의 교회 협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모든 회원과 교리와 장정에서
- 5 지정하는 다른 모든 이들로 구성한다. 둘 이상의 교회가 한 목회자의 책임하에 있는 경우, 각 교회 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 6 구역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어떤 목사가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함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여러 명의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는 오직 담임 목사만이 감리사와 협의하거나, 감리사에게 특별 구역회 소집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8.5를 수정합니다

- 1 5. 특별 구역회는 담임목사와 협의한 후 지방감리사(PE)가 소집하거나 지방감리사(PE)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장로 목사가
- 2 소집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 세션의 목적은 소집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업무는 소집시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 3 그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 회의는 교인 총회로 소집할 수도 있다.
- 4 5. 특별 구역회는 감리사가 담임 목사와 협의한 후 소집할 수 있으며, 또는 담임 목사가 감리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소집할
- 5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 세션의 목적은 소집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업무는 소집시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 6 그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어떠한 특별 세션도 교회 총회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구역회 권한과 전교인 투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불필요합니다. 구역회는 지역 교회의 치리 위원회입니다(437.1). 모든 교회 협의회 회원은 구역회의 투표 회원이며(438.2), 이 구역회는 감리사가 주재합니다(438.3). “교회 총회”와 교회 전체 투표는 구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사 결정을 회중 형태의 행정적 승인으로 전환합니다. 공개 회의와 감리사의 참석은 주요 결정이 투명성과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신탁 조항이 없고 재산이 지역 교회에 속하므로 재산 매각에 대한 특별 조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8.5을 개정한다

- 1 438.5 특별 구역회는 담임목사와 협의한 후 감리사가 소집하거나, 감리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할 수
- 2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 세션의 목적은 소집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업무는 소집시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그대로
- 3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 회의는 교인 총회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전자 구역회를 허락하는 새로운 섹션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장정에는 현재 구역회를 전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이미 총회와 연회에 존재하므로, 구역회에도 동일한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차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새로운 섹션은 7번 항목으로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이후의 다른 섹션들은 순서가 재배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438.7을 추가하고 이후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7. 현지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 감리사는 교회 협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자 또는
- 2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구역회 또는 교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역회의 소집 권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만약 하나의 구역에 두 개 이상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감리사는 한 교회만을 위한 구역회 또는 교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합동 구역회는 각 교회의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동 교회 총회로 개최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8.8을 수정합니다

- 1 8. 감리사가 결정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사목 책임에 대한 합동 구역 또는 교회 회의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할 수
- 2 있습니다. 사목 책임 내 한 교회에 속한 구역회 또는 교회 총회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 구역 또는 교회 총회는 해당 교회의
- 3 필요를 다루기 위하여 감리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총회에 관한 규정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여러 명의 목사/목회자가 있는 교회의 경우, 오직 담임 목사만이 구역회를 교회 총회로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통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 규정”이라는 표현은 혼동을 일으키므로 단순히 “모든 규정”으로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두 문장은 각각 ¶ 438.7 및 .8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삭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8.9를 수정합니다

- 1 9. 교회 총회. 교회 교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구역회는 교회총회로 소집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 2 개체교회의 모든 고백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방감리사(PE)의 재량에 따라 또는 다음 중 한 사람이
- 3 지방감리사(PE)에게 서면 요청을 한 후에 소집한다: 목사, 교회 임원회 또는 개체교회의 고백교인의 10퍼센트. 어떤
- 4 경우에도 요청서 사본은 목사/목회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구역회의 소집과 진행을 관장하는 추가 규정은
- 5 교회총회에도 적용된다 두 개 이상의 교회를 위한 연합 교회 총회는 PE감리사가 결정하는 대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 6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교회총회는 통/번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참석자 다수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
- 7 9. 교회 총회. 교회 교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구역회는 교회총회로 소집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 8 개체교회의 모든 고백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교회 총회는 감리사의 재량권에 따라 소집하거나, 담임 목사, 교회
- 9 협의회 또는 지역 교회 고백 교인 회원의 10퍼센트 중 한 명이 감리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 10 어떤 경우에도 요청서 사본은 담임 목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구역회 소집과 진행을 관장하는 모든 규정은 교회
- 11 총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 438.9항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불필요합니다. 구역회는 지역 교회의 치리 위원회입니다(437.1). 모든 교회 협의회 회원은 구역회의 투표 회원이며(438.2), 이 구역회는 감리사가 주재합니다(438.3). “교회 총회”와 교회 전체 투표는 구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사 결정을 회중 형태의 행정적 승인으로 전환합니다. 공개 회의와 감리사의 참석은 주요 결정이 투명성과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신탁 조항이 없고 재산이 지역 교회에 속하므로 재산 매각에 대한 특별 조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8.9를 삭제합니다

9. 교회 총회. 교회 교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구역회는 교회총회로 소집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 개체교회의 모든 고백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방감리사(PE)의 재량에 따라 또는 다음 중 한 사람이
- 지방감리사(PE)에게 서면 요청을 한 후에 소집한다: 목사, 교회 임원회 또는 개체교회의 고백교인의 10퍼센트. 어떤
- 경우에도 요청서 사본은 목사/목회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구역회의 소집과 진행을 관장하는 추가 규정은
- 교회총회에도 적용된다 두 개 이상의 교회를 위한 연합 교회 총회는 PE감리사가 결정하는 대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교회총회는 통/번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참석자 다수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구역회의 멤버십과 의무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 443.5는 목사/목회자가 교회 협의회의 회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 438.2는 모든 교회 협의회 회원이 구역회의 회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 439.2에 목사/목회자를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는 지역 교회가 장정에 명시된 바와 다르게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 ¶ 442-447에 명시된 지도자, 위원회 및 협의회의 모든 기능이 반드시 개인 또는 위원회에 배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9.2를 수정합니다

- 1 2. 구역회, PE감리사, 담임牧사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목회와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역회와 감리사는
- 2 "교리와. 장정"에 따라 사목 책임과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인, 행정인해야 합니다. 멤버십 규모, 프로그램 범위, 선교 자원
- 3 또는 기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구역회는 감리사와 상담, 협의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직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 4 반드시 ¶ ¶ 436-437의 조항이 준수되고 ¶ ¶ 442-447의 모든 기능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구역회 비서 선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교회 협의회 비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구역회는 그 업무를 위해 다른 비서를 선출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9.4를 수정합니다

- 1 4. 구역회의 기록 서기는 회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기록과 보고서의 관리인이 되며, 사회자와 함께
- 2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 사본은 지방감리사(PE)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회 파일을 위해 영구 사본이 보관되어야
- 3 한다. 한 구역에 개체교회가 하나뿐인 경우, 교회 임원회의 서기가 구역회 서기가 된다. 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교회가 있을
- 4 때, 교회 임원회의 서기 중 한 명이 구역회에서 서기로 선출된다. 교회 협의회 비서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역회는
- 5 참석한 고백 교인 중에서 그 비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통합과 지역의 명확성: 구역회 기록 관리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기록 배포 및 기록 서기 선정에 관한 상세한 절차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정확한 기록 관리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행에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9.4를 대체합니다

- 1 구역회의 기록 서기는 회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기록과 보고서의 관리인이 되며, 사회자와 함께 회의록에
- 2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 사본은 지방감리사(PE)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회 파일을 위해 영구 사본이 보관되어야 한다. 한
- 3 구역에 개체교회가 하나뿐인 경우, 교회 임원회의 서기가 구역회 서기가 된다. 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교회가 있을 때, 교회
- 4 임원회의 서기 중 한 명이 구역회에서 서기로 선출된다.
- 5 구역회 기록 서기는 연회의 정책에 따라 회의록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식 기록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 6 합니다.

구역회의 교회 위원회 멤버십에 관한 권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구역회의 교회 위원회 멤버십에 관한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 439.5를 변경하여, 교회 협의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모든 위원회와 집단에 적용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 439.6을 명확히 하여, 구역회가 장정에 명시된 것보다 낮은 기간의 위원회 임기 제한은 정할 수 있으나, 그보다 높은 제한은 정할 수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9.5 및 ¶ 439.6을 수정합니다

- 1 5. 각 구역에서 교회의 모든 부문이 대표되는 포용성 있는 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권장한다. 각 구역은 모든 위원회,
- 2 협의회, 사명/위원회, 위원회, 태스크 포스의 구성에서 교회 회중의 모든 계층이 대표되도록 포용성을 갖추어야 함을
- 3 권장합니다.
- 4 6. 구역회는 교리와 장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지역 교회의 선출 또는 파송된 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연임
- 5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구역회는 교리와 장정에 해당 직위에 대해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교회의
- 6 선출 또는 파송된 임원 전체 또는 일부의 연임 횟수 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원도 같은 직책에서 3년 이상
- 7 연속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임면 후보자 심사에 있어 구역회의 책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에 안수 사역 후보자에 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면, 해당 요구 사항이 ¶ 505 및 ¶ 506.1에 있는 요구 사항과 상충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역회가 후보자를 심사할 때 ¶ 505 및 ¶ 506.1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표현은, 따라야 할 단락 번호를 명시할 경우 항상 전제로 해석되므로, 여기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항은 구역회가 매년 안수받은 사역 후보자의 임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506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 506이 구역회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지 않는 한, 이 문장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9.7을 수정하고 ¶ 439.8을 삭제합니다

7.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여, 최소 1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이전 교단에서 양호한 자위를 가진 교인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으며,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통해 후보자임이 명확히 입증되고, 교육 요건을 충족한 안수 사역 후보자를 조사하여 사역 위원회에 추천해야 합니다. 구역회는 ¶ 505 및 ¶ 506.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안수받은 사역 후보자를 심사하고 사역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안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교회의 믿음과 증거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개체교회는 의도적으로 안수 사역을 위한 후보자를 육성하고, 영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사역을 위한 섬기는 지도자로 교육하고 양성해야 한다.
8.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안수 목사 후보자의 입후보를 갱신할 것을 검토하고 권고해야 한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후보자 추천 과정 명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글로벌의 행정에 시행 가능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신학적이고 이상적인 언어와 행정 요건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또는 지침 자료에 더 적합한 설명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제거하는 동시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구역회의 필수적인 기능은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39.7을 대체합니다

- 1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최소 1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그 전임 교단들에서 양호한
- 2 지위를 가진 교인으로 고백해 온 안수 사역 후보자를 조사하고 목회(안수)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사람이 안수 사역에
- 3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교회의 믿음과 증거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개체교회는 의도적으로 안수 사역을
- 4 위한 후보자를 육성하고, 영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사역을 위한 섬기는 지도자로 교육하고
- 5 양성해야 한다.
- 6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조항에 따라 안수 사역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사역 위원회에 추천해야 합니다.

구역회에서 신고를 명확히 함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10항은 구역회가 미션 팀 신고를 연례 통계 신고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연례 통계 신고에 대한 다른 모든 참조는 오직 멤버십 신고만을 요구합니다. 또한, .13항에서 해당 신고를 “목사/목회자 신고”로 분류하는 것은 혼동을 줍니다. 이는 목사/목회자의 멤버십 신고로 분류되어야 하며,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술하는 단락들을 명시적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항에서 구역회가 멤버십 신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목사/목회자가 ¶ 422.4에 따라 회원 제명을 추천하거나, ¶ 422.5에 따라 모든 회원이 매년 서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경우이므로, 승인 필요성에 대한 명확화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9.10 및 ¶ 439.13을 수정합니다

- 1 10. 구역회는 매년 모든 지역 교회 조직 미션 팀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정기 연례 지역 교회 통계 신고를 통해 통합
- 2 신고로 전달해야 합니다.
- 3 13. 구역회는 목사로부터 교인에 관한 연례 보고를 받아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구역회는 목사/목회자의 연례 멤버십
- 4 신고(¶ 422.4-5 및 ¶ 430)를 접수하고, 필요시 심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구역회의 목회자 보상 결정 권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본 항은 현재 교회의 파송된 목회자의 보상을 정하는 데에만 구역회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배치하여 섬기고 있으므로, 구역회는 이들의 보상 또한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목사가 있는 교회의 경우, 교회에 배정되거나 파송된 모든 목사의 보상이 구역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9.11을 수정합니다

11. 구역회는 지방감리사(PE)와 협의하여 파송된 목회자의 사례비를 정한다. 구역회는 감리사와 협의하여, 파송된 모든
- 목회자와 배정된 평신도 사역자의 보상을 정합니다.

구역회가 연대 기금에 대해 설명할 의무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이 조항은 구역회에서 연대 기금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449.9에서는 목사/목회자와 교회 지도부가 연중 내내 연대 기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역회에서는 감리사 또는 그 지정인이 연대 기금으로 연회와 총회에서 지원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연대 기금이 중요하며 모든 교회가 이를 납부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449 참조), 연대 기금이 지역 교회의 첫 번째 자선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마지막 문장은 장정의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 않으며, 지역 교회가 연회 및 총회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39.12를 수정합니다

12. 구역회를 준비할 때, 연회의 지방감리사(PE), 목사, 평신도 연회대표 및/또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는 연대 기금의
- 중요성을 해석하고, 각 연회가 지원하는 이유와 교단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위치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개체 교회의
- 연대 기금 전액 납부(¶ 449)는 교회의 첫 번째 선의의 책임이다. 구역회에서, 감리사 또는 그 지정인이 연대 기금의
-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회와 총회에서 연대 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역들을 강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 지도자의 기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 437.2에 포함된 정보를 반복하므로, 여기에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0을 수정합니다

- 1 ¶ 440. 지도자 선출. 구역화나 교인 총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고백교인으로
- 2 개체 교회에서 봉사할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로 선출한다. 담임 또는 교회 총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 3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 투표로 선출합니다.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여성, 남성, 청소년, 청년, 65세 이상, 장애인, 다양한 인종,
- 4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체 교회 임원직은 두 사람이
- 5 공유할 수 있다.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료성: 교회 지도자 선거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맥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으며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표성에 관한 규범적이고 문화적으로 특정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 선거를 위한 핵심 요구 사항은 보존하면서, 시행이 불가능하고 『교리와 장정』의 다른 곳에서 다루어지는 권고적 성격의 문구는 삭제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0을 대체합니다

- 1 구역회나 교인 총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고백교인으로 개체 교회에서 봉사할
- 2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로 선출한다.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여성, 남성, 청소년, 청년, 65세 이상, 장애인, 다양한 인종, 민족
- 3 또는 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체 교회 임원직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 4 있다.
- 5 구역회나 교인 총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고백교인으로 개체 교회에서 봉사할
- 6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로 선출합니다.

지역 교회 지도자의 기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구역회는 최소 10일 전에 소집될 수 있으며, 지방감리사들은 다양한 책임들로 인해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자를 해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하다면 지방감리사가 공식적으로 구역회를 소집하기 전에 NLDC가 신속하게 모일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단락에서는 "church local con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장정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혼동을 줍니다. 저희는 본 개념을 "지역 구역 또는 교회 총회"로 정의한 ¶ 438.8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여기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1을 수정합니다

- 1 구역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나 임원이 그러한 지도자나 임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 2 의사가 없는 경우, 지방감리사(PE)는 특별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회의의 목적은 "임원의 해임 및 공석을
- 3 채울 임원의 선출을 위한 심의"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천 및 리더십 개발 위원회 또는 그 책임을 맡은 다른 그룹은 특별
- 4 구역회가 발표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열고 구역회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안해야 한다
- 5 구역회를 준비함에 있어,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또는 그 책임을 맡은 다른 단체는 구역회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 6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구역회가 한 사람을 해임하기로 투표하는 경우, 공석은 선거에 규정된
- 7 방식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개체교회 재단 이사의 해임을 고려 중이고 목회 책임이 두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경우,
- 8 구역회 대신 개체교회 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개체교회 재단 이사의 해임이 고려되고 사목 책임이 두 개 이상의 교회로
- 9 구성된 경우에는 구역회 대신 지역 구역 또는 교회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지역 교회 지도자의 의무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항 내의 모든 직위 설명은 의무를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 선거 과정, 그 다음 책임을 제시하며, 필요시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타 몇 가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c에서 구역회 언급은 불필요합니다. 모든 교회 협의회 회원은 구역회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2) .3의 위원회 의장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는 주석은 ¶ 437.2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합니다. (3) 평신도 지도자의 가족이 교회 직원이거나 교회에 파송된 경우, 해당 평신도 지도자는 S/PPRC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2 전체, 이를 대체 다음으로 다음 내용을 대체합니다

- 1 ~~¶ 442. 평신도 지도자의 의무~~ 1. 각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 중에서,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하며, 그 평신도
- 2 지도자는 해당 지역 교회 내 평신도를 대표하는 주요 평신도 대표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교회
- 3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지역 사회, 세상에서의 사역을 통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앙 공동체 내 아
- 4 모든 사역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b) 목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회의 상태와 사역 필요성에 관해 논의함; c)
- 5 평신도 지도자는 구역회, 교회 협의회, 재정위원회,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목회 협력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목사와
- 6 함께 연회 및 교회 전체의 결의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해 해설자 역할을 담당함(이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
- 7 지도자가 연회의 평신도 회원으로도 섬길 것이 권장됨); d)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 8 사역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e) 지역 사회 내에서 평신도를 통해 더
- 9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하기 위한 기회와 표출된 필요를 교회 협의회에 자문함; f) 연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 10 평신도에게 안내함. 가능하면 평신도 지도자는 자신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회에 참석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는
- 11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을 권장한다. 한 구역이 한 교회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추가로
- 12 선출하여 각 교회에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게 해야 한다. 준평신도 지도자는 각 개체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 13 일하도록 선출되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g) 평신도 지도자는 각 지역 교회의 재량에 따라 교회 임원회 또는 기타
- 14 처리회의 의장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2. 연회의 평신도 회원 및 대체 회원은 매년 또는 총회의 회기와 일치하도록 선출될
- 15 수 있습니다. 연회 평신도 대표가 해당 교구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 16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대표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신도 대표와 대체 대표 모두 글로벌
- 17 감리교회 또는 이전 교단의 양호한 고백교인으로 2년 이상 활동했거나, 새로 조직된 교회를 제외하고는 선출 직전 4년
- 18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의 일부가 된 교회는 연회에서 평신도 대표권을 박탈당하지
- 19 않습니다. 연회의 평신도 대표(들)은 목회자와 함께 연회 조차의 해설자로 봉사한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연회의
- 20 조차에 대해 교회 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교회 협의회 또는 행정위원회 의장은 매년 구역회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 21 의장은 자신이 섬길 지역 교회의 글로벌 감리교회 고백 교인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협의회가 책임을
- 22 다하도록 이끌기; b)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및 기타 적절한 사람들과 협의하여 협의회 회의의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 23 통지하기; c) 협의회가 취한 결의 사항의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책임 부여; d) 협의회의 회원들과 기타 적절한 아들과
- 24 소통하여 협의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 협의회의 다양한 행사를 조정함; f) 협의회가 계획,
- 25 목표 및 목적 수립, 사역 평가에 참여할 때 주도적 역할 및 지도력 제공; g) 연회 및/또는 지방에서 제공하는 리더십 훈련
- 26 프로그램에 참여함. h) 교회 임원회 의장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 특별한 제한되지 않는 한 교회의 모든 아사회 및 위원회
- 27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의장은 연회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4. 대체행정 체제를 가진 교회에서는 목회협력위원회,
- 28 재정위원회 및 재단이사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표할 사람들을 지명해야 합니다.

29 ¶ 442. 지도자의 의무. 각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 중에서, 구역회는 다음의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30 1. 평신도 지도자는 해당 지역 교회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주요 평신도 대표로 기능합니다. 한 구역이 한 교회 이상을
31 책임지고 있는 경우,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각 교회에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게 해야 한다.
32 준평신도 지도자는 각 개체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일하도록 선출되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는
33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되도록 권고되며, 지역 교회의 재량에 따라 교회 협의회 또는 기타 행정기구의 의장을 겸임할 수
34 있습니다.

35 평신도 지도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36 교회 내 및 가정, 직장, 지역 사회, 세계에서의 사역을 통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37 이러한 모든 사역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8 목회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회의 현황과 사역의 필요를 논의함;

39 평신도 지도자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 교회 직원이거나 다른 위원회 회원, 목회자, 직원과 직계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회원
40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한, 교회 협의회, 재정위원회,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목회 협력 위원회의 회원으로 섬깁니다.
41 목회자와 함께 평신도 지도자는 연회 및 교회 전체의 결의 사항과 프로그램을 지역 교회에 해설하는 역할을 맡으며(이
42 책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가 연회 평신도 회원으로도 섬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43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사역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훈련 기회에
44 지속적으로 참여함;

45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를 통해 더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위하여 가능한 기회와 제기된 필요에 대해 교회 임원회에 조언함;

46 연회에서 제공하는 연수 기회를 평신도에게 알립니다.

47 2. 연회의 평신도 회원은 자신의 구역을 대표하여 연회의 정기 및 임시 회기에 참여하며, 목회자와 함께 연회의 결의 사항을
48 해설하는 역할을 맡고, 연회 회기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교회 협의회에 보고합니다. 필요 시 대체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49 연회 평신도 회원이 구역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어떤 사유로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출 순서에 따라 대체
50 대표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모든 평신도 회원과 대체 대표는 그들이 섬기는 지역 교회에서 최소 2년 이상 양호한
51 고백 교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 직전 4년간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어야 합니다.
52 단, 새로 조직된 교회는 예외로 합니다.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의 일부가 된 교회는 연회에서 평신도 대표권을 박탈당하지
53 않습니다.

54 3. 교회 협의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55 임원회의 책임을 다하도록 임원회를 이끍니다;

56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기타 적절한 이들과 협의하여 임원회 회의의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통지함;

57 임원회가 취한 결의 사항의 이행을 검토하고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58 임원회 회원 및 기타 적절한 이들과 소통하여 임원회에서 충분히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9 임원회의 다양한 행사를 조정합니다;
- 60 임원회가 계획, 목적 및 목표 설정, 사역 평가를 수행할 때 주도성과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 61 연회 및/또는 지방에서 제공하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62 교회 협의회 의장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교회의 모든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 63 있습니다. 의장은 연회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 64 4. 대체 행정 체계를 가진 교회, 회중에서는 본 항에 기술된 모든 역할과 목회 협력 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 이사회가
- 65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대표할 개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재무와 재정 비서의 필요성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재무와 재정 비서 직책은 재정위원회 설명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역할과 필수 여부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책으로 ¶ 442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4항, 5항의 하위항목으로 배치하고, 기존 4항을 6항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2를 수정하여 새 ¶ 442.4 및 442.5를 추가하고 남은 하위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4. 재정 비서: 헌금을 계수하는 담당자를 감독하고, 모든 수령 자금이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 2 예치되도록 하며, 모든 공헌과 수령 자금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구역회는 재정 비서의 일부 또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 3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는 교회 협의회, 목회 협력 위원회,
- 4 재정위원회 혹은 재단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재정 비서 직책은 재무와 한 사람이 겸임할 수
- 5 없으며, 이 두 직책을 맡은 자는 직계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떠한 목사의 직계 가족도 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또는
- 6 구역에서 재정 비서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 7 5. 재무: 모든 미지정 자금을 지역 교회 예산에 따라 지출하고, 지정된 자금은 지정에 따라 분배하며, 모든 연회와 교단의
- 8 연대 기금 및 자선금액을 매월 연회 재무 또는 해당 기관에 송금하고, 수입 및 지출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 및
- 9 교회 협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합니다. 재무는 지역 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되어야 합니다.
- 10 구역회는 재무의 일부 또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11 고용된 자는 교회 협의회, 목회 협력 위원회, 재정위원회 또는 재단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재무
- 12 직책은 재정 비서와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없으며, 이 두 직책을 맡은 자는 직계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떠한 목사의 직계
- 13 가족도 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또는 구역에서 재무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공인평신도 사역자 요건

청원자: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올네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의 문구는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변경은 그것이 반드시 요구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2.1.f를 수정합니다

- 1 1.
- 2 연회에서 제공하는 연수 기회를 평신도에게 알립니다. 가능하면 평신도 지도자는 자신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 3 기회에 참석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는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을 권장한다. 한 구역이 한 교회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 4 경우,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각 교회에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게 해야 한다. 준평신도 지도자는
- 5 각 개체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일하도록 선출되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지역 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임기 제한 설정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버지니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 지역 교회들의 생명과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목사/목회자와 함께 사역의 파트너로 봉사합니다. 이 역할이 건강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은 평신도 지도자 역할에 대한 임기 제한을 제안하며, 이는 이미 규율 내에 정해진 SPRC 및 재단 이사 회원 등과 임기 제한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단, 평신도 지도자는 매년 선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2.1을 수정합니다

- 1 ¶ 442. 지도자의 의무. 1. 각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 중에서, 구역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하며, 이 평신도 지도자는
- 2 해당 지역 교회 평신도의 주요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각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 중에서, 평신도 지도자는
- 3 구역회에서 매년 선출되며, 해당 지역 교회 평신도의 주요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연속하여 최대
- 4 6년까지 선출될 수 있으며, 이 임기가 끝나면 최소 1년간은 그 직을 비워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평신도 지도자로 선출될
- 5 자격이 주어집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없는 광범위한 권고적 표현, 역할 설명 및 프로그램 관련 기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평신도 지도자의 선출과 인준에 대한 핵심 요구 사항은 보존하면서, 지역 또는 연회 차원에서 더 잘 결정될 수 있는 세부적인 의무는 삭제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42.1을 대체합니다**

- 1 각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 중에서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 한 명을 선출해야 하며, 그 평신도 지도자는 해당 지역 교회에서
- 2 평신도의 주된 대표로서 기능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회중 내에서, 그리고 가정, 직장, 지역 사회, 세상에서의
- 3 사역을 통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 모든 사역을 인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 (b)
- 4 교회의 현황과 사역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목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c) 구역회, 교회 협의회, 재정위원회, 공천
- 5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목회 협력 위원회의 위원으로 섬기며, 목사와 함께 연회와 총교회의 결의 사항과 프로그램을
- 6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가 연회의 평신도 회원으로도 섬길 것을 권장함);
- 7 (d)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수할 사역 유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 및 훈련
- 8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e) 지역 사회에서 평신도를 통한 교회의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가용한 기회와 표명된
- 9 필요성에 대해 교회 협의회에 조언하는 것을 돕는 것; (f) 연회에서 제공하는 훈련 기회에 대해 평신도에게 알리는 것.
- 10 가능하면 평신도 지도자는 자신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회에 참석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는 공인 평신도
- 11 사역자가 될 것을 권장한다. 한 구역이 한 교회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각
- 12 교회에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게 해야 한다. 준평신도 지도자는 각 개체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일하도록
- 13 선출되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g) 평신도 지도자는 각 지역 교회의 재량에 따라 교회 임원회 또는 기타 처리회의 의장을
- 14 겸직할 수도 있다.
- 15 각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 중에서, 구역회는 해당 지역 교회에서 평신도의 주된 평신도 대표로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를
- 16 선출해야 합니다.

연회 평신도 대표에 대한 멤버십 기간 요건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것은 지역 교회에서 장정에 의해 멤버십 기간이 요구되는 유일한 담당자/사무실입니다. 이는 중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교회와 구역회는 연회에 파견할 그들의 교회, 회중 중에 누구를 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2.2를 수정합니다

- 1 평신도 연회 대표 및 교체 대표는 연례적으로 또는 교단의 총회와 일치하도록 선출될 수 있다. 연회 평신도 대표가 해당
- 2 교구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대표이 그 자리를
- 3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신도 대표와 대체 대표 모두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아전 교단의 양호한 교백교인으로
- 4 2년 이상 활동했거나, 새로 조직된 교회를 제외하고는 선출 직전 4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공동
- 5 사역의 일부가 된 교회는 연회에서 평신도 대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연회의 평신도 대표(들)은 목회자와 함께 연회
- 6 조치의 해설자로 봉사한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연회의 조치에 대해 교회 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료성: 연회 대표 파송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에는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연회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한 상세한 절차, 자격,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고 시행 불가능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동시에 평신도 대표 파송에 대한 핵심 요구 사항은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2.2를 대체합니다

- 1 연회의 평신도 회원 및 대체 회원은 매년 또는 총회의 회기와 일치하도록 선출될 수 있습니다. 연회 평신도 대표가 해당
- 2 교구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대표가 그 자리를
- 3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신도 대표와 대체 대표 모두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이전 교단의 양호한 고백교인으로
- 4 2년 이상 활동했거나, 새로 조직된 교회를 제외하고는 선출 직전 4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공동
- 5 사역의 일부가 된 교회는 연회에서 평신도 대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연회의 평신도 대표(들)은 목회자와 함께 연회
- 6 조차의 해설자로 봉사한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연회의 조차에 대해 교회 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7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조항에 따라 연회에서 지역 교회를 대표할 평신도 회원 한 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교회 협의회 의장의 기간 제한 설정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버지니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교회 협의회 의장은 지역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입니다. 건강한 시스템의 기능과 지도력의 적절한 순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청원은 교회 협의회 의장 역할의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SPRC와 재단 이사의 기간 제한과 일치하게 되며, 교회 협의회 의장은 계속해서 매년 선출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2.3을 수정합니다

3. 교회 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구역회에서 선출한다. 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 의장은 연속적으로 6년을
-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끝나면 최소 1년간 담당자 직을 비워야 다시 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 의장으로
-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임원회장은 섬기는 글로벌 감리교 개체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대체행정 체제에 있어서의 구성원 기준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개체교회가 대체행정 체제를 채택하는 경우,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2.4를 수정합니다

- 1 대체행정 체제를 가진 교회에서는 목회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재단이사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표할 사람들을
- 2 지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회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이사회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한 자격
- 3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회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이사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표할 사람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 4 경우, 그 운영 기구의 모든 구성원은 세 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회 협의회의 역할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섹션의 세 번째 문장은 대부분 중복되며, 교회 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첫 번째 문장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문장에서 "its"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교회 협의회를 참조하는지 교회를 참조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 협의회의 조직은 구역회에서 결정되며, 마지막 문장은 교회 협의회가 구역회의 행정 대행사임을 명시하므로, 둘째 문장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둘째 문장의 "임시적 삶(temporal life)"이 포함되도록 마지막 문장을 재작성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3.1를 수정합니다

1. 교회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치리 기관은 지역 교회에서 양육, 아웃리치, 증언, 자원을 통해 복음화와 성경적 거룩함
2. 확산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과 현세적 생활에 대한 관리도 규정해야 합니다.
3.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구상, 계획, 실행하고 매년 평가합니다. 교회 임원회는 구역회의 행정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4.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5. 1. 교회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치리 기관은 지역 교회에서 양육, 아웃리치, 증언, 자원을 통해 전도, 제자도, 성경적
6. 거룩함 확산의 사역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고, 해마다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 협의회는 구역회의
7. 행정 대행사로서, 교회의 임시적 삶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프로그램 사역 설명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 및 조직적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는 사역 분야와 프로그램적 기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교리와 장정에 포함되기보다는 교육, 지침 또는 지역적 적응에 더 적합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3.2를 삭제합니다

- 1 선교와 사역—양육, 아웃리치, 증거 사역 및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회중의 양육 사역은 교육, 예배,
- 2 그리스도인 훈련, 교인 관리, 소그룹 및 청지기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 3 개인과 가족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교회의 봉사 사역은 공회, 정의, 옹호의 지역 및 더 큰 공동체 사역에
- 4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c) 교회의 전도 사역은 기독교 경험, 신앙, 봉사에 대한 개인 및 회중의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공인
- 5 평신도 사역자, 기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표현하는 수단을 공유하는 복음 전도 노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 6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지도력 개발 및 자원 조달 사역은 교회 사역을 위한 평신도 및 목회자 지도자의 지속적인 준비와
- 7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 협의회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여러 명의 목사가 있는 교회의 경우, 교회 내 모든 목사가 아니라 오직 담임 목사만이 교회 협의회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3.3을 수정합니다

- a. 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의장 또는 담임 목사는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회 협의회 회의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에는 글로벌의 행정력에 필수적이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적인 일정 요구 사항과 의사 결정에 관한 권고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및 의사 결정 관행에 유연성을 허락하면서,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수행할 교회 협의회 권한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3.3을 대체합니다

- 1 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의장 또는 담임목사는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는 성령의
- 2 인도하심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합니다. 의장의 의견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 3 단순 과반수를 기준으로 투표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교회 협의회는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수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 5 있습니다.

주택 및 복지제도 검토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교단의 은퇴 복지제도는 엄격히 미국 중심적이며, “연금”이 아닙니다. 교단이 전 세계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문구를 삭제하고 각 연회가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주택 정책을 발표하도록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3.4.(e)를 수정합니다

- 1 목회 협력 위원회의 목사(들)를 위한 적절한 주택 제공에 관한 권고를 검토하고, 이를 구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 2 바랍니다. 주택 제공은 연회 주택 정책 및 목사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은 교단 연금 및 복지 플랜에 규정된 경우를
- 3 제외하고는 보상 또는 보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교회 협의회 책임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은 상세한 절차적 요구 사항과 특정 상황에 맞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회나 지역 차원에서 더 잘 다루어질 수 있는 중복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통일되지 않은 조항들을 삭제하는 동시에, 교회 협의회 책임의 핵심적인 행정 및 재정적 책임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3.4를 대체합니다

- 1 또한 교회 협의회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역 교회의 교인 자격을 검토합니다; (b) 연례 구역회 회기 사이에
- 2 발생하는 교회의 평신도 임원 공석을 임시로 채웁니다; (c) 재정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의 권고에 따라 예산을
- 3 수립하고 교회의 재정적 필요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보장합니다; (d) 목회 협력 위원회(또는 직원-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 4 그에 상응하는 기구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목회자(들)와 직원들의 급여 및 기타 보수를 구역회에 추천합니다; (e)
- 5 목회자(들)를 위한 적절한 주택 제공에 관한 목회 협력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승인을 위해 이를 구역회에 보고합니다.
- 6 주택 제공은 연회 주택 정책 및 목사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은 교단 연금 및 복지 플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7 보상 또는 보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 8 교회 협의회는 평신도 임원의 임시 공석을 채우고, 교회 예산을 수립하며, 목회직과 직원직에 대한 보수를 구역회에
- 9 추천해야 합니다.

주택 및 복지제도 검토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교단의 은퇴 복지제도는 엄격히 미국 중심적이며, “연금”이 아닙니다. 교단이 전 세계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문구를 삭제하고 각 연회가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주택 정책을 발표하도록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3.4를 수정합니다

- 1 목회 협력 위원회의 목사(들)를 위한 적절한 주택 제공에 관한 권고를 검토하고, 이를 구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 2 바랍니다. 주택 제공은 연회 주택 정책 및 목사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은 교단 연금 및 복지 플랜에 규정된 경우를
- 3 제외하고는 보상 또는 보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글로벌의 단결, 지역의 유연성: 위원회 멤버십 및 정족수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들은 다양한 글로벌의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수치적 요구 사항, 구조적 가정 및 상세한 구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멤버십을 결정하는 구역회의 권한을 보존하고 명확한 정족수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고 제한적인 조항은 삭제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3.5 및 ¶ 443.6을 삭제하고 새 ¶ 443.5를 추가합니다

- 1 구역회는 교회 협의회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교회 임원회 회원은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임원회의
- 2 구성원은 최소 8명 또는 구역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만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는 목회자-교구 협조, 교회의
- 3 재정, 교회의 재산 및 자산 관리, 평신도 대표, 연회의 평신도 대표, 임명된 모든 목회자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4 정식으로 공고된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이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 5 구역회는 교회 협의회의 멤버십을 결정합니다. 정족수는 정식으로 소집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의 멤버십 및 목적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첫 번째 섹션에서는 현재 NLDC가 고용된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회 협의회를 지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명확성을 위해 이 금지 조항에 목사/목회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둘째 섹션은 혼란스럽고 장황하므로, 우리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표현을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위원회에서 언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NLDC 회원에 대한 규칙이 평신도 지도자에게 적용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가족 관련 제한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4.1, ¶ 444.2 및 ¶ 444.4를 수정합니다

1.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는 교회 협의회가 회중의 지도력(목사/목회자 및 고용된 직원을 제외한)에 관한 사항을
- 2 인도하도록 연중 내내 봉사하며, 봉사의 맥락으로서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 지도자의 개발과 훈련을 인도하고,
- 3 영적 지도자를 모집 · 양육 · 지원하며, 교회 협의회가 변화하는 지도력 필요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4 2.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교회 협의회 임원 및 지정된 사역의 지도자로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과
- 5 교단의 교리와 장정 아 요구하는 대로 또는 구역회가 그 사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구역회에 추천한다.
- 6 2. 위원회는 구역회의 연례 회기에서 교리와. 장정에서 요구하는 교회 임원들과, 교회 협의회나 구역회가 원하는 모든 교회
- 7 사역의 지도자들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 8 3. 목사/목회자가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출된 평신도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는다.
- 9 4.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멤버십을 세 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한 조는 매년 3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10 평신도 지도자는 이 위원회의 3년 임기가 면제된다. 임기를 마친 위원은 위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위원회에는 같은 가구에
- 11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는 위의 가족 관계로 제한을 받는 경우 위원회의
- 12 회원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연중 결원이 발생하면 교회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 13 5. 신원 확인 및 선정 과정에서, 사역의 지도력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료성: 리더십 개발 구조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여기에는 글로벌 행정에 있어 시행이 불가능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광범위한 이상적, 신학적, 그리고 프로그램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상세한 구조적 요구 사항과 규범적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필수적이고 중복적이며 과도하게 규범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리더십 추천의 핵심 기능과 해당 기능에 대한 목회적 감독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1) 글로벌 통일성을 요구하고, 2) 지역 교회를 강화하며, 3) 제자 양성과 부합하고, 4) 구조가 사명에 기여하도록 유연성을 허용하며, 5) 명확하고 시행 가능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44를 대체합니다**

- 1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연회에서 매년 개체 교회 고백교인들로 구성된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또는 이와
- 2 동등한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할당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책임은 개체교회 회중을 위한
- 3 기독교 영적 리더십을 식별, 개발, 배치,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위원회 회원은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자신의 기독교
- 4 영적 삶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회의 사명, 주요
- 5 임무 및 개체 교회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성찰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 교인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식별할 수 있는
- 6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교회 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와 협력하여 교회의 다양한 사역 과제와 리더십에
- 7 필요한 기술을 파악한다. 1.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는 봉사의 맥락으로서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 지도자의
- 8 개발과 훈련을 지도하며, 영적 지도자를 모집, 양육 및 지원하고, 변화하는 지도력 필요를 평가하는 데 교회 임원회를 돕기
- 9 위해 교회의 지도력(고용된 직원 제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중 내내 봉사한다. 2.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교회의 사역에
- 10 필요한 교회 협의회 임원 및 지정된 사역의 지도자로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과 교단의 교리와 장정 아 요구하는 대로 또는
- 11 구역회가 그 사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구역회에 추천한다. 3. 목사/목회자가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출된
- 12 평신도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는다. 4.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멤버십을 세 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한
- 13 조는 매년 3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마친 위원은 위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위원회에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 14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연중 결원이 발생하면 교회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5. 신원 확인 및
- 15 선정 과정에서, 사역의 지도력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16 구역회는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한 그룹에 책임을 맡겨 지역 교회의 사역을 위한 지도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 17 의장이 됩니다.

목사 교체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투표를 요구합니다.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목회자/사역자/성직자 교체 과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된 우려 사항이 목사/목회자 및 감리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변경 요청이 투표를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문:**본 청원은 ¶ 445.8.(i)을 수정합니다**

- 1 (i) 목회자의 변경이 교회와/또는 목회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경우, 목회자와/또는 파송된 다른
- 2 직원과 의논합니다. 위원회는 목회자(들), 지방감리사(PE), 감독과 협력하여 목회자의 파송을 책임져야 한다. 감리사 및
- 3 감독과의 관계는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위원회는 관련된 목회자와 먼저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그 우려를 정리한 서면
- 4 요약을 목회자와 감리사에게 제공하기 전에는, 목회자 교체를 감리사나 감독에게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 5 (i-1) 위원회에서 목회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한 투표자 회원의 최소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
- 6 서면 문서가 필요합니다.

PPRC 멤버십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저희는 4가지 변경을 건의합니다. (1) PPRC가 위원회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는 반드시 개인이나 그룹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SPRC로 구성될 경우, 프로그램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영적 성장에 유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PPRC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에게 기대되어야 합니다. (4) .2항에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위원회의 "자동" 회원이 된다고 현재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족 구성원이 PPRC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대에 따른 멤버십 제한은 평신도 지도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4항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5.1, ¶ 445.2, 및 ¶ 445.4를 수정합니다

1.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연회에서 매년 개척 교회 또는 구역의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목회 협력 위원회 혹은
2. 목사-교구 협력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배당할 수 있다. 구역회는
3. 매년 지역 교회 또는 구역의 고백 교인들로 구성된 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선출해야 하며, 또는
4.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 외에 추가 프로그램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위원회를
5. 직원 관계 위원회로 구성하여 동일한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6.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기독교 영성 개발에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7. 사역의 가치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 지역 교회의 주요 임무와 사역, 그리고 목회자와 교역자가 리더십
8.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의 역할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성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9. 2. 목회자나 직원, 직원 또는 직계 가족은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10.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는 자동으로 위원회 위원아 된다. 평신도 지도자는 위 요구 사항에 의해
11. 금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12. 4. 교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위원회에는 각 개체 교회의 대표와 평신도 지도자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가 한
13. 개 이상인 구역의 경우, 각 지역 교회에서 최소 두 명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 교회의 평신도
14. 지도자는 ¶ 445.2의 요구 사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대표자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목회 협력 위원회 구조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에는 강제할 수 없으며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은 제자도에 대한 기대, 신학적 성찰 및 프로그램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필수적이고 서술적이며 특정 상황에 국한된 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목회 지도력과 회중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은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445.1을 대체합니다**

- 1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연회에서 매년 개척 교회 또는 구역의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목회 협력 위원회 혹은
- 2 목사-교구 협력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배당할 수 있다. 교회에서
- 3 담당 목사 외에 프로그램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원 관계 위원회로 구성하여 동일한 책임을 맡길 수
- 4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기독교 영성 개발에
- 5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역의 가치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
- 6 지역 교회의 주요 임무와 사역, 목회자와 교역자의 역할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성찰을 통해 리더십 책임을
- 7 수행해야 한다.
- 8 구역회는 목사, 직원, 회중 간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립하거나, 그 책임을
- 9 한 그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PPRC 회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우리는 4가지 변경을 권고합니다: (1) 협동 본당에 속한 PPRC는 최소 연 1회 이상 모여야 합니다. (2) .6항 및 기타 부분에서 “목사/목회자”를 언급할 때, 여러 명의 목사가 있는 교회의 경우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를 지칭해야 합니다. (3) .6항에서는 CS가 담임 목사 없이도 PPRC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와 만날 수 있는 사람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PE(감리사)가 담임 목사 없이 PPRC와 만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장로목사를 지정하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4) 하나의 교회 회원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일 때 적용되는 규칙은 전체 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하지 않고 .6항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5.5, ¶ 445.6, 및 ¶ 445.7을 수정합니다

- 1 5. 협동 본당 사역에 속한 구역들의 목회 협력 위원회는 협동 본당 사역 전체의 전문적 리더십 필요를 고려하기 위하여 최소
- 2 연 1회 함께 모이거나, 하나의 본당 전체를 위한 목회 협력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3 6.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감독, 감리사, 담임 목사, 기타 위원회 책임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 4 있을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담임목사는
- 5 자발적으로 불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고려 중인 파송된 목회자가
- 6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감리사(PE)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중인 파송된 목회자는
- 7 지방감리사(PE)와의 만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직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 8 감독, 감리사, 담임 목사, 기타 위원회 책임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회는
- 9 담임 목사가 인지한 상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자진하여 회의에서 스스로를 제외하지 않는 한,
- 10 위원회의 모든 회의 전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제외한 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 11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담임 목사 없이도 감독, 총리사, 감리사, 장로목사 또는 그 지정인과 만날 수
- 12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되는 목사/목회자는 해당 회의 전에 반드시 통보를 받아야 하며, 그 직후 즉시 상담을 받아야
- 13 합니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만나야 하며 위원회에서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 14 7. 둘 이상의 교회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한 교회만이 공유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목사 또는
- 15 위원회 또는 지방감리사(PE)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과 별도로 만날 수 있지만 목사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둘
- 16 이상의 교회를 포함하는 구역에서 단 한 교회만이 공유하고자 하는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교회 위원회의 회원은
- 17 ¶ 445.6의 요구 사항을 따라 별도로 모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유연성: 위원회 회의 요구 사항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필수적이지 않은 일정, 출석 및 협의에 관한 상세한 절차적 요구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권한을 보존하고 목회적 감독을 유지하며, 필수적이지 않고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항은 삭제하면서도 기밀 유지라는 중요한 요구 사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5.6을 대체합니다

- 1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감독, 감리사, 담임 목사, 기타 위원회 책임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담임목사는 자발적으로 불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고려 중인 파송된 목회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감리사(PE)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중인 파송된 목회자는 지방감리사(PE)와의 만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직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만나야 하며 위원회에서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 7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목사의 인지 하에 개최되어야 하며, 면제되지 않는 한 목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PPRC의 의무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PPRC의 다양한 의무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장정의 다른 조항들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1) .8.h는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후보자, 선교사의 연례 갱신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500번째 ¶에는 현재 이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이 요구 사항은 이곳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8.h의 직무에 배제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자질 목록은 이미 해당 사역을 설명하는 조항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합니다. (3) .8.i는 ¶ 610의 파송 과정과 보다 잘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8.k는 현재 모든 평신도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및 퇴직 급여에 대한 권장 사항과, 반 근무 시간 이상인 모든 직원에 대한 연금 혜택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유연성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3.8.d, ¶ 703.8.f, ¶ 703.8.h, ¶ 703.8.i, ¶ 703.8.j, ¶ 703.8.k, 및 ¶ 703.8.m을 수정합니다

1 8.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목회자와 직원 및 그 가족을 격려하고, 강화하고, 양육하고, 지원하고, 존중한다.

3 교회의 단합을 촉진한다.

4 목회자(들)와 직원들과 그들의 사역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언한다. 그들의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5 평가한다. 은사, 기술 및 시간 사용의 우선 순위; 회중과의 관계; 사역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 개인의

6 건강 및 자기 관리; 그리고 사역의 성격과 기능을 회중에게 해석하는 동시에 교회의 필요, 가치 및 전통을 목회자와

7 직원에게 설명한다.

8 목회자와 직원의 유용함에 대해 적어도 매년 평가를제공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사역과 연장 교육 필요와 계획을 확인한다.

9 목회자 및 직원의 사역 효과 증진과 계속 교육의 필요와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합니다.

10 열린 순회목회 및 안수 사역 준비에 관한 글로벌감리교회 사역의 본질과 역할을 회중에게 전달하고 설명해 준다.

11 담임목사와 협력하는 부목사 및 기타 직원들을 위한 서면 업무분장 및 직함을 개발하고 승인한다.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12 부목사 및 기타 직원들을 위한 서면 업무분장 및 직함을 개발하고 승인합니다. 부목사라는 용어는 담임 목사 이외의

13 개체교회에서 목회 파송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위원회는 부목사를 위해 업무분장과 기대치를 반영하는

14 특정 직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15 목사 및/또는 직원이 직업적,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자기 관리 및 영적 갱신 행사에 참석하도록

16 필요한 시간과 재정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임원회와 협의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인증을 받도록

17 권장한다.

18 구역회에 평신도 사역자와 안수 사역 후보자들을 매년 모집, 면접, 평가, 검토 및 추천하고, 선교사 사역 후보자들을

19 모집하여 적절한 위원회나 협의회에 위임하며, 글로벌 감리교회는 이러한 사역에 대해 성별, 인종, 민족 또는 부족 출신,

20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지원함을 확인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목사 또는 목회 협력

21 위원회의 어떤 회원도 직계 가족의 후보 신청 혹은 갱신 심사 시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안수 사역, 평신도 사역

22 및/또는 선교 봉사를 준비하는 구역회내 사람들의 명단을 구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여
23 구역회에 각 사람에 대한 (안수/파송) 진행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4 담임목사 및/또는 기타 임명된 직원과 상의하여 담임목사의 변경으로 인해 책임자 및/또는 담임목사에게 최선의 이익이
25 제공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담임목사 및/또는 다른 직원과 상의한다. 위원회는 목회자(들), 지방감리사(PE), 감독과
26 협력하여 목회자의 파송을 책임져야 한다. 감리사 및 감독과의 관계는 자문 역할에 한합니다(¶ 610.7). 위원회는 먼저
27 해당 목회자와 우려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방감리사(PE) 또는 감독에게 담임 목회자의 교체를 추천해서는 안된다. 담임
28 목사 및/또는 부목사와 의논하여 담임 목사의 변경이 구역 및/또는 목회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면 논의합니다.
29 위원회는 목사/목회자들, 감리사, 총리사, 그리고 감독과 협력하여 목회 리더십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감리사, 총리사,
30 감독과의 관계는 협의적(consultative) 성격을 갖습니다(¶ 610.7). 위원회는 해당 목회자와 먼저 우려를 논의하지
31 않고서는 목회자 교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2 목회자와 협의한 후, 현재 목회자나 직원의 은사 활용이 시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으로 판명되는 분야의 업무를 위해,
33 다른 지도자가 필요할 경우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와, 그리고/또는 고용된 직원이나 다른 목회자가 필요할 경우 교회
34 협의회와 소통합니다(참조. 사도행전 6:2).

35 본 (목회협력)위원회와 목사는 감독 파송 대상이 아닌 목회자를 고용, 계약, 평가, 승진, 퇴직 및 해고하는 과정에 관한 정책
36 및 절차에 대해 계획서를 교회 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채택될 때까지 위원회와 담임목사는 비파송 직원의
37 채용, 계약, 평가, 승진, 퇴직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평신도 직원을 위한 적절한 건강 및 생명
38 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조항을 교회 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회 협의회가 하프타임 이상 사무하는 평신도
39 직원에게 개체 교회 부담으로 공평한 연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교회 임원회는 교단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연금
40 혜택을 제공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와 담임 목사는 목회자가 아닌 직원의 채용, 계약, 평가, 승진, 퇴직, 해고 과정에 관한
41 정책 및 절차의 서면 성명서를 교회 협의회에 권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기 전까지 위원회와 담임 목사는
42 목회자가 아닌 사람의 채용, 계약, 평가, 승진, 퇴직,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평신도 직원의 충분한 건강 및
43 생명 보험, 퇴직금, 지역 교회 기여에 의한 공정한 은퇴 복지제도에 관한 조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
44 복지제도에 대한 모든 권장 사항은 교회 협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교회 협의회는 교단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45 복지제도를 제공할 권한을 가집니다.

46 위원회 구성원은 교단 정책, 전문 기준, 책임 문제, 민법 등과 관련된 인사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47 그들은 그러한 문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48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49 외부 강사, 사례비, 여비, 휴가, 건강 및 생명 보험, 연금, 주택(연회의 정책에 따라 교회 소유의 사택 또는 사택 대신 주택
50 수당), 연장 교육, 기타 목회자 및 직원의 사역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매년 교회
51 임원회에 이러한 문제를 권고하며 재정위원회에 예산 항목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택은 교회의 재산으로서
52 목회자 가족과 교회가 상호 존중하고, 목회자 가족의 사생활 공간으로서 교회가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목회자
53 또는 목회자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관 문제가 있을 시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
54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장, 재단 아사회 의장, 목사는 적절한 유지 관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55 목사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소유 목사관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목회 협력 위원회 위원장, 재단 이사회 의장, 목사는
56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관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적절한 유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 소유
57 목사관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목회 협력 위원회 의무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불필요한 절차적 및 설명적 세부사항을 제거하면서, 위원회의 핵심적인 지원, 상담, 평가, 인사, 보상에 관한 본질적 책임은 유지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1) 글로벌의 통일성을 요구해야 하며, 2) 지역 교회를 강화하고, 3) 제자삼기와 정렬하며, 4) 구조가 사명을 섬길 수 있도록 유연성을 허락하고,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5.8 대체하여 ¶ ¶ 445.8.a-m을 수정합니다

- 1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2 목회자와 직원 및 그 가족을 격려하고, 강화하고, 양육하고, 지원하고, 존중한다.
- 3 교회의 단합을 촉진한다.
- 4 목회자(들)와 직원들과 그들의 사역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언한다. 그들의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 5 평가한다. 은사, 기술 및 시간 사용의 우선 순위; 회중과의 관계; 사역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 개인의
- 6 건강 및 자기 관리; 그리고 사역의 성격과 기능을 회중에게 해석하는 동시에 교회의 필요, 가치 및 전통을 목회자와
- 7 직원에게 설명한다.
- 8 목회자와 직원의 유용함에 대해 적어도 매년 평가를 제공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사역과 연장 교육 필요와 계획을 확인한다.
- 9 열린 순회목회 및 안수 사역 준비에 관한 글로벌감리교회 사역의 본질과 역할을 회중에게 전달하고 설명해 준다.
- 10 담임목사와 협력하는 부목사 및 기타 직원들을 위한 서면 업무분장 및 직함을 개발하고 승인한다.
- 11 교회 협의회와 계속 교육 및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합니다.
- 12 사역을 위한 인원을 매년 모집, 면접, 평가, 검토 및 추천하도록 합니다.
- 13 목회 변경 사항에 관하여 목사와 의논하도록 합니다.
- 14 리더십 필요 사항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 15 채용 및 직원 관련 정책을 추천하도록 합니다.
- 16 인사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도록 합니다.
- 17 보상 및 복지제도에 대해 상담하도록 합니다.

- 18 ¶ 445.8(a-m)을 다음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19 위원회의 의무에는 목사(들), 직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 교회 내의 연합을 증진하는 것, 사역의 효과성, 목회적
- 20 리더십, 인사 필요, 인사 정책, 평가, 보상, 복지제도 및 목사(들)와 직원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안에 관하여
- 21 상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PRC/감리사 협력을 통한 지역 교회 담임목사 평가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버지니아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청원 근거: ¶ 609는 감리사(PE)에게 지구 목회자 감독 및 감독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전문 동료로서 감리사의 SPRC 평가 참석은 정확하고 충분한 감정을 보장합니다. 감리사가 SPRC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감독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목회자를 고용인이 아닌 목자로 보는 웨슬리안의 이해를 반영하며, 안수받은 목회를 교회의 연약적 삶 안에서 성스러운 소명으로 단언합니다. 이는 목회자/사역자/성직자가 연대적 감독을 통해 교회의 교리와 사명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5.8.d를 수정합니다

- 1 8.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2 목회자와 직원의 유용함에 대해 적어도 매년 평가를제공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사역과 연장 교육 필요와 계획을 확인한다.
- 3 평가는 목사/목회자와의 평가 토론 전에 감리사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입니다. 감리사는 또한 파송 목사/목회자와의
- 4 평가 토론에 초대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구조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없는 수적 요구 사항, 인구 통계학적 기대치, 민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리와 장정』의 다른 곳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개정안은 비본질적이고 중복적인 조항들을 삭제하는 동시에, 재단 이사회의 핵심적인 지배 구조와 목회자의 참여를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6을 수정합니다

- 개체 교회의 지배 구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교회에는 해당 교회의 성별, 인종, 연령을 대표하는
- 5명 이상의 교회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교인은 관련 및 관할 민법에 의해 결정된 법적
- 연령이어야 한다. 교회의 목사는 재단 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회원이며, 정족수를 달성하거나
- 과반수를 계산할 목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 각 지역 교회는 교회의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를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의결권 없는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비교인을 허용하도록 재단 이사회 구성원 자격 개정

청원자: 아데보웨일 오나반조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랭커스터 마운트 자이언 (미국: 앨러게니 웨스트)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대형 교회는 이 중요한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갖춘 현 교인을 재단 이사로 식별하고 선출할 수 있는 반면, 소형 교회, 특히 교외 및 농촌 지역의 교회는 현 교인 중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춘 자격을 갖춘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교를 고려하고 있는 비교백 교인의 선출을 허용하면 현행 규정상 재단 이사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 유능한 인물들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6을 개정한다

- 1 ¶ 446. 재단 이사회. 개체 교회의 지배 구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교회에는 해당 교회의 성별,
- 2 인종, 연령을 대표하는 5명 이상의 교회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교인은 관련 및 관할
- 3 민법에 의해 결정된 법적 연령이어야 한다. 개체 교회의 지배 구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 4 교회에는 재단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이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최소 3분의 2는 해당 교회의
- 5 성별, 인종, 연령을 대표하는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합니다. 단, 모든 이사는 관련 및 관할 민법에 의해 정해진 법적
- 6 연령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는 재단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회원이며, 정족수를 달성하거나
- 7 과반수를 계산할 목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재단 이사회의 멤버십 및 목적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재단 이사회의 멤버십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변경을 권고합니다. (1) 3명의 회원만을 요구함으로써 3년 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으며, 모든 교회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회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2) ¶ 1006을 반영하는 주석은 재단 이사회와 임원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본 단락에서 임원회에 대한 다른 참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멤버십에서의 “제외”는 장정 어디에서도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거”는 ¶ 422에서 논의되므로, 이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신규 회원 선출 관련 설명을 더욱 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6 및 ¶ 446.2를 수정합니다

- 1 ¶ 446. 재단 이사회. 개체 교회의 지배 구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교회에는 해당 교회의 성별,
2 인종, 연령을 대표하는 5명 이상의 교회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교인은 관련 및 관할
3 민법에 의해 결정된 법적 연령이어야 한다. 지역 교회의 지배 구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4 회중에는 최소 3명의 그 교회의 신앙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회중의 성별, 인종, 연령을
5 대표해야 하고, 모든 회원은 관련 및 관할 민법에 따라 법적 연령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는 재단이사회에서 발언권은
6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회원이며, 정족수를 달성하거나 과반수를 계산할 목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재단 이사회는 구역회가
7 임원회로 지정한 다른 기구가 없는 한, 교회의 임원회 역할도 수행합니다(¶ 1006).
- 8 1. 이사 선출. 각 개체 교회 재단 이사회 위원은 책임 또는 교회 회의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세 등급으로
9 균등하게 나누어 매년 3분의 1씩 선출한다. 이사회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어떤 위원도 6년 이상 연속으로
10 재임할 수 없다.
- 11 2. 이사의 공석과 해임. 개체교회의 교인 자격에서 탈퇴하거나 그로부터 제외되는 경우, 그 재단 이사는 그 탈퇴 또는
12 제외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개체교회의 재단 이사 또는 법안화된 개체교회의 아사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13 없거나 구역회의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재산에 관한 법적 수단을 제대로 집행하기를 거부할 때, 그리고 그러한 집행과
14 관련하여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구역회는 다수결로 이사 또는 재단 이사회의 또는 아사회의 자격을
15 상실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아사회에서 발생하는 결원은 만료되지 않은 임기 동안 선거를 통해 충원한다. 이러한 선거는
16 재단 이사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446.1). 임시로 발생한 결원 이외의 공석은 교회 임원회에서 다음
17 구역화 때까지 채울 수 있다.
- 18 재단 이사가 지역 교회의 멤버십에서 탈퇴하거나 그로부터 제거된 경우, 그 재단 이사는 해당 탈퇴 또는 제거된 날로부터
19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지역 교회의 재단 이사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구역회의의 지시에 따라 교회 자산에 대한 법적
20 문서를 적절히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역회는 다수결 투표로 해당 이사의 재단 이사회 멤버십이 결원임을 선언하고,
21 다수결 투표로 교회 회원 중에서 잔여 임기를 채울 회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탈퇴 또는 제거로 인한 결원이 아닌, 임시로
22 발생한 공석은 교회 협의회에서 다음 구역회까지 임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 선거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에는 다양한 글로벌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시간 제한, 구조적 순환 요구 사항, 임기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필수적인 행정 요구 사항이라기보다는 특정 조직 모델을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임기와 구조 면에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재단 이사를 선출하는 구역회 또는 교회 총회의 권한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6.1을 대체합니다

- 1 각 개체 교회 재단 이사회 위원은 책임 또는 교회 회의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세 등급으로 균등하게
- 2 나누어 매년 3분의 1씩 선출한다. 이사회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어떤 위원도 6년 이상 연속으로 재임할 수 없다.
- 3 재단 이사회의 회원들은 구역회 또는 교회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명료성: 재단 이사 공석 및 제거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다양한 글로벌의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없으며 종종 해당 민법의 적용을 받는 광범위한 법적 및 절차적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복되고,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법적으로 종속적인 조항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재단 이사의 제거와 공석 채우기를 위한 필수적인 지배 권한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6.2를 대체합니다

- 1 개체교회의 교인 자격에서 탈퇴하거나 그로부터 제외되는 경우, 그 재단 이사직은 그 탈퇴 또는 제외된 날로부터
- 2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개체교회의 재단 이사 또는 법인화된 개체교회의 아사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구역회의의
- 3 자사에 따라 교회의 재산에 관한 법적 수단을 제대로 집행하기를 거부할 때, 그리고 그러한 집행과 관련하여 모든 법적
- 4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구역회는 다수결로 이사 또는 재단 이사회의 또는 이사회에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선언할 수
- 5 있다. 이사회에서 발생하는 결원은 만료되지 않은 임기 동안 선거를 통해 충원한다. 이러한 선거는 이사 선거와 동일한
- 6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46.1). 임시로 발생한 결원 이외의 공석은 교회 임원회에서 다음 구역화 때까지 채울 수
- 7 있다.
- 8 재단 이사는 구역회 또는 교회 총회에 의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의 공석은 선거를 통해 채워집니다.

재단 이사회의 조직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재단 이사회 조직은 제안의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단 이사들의 조직 방식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현지 법률이 다른 조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의도는, 현지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6.3을 수정합니다

- 1 3. 조직. 재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할 수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조직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본 조항은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상세한 절차적 요구 사항, 구조적 규정 및 법적 편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본질적이고, 시한이 정해져 있으며,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재단 이사회가 임원을 조직하고 선출할 권한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장정 제446.3항 전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1) 재단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조직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재단 이사회 회의 및 책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본 섹션에 다섯 가지 변경을 권고합니다: (1) 부목사도 재단 이사회의 회의 소집이 가능해야 합니다. (2) 5.c에는 목사관의 문제 해결에 관한 두 개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6.a 및 .b에서 구역회는 매년 모든 부동산마다 전체 법적 설명과 양도자의 이름을 모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과 평가만 필요하며, 새로운 부동산이 추가될 때는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6.c 항목에서 교회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연간 목록 작성은 소규모 교회가 아닌 이상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5) 6.j는 5.e와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연례 접근성 감사"만 명시하고 이전 섹션을 참조하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6.4, ¶ 446.5, 및 ¶ 446.6을 수정합니다

- 1 4. 회의. 재단 이사회는 담임목사 또는 이사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 연 3회 이상, 회의 소집 공고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 2 지정된 회의 시간 최소 1주일 전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통지 면제는 일반적인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의를 합법적으로
- 3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단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 4 5. 권한과 제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5 a. 지역 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및 지역 교회가 직접 또는 관련된 단체, 위원회, 속회,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 6 통해 취득한 모든 부동산 및 장비에 대한 감독, 목록 작성, 및 관리. 그러나 이사회는 교리와 장정에 다른 곳에서 부여된
 - 7 개체교회 조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목회자가 예배나 기타 교회의 법, 관습 및 관례에 의해 인정되는 적절한
 - 8 모임이나 목적을 위해 상기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리교회의 역사적 이해를 반영하여
 - 9 글로벌감리교회의 예배당은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 10 b. 외부 단체가 개체교회의 시설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지역 교회와
 - 11 글로벌감리교회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재단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다.
 - 12 c. 교회가 목사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목회 협력 위원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 또는 지명자,
 - 13 목회자는 교회 소유 사택을 매년 검토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택 문제를
 - 14 즉시 해결해야 한다. 교회가 목사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목사관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목회 협력 위원회 위원장, 재단
 - 15 이사회 의장 또는 지정인,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 소유 목사관의 연례 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 16 하여야 합니다. 사택은 교회의 재산으로서 목회자가 가족과 교회가 상호 존중하고, 목회자 가족의 사생활 공간으로서
 - 17 교회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 445.8m). 아사회는 목회자 또는 목회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택 문제를
 - 18 적시에 해결하고 사택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재단 이사회는 목사 또는 목사 가족의
 - 19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관 문제를 즉시 해결하며, 목사관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20 d. 이사회는 구역회의 지시에 따라 개체 교회에 대한 모든 유증을 받고 관리하며, 모든 신탁을 받고 관리하며, 지교회가
 - 21 위치한 국가, 주 또는 정치 단위의 법률에 따라 개체 교회의 모든 신탁 기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2 구역회는 아사회에 통지하면 유증, 신탁 및 신탁 기금을 수령, 관리 및 투자할 수 있는 권한, 의무 및 권위를 영구 기부
 - 23 위원회 또는 개체 교회 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회는 재단 이사회에 통지한 후, 유증, 신탁 및 신탁
 - 24 기금을 수령, 관리 및 투자하는 권한, 의무, 권위를 영구 기금 위원회나 지역 교회 재단 등 다른 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25 e. 이사회는 매년 건물,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감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기존의 물리적,
 26 건축적 또는 의사소통 장벽을 발견하고 식별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27 결정해야 한다.
- 28 6. 연례 보고서. 재단 이사회는 매년 구역회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단
 29 이사회는 매년 구역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0 교회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법적 설명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교회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설명 및 합리적인 평가액. 새로운
 31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각 양도 증서의 전체 법적 설명과 양도자의 특정 명칭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32 개체 교회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각 증서에 기재된 양도자의 구체적인 이름;
- 33 지역 교회가 소유한 모든 동산의 목록 및 합리적인 평가액; 지역 교회가 소유한 모든 이동 재산의 합리적인 평가액;
- 34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에서 받은 소득 금액과 이와 관련된 지출의 세부 목록;
- 35 부동산의 건축, 재건축, 리모델링 및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과 항목별 지출 명세서;
- 36 미결제 자본 부채, 상환 날짜 및 계약 방법;
- 37 공동 보험 또는 기타 제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각 부동산
 38 구획에 대해 가입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 39 개체 교회의 모든 법적 서류의 관리인 이름과 보관 장소;
- 40 지역 교회가 수혜자인 모든 신탁의 상세 목록과,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알려진 경우)를 명시;
- 41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단 구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자산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접근성 장애를 해결하기
 42 위한 계획과 일정(¶ 446.5e)을 수립. 연례 접근성 감사 및 해당 시, 접근성 장벽 해소를 위한 계획 및 일정(¶ 446.5e).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회의의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에는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으며 종종 현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고정된 회의 빈도, 통지 요구 사항 및 법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적인, 그리고 법적으로 종속된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재단 이사회의 회의 개최 권한을 보존하고 명확한 정족수 기준을 설정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 446.4 전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재단 이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정족수는 정식으로 소집된 회의에 출석하여
- 투표하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단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없으며 해당 민법 및 지역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광범위한 법적, 절차적, 운영상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단 이사회의 필수적인 책임을 보존하면서 비필수적이고, 중복되며,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삭제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장정 제446.5항과 제446.6항 전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재단 이사회는 지역 교회의 속성과 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헌물과 신탁을 관리하고, 관할 구역 또는 교회 총회에
-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사안에는 명확히 해야 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와 재정총무(.1, .4, .5) 담당자는 각 교회가 반드시 갖추도록 ¶ 442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특히 재정위원회의 의무가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2. .6에서는 매년 구역회에 제출해야 할 재정정책은 새로운 정책이나 변경된 정책만 해당됩니다. 3. .7에는 현재 잘못된 하위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4. .8의 예치에 관한 규칙은 대부분 .4와 중복되므로, 이 둘을 통합하고 .8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 .11에서는 현재 지정기금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7.1, ¶ 447.4, ¶ 447.6, ¶ 447.7, ¶ 447.8, 및 ¶ 447.11을 수정하고 ¶ 447.5를 삭제합니다

1 ¶ 447. 재정 위원회.

1.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구역회는 매년 재정위원회 위원장, 목사(들), 연회 평신도 회원, 교회 협의회 위원장, 목회 협력 위원회 의장 또는 지정인, 해당 재단 이사회가 선정하는 재단 이사회 대표, 스튜어드십 사역 그룹 위원장(있는 경우), 평신도 지도자, 재정 비서, 재무, 교회 행정 관리자(있는 경우), 그리고 구역회가 정하는 추가 회원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해마다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할당할 수도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교회 협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곳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유급 직원인 경우 재정 총무, 재무 및 교회 업무 관리자는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된다. 재무와 재정 총무 직책은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없으며, 아 두 직책을 맡은 사람은 직계 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임명된 목회자의 직계 가족은 재무, 재정위원회 의장, 재정 서기, 회계 담당자 또는 재정위원회의 책임 아래에서 유급 또는 무급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목회자가 재임하는 교회 또는 구역에만 적용된다. 목사의 직계 가족은 재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책임 하에 포함되는 계수자를 포함하여 유급이나 무급의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 또는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2. 재정위원회는 일 년 내내 재정 자원의 청지기 직분을 우선순위로 감독하며, 제자 양육 사역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십일조와 그 이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개체 교회의 연간 예산에 포함될 모든 재정 요청은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위원회는 매년 개체 교회의 전체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회 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채택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위원회는 교회 임원회가 채택한 예산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마련할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교회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받은 기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무와 재정 총무를 지도하는 교회협의회의 지시를 수행합니다.

4. 위원회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아닌 최소 2명을 지정하여 헌금을 집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재정부장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합니다. 수령한 모든 김금의 기록은 재정 총무와 재무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령한 기금은 재정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 교회 명의로 지체 없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재정 총무는 기부금 및 자급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 교회 재무는 개체 교회 예산에 포함된 모든 기부금과 교회 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기금 및 기부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재무는 당사 수중에 있는 모든 교단 및 연회 선교 기금을 매월 연회 재무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교회 재무는 재정위원회와 교회 임원회에 자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기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 담당자는 적절한 보증을 받아야

25 합니다.

26 6. 재정위원회는 개체교회의 내부 통제를 문서화하기 위해 서면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작성된 재정 정책은 매년
27 재정위원회에서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매년 구역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된 재정 정책은
28 재정위원회에서 매년 적절성과 효과를 검토해야 하며, 신규 정책 또는 기존 정책의 변경 사항은 모두 연회 구역회에
29 보고되어야 합니다.

30 7. 위원회는 개체 교회와 모든 조직 및 계정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근 감사에 대한
31 전체 및 완전한 신고를 매년 구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체교회 감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사람들이 개체교회의 재정
32 보고서 및 기록과 내부 통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감사는 재정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33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 법률, 지역 교회 정책 및 절차, 교리와 장정을
34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감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5 현금 및 투자 계좌에 대한 조정 내역 검토;

36 재무, 재정 비서, 목사(들), 재정위원회 의장, 사업 관리자, 현금 계수자, 교회 비서 등과 기존의 서면 재정 정책 및 절차 준수
37 여부에 관한 질의를 포함한 면담;

38 각 당좌 및 투자 계좌의 분개장 기록과 승인된 수표 서명자에 대한 검토; 그리고

39 재정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타 절차.

40 감사는 위의 2에 열거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또는 독립 공인회계사(CPA), 회계법인 또는 이에
41 준하는 기관이 수행한다. 감사는 상기 (b)항에 열거된 자와 무관한 인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또는 독립된
42 공인회계사(CPA),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실시해야 합니다.

43 8. 위원회는 교회 자금에 대한 적절한 예치처를 교회 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받은 기금은 지역 교회 명의로 즉시
44 입금됩니다.

45 9. 특정 목적과 용도로 지정된 헌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즉시 실행되며,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46 없습니다.

47 10. 개체교회의 예산이 승인된 후 추가 지출이나 예산 변경은 교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 11.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교회 협의회에 현 예산과 분리된 모든 지정기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기금의 총액,
49 최근 보고 이후 수령 및 지출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정위원회 구조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에는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광범위한 구조적 요구 사항, 역할 정의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 감독의 필수적인 기능은 보존하면서, 비필수적이고 제한적이며 특정 상황에 맞는 조항들은 제거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7.1을 대체합니다

- 1 ~~¶ 447. 재정 위원회. 1.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구역회는 매년 재정위원회 위원장, 연회의 평신도 대표, 교회~~
- 2 ~~임원회장, 목회 협력 위원장 또는 지명자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 3 ~~이사회가 선정하는 이사회 대표, 청지가 사역 그룹 위원장(있는 경우), 평신도 지도자, 재정 총무, 재무, 교회 행정~~
- 4 ~~관리자(있는 경우) 및 담당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추가되는 기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는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 5 ~~그룹에 할당할 수도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교회 임원회 위원이 된다. 유급 직원인 경우 재정 총무, 재무 및 교회 업무~~
- 6 ~~관리자는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된다. 재무와 재정 총무 직책은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없으며, 이 두 직책을 맡은 사람은 직계~~
- 7 ~~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임명된 목회자의 직계 가족은 재무, 재정위원회 의장, 재정 서기, 회계 담당자 또는 재정위원회의~~
- 8 ~~책임 아래에서 유급 또는 무급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목회자가 재임하는 교회 또는 구역에만 적용된다.~~
- 9 구역회는 지역 교회의 재정 자원을 감독하기 위해 재정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그 책임을 한 그룹에
- 10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정 스튜어드십 책임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이상적이고 제자도 지향적인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을 넘어 사역 형성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개정안은 재정 감독의 필수적인 책임을 보존하면서 주관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기대를 제거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7.2를 대체합니다

- 1 447.2. 재정위원회는 일 년 내내 재정 자원의 청지기 직분을 우선순위로 감독하며, 제자 양육 사역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 2 아낌없는 마음으로 십일조와 그 이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3 재정위원회는 지역 교회의 재정 자원을 감독합니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 명확성: 예산 및 재정 감독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특히 기금 모금 및 시행과 관련된 절차적 요구 사항과 운영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필수적이지 않고 전략에 기반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교회 협의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핵심적인 책임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7.3을 대체합니다

3. 개체 교회의 연간 예산에 포함될 모든 재정 요청은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위원회는 매년 개체 교회의 전체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회 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채택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위원회는 교회 임원회가 채택한 예산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마련할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교회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받은 기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무와 재정 총무를 지도하는 교회협의회회의 지시를 수행합니다.
- 재정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회 협의회에 제출하고, 교회 협의회회의 지시에 따라 기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정 정책 요구 사항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행정력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기반 요구 사항, 주관적인 평가 기준 및 보고 기대를 포함합니다. 개정안은 재정 정책과 내부 통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보존하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절차 및 평가 관련 문구를 삭제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7.6을 대체합니다

- 1 447.6. 재정위원회는 개체교회의 내부 통제를 문서화하기 위해 서면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작성된 재정 정책은
- 2 매년 재정위원회에서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매년 구역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 3 재정위원회는 적절한 내부 통제를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명확성: 재정 감사 요건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는 광범위한 지침적, 절차적, 구조적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규정적이고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은 삭제하는 한편, 독립적인 재정 검토와 책임성에 대한 요건은 유지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7.7을 대체합니다

- 1 447.7. 위원회는 개체 교회와 모든 조직 및 계정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례 구역회의에
- 2 전체 및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체교회 감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사람들이 개체교회의 재정 보고서 및
- 3 기록과 내부 통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감사는 재정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함리적으로
- 4 검증하고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자, 그리고 현지 법률, 지역 교회 정책 및 절차,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있는자
- 5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감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 현금 및 투자 결산 검토, (b) 기존 서면 재정 정책
- 6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재무, 재정 총무, 목회자, 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업 관리자, 현금 계수 담당자, 교회 총무
- 7 등과의 인터뷰, (c) 각 당좌 및 투자 계좌의 일지 항목 및 수표 서명인 검토, 그리고 (d) 기타 재정위원회에서 요청하는
- 8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감사는 위의 2에 열거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또는 독립
- 9 공인회계사(CPA),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한다.
- 10 재정위원회는 지역 교회의 재무 기록 및 보고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개체 교회의 유연성: 보고 및 위원회 구성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글로벌 행정에 필수적이지 않은 잠재적 위원회들의 상세하면서도 비제한적인 목록과 더불어, 정기 보고 요건 및 권고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절차적, 서술적, 그리고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한편, 지정 기금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추가 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은 유지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47.11 전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1 위원회는 현재 경비 예산과 별도로 지정된 모든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적어도 매년 교회 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
- 2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위원들은 구역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 3 위원회, 제자 훈련 위원회, 기록 및 역사 위원회, 선교 위원회, 기념 기금 위원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필요와 관심사를
- 4 다루는 사역 등(이에 국한되자 않음).
- 5 재정위원회는 지정 기금을 경상비 예산과 별도로 감독해야 한다. 교회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위원회를 추천할 수
- 6 있다.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요구 사항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에서 명확히 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에서 "지역 교회의 그룹"이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3에서는 연회에서 정한 단체설립(허가) 기준이 충족되기 전에는 PE가 교회 단체설립(허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어야 합니다. 3. 많은 새로운 교회개척은 목사가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3에서는 평신도가 단체설립(허가) 회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4. PE가 지정한 장로목사가 단체설립(허가) 회의를 주재할 때 해당 지구/지방의 회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장로목사라도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50.1 및 ¶ 450.3을 수정합니다

1. 글로벌 감리교회 지역 교회 또는 교회 그룹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 감리교회의 평신도나 성직자 누구나 새로운 지역
2.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는 지역 교회 또는 교회 그룹은 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집니다. 후원하는 지역 교회
3. 또는 교회 그룹은 교회개척에 대한 책임감을 집니다. 후원하는 개체교회 또는 그룹을 이룬 교회들이 없는 경우, 연회는
4. 지정된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개체교회 개척을 승인하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5. 2. 각 연회는 새로운 지교회 설립에 필요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총리사()는 신설 교회가 소속할 지방을 지정한다.
6. 3. 조직하는 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사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호출해서 지정된 시간에 지역 교회를 창립하기 위한
7. 목적으로 모이게 하며, 서면으로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감리사에게 그런 모임을 소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8. 단체설립(허가) 기준이 충족된 후, 조직하는 목사 또는 평신도의 요청에 따라, 감리사는 해당 사람들이 단체설립(허가)된
9. 지역 교회로 조직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모이도록 소집하거나, 서면 승인을 통해 다른 장로목사에게
10. 그러한 모임을 소집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후, 참석한 사람들에게 교인 등록을 위해, 전입이나 신앙고백을
11. 통해 자신을 등록할 기회가 주어진다. 조직이 완료되면 새로운 개체교회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지역 교회 폐쇄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지역 교회가 폐쇄될 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여러 참조가 있지만, 현재 장정에는 교회 폐쇄 절차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교회들에게 해당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현행 ¶ 451 – 지역 교회 전송하다 이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452를 추가하고 이후 항 및 절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신규 섹션 제목: 섹션 XII: 지역 교회 폐쇄
- 2 ¶ 452 지역 교회 폐쇄
- 3 지역 교회가 더 이상 지역 교회로서 존속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경우, 교회 총회의 다수결 투표로 폐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 폐쇄 결의의 일환으로, 폐쇄되는 교회는 모든 속성과 자산이 어떻게, 어디에 분배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감리사는
- 5 ¶ 428 및 429.7의 조항이 준수되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협동 본당 구조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은 여러 계층의 협의회와 위원회를 포함하는 확장된 행정 구조를 규정하며, 이는 제도적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글로벌 맥락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구조적 요구 사항과 관료주의적 확장을 제거하면서, 지역 교회들이 적절한 리더십 하에 사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52.1을 대체합니다

- ¶ 452. 협동 교구. 1. 협동교구는 통일된 교구 지도력 아래 함께 일하기로 동의 한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들을 포함하는
- 지정된지리적 영역이다. 담임목사 및 기타 임명된 목사 또는 고용된 직원은 통합 사역 팀으로 일합니다. 각 개체 교회에는
- 자체 교회 임원회가 있지만, 각 개체 교회 임원회 대표로 구성된 교구 임원회가 있어 협력 교구의 공동 노력을 관리합니다.
- 교구 차원의 목회자-교구 또는 직원-교구 협력 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재정 자원, 재산 또는 프로그램 사역을 교구 전체가
- 공유하는 다른 교구 차원의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감리사(PF)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체교회의 동의를
- 얻어 적절한 사역 환경에서 협력 교구를 구성할 수 있다.
- 협동 본당은 둘 이상의 회중 간의 공동 사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감리사가 감독의 승인과 지역 교회들의 동의를 얻어
-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동 본당 창설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 452.1에서는 교역자 감독(PE)과 감독이 협동 본당을 "창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452.2에서는 감리사회가 정책과 절차 수립과 별개로 이러한 교구를 "조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될 경우, 통제 권한의 위치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협동 본당을 창설하는 권한은 교역자 감독(PE) 및 감독에게 두되, 감리사회가 협동 본당을 조직하는 방식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52.2를 수정합니다

- 1 2. 감리사회(캐버넷)는 협력 교구를 조직하고 사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다.
- 2 2. 감리사회는 목회 맥락에 적합한 협동 본당을 조직하기 위한 적당한 정책 및 절차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에큐메니컬 회중 정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단락에는 행정력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시행이 불가능한, 영원적인 언어와 서술적인 목적 성명서, 그리고 에큐메니컬 협약에 대한 정보적 분류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필수적이고, 서술적이며, 분류에 기반한 내용을 제거하면서 에큐메니컬 회중을 구성할 권한을 보존하고 필수적인 교리적 기준을 유지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53.1을 대체합니다

- 1 ~~¶ 453. 에큐메니컬 교회. 1. 정의. 에큐메니컬 교회는 다른 교단의 교리와 선교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충돌하지~~
- 2 ~~않는 한, 개체 글로벌감리교회와 다른 기독교 전통을 가진 하나 이상의 개체 교회가 함께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회중은~~
- 3 ~~사역을 강화하고, 제한된 자원의 현명한 스튜어드십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는 물론 확장된 선교와 사역의~~
- 4 ~~커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에큐메니컬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의 형태는~~
- 5 ~~다음과 같다: (a)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의 교단과 관련되어 있고 교인들이 그 중 하나 또는 다른 교단의 회원 자격을~~
- 6 ~~갖기로 선택한 연합교회; (b) 하나의 통합된 회원 명부를 가진 교회가 두 개 이상의 교단과 관련된 합동교회; (c) 서로 다른~~
- 7 ~~교파의 두 개 이상의 교회가 구성 교파 중 하나에만 관련된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는 합병교회; (d) 서로 다른 교파의 교회가~~
- 8 ~~목회자를 공유하는 동역교회(¶ 453.3 참조).~~
- 9 에큐메니컬 회중은 참여 교회의 교리와 선교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것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한 지역 글로벌
- 10 감리교회와 다른 기독교 전통의 하나 이상의 교회가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에큐메니컬 회중을 위한 언약 요구 사항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다양한 글로벌의 맥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 또는 연회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상세한 법적 및 절차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식적인 합의와 연대 감독에 대한 요구 사항은 유지하면서, 비본질적이고 규정적이며 특정 맥락에만 국한된 조항들은 제거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53.2를 대체합니다

- 1 453.2. 언약. 에큐메니컬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는 재정 및 재산 문제, 교회 회원 자격, 교단 지원 및 재정, 위원회 구조 및
- 2 선출 절차, 목회자의 임기 및 규정, 보고 절차, 모(Parent) 교단과의 관계, 협약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명확한
- 3 선교 규약, 정관 또는 협약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는 성약 계약을 개정할 경우 감리사에게 통지하고 성약 계약을
- 4 해산하기 전에 감리사와 상의해야 한다.
- 5 에큐메니컬 회중을 형성하는 교회는 감리사와의 협의 하에 그들의 공동 사역을 규율하는 서면 합의를 작성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연대 책임의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 조항은 시행 가능한 행정력 요구 사항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관행을 설명하는 서술적이고 제도적인 언어를 포함합니다. 개정안은 비본질적이고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대 책임감을 보존합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453.3을 대체합니다

- 1 453.3. 연대적 책임. 감리사회(cabinet), 연회 직원 및 기타 지도자들은 에큐메니칼교회들이 설립될 때 협력해야 하며,
- 2 교단 교회와의 중요한 관계와 연대를 위한 지속적인 통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통로는 그 교회와
- 3 다른 교단 관계자들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4 에큐메니컬 회중은 글로벌 감리교회 및 참여 파트너 교단들과 적절한 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적 충실성 보장 과정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교회의 신앙적 충실성 보장 과정은 감독이 주도하도록 요구되어 있으나, 감독권의 비상주적 특성상 감리사(또는 그 지정인)이 감독 및 감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이끄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55.1, ¶ 455.2, ¶ 455.3, ¶ 455.4 및 ¶ 455.5를 수정합니다

- 1 ¶ 455. 교회의 충실성 개체 교회와 글로벌 감리 교회 전체의 통합을 위해 중심이 되는 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단의
- 2 교리와 규율은 모두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회는 ¶ 449에 명시된 대로
- 3 연대사역헌금을 제공하기로 서약한다. 따라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는 ¶ 1003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 4 신앙이나 관행에 더 부합하는 다른 기독교 교단에 가입하거나 글로벌 감리 교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장한다. 교회가 본
- 5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 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관행에 참여하거나 ¶ 449에 명시된 연대사역헌금을 전액
- 6 송금하지 않는 경우, 연회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은 다음 조항이 충족되는 한 독립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 7 실행할 권한을 갖는다:
- 8 1. 교회의 현 담임 목사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에 반하는 교리나 관행을 장려하는 경우, 감독은 그 담임 목사를
- 9 해임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장려하고 옹호할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감독은 새 담임목사가
- 10 회중을 순응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 11 1. 회중의 현 목사/목회자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나 관행과 상반되는 교리나 관행을 장려할 경우, 감리사회는 감독에게
- 12 해당 목사/목회자를 해임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및 관행을 옹호하고 장려할 목사/목회자를 파송해 줄 것을
- 13 요청하여야 합니다. 새 목사/목회자에게는 회중을 순응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14 2. 1단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담임목사가 문제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감독과 감리사는 교회임원회(또는
- 15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더 많은 교인들과 만나 글로벌감리교회 교리나 관행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한
- 16 이견의 해결과 개체교회의 적합성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독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 17 슬기롭게 옹호하고 가르쳐야 한다.
- 18 2. 1단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목사/목회자가 문제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감리사 또는 그 지정인은 교회 협의회(또는
- 19 이에 상응하는 협의회)나 더 큰 교인 그룹과 만나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나 관행에 관한 이견의 영역을 파악하고, 해당
- 20 이견의 해결과 지역 교회의 순응 회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감리사 또는 그 지정인은 그러한 참여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 21 교리와 관행을 지혜롭게 옹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 22 3. 지역 교회가 매년 산정된 연대 기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을 경우, 감리사 또는 그 지정인은 교회 협의회(또는 이에
- 23 상응하는 협의회)와 만나 송금을 독려해야 합니다.
- 24 4. 불일치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체교회가 감리사와의 회의 후에도 연대사역헌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을
- 25 경우, 연회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연회의 3분의 2 투표와 감독의 동의, 개체교회가 위치한 연회의 감리사들의 찬성
- 26 투표에 의해 개체교회는 글로벌감리교회로부터 바자발적으로 탈퇴 될 수 있다.

- 27 4. 불일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리사 또는 그 지정인과의 회의 후에도 지역 교회가 연대 기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을
28 경우, 지역 교회는 연회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의회)의 3분의 2 투표, 감독의 동의, 그리고 감리사회의 찬성
29 투표에 의해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비자발적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 30 5. 교회는 비자발적 탈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적시에 받아야 하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설명이나
31 기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연대상소협의회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비자발적
32 탈퇴는 유지된다. 연대 항소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상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소를 통해 비자발적 탈퇴가
33 확정되는 경우 탈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감독 참여에 관한 유연성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이는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허락하면서도, 적당한 경우에 감독이 반드시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55.2를 수정합니다

- 1 2. 1단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목사/목회자가 문제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감독 및/또는 총리사와 감리사는 교회
- 2 협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회) 또는 더 큰 규모의 회중과 만나,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 또는 관행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 3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한 이견의 해상도 및 지역 교회의 복원을 도모합니다. 감독 및/또는 총리사는 이러한 참여에서
- 4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훌륭하게 변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연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개체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과정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의 문구는 이미 연회가 설립된 것으로 가정하며, 기존 연회 내에서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새로운 하위항목 6을 추가하고, 연회가 아직 소집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역 교회를 받아들이는 책임 기관을 글로벌의 교회 내에서 명확히 하며, ¶ 814.4에 명시된 언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하위 항 ¶ 456.6을 추가하여 ¶ 456을 수정합니다

- 1 6. 연회가 아직 창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체교회의 가입 승인 책임이 ¶ 814.4에 따라 연회 위원단에 있습니다.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절차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개체 교회

근거:

현재 우리는 해당 교회가 UMC 소속이었던지 여부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와 일직선으로 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한 서로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과도기" 상태가 아니므로, 모든 교회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56 전체를 대체합니다

1. 섹션 14. 글로벌 감리교회와 정렬하는 기독교 교회들

2. ¶ 456. 글로벌 감리교회와 협력하는 개체교회. 1. 이전에 연합감리교회와 제휴했던 개체교회는 정식으로 승인된 교회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교인들의 찬성을 통해 글로벌 감리교회와 제휴할 수 있다. 교회 임원회는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찬성 투표는 이 교리와 장정의 교리 기준과 사회적 증언(¶ 101-108; 301-302)을 지지하고 본 교단과 연대하고 책임감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대하고 책임감을 갖고자 하는 다른 기독교 교회들은 본 교리와 장정의 교리 기준과 사회적 증언(¶ 101-108 및 301-302)을 지지하기 위해 교회 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합을 요청할 수 있다.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은 요청이 승인되기 전에 개체교회가 사용한 절차의 적법성과 교회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3. 교회는 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회와 지방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가입 발효일로부터 개체교회는 ¶ 449에 규정된 대로 글로벌 감리교회에 연대사역헌금을 전달해야 한다. 4. 개체교회와 그 목회자가 모두 글로벌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둘 다 목회자 파송 또는 평신도 파송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교회가 속한 연회를 감독하는 감독은 이 전환기에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현재의 목회자 파송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 456.1-3에 따른 개체교회의 효력 발생일은 해당 지역 교회가 속한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연회가 정한 날로 한다.

14. ¶ 456. 글로벌 감리교회와 정렬하는 기독교 교회들. 1. 기독교 교회들은 본 교리와 장정(¶ 101-108; 301-302)에 명시된 교리적 기준과 사회적 증언을 지지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연대와 책임성을 표명하고자 하는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 과반수 투표(회중 모임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고백 교인)에 의해 글로벌 감리교회와 정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는 해당 지역 교회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연회의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그 결정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기 전, 연회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는 지역 교회가 사용한 과정의 적법성과 교회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렬의 효력 발생일은 연회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21. 2. 연대 효력 발생일로부터 지역 교회들은 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소속 연회 및 지구/지방 내에서 활동하며, ¶ 449에 따라 연대 기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3. 회중과 그 목회자가 모두 글로벌 감리교회에 소속하고 모두 목회자 파송 또는 평신도 배정의 계속 유지를 원할 경우, 감독은 교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현재의 목회자 파송 또는 평신도 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ደ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공인 평신도 사역자

청원자: 목회 및 고등 교육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 502의 현 위치와 문구는 공인 평신도 사역자(CLMS)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는데. 특히, 이들이 안수받은 목회자로 나아가는 경로로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개체 교회에 뿌리를 둔 사역의 한 형태인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합니다. 필수 교육의 구조에 대한 모호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 입법은 공인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 목적, 준비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 500번대에서 ¶ 400번대로 이동함으로써,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를 안수받은 목회자에 관한 절차나 요건에 맞추기 보다, 개체교회의 사역 안에 더 적절하게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2를 삭제하고 새로운 ¶ 405를 만들며 이후 항들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 405. 공인 평신도 사역자.
- 2 1. 공인 평신도 사역자(CLM)는 개체교회, 회중에 소속된 고백교인으로서, 웨슬리안 교리와 우리 교단의 정치체제에 대한
- 3 특별 교육을 받고, 깊은 성경 지식을 갖추며, 전 교회공동체의 지지를 받아 준비된 평신도로 자신의 개체 교회를 섬기는
- 4 교인입니다.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은사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자신의 개체교회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자
- 5 합니다.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CLM)는 교회의 사역 전반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리더십, 가르침, 선포/설교,
- 6 전도, 예배, 돌봄 사역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7 2.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개체교회에 의해 세워지며, 목회자, 목회 협력 위원회 및 구역회의의 격려를
- 8 받아 이 길을 걷도록 권면받습니다.
- 9 3. 자격.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 a. 최소 1년 이상 개체 글로벌의 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의 고백 교인.
- 11 b. 평신도 사역을 위한 과정은 글로벌연합감리교회의 사역 개요(소명, 영적 은사, 제자도, 선교, 전도, 윤리를 포함), 교회의
- 12 교리·역사·정치체제, 그리고 성경의 기초 지식을 포함하며,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의 승인을 받은 평신도 사역
- 13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하여야 합니다.
- 14 c. 국가 신원 조회 (또는 해당 지역의 동등한 절차).
- 15 d. 담임목사의 서면 추천과 목회 협력 위원회 및 구역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합니다.
- 16 e. 연회 안수위원회의 인터뷰 및 승인. 해당 인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 17 f. 상기 요구 사항 중 어느 것이든, 개인의 요청 및 긴급한 상황에 따라 연회 안수 위원회의 재량권에 의해 면제될 수
- 18 있습니다.
- 19 4. 과정 요구 사항 자격 기준 각 과정은 대면 수업 시간, 1차 자료의 읽기 또는 청취,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 20 형태의 평가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들은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에서 정합니다.
- 21 5. 인증 갱신. 평신도 사역 자격증은 연회 안수 위원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매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 22 a. 당해 연도에 수행한 사역 개요를 구역회와 연회 안수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23 b. 매년 구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합니다.
- 24 c. 담임목사의 갱신 추천서.
- 25 d. 3년마다 추가적인 국가 신원 조회를 완료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지역별 동등한 절차에 따름).
- 26 e.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역 분야(예: 설교, 예배 인도, 돌봄 사역 등)에 대한 평신도 사역 고급 과정을
- 27 최근 3년 내에 한 과목 이상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연회 안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훈련이
- 28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29 f. 상기 요구 사항 중 어느 것이든, 개인의 요청 및 긴급한 상황에 따라 연회 안수 위원회의 재량권에 의해 면제될 수
- 30 있습니다.
- 31 6.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자기 개체교회를 넘어 수행하는 사역. 평신도로서,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연회 안수위원회의
- 32 관할을 받습니다. 감독이 파송하는 대상은 오직 목회자 뿐이지만, 감독은 평신도 사역자에게 자신의 개체교회 밖에서 사역
- 33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4 7. 자신의 지역 교회 밖에서의 봉사 조건.
- 35 a.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는 자원봉사자로 봉사하지만, 자신의 개체 교회가 아닌 곳에서 강단 공급 또는 기타 전문
- 36 사역에서의 사례비와 경비는 적절하다.
- 37 b. 교회 또는 기타 사역의 평신도 직원으로 봉사하는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을 받아야
- 38 합니다.
- 39 c.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개척자, 임시 사역자, 평신도 설교자, 또는 선교사로 섬길 수 있으며, 행정 리더십을 맡고, 해당
- 40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며, 성례를 집례하기 위해 함께 파송된 장로목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체교회에
- 41 배치될 수 있습니다.
- 42 8. 목회자 자격 증명의 이전.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회에서 승인한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과정을 마친 자는, 주소지를
- 43 옮기는 경우 다른 연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44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자는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 45 현재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연회 안수 위원회의 면접과 후속 승인을 거쳐 이전을 신청할 수
- 46 있습니다.

47 해당 새 연회에서의 후속 갱신은 ¶ 402.5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8 9. 목회자의 전환. 공인 평신도 사역자의 인증을 받은 이가 이후 안수 사역의 소명을 분별하게 되는 경우, 연회

49 안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후보자 과정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를 인증 후보자로 선언하여 연회에

50 사역을 추천할 수 있으며, 안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사역

all ¶ 500s

번호	¶	제목	페이지
1309	¶ 5XX	안수받은 직분의 본질과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 명확화	226
1449	¶ 501.2	교단 공인 목회 직분에 선교사 포함	227
1096	¶ 502 / ¶ 405	공인 평신도 사역자	220
1339	¶ 502.1	공인 평신도 사역자 사역 분야	228
1001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 승인된 훈련과정의 명확화	229
1297	¶ 502.2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과정 요구 사항 명확화	230
1337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신원 조회	231
1338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자격	232
1343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양성 및 자격증 부여에 대한 지역 행정	233
1135	¶ 503.1	목회자 직분	234
1469	¶ 503.1	거룩한 결혼 축하	86
1128	¶ 505	안수받은 사역자의 인격과 역량.	242
1412	¶ 505	언약적 연대: 목회자	245
1022	¶ 505.2	교회의 성에 관한 가르침에 비춘 안수 기준 명확화	249
1008	¶ 505.8	동성애 성직 안수에 반대하는 성명서	250
1009	¶ 505.9	성전환자 성직 안수 반대	251
1003	¶ 506	안수 목회에 이르는 길: 전통 경로와 대안 경로	252
1112	¶ 506	목회 후보자 선발 및 사역 입문의 과정의 명확성	254
1295	¶ 506.1	다른 교단에서 오는 목사/목회자들의 전환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257
1460	¶ 506.1	감리사 또는 총리사에 의한 안수 후보자 공천 허용	258
1070	¶ 507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화	259
1085	¶ 507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화	262
1131	¶ 507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263
1148	¶ 507	장로목사 재정 및 행정 교육 요구 사항	268
1294	¶ 507.2	학위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십시오.	271
1346	¶ 507.2	교육 경로	272
1431	¶ 507.6	신학적 일치 증진을 위한 계속 교육 요건	273
1442	¶ 508	목회자에 대한 교리적 기대 명확화	274

번호	¶	제목	페이지
1408	¶ 508.2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역사적 질문 복원	275
1413	¶ 509	언약적 연대: 집사목사	276
1229	¶ 509.1	그리스도론적 질문 추가: 집사목사 안수 시험	278
1415	¶ 510	언약적 연대: 장로목사	280
1084	¶ 511	목회자 훈련 기금	282
1126	¶ 511	목회자 훈련 기금-수정된 형식	283
1375	¶ 511	목회자 훈련 기금 수정	284
1047	¶ 512	교리와. 장정 512 단락 수정에 대한 청원입니다.	285
1083	¶ 512	임시목사의 명칭을 교구 목사로 변경	287
1182	¶ 512.1	본처 전도사 파송 명확화	289
1183	¶ 512.2	본처 전도사를 위한 성례전 권한 연장의 명확화	290
1459	¶ 514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의 명확화된 자격 및 목회자 전도자 파송	291
1450	¶ 515	선교사 파송 자격 및 과정의 명확화	293
1233	¶ 516.1	목회자 전송	295
1234	¶ 516.1	목회자 자격 증명의 이전	296
1235	¶ 517	다른 교단 출신 목회자의 파송	297
1420	¶ 517	글로벌 감리교회 내 유효한 장로목사 및 유효한 집사목사의 자격 기간 정의	299
1407	¶ 518	휴직 규정 개정	300
1328	¶ 518.6	육아 휴직 복직	304
1005	¶ 520	선임지위 목회자 투표권 개정안	305
1419	¶ 520	조건부 조항 삭제	306
1033	¶ 521	모든 목회자를 위한 구역회 연대	307

안수받은 직분의 본질과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버지니아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교회에 의해 구별되어 세워지며, 연회 안에서 파송되는 웨슬리안 연대적(연대) 안수사역의 이해를 단언합니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맥락에서는 목회자를 직원으로 보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조항은 안수받은 사역이 고용 관계가 아닌 거룩한 소명임을 명확히 하면서, 제한된 시민적 분류를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심에 근거하여, 이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파송 제도를 보호하며, 교회가 목회와 사역을 이해할 때 명확성과 일치를 촉진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503을 추가하고 이후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신설 503단락 추가
- 2 ¶ 503 –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교회의 관계. 기독교 교회에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흘러나옵니다.
- 3 예수께서는 자신을 샅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0:11-15). 이러한 이해에 따라, 글로벌
- 4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위한 목자로 목회자/사역자/성직자를 소명하고 안수하며, 언약적이고 연대적인 교회의
- 5 삶 안에서 섬기도록 부릅니다.
- 6 목회자/사역자/성직자는 지역 교회, 지방, 또는 연회의 직원으로서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사역자/성직자를
- 7 파송하여 섬기도록 하며, 목회자/사역자/성직자는 교회의 교리, 규율, 사명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집니다.
- 8 시민 당국 및 기타 기관들은 세금, 복지제도, 보험 등과 같은 제한된 법적 또는 규제 목적에 따라 목회자/사역자/성직자를
- 9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안수받은 사역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으며, 목회자/사역자/성직자, 연회,
- 10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회중)와의 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11 그러므로 안수받은 사역은 고용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의 거룩한 소명을 의미합니다.
- 12 현행 503단락 및 파트 5의 모든 후속 단락을 신설 503단락의 삽입을 반영하도록 재번호화하십시오.

교단 공인 목회 직분에 선교사 포함

청원자: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 청원은 선교사를 교리와 장정 및 교단 공인 목회 직분에 포함하며, '선교사의 사역'에 관한 교리와 장정 조항과 일치되도록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1.2를 수정합니다

- 1 2. 장로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감독과 감리사 직분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는 다양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직분은
2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한다. 직분에는 사도, 선자자, 전도자,
3 목사, 교사, 다스리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엡 4:11-13; 고전
4 12:28). 성령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교회의 분별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신다.

5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6 2. 장로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감독과 감리사 직분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는 다양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직분은
7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한다.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선교사,
8 전도자, 목사, 교사, 관리자, 기적의 사역자, 치유자, 및 도우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엡 4:11-13; 고전
9 12:28). 성령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교회의 분별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신다.

공인 평신도 사역자 사역 분야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청원은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의 모든 사역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을 여전히 정의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2.1을 개정한다

- 1 공인 평신도 사역자. 1.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웨슬리안 교리와 교단 정체에 대한 특별
- 2 훈련을 받고 교회의 인준을 받은 개체교회 소속의 고백 교인이다. 이 범주에는 이전에 공인 평신도 봉사자, 공인 평신도
- 3 설교자, 공인 평신도 사역자, 집사, 가정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공인된 평신도
- 4 사역자는 인도, 가르침, 선포/설교, 전도, 예배, 돌봄 사역 등 교회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일할 수 있다. 공인 평신도
- 5 사역자는 교회의 모든 사역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감독이나 감리사의 승인이나
- 6 파송을 받지 않지만, 감독이나 감리사는 해당 평신도 사역자에게 자신의 개체교회 밖에서 사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 평신도 사역자 - 승인된 훈련과정의 명확화

청원자: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조직: US: South Georgia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고등교육 및 사역 위원단의 승인을 받은'이라는 표현 앞에 '기준을 충족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연회 평신도 사역 훈련 팀들이 교단에서 승인한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각자의 상황과 맥락의 필요에 부합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된다. 이는 고등교육 및 사역 위원단이 통일성을 위한 핵심 기준과 지침에 집중하도록 하면서도, 지역 차원의 실행을 권한 있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직:

미국: 사우스 조지아

본문:

2. 자격.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a.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현지 글로벌 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2 b. 교회의 교리, 역사, 정치체제, 그리고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과정으로서, 고등교육 및 사역 위원단이 승인한
- 3 기준을 충족하는 평신도 사역 과정의 만족스러운 이수할 것.
- 4 c. 사역의 한 영역(예: 설교, 예배 인도, 돌봄 사역 등)에 관한 과정으로서, 고등교육 및 사역 위원단이 승인한 기준을
- 5 충족하는 최소 한 개 이상의 고급 평신도 사역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다른 환경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교육은 사역
- 6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7 d. 국가적 신원 조회.
- 8 e. 담임목사의 서면 추천과 목회 협력 위원회 및 구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합니다.
- 9 f. 연회 안수위원회의 인터뷰 및 승인. 해당 인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과정 요구 사항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과정이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해당 과정이 포함하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2.2.b를 수정합니다

- 1 자격.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현지 글로벌 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3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교회의 교리, 역사, 정체, 기본 성경 지식에 대한 평신도 사역 과정의 만족스러운 이수.
- 4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의 평신도 사역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여,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5 사역에 대한 소명의 이해
- 6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 역사, 정치
- 7 기본적인 성경 지식
- 8 선교 및 전도
- 9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대한 배려
- 10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의 사역 분야(예: 설교, 예배 인도, 배려 사역 등) 평신도 사역 고급 과정 중
- 11 하나 이상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연회 안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훈련이 이 요건을
- 12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13 국가적 신원 조회.
- 14 목회자의 서면 추천과 목회 협력 위원회 및 구역회의 다수결 투표에 의한 승인.
- 15 연회 안수위원회의 인터뷰 및 승인. 해당 인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공인 평신도 사역자 신원 조회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현 502.2 (d)항의 문구는 미국 중심적이며 우리 글로벌 조직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글로벌 운동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2.2.d를 수정합니다

- 1 국가적 신원 조회.
- 2 연회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신원 조회.

공인 평신도 사역자 자격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공인 평신도 사역자의 교인 자격 요건은 안수받은 성직자(참조 ¶ 506.1) 및 공인 평신도와 성직자 전도사(참조 ¶ 514.1)의 자격 요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2.2.a를 수정합니다

- 1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현지 글로벌 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2 최소 1년 이상 개체 글로벌의 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의 고백 교인.

공인 평신도 사역자 양성 및 자격증 부여에 대한 지역 행정

청원자: 연회 사역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하트랜드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연대적이며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리더십 개발을 연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인 평신도 사역은 본질적으로 지역적이고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중과 지역의 사역적 필요로부터 발생합니다. 훈련, 양성 및 자격증 부여는 이러한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은 공인 평신도 사역자 훈련에 대한 책임을 연회로 이전하여, 평신도 사역을 교회의 상향식 구조에 맞춥니다. 연회는 평신도 리더십을 강화하고 교회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교리적으로 충실하며 상황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2.2를 수정합니다

- 1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교회의 교리, 역사, 정체, 기본 성경 지식에 대한 평신도 사역 과정의 만족스러운 이수.
- 2 교회의 교리, 역사, 정치 및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다루며, 연회 사역위원회에서 승인한 평신도 사역 과정을 만족스럽게
- 3 이수해야 합니다.
- 4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역 분야(예: 설교, 예배 인도, 돌봄 사역 등)에 대한 평신도 사역의 고급 과정의 하나
- 5 이상 만족스러운 이수. 사역 분야(예: 설교, 예배 인도, 돌봄 사역 등)에 대해 연회 사역위원회에서 승인한 평신도 사역의
- 6 고급 과정을 최소 한 개 이상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연회 안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 7 훈련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8 지난 3년 동안 목회위원회가 승인한 평신도 사역 고급 과정을 한 개 이상 추가로 이수. 지난 3년 이내에 연회 사역
- 9 위원회에서 승인한 평신도 사역의 추가 고급 과정을 최소 한 개 이상 만족스럽게 이수

목회자 직분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 청원은 목회자 직분의 소명, 사역, 정치 체제를 조화시켜, 효과적으로 소명을 분별하고 준비하며, 소명에 따라 파송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503.1은 이 청원의 기본 개정안입니다. 소명에 따른 교회 봉사는 ¶ 207.4 및 ¶ 208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총회 대의원 선거(¶ 709.6)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된 교육 요구 사항(¶ 507.3)은 개정된 ¶ 503.1에서 비롯되며, 일관성을 위해 ¶ 507.2 및 ¶ 509.1의 변경이 필요하고, 장로목사 교육이 변경되지 않도록 ¶ 507.4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504.2의 변경은 감독 사역 관련 용어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이는 ¶ 413, ¶ 409.3, ¶ 509.4, ¶ 512.1, ¶ 512.2에 연쇄적으로 반영되어 변경된 감독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장로목사들의 역할을 활성화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개정 이후 ¶ 509.5는 중복 및 부적합으로 삭제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3.1, ¶ 207.4, ¶ 208, ¶ 709.6, ¶ 504.2, ¶ 507.2, ¶ 507.3, ¶ 507.4, ¶ 509, ¶ 509.4, ¶ 409.3, ¶ 413, ¶ 512.1, 및 ¶ 512.2를 수정하고 ¶ 509.5를 삭제합니다

- 1 ¶ 503.1. 집사 목사 직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 섬김, 긍휼, 정의의 사역인 집사목사의 사역으로
- 2 부름을 받는다.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디아코네이트(diaconate)라는 단어는 모두 일반적인 그리스어 어근인
- 3 디아코노스(diaconos) 또는 "중"과 디아코니아 (diaconia) 또는 "봉사"에서 유래했다. 이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 4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교회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인도한다. 집사목사들은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 5 증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서 공동체의 봉사를 구현하고 이끌어야 한다. 이 사역은 모든
- 6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종의 본을 교회에 모범적으로 보입니다. 집사목사는 말씀을 자신의
- 7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며, 교회 공동체에 예배와 자비를 베풀고, 평신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 8 섬기며, 교회에서 장로목사의 예배, 봉사를 지원합니다.
- 9 외의 사역들 중, 개체교회 안팎에서 집사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결혼을 주례하고, 죽은 자를 묻고,
- 10 병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세상의 필요를 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또한 ¶ 413에 따라 성례를 집례하거나
- 11 보조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지역 교회 안팎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데 그 예로 개체교회의
- 12 담임목사로 섬기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집사목사는 해당 교회에 담임목사로 임명된 장로목사의 감독 아래서
- 13 사역합니다. 개체 교회 목사로 섬기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집사목사는 평신도로서 소명과 세상에서
- 14 증거하고 예배, 봉사할 책임을 유지합니다. 집사목사로서의 안수는 한 사람이나 중에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은 안 받은
- 15 일평생 동안을 위한 것이다; 원한다면 사람들은 영구 집사목사로 남을 수 있다. 집사목사로서의 안수는 이후 장로목사로
- 16 안수를 받든지 안받든지 평생 지속됩니다.
- 17 ¶ 207.4. 총회가 결정한 숫자에 따라 총회에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 18 신분이 양호해야 한다. 평신도 대표는 글로벌 감리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모두 단순
- 19 다수결로 선출하며, 목회자 대표는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표는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 20 총회가 결정한 숫자에 따라 총회에 장로목사 및 평신도 대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장로목사 대의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 21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평신도 대표는 글로벌 감리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장로목사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 22 단순 다수결로 선출하며, 목회자(집사목사 및 장로목사)는 장로목사 대의원에, 평신도는 평신도 대의원에 투표합니다.
- 23 ¶ 208. 제7조. 총회 — "함께 의논"하는 감리교 전통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에는 총회가 있으며, 최초로 창립 총회

24 소집을 위해 모인 후, 그 후 약 2년이 지나 총회로 다시 모입니다. 이후 총회는 6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총회는 200명 이상
 25 7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로 하며, 총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연회에서
 26 선출한다. 이후 총회는 6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총회는 최소 200명, 최대 7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절반은
 27 장로목사, 절반은 평신도로서, 총회에서 정하는 비례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합니다. 총회는 그 숫자 안에서, 재량에 따라
 28 다른 자치 감리교 기관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거나 혹은 없는 제한된 대의원의 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정 사안이나
 29 필요를 다루기 위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총회 또는 감독 지도부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의 특별
 30 회기는 직전 총회의 대의원 또는 그 합법적 후임자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총회는 교단 감독회의와 연대 협의회의
 31 승인을 얻어 화상으로 모일 수 있다.

32 ¶ 709.6. 총회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33 전신 교회에서 선출 전 최소 2년 이상 봉사하고, 품행이 단정한 상태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521.2a의 규정에 따라, 장로
 34 목사 또는 집사 목사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정회원이 되며, 글로벌 감리 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35 선출되기 전 최소 2년 이상 봉사한 정회원 자격을 갖춘 경우 목회자 대의원이 될 수 있다. 평신도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36 또는 그 전신 교단의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단순
 37 과반수 투표로 선출하며, 목회자 대의원은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의원은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38 총회에서 결정한 공식에 따라 총회에 장로목사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장로목사 대의원은 글로벌
 39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에서 선거 이전 최소 2년간 양호한 상태로 봉사한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 521.2a 조항에 따라
 40 장로목사로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정회원이 되며,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에서 선거 이전 최소
 41 2년간 양호한 상태로 봉사한 경우 장로목사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42 전신 교단의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로목사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투표에서 단순
 43 다수결로 선출하며, 목회자(집사목사 및 장로목사)는 장로목사 대의원에, 평신도는 평신도 대의원에 투표합니다.

44 ¶ 504.2. 감독 사역(사도적 사역).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도록 부름 받고 파송된 장로목사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45 감독 사역 또는 사도 사역의 일부이다. 감독 직분에 선출된 장로목사들은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하며 신앙을 수호하고
 46 연회를 구성하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감독과 규율을 책임진다. 그 다음에 감독은 다른 장로목사들을 지방감리사(PE)로
 47 부르고 파송하며, 지방감리사(PE)들은 자신의 지방 내에서 목회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침과 지시를 내리고, 새로운
 48 교회를 조직하고, 평신도, 집사목사, 장로목사들이 사역하는 것을 돕고, 치리하고, 성례전적직원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49 모든 장로목사는 감독의 직무로 부름받았으며, 장로목사가 맡은 목회 구역 내 여러 교회, 속회 등에서 집사목사와
 50 임시목사의 교회예배, 세상에서의 평신도 사역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51 ¶ 507.2 안수받는 경로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리적 위치 및 생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글로벌 감리교회
 52 내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53 합니다. 장로 목사의 평생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지역의 전통적인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지만,
 54 성서학 석사(M.A.), 사역학 석사(M.Min.), 신학 석사(M.Th.) 또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55 성서학을 포함한 목회학 학사(B.A.) 등의 학위를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 연령 또는 생활 환경으로
 56 인해 이러한 정식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렵거나 실행하기 불가능한 개인은 목회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57 프로그램에서 비학위 목회학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아래에 설명된 핵심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58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
 59 후보자들은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60 이전에 학업을 마쳤거나 등록한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안수 자격

61 수준별로 요구 과목만 이수하면 위에 나열된 학위나 자격 프로그램의 단독 혹은 복합 과정 이수를 모두 인정합니다.

62 ¶ 507.3 집사목사 교육 요건. 집사목사 안수 예정자는 총 10과목(약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10개 과정은 다음과
63 같습니다:

64 집사목사 교육 요건.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자는 역사, 정치체제, 신학, 사역의 열(10) 개 영역에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65 집사목사 후보자는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가 개발한 서면 또는 구두 시험을 통해 이 10개 영역의 역량을 입증해야
66 합니다. 시험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가 만든 평가 기준표를 사용하여 연회 안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연회는 목회 및
67 고등교육위원단이 만든 최소 기준을 활용해, 본 단락에 열거된 열(10)개 역량 영역과 집사목사 안수(¶ 509) 질문에 대비할
68 수 있도록 집사목사 후보자에게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69 이 열(10)개 역량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0 구약 성경 개론

71 신약 성경 개론

72 조직신학

73 웨슬리 신학과 교리

74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리교 역사와 정치체제

75 설교의 기초

76 목회 상담

77 전도와 선교

78 성례와 예배에 대한 웨슬리안의 이해

79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해석학

80 ¶ 507.4 장로목사 교육 요건. 이전에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자는 아래 8개 필수 과목을 포함해 최소
81 10개 추가 과정을 이수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 안수 예정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82 글로벌 감리교회의 집사목사는 아래 18(십팔)개 필수 과목을 포함해 최소 20(이십)개 과정을 이수한 후 글로벌
83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 안수 예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84 구약 성경 개론

85 신약 성경 개론

- 86 조직신학
- 87 웨슬리 신학과 교리
- 88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리교 역사와 정치체제
- 89 설교의 기초
- 90 목회 상담
- 91 전도와 선교
- 92 성례와 예배에 대한 웨슬리안의 이해
- 93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해석학
- 94 종교 개혁까지의 기독교의 역사
- 95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의 기독교 역사
- 96 변증학
- 97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성 훈련
- 98 크리스천 리더십과 갈등 해결
- 99 추가 구약 성경 과목
- 100 추가 신약 성경 과목
- 101 성령 사역
- 102 선택 과목은 다음 영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3 교회의 사명과 교회 갱신
- 104 다문화 사역 및 전도
- 105 설교 고급과정
- 106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연구

107 목회 상담

108 교회 재정 및 관리

109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임상 목회 교육(CPE)

110 종교철학

111 이스라엘 현장 학습

112 신학 선택 과목

113 예배 신학

114 어린이 또는 청소년 사역

115 정의를 위한 복음의 비전

116 선교 및 교회 갱신

117 미디어 및 현대적 응용

118 지도형 인턴십 또는 독립 연구

119 ¶ 509. 집사목사 안수.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먼저 집사목사로 안수받아야 하며, 집사목사 안수
120 후에는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 1. 안수 질문. ¶ 507.3의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한 집사목사 안수 후보자는 연회
121 사역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의 면접을 받아야 합니다. ¶ 507.3의 교육 요건을 이수한 집사목사 안수 후보자는
122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의 면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접에 앞서 지원자는 다음 질문에 서면으로
123 답변해야 한다:

124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125 악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126 은혜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127 신자들의 삶과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128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129 부활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까?

- 130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131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132 사역에 어떤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 133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134 성례전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 135 우리 교회 장정과 정치 형태를 연구했고, 이를 지지하고 유지할 것입니까?
- 136 교회의 증거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높은 이상에 헌신하고, 개인적인 습관을 절제하며, 모든 관계에서의
137 정직함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언약에 충실하고, 독신인 경우 개인적인 행동에서 순결함을 유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 138 연회 목회위원회는 후보자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 윤리 원칙 및 규율에 대한 충분한 기초와 헌신을 입증하는지
139 평가해야 합니다.
- 140 ¶ ¶ 509.4. 집사목사는 감독에 의해 개체교회(목회자 포함) 또는 다른 사역 환경에서 사역팀의 일원으로 파송된
141 장로목사 감독 하에 파송될 수 있으며, 또는 감독의 승인과 파송을 받아 독자적으로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 142 ~~¶ ¶ 509.5.~~ 집사목사로서 장로 목사안수 소명을 고려 중이거나 감독 또는 감리사로부터 장로목사 직분에 대한 은사와
143 은혜가 인정되는 이는 개체교회에서 목사 직분에 파송될 수 있다. 그러한 파송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파송을
144 수락한 집사는 집사목사로서의 모든 교육 요건을 마친 후 장로 목사 안수 입후보를 선언하고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절차를
145 시작해야 한다.
- 146 ¶ 409.3.
- 147 안수 또는 인가를 받은 목사가 목회적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cabinet)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148 훈련받은 평신도를 배치하여 해당 책임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 목회 책임을 장로목사가 맡을 수 없을 때, 감독은
149 감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평신도를 해당 사역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책임은 장로목사가
150 감독하는 다른 교회에 통합됩니다. 평신도는 책임을 맡는 지방 감리사(PE)나 그 직무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다른 안수 받은
151 목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맡은 이들은 성찬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임무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152 평신도는 연회 안수(목회) 위원회의 보살핌을 받아 인증된 사역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153 평신도는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54 ¶ 413. 성례전의 권위. 영국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정식으로 집행되는 공동체로
155 정의되었습니다(감리교 종교조례 제13장).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관행에 따라, 장로목사는 교회의 성례전 생활을
156 감독하도록 안수받으며, 따라서 성례전과 성찬식을 주재할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감독은 성례전을 거행할
157 목적으로 개체교회의 목사직에 파송된 집사목사나 다른 전문 목회 환경으로 성례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 집사목사의
158 이러한 성례전적 권한은 파송된 사역 환경에 국한되며 지방 감리사(PE)의 감독과 권위 아래 행사된다. 장로목사는 자신이
159 담당하는 구역 내에서 봉사하는 집사목사에게 성례전 집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집사목사에 대한 이러한 성례전

160 권한은 해당 장로목사 구역 내의 사역 환경에 한정되며, 그 장로목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행사됩니다.

161 ¶ 512.1 연회 안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 506.3에 따른 안수 후보자를 글로벌 감리교회 내 임시 목사로 파송할
162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장로목사를 배정하는 것은 연회 안수 위원회의 책임이다.

163 연회 안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 506.3에 따른 안수 후보자를 장로목사의 책임과 감독 하에 임시목사로 파송할
164 수 있습니다. 기존 목회 구역에 속하지 않는 교회 개척지에 파송되거나 섬기는 임시 목사는 ¶ 450의 규정에 따라 후원
165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166 ¶ 512.2.

167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인정하고,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168 제공하기 위해, 임시목사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성례전의 신학과 실행에 관한 연회 목회위원회의 훈련을 이수한 후, 감리사
169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감리사는 적절한 경우 임시
170 목사의 후보자 멘토를 이 역할에 배정할 수 있다.

171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서적 원리를 인정하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이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172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목사가 글로벌 감리교회 성례전 신학과 실행에 관한 연회 안수위원회의 교육을 마친 후에는,
173 해당 구역을 감독하는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성례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안수위원회는 성례전 신학과 관련하여 감리교
174 전통 안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을 해당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안수받은 사역자의 인격과 역량.

청원자: 목회 및 고등 교육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목회 및 고등교육 위원단의 청원에서 ¶ 507을 대체하려는 제안에 모든 교육은 사역자가 “¶ 505의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국제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유한 역량과 인격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수 위원회는 안수 분별을 위한 평가 도구로 ¶ 505와 ¶ 507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56년 웨슬리의 연설에서 나온 특정 언어는 우리 교회의 풍부한 역사에 기반을 두기 위해 유지되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5 전체를 대체합니다

- 1 ¶ 505. 안수받은 이들의 인격과 역량. 안수 예정자는 웨슬리의 1756년 목회자에게 보낸 말씀의 정신에 따라, 안수 전에
- 2 뚜렷한 영적 형성과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507)은 아래 형성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 3 집사목사와 장로목사
- 4 구약과 신약에 대한 숙련된 이해,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헌신.
- 5 웨슬리안 신학의 기초 확립
- 6 웨슬리안 역사와 정치체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
- 7 교회의 구별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의 확인/신앙 고백(유아 세례 받은 이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과정)
- 8 겸손과 자기 부인
- 9 책임감 체계 안에서의 정서적 성숙도
- 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의지
- 11 하나님과 모든 이들을 향한 탁월한 사랑
- 12 교회의 성례전과 예배 생활에 대한 이해
- 13 소통과 영혼을 배려하는 은사
- 14 돈, 칭찬, 야망, 관능, 그리고 오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 15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헌신
- 16 모든 악과 그 모양에서의 철저한 절제

- 17 장로목사들/장로들
- 18 장로목사단과 사역 직분, 그리고 소명에 대한 이해와 순복
- 19 정통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
- 20 성경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 21 성찬의 신비에 대한 깊은 이해
- 22 우리 정치체제에 대한 확신과 심도 있는 이해
- 23 웨슬리안 영성훈련에 대한 헌신
- 24 설교와 선포의 은사 입증
- 25 성령의 역사, 인격, 열매와 은사에 대한 통달
- 26 개체 교회와 연대적 교회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 가는 은사
- 27 평신도를 장려하고 미래의 목회자를 세우는 능력을 입증함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언약적 연대: 목회자

청원자: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조직: 러셀빌 (미국: 노스앨라배마)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 청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상호 사랑, 책임감, 거룩한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언약적 삶에 대한 헌신을 단언합니다. 이는 목회자가 웨슬리안 제자도에 참여하고, 지역 교회와 연회를 강화하며,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서번트 리더십 구조에 순종하도록 하는 공동의 기대를 수립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목 책임이 신실한 목회적 감독을 받게 하며, 모든 지도자가 최고 수준의 훈련과 사역 탁월성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구조가 아닌 신학적 언약에 대한 웨슬리안적 이해로 우리 자신을 재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정치 구조를 재정렬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5를 수정합니다

- 1 ¶ 505. 안수 목사의 기본 자격 목사로 안수를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한다.
- 3 2. 신체적 건강, 정신적, 정서적 성숙, 모든 관계에서의 품격,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그리스도인 결혼 생활에서의 정절,
- 4 독신으로서의 순결, 사회적 책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습관을 보여줌으로써 책임감 있는
- 5 자기 통제를 포함한 웨슬리안 총칙에 부합하는 영적 훈련과 거룩한 삶의 패턴을 육성하고 배양해야 한다.
- 6 3.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역에 헌신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 7 4.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8 5. 안수받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증거와 교회 선교에서의 미래 유용성에 대한 약속을 제시합니다.
- 9 6.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성경, 신학, 교회사 및 교회 정치 분야에 능숙하며, 사역 실천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 10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앞장섭니다.
- 11 7.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회의 교리적 기준, 규율, 권위를 수용하며, 감독 사역에 파송된 이들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 12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언약 안에서 생활합니다.
- 13 8. 지역 교회의 언약적 친교에 충실함을 보여주고, 목회자들 간의 강화된 언약적 친교 기준에 기꺼이 순종하는 온전한
- 14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 15 9.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 16 (신설) ¶ 506. 목회자 언약 친교. 이 목회자 언약 친교는 연회 사역위원회에 의해 정의되며, 최소한 다음에 대한 상황적
- 17 이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 18 1. 기록된 구역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매년 서로에게 보고합니다.

- 19 2. 최소 6년마다 한 번씩 이 언약적 삶을 함께 살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동료 심사를 받음.
- 20 3. 웨슬리안 속회와 밴드를 통해 서로 언약적 책임감 안에서 생활합니다.
- 21 4. 우리의 은사, 재능, 자원을 사용하여 연회 사역을 강화함으로써 언약 친교의 신실한 회원으로 생활합니다.
- 22 5. 우리 가운데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자 힘쓰며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무너지거나 실패할 경우를
 23 대비하여 적절한 정책, 절차, 훈련 및 언약적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임 (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24 적용되는 경우,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어떤 자격으로든 섬기는 모든 목회자는 전문직 배상 책임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보험
 25 보장 패키지에 스스로 가입해야 함. 각 목회자는 매년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6 6. 책임성을 위해 최소한 매년 영적 지도력에 순종합니다(감독, 총리사, 감리사, 감독 장로목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27 국한되지 않음).
- 28 7. 영적 성장을 위한 정기적인 기회와 연례 계속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분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훈련과
 29 학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 30 (이후 번호 재지정)

31 교리와 장정을 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더욱 부합시키기 위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32 ¶ 517.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한 목회자 파송

- 33 1. 안수 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목회자 실무회의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신분이 양호한 다른 기독교 교단 소속의 목회자를
 34 교단 소속을 유지한 채 임직 또는 초교파적 사역을 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그들의 파송은 연회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35 언약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6 글로벌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다른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목회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7 안수 위원회가 준비한 신청서에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라:

38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사역에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

39 필요한 모든 심리 검사, 범죄 경력 및 신용 조회, 성추행 또는 아동 학대 보고서에 대한 공개 및 허가.

40 후보자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성추행이나 아동 학대로 서면 고발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41 공증된 진술서, 또는 중범죄나 경범죄 유죄 판결이나 성추행이나 아동 학대에 대한 서면 고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공증된
 42 진술서.

43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지지하며,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진술서.

44 사역 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교리와 장정을 읽었으며, 글로벌 감리교회의 권징과 정체를 지지하고 유지할 것임을
 45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46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적합한 자격 증명을 제시합니다,

47 글로벌 감리교회의 집사목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48 안수를 받았지만 글로벌감리교회가 요구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목회자는 임시로 파송될 수 있으며, 임직 시작 후
49 3년 이내에 집사목사로서의 모든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요건 완료에 대한 진행 상황은 매년 표시되어야 한다.

50 2.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확인된 목회자는 연회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사안에서는
51 제외된다.

52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인정받은 목회자는 연회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53 계속 유지하는 한, 다음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연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4 헌법 개정;

55 총회 또는 연회 대의원 선출; 그리고

56 안수, 품성, 그리고 목회자의 연회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는 연회의 모든 이사회,
57 위원단 또는 위원회(사역 이사회 및 재단 이사회 제외)에서 봉사할 수 있다.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와 유효한
58 장로는 총회나 연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59 3. 연회 회기 사이에, 연회의 다음 정기 목회자 회기에서 승인될 때까지 안수 위원회는 그러한 사람의 파송을 승인할 수
60 있다. 감독은 사역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에 대해 임시 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61 권징, 정체를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해당 인물의 이해, 수용, 및 의지에 대해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62 합니다. 그러한 개인은 감독으로부터 파송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연회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언약 친교에 순종하고
63 책임감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64 ¶ 908. 사법 고소

65 1. 고소 가능 위반 행위 - 연회의 감독이나 목회자 회원(선임 목회자 및 명예 또는 행정 처분에 있는 목회자 포함)은 다음
66 위반 행위 중 하나 이상으로 기소될 때(아래에 명시된 공소시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7 e.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68 f. 언약 친교를 저버리는 행위 (¶ 505 & ¶ 506).

69 (추후 번호 재지정)

70 공동 서명자 청원 사본 | 2026년 총회 준비용 | 글로벌 감리교회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교회의 성에 관한 가르침에 비준 안수 기준 명확화

청원자: Jonathan Le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교리와 장정은 안수받은 목회자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기독교적 결혼에서의 신실함과 독신자에 대한 순결(¶ 505)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동성애 행위, 트랜스젠더 정체성, 그리고 회개와 변화 없는 절제 행위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전통은 거룩함이 단순히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순종·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 은혜로 변화시키는 사역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안수 사역은 교회의 교리에 대한 명확성, 일관성 및 신실성을 요구합니다.

조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미국: 상부 중서부)

본문:

(2) 신체적 건강, 정신적·정서적 성숙, 모든 관계에서의 품격,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기독교 결혼에서의 충실함, 독신일 때의 정절,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습관을 보여줌으로써 책임 있는 자기 관리를 포함하여, 감리교회의 총칙에 부합하는 영적 훈련과 거룩한 삶의 패턴을 육성하고 배양합니다.

- 1 (2) 신체적 건강, 정신적·정서적 성숙, 모든 관계에서의 품격, 교회의 기독교 결혼과 성적 거룩성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 2 신실함,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기독교 결혼에서의 충실함, 독신으로서의 정절,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 3 지식과 사랑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습관을 보여줌으로써 책임 있는 자기 관리를 포함하여, 감리교회의 총칙에 부합하는
- 4 영적 훈련과 거룩한 삶의 패턴을 육성하고 배양합니다(¶ 302.7, 302.8). 안수 후보자는 단순히 죄를 관리하거나
- 5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거룩함에 합당한 회개, 순종 및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동성애 성직 안수에 반대하는 성명서

청원자: Springfield Oaks

조직: 미국: 사우스조지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글로벌 감리교회가 동성애자 가운데 독신을 표방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공언하며 그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의 안수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본문:

(8) 교회로부터 안수받은 사역자로 구별된 사람들은 인간 조건의 모든 연약함과 사회적 압력 아래에 놓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의 기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을 동성애자 독신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공언하며 그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은 누구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후보자로 인증되거나, 사역자로 안수받거나, 섬기도록 임명될 수 없다. (레위기 18:22-24, 고린도전서 6:9-11, 로마서 1:24-28, 유다서 1:7)

성전환자 성직 안수 반대

청원자: Springfield Oaks

조직: 미국: 사우스조지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우리는 성전환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지되는 것처럼 확인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성전환주의 관행과 성전환자 성직자 안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양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본문:

(9) 교회로부터 안수받은 사역자로 구별된 사람들은 인간 조건의 모든 연약함과 사회적 압력 아래에 놓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의 기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성전환주의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전환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후보자로 인증되거나, 사역자로 안수받거나, 섬기도록 임명될 수 없다. (레위기 18:22-24, 고린도전서 6:9-11, 로마서 1:24-28, 유다서 1:7)

안수 목회에 이르는 길: 전통 경로와 대안 경로

청원자: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조직: US: Trinity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는 안수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안수 사역에 대한 소명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 목회 협력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을 확립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운동이지만, 지역적으로는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수 사역의 부르심을 듣고 분별하는 경험을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은 일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조직:

미국: 트리니티

본문:

¶ 506. 안수 목사사역에 입문

1. 목회 사역에 대한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은 후보자 과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역 목회자 또는 지방 감리사와
2. 면담해야 한다. 현지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에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3.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그들은 목회 위원회에 사역에 대한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목회협력위원회
4.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에서 비밀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그 사람은 구역회에 상정되어 후보자 과정
5. 승인 여부를 단순 과반수로 결정한다.

6. a. 각 연회의 안수위원회는 사역 후보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수 사역에 대한 소명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7. 있도록, 목회협력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2.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학 또는 신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안수 사역에
9. 대한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되기를 원하는 연회의 지방 감리사 또는 안수위원회 위원장(또는 그가 지정한
10. 자)과 면담해야 한다. 그들은 개체 교회의 교인으로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며, 대학 또는 신학교에
11. 재학 중인 경우에는 캠퍼스/채플 사역에 최소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한다. 그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학적
12. 입장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추고, 지방 감리사 및 안수위원회
13. 위원장(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본 ¶ 406에 명시된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역
14. 후보자로서 심사를 받기 위해 안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2.3. 후보자 분별. 개체 교회의 승인 이후 또는 ¶ 406.2에 따른 대체 승인 이후, 해당 후보자는 연회 안수위원회의 감독
16. 아래 최소 6개월 동안 소명 분별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는 사역 현장에서의 감독된 인턴십 또는 고용이 반드시
17.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18. a. 안내서 이수, 멘토링,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소그룹 참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명 분별 과정에 참여할
19. 것.
20. b. 심리 평가, 신원 조회 및 신용 조회를 받아야 하며;
21. c. 최소 6개월의 소명 분별 기간을 마친 후, 후보자는 안수 사역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상세히 기술한 업데이트 된 공식적인
22. 진술서를 작성하여 연회 목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3 34.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그 산하 소위원회는 후보자를 면담해야 하며, 이후 연회 안수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당
24 후보자를 인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5 45. 인준을 받은 후보자는 집사로 안수받을 때까지 연회안수위원회의 감독 하에 영적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목회 후보자 선발 및 사역 입문의 과정의 명확성

청원자: Burt Palmer

조직: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현재 목회 후보자에 대한 규정은 목회 후보자의 각 단계, 배경 조회의 시기, 또는 안수 위원회에 의한 연례 갱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사역에 헌신해 온 이들이 신학적 명확성을 갖추고, 그들의 사역 연한을 분별의 시기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역 진입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원은 또한 글로벌 감리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완료되는 동안에도 면접 과정을 통해 인증된 후보자로 파송되어 목회 경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모든 목회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연례 갱신이 필요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6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1 ¶ 506. 안수 목사사역에 입문

1. 안수 사역에 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개체교회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와 만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최소 2년간 멤버십을 유지했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 글로벌 감리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타 교단에서 대표 사역 또는 목회 스태프로 섬긴 경우에는, 감리사가 그 사람을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그 소위원회에 추천하여 면담을 받게 함으로써 인증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b. 추천 대상자는 최근의 신원 조사 결과, 심리 평가 결과 및 사역 추천서를 안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들은 ¶ 506.2.d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의 목적은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교리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c. 안수 위원회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 추천서 및 자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해당자는 인증 후보자가 되며 ¶ 506.3 및 ¶ 506.4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2. 후보자 과정과 상태

a. 문의 후보자 - 문의 후보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안수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역 목회자 및 감리사에게 연락하여 ¶ 506의 과정과 요구 사항을 상의해야 합니다.

b. 추천 후보자 - 추천 후보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i. 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동등한 위원회의 3분의 2의 비밀 투표용지로 면접을 받고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ii. 구역회에 상정되어 단순 과반수의 투표로 후보자 자격 인준 여부를 결정받아야 합니다.

iii. 개체 교회 또는 연회에서 위탁한 배경 및 신용 조회를 완료해야 하며,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안수 위원회가 배경 및 신용 조회 방식을 결정합니다.

- 20 c. 개체교회 승인 후, 후보자는 연회 안수위원회의 감독 하에 사역 현장에서 감독을 받는 인턴십 또는 고용을 포함 최소
21 6개월 동안 분별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 22 i. 분별력 과정에 참여하며, 이는 글로벌 감리교회 후보자 안내서이수, 멘토링, 인도, 다른 지원자들과의 소그룹 참여 등을
23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24 ii. 연회가 위탁한 심리 평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안수 위원회가 평가 방식을 결정합니다.
- 25 d. 최소 6개월의 분별력 과정을 마친 후, 자격증 면접 전에 추천된 후보자는 안수 위원회 또는 그 하위 그룹에 다음
26 질문들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27 i. 후보자 과정이 당신의 목회 소명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28 ii. 글로벌 감리교회에서의 성례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29 iii. 당신은 성경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 30 iv. 성경적이면서 웨슬리안적인 구원의 서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31 3. 연회안수위원회 또는 그 하위 그룹은 후보자를 면접하고, 연회 안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인준 여부를
32 투표합니다.
- 33 a. 인증 후보자 - 인증 후보자는 ¶ 506의 모든 요건을 완료하고, 안수 위원회와 연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사람입니다.
- 34 4. 인증 후보자는 연회의 목회자 회의로부터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사로 안수될 때까지 연회 안수위원회의 감독
35 아래에서 영적훈련 과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안수위원회가 연회 목회자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에는 인증후보자 명단과 인증
36 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다른 교단에서 오는 목사/목회자들의 전환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교단 외부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전통 내에서 목회자/사역자/성직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이들이 먼저 지역 교회, 회중에 가입하여 이 멤버십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후보자 등록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도에는 "설교 담당"으로 복무하지 않는 한, 혹은 실직 상태가 아닌 한, 본 단락에 따라 사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전통에서 목사/목회자를 영입할 때 마찰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된 유연성은 목사/목회자들이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후보자 등록 과정 중에도 목회자/사역자/성직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사역 위원회가 이 요구 사항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사역 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6.1을 수정합니다

1. 안수 사역에 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개체교회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와 만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2. 현지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에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3.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사역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이 요구 사항을 면제하거나, 글로벌 감리교회에 대한 헌신을 평가하기
4. 위한 대체 방안을 요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회 협력 위원회의 3분의 2 비밀 투표 또는 이에 준하는 투표로
5. 추천된 사람은 구역회에 상정되어 후보 승인 여부에 대해 단순 다수결로 투표한다.

감리사 또는 총리사에 의한 안수 후보자 공천 허용

청원자: Jonathan Diggs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Williamsburg Daybreak (US: Virginia)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506항은 안수 사역 후보자가 후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일 년 동안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 멤버십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분별력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글로벌 감리교회와 신학적으로 일치하는 신학교 졸업생 및 기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감리사 또는 총리사가 일 년의 요구 사항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안수 기준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후보 과정으로 들어가는 추가적인 경로를 만듭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6.1을 수정합니다

- 1 안수 사역에 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개체교회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와 만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현지
- 2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에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 3 소지해야 한다. 목회 협력 위원회의 3분의 2 비밀 투표 또는 이에 준하는 투표로 추천된 사람은 구역회에 상정되어 후보
- 4 승인 여부에 대해 단순 다수결로 투표한다. 또는, 감리사 또는 총리사는 회의의 사역적 필요에 따라, 회의 감리사회 삼분의
- 5 이의 찬성 투표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후보 자격을 위한 일 년 멤버십 요구 사항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공천할 수
- 6 있습니다. 그렇게 공천된 후보자는 이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후보 자격을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기관의 과정과 문화에서 제공되는 내용 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필수 과목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을 추가하면, 평신도와 사역자 모두에게 사역 준비와 학업에 관한 기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줍니다. 또한 신학적 또는 성서적 배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해석학”과 같은 용어와 관련하여 식별 언어의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7.3 및 ¶ 507.4를 수정합니다

- 1 507.3 집사목사 교육 요구 사항. 집사목사로 안수받는 이들은 총 10과목(약 30 학점 또는 이에 준하는 비학위 과정)을
- 2 이수해야 합니다.
- 3 이 10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구약 성경 입문: 구약 성경의 지리, 역사, 종교 및 문화적 컨텍스트, 주요 인물과 사건,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 5 세계를 위한 계획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 6 신약 성경 소개: 저자와 장르뿐만 아니라, 각 권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사건들, 그리고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학습을
- 7 통해 예수님의 사명과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8 조직신학: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구원과 은혜의 본질, 성령의 사역, 종말론(말세), 기독교 도덕과 윤리, 믿음과 실천의
- 9 연관성 등 기독교 사상의 주요 교리를 다룹니다.
- 10 웨슬리안 신학 및 교리: 웨슬리안 관점에서 본 창조, 원죄, 성경의 권위, 은혜의 종류, 완전의 교리와 성화의 강조, 교회의
- 11 목적과 소명 등을 웨슬리의 설교와 찬송가를 통해 다룹니다.
- 12 감리교 역사 및 글로벌 감리교회 정치체제: 감리교의 발흥과 전 세계적 성장, 주요 인물들, 그리고 순회사역, 감독제,
- 13 연대주의, 회의, 목회자 책임감, 평신도와와의 공동 지배, 행정력을 포함한 글로벌 감리교회 정치체제의 특징을 다룹니다.
- 14 설교 기본: 목회자가 설교, 연구, 기타 교육 및 설교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신실하고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 15 인간의 상황을 다루며, 성경을 의미 있고 영향력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원리를 다룹니다.
- 16 목회 상담: 기초 상담 기술, 위기 개입 및 의뢰, 결혼 전 상담과 가족·부부 관계, 슬픔과 사별의 과정, 심방과 병원 방문,
- 17 결혼식과 장례식 집례, 그리고 건강한 경계 설정과 자기 관리.
- 18 전도와 선교: 회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소망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 다른 이들을
- 19 믿음으로 인도하고 온 세상을 향한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교회와 개인의 전략 개발.
- 20 웨슬리안식 성례와 예배에 대한 이해: 웨슬리안 전통 내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사용하는 방법과 성례의 의미, 그리고 회중
- 21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내용. (개체 교회에서 목회자로 봉사하지 않거나 예배 부서의 직원으로 일하지 않는

- 22 집사목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3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해석학: 사본, 번역본, 본문 문제, 문화적 맥락,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 전승을 포함한
 24 성경 해석 및 연구의 원칙.
- 25 4. 장로목사의 교육 요건. 앞서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8개의 필수 과정을
 26 포함하여 최소 10개의 추가 과정을 이수한 후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27 종교개혁까지의 기독교 역사: 기독교 운동의 시작과 성장, 초대 교회의 박해, 신조의 형성, 에큐메니컬 협의회의 역할,
 28 교황권의 부상,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동서 기독교 간의 대분열.
- 29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독교 역사: 루터, 칼빈, 츠빙글리, 알미니우스 등 개혁자들의 사역, 보편적, 로마 카톨릭
 30 교회의 반종교개혁, 선교 시대, 그리고 로크, 에드워즈, 뉴턴, 칸트, 바르트, 본회퍼, 루이스 등 현대에 이르는 주요 사상가.
- 31 변증학: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식별하고, 다른 신앙 체계와 무신론을 포함한 대립되는 관점과 이념을 이해하며,
 32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유다서 3)
- 33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적 성장: 특히 속회와 밴드같은 웨슬리안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34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성장을 도모.
- 35 기독교적 리더십과 갈등 해결: 다양한 성경적 리더십 모델, 팀 및 직원 역학, 조직 변화 및 개발, 청지기 정신, 그리고 교회
 36 또는 개인 간 갈등 해결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
- 37 추가 구약 수업: 모세오경, 예언서, 기타 성경 저술 또는 다른 구약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
- 38 추가 신약 수업: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바울 서신, 기타 성경 저술 또는 다른 신약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
- 39 성령 사역: 성령 신학(성령론)과 그것이 신자와 교회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40 운동의 등장 포함.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현행 용어는 교과 과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UMC를 연상시킵니다. 명칭을 '목회학 연구 프로그램(Pastoral Studies Program)'으로 변경하면, 글로벌 감리교회 내의 대안적 교육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72학점의 규정은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여러 교육 과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해 줍니다. 또한 단락 507.3에 "또는 학위가 아닌 동등한 자격"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학점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은 미국 이외 지역외 안수 위원회가 중등 교육 미만의 학력을 가진 지원자도 고려할 수 있도록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7.2 및 ¶ 507.3을 수정합니다

- 1 507.2 안수 받는 경로.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리적 위치와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글로벌 감리교회 안에서
- 2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들은 가능한 한 최고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 3 장로목사의 평생 사역을 준비하도록 디자인된 전통적인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나, 성서학 석사(MA),
- 4 사역학 석사(MMin), 신학 석사(MTh), 또는 미국 및 유럽 이외 지역 거주자에 한해 성서학을 포함한 목회 실천 학사(BA) 등
- 5 동등한 교육도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 연령, 혹은 생활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정규 학위 과정 이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 6 불가능한 개인의 경우,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었다면, 위원단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학위 '목회학
- 7 수료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된 핵심 과목들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 환경, 연령 또는 생활
- 8 여건상 정규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하거나 교단 안수위원회의
- 9 승인을 받아 목회학 비학위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수료증은 교단 안수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각
- 10 과목당 최소 72시간의 필수 이수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핵심 과목을 최소한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11 집사목사 교육 요건.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이들은 총 10과목(약 30 학점 또는 그에 준하는 비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러한 원문 수정은 확립된 과정, 지정된 교육 경로, 교과목 규정 요건, 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집사목사 및 장로목사 후보자의 입학 시점에 따른 교육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7 및 모든 하위 항을 수정합니다

- 1 ¶ 507.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1. 교육 목표. 지식과 경건을 겸비하라는 존 웨슬리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에서
- 2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후보자는 준비 과정의 일부로 기본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의
- 3 교회로서, 구체적인 요건들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나(¶ 507.2), 모든 요건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 4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드리도록 힘쓰라”
- 5 (디모데후서 2:15)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6 세계적인 교회로서, 구체적 요건들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를 수 있으나(¶ 507.2), 모든 요건은 어디에서나
- 7 우리의 목회자들이 ¶ 505의 요건을 충족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 8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공부하도록"(딤후 2:15)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9 2. 안수를 받는 길.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역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감리교회 안에서 안수를 통해
- 10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한다. 북미 환경에서 장로목사가
- 11 평생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디자인된 역사적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지만, 성서학 석사(MA), 사역학
- 12 석사(MMin), 신학 석사(MTh)와 같은 학위를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미국과 유럽 외 지역에 거주하는
- 13 이들의 경우 성서학을 포함한 사역 실천 분야의 학사 학위(BA)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연령, 혹은 생활
- 14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정규 학위 과정 이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의 경우,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었다면,
- 15 위원단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학위 '목회학 수료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된
- 16 핵심 과목들을 완료해야 합니다.
- 17 a. 글로벌 감리교회는 전 세계의 교육 제도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안수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가능한
- 18 최고 수준의 학문적 배움과 준비를 추구할 것을 기합니다. 안수받은 사역을 준비하는 후보자는 목회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 19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중등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이미 갖추어야 합니다.
- 20 b. 연회 안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506.3), 사역 후보자는 자신이 계획한 교육 이수 계획을 안수위원회에
- 21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유합니다. 사역 위원회는 매년 후보자와의 연대를 유지하여 교육 및 형성 과정의 진전을 점검해야
- 22 합니다.
- 23 c. 안수 목회자 자격을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된 세 가지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기반 교육
- 24 프로그램, (2) 자격증 프로그램, 또는 (3) ¶ 507.7b에 규정된 글로벌 감리교 사역학교 교육 프로그램.
- 25 d. “¶ 507.2.c에 명시된 모든 교육 과정(학위 취득 과정, 자격 과정, 그리고 목회대학 과정)은 집사목사 안수를 위한
- 26 ¶ 507.3 및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 507.4에 규정된 필수 과목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수 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해
- 27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은 위원단의 인준위원회 권장 사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810).

28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에서 관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9 안수 후보자들은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목회자
 30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 교육위원단에서 관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를 위한
 31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상장된 승인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32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학업을 마쳤거나 등록한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필요가 없습니다.

33 글로벌 감리교회는 안수 자격 수준별로 요구 과목만 이수하면 위에 나열된 학위나 자격 프로그램의 단독 혹은 복합 과정
 34 이수를 모두 인정합니다.

35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기 이전에 신학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현재 이수 중인 학생의 경우, 그
 36 성적표는 안수위원회의 동등성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신학 및 교단 정치체제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37 추가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38 3. 집사 목사의 교육 요건.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사람들은 총 10 과목(약 삼십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사목사로
 39 안수받은 사람은 총 열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10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 구약 성경 개론

41 신약 성경 개론

42 조직신학

43 웨슬리 신학과 교리

44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리교 역사와 정치체제

45 설교의 기초

46 목회 상담

47 전도와 선교

48 성례와 예배에 대한 웨슬리안의 이해

49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해석학

50 4. 장로목사 교육 요건. 글로벌의 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개인은, 아래 나열된 필수 여덟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51 열 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글로벌의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52 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개인은, 아래 나열된 필수 여덟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열 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53 글로벌의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목들은 승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에 의해
 54 통합하거나 분산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 55 종교개혁까지의 기독교 역사
- 56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
- 57 변증학
- 58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성 훈련
- 59 크리스천 리더십과 갈등 해결
- 60 추가 구약 성경 과목
- 61 추가 신약 성경 과목
- 62 성령 사역
- 63 선택 과목은 다음 영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64 교회의 사명과 교회 갱신
- 65 다문화 사역과 전도
- 66 설교 고급 과정
- 67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연구
- 68 목회 상담
- 69 교회 재정 및 관리
- 70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임상 목회 교육(CPE)
- 71 종교철학
- 72 이스라엘 현장 학습
- 73 신학 선택 과목
- 74 예배 신학
- 75 어린이 또는 청소년 사역

76 정의를 위한 복음의 비전

77 미디어 및 현대적 응용

78 지도형 인턴십 또는 독립 연구

79 후보자는 관련되는 삶의 경험이나 교육을 근거로 요건의 동등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안수위원회에 청원할 수
80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전체 교육 요구 사항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1 5. 글로벌 교육위원회.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의 일부로서 글로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전 세계 다양한
82 지역에서 웨슬리안 신학 교육을 장려하고 연결하며, 글로벌 메소디스트 교회의 선교적·신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
83 훈련의 일관된 기준을 보장합니다.”

84 5. 평가. 서면 요건과 안수위원회의 면접에 더하여, 집사목사와 장로목사 안수 후보자는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가 개발한
85 서면 또는 구술 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평가 기준표를
86 사용하여 연회 안수위원회가 평가합니다.

87 6. 목회자를 위한 평생교육. 집사목사나 장로목사로 안수받은 후, 목회자는 가능한 한 적어도 매년 수업, 수련회, 세미나,
88 연구 휴가 등을 통해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 시간은 휴가나 개인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89 7. 목회학 프로그램 수업 인증 및 비학위 증명서.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특정 교육기관의 강좌가 이 단락에 나열된
90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연회 안수위원회는 개인이 수강한 과목이 이러한 영역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91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사역 훈련을 위한 역량과 과정을 권고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와 협력하여
92 승인된 비학위 목회학 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93 a.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 기관의 과정들이 본 단락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94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사역 훈련을 위한 역량과 과정을 권고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와 협력하여
95 승인된 학위 및 비학위 목회학 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글로벌 감리교회
96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97 b. 글로벌 감리교회는 승인된 신학 교육 기관과의 거리, 언어 장벽,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학 교육을 완료할 수 없는
98 예외적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교육 자격을 추구하는 이들은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이
99 승인한 글로벌 감리교회 신학교에서 자신의 교육 요건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100 8. 요구사항의 변화.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교육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과정 중에 있는 후보자는 학업을 시작할 당사
101 시행 중이던 교리와 장정(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포함함)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자신의 교육 과정을 완료할 수 있으며, 단
102 후보자가 교육 완료를 향한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교육 요건 및/또는 기관 승인에
103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과정 중에 있는 후보자는 자신이 학업을 시작한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다. 단, 해당
104 기관이 입학 당시 『교리와 장정』(과도기 『교리와 장정』 포함)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정식 승인 또는 잠정 승인을 받은
105 기관이어야 하며, 후보자가 교육 이수를 향한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106 9. 과목 검토: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각 사역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안수를 위해

107 요구되는 과목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권고안을 2026년 총회에 제출한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
108 자문위원회 그리고 안수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안수를 위해 요구되는 과목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권고안을
109 총회에 제출합니다.

장로목사 재정 및 행정 교육 요구 사항

청원자: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조직: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올네이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만약 우리가 장로목사가 "교회의 생활을 회의순서대로 진행한다"고 말한다면,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7.2 및 ¶ 507.4를 수정합니다

- 1 2. 안수를 받는 길.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역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감리교회 안에서 안수를 통해
- 2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한다. 장로 목사의 평생 사역을
- 3 준비하기 위한 북미 지역의 전통적인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지만, 성서학 석사(M.A.), 사역학
- 4 석사(M.Min.), 신학 석사(M.Th.) 또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성서학을 포함한 목회학
- 5 학사(B.A.) 등의 학위를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 연령 또는 생활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정식 학위
- 6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렵거나 실행하기 불가능한 개인은 안수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비학위 목회학
- 7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아래에 설명된 핵심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 8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
- 9 후보자들은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 10 이전에 학업을 마쳤거나 등록한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필요가 없다.
- 11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안수 후보자들은 안수를
- 12 위한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하기 위해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13 글로벌 감리교회는 안수 자격 수준별로 요구 과목만 이수하면 위에 나열된 학위나 자격 프로그램의 단독 혹은 복합 과정
- 14 이수를 모두 인정합니다. 후보자는 관련되는 삶의 경험이나 교육을 근거로 연회 사역위원회에 청원하여 해당 요구 사항에
- 15 대한 예외를 재량적으로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전체 교육 요건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 16 됩니다.
- 17 4. 장로목사 교육 요건. 이전에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8개의 필수 과정을
- 18 포함하여 최소 10개의 추가 과정을 이수한 후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19 이전에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자는 아래의 9개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0개 추가 과정을 이수한
- 20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21 종교 개혁까지의 기독교의 역사
- 22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의 기독교 역사
- 23 변증학

- 24 웨슬리안 제자훈련과 영성 훈련
- 25 크리스천 리더십과 갈등 해결
- 26 추가 구약 성경 과목
- 27 추가 신약 성경 과목
- 28 성령 사역
- 29 교회 행정 및 재정
- 30 선택 과목은 다음 영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1 나머지 선택 과목은 다음 영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2 교회의 사명과 교회 갱신
- 33 다문화 사역 및 전도
- 34 설교 고급과정
- 35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연구
- 36 목회 상담
- 37 교회 행정 및 재정
- 38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임상 목회 교육(CPE)
- 39 종교철학
- 40 이스라엘 현장 학습
- 41 신학 선택 과목
- 42 예배 신학
- 43 어린이 또는 청소년 사역
- 44 정의를 위한 복음의 비전

- 45 선교 및 교회 갱신
- 46 미디어 및 현대적 응용
- 47 지도 인턴십 또는 독립적 연구

학위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십시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저희가 만약 신실한 지도력을 위해 목회학 석사(M.Div.)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M.Div.가 요구된다는 언어로 규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언급 없이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역사는 목회학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근본적으로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음을, 그리고 그러한 학위가 없어도 깊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음을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모두가 사역 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러한 묵시적 교육적 위계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역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저희는 이중적인 목회 리더십 체계를 원하지 않아 영구 지역 목회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논평은 다시 그 구조를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문:**본 청원은 ¶ 507.2를 수정합니다**

- 1 2. 안수를 받는 길.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역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감리교회 안에서 안수를 통해
- 2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한다. 북마 환경에서 장로목사가
- 3 평생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디자인된 역사적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지만, 성서학 석사(MA), 사역학
- 4 석사(MMin), 신학 석사(MTh)와 같은 학위를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미국과 유럽 외 지역에 거주하는
- 5 아들의 경우 성서학을 포함한 사역 실천 분야의 학사 학위(BA)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연령, 혹은 생활
- 6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정규 학위 과정 이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의 경우,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었다면,
- 7 사역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학위 목회학 수료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된
- 8 핵심 과목들을 완료해야 합니다.
- 9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
- 10 후보자들은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 11 이전에 학업을 마쳤거나 등록한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필요가 없습니다.
- 12 글로벌 감리교회는 안수 자격 수준별로 요구 과목만 이수하면 위에 나열된 학위나 자격 프로그램의 단독 혹은 복합 과정
- 13 이수를 모두 인정합니다.

교육 경로

청원자: 연회 사역 위원회

조직: 미국: 하트랜드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단일 학위 과정을 규정하기보다,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안수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교리적 무결성과 교육적 책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활 환경, 지리적 위치 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전통적인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허용합니다. 이 제안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고 유연한 경로를 만들면서도 교육 표준을 유지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 507.2 전체를 대체합니다

2. 안수를 받는 길.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리적 위치와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된 학교나
-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합니다
- 글로벌 감리교회는 취득하려는 안수 등급에 필요한 과목들이 성공적으로 이수되기만 한다면, 승인된 학위 또는 자격증
- 프로그램의 과목들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인정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부 학위를
- 취득하고 해당 과목이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연회 사역위원회는 학부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4개 과목을
- 후보자의 안수 이수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학적 일치 증진을 위한 계속 교육 요건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중남부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표현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 동일한 성경적 진리와 웨슬리안의 강조점들을 선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들이 글로벌 감리교 전통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의도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서는 연합(전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 설정된 동일한 학습 목표)과 상황화(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방식은 연회 내에서 결정될 것임)를 모두 증진합니다. 목회자들은 연례 보고를 통해 이 계속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집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7.6을 수정합니다

- 1 6. 목회자를 위한 평생교육. 집사목사나 장로목사로 안수받은 후, 목회자는 가능한 한 적어도 매년 수업, 수련회, 세미나,
- 2 연구 휴가 등을 통해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 시간은 휴가나 개인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3 a. 그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 성직자는 4년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4 성경 해석;
- 5 감리교 역사 및 신학;
- 6 실천 사역.
- 7 b. 교리, 제자도 및 정의로운 사역 위원회와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회는 협력하여 ¶ 507.6.a항에 명시된 각 훈련 주제에
- 8 대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에 대한 제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 9 c. 각 연회 사역위원회는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결정할 것입니다.
- 10 d. 각 연회 사역위원회는 필수 훈련의 이수 기록을 보관하고, 소속 목회자들의 이수 현황을 총리사뿐만 아니라 각 목회자의
- 11 감리사 및 담당/지역 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 12 e. 목회자가 새로운 파송 대상으로 고려될 때, 총리사는 해당 목회자의 이수 기록을 협의 과정의 일부로 포함할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교리적 기대 명확화

청원자: John Lomperis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107항 이전의 교리 조항들의 신조와 신앙 조항들은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웨슬리의 훨씬 더 긴 설교집과 주석서는 다른 범주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의 주요 신학적 주제와 교리적 가르침은 계속해서 우리를 형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문서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때때로 언급하는 모든 진술에 대한 일치를 엄격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예: “새로운 출생” II.4에 따라 태아의 귀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가 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리적 경계, 충성, 그리고 순응의 관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 508항의 끝에 다음을 추가하여 수정합니다

- 1 여기서나 다른 곳에서나, 개인들이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도록 요청받을 때마다, 규범 문서와 규범
- 2 표준(¶ 105-106)에 있는 각각의 뚜렷한 교리적 확언에 대한 동의는 기대되지만,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과 신약주석
- 3 은 다른 범주의 문서로 이해됩니다. 이 두 웨슬리안 표준 문헌들은 신학적으로 감리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 4 형성하고 정의하는 핵심 요소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의 방대한 분량, 다루는 주제의 넓은 범위, 그리고
- 5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사건이 때때로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글로벌 감리교회는 그러한 의견이
- 6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설교와 주석의 주요 신학적 주제나 교리적 가르침에 모순되지
- 7 않으며(¶ 102, 웨슬리안의 구원 방법 참조), 우리의 다른 교리 표준과 일치하는 한, 우리 교회의 교리에 대한 충성 서약이
- 8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있는 일부 진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역사적 질문 복원

청원자: 캐서린 라일리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렉싱턴 세인트 루크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소항목 표제는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이 질문들을 “존 웨슬리 시대부터 감독들이 역사적으로 해 온 질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공휴의 사역을 실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은 역사적인 감리교 안수 질문의 일부가 아니며 장로목사에게는 한 번도 질문된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1996년 "연합감리회 장정"에서만 도입되었으며, 집사목사에게 제기되는 질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집사목사는 “말씀과 봉사”로 부름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추가 사항은 아마도 집사목사직의 봉사 차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나, 장로목사를 위한 질문에는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본 청원은 역사적 감리교 정신에 부합하도록, 명시된 자체 기준에 목록을 맞추고자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8.2에서 다음을 삭제합니다

- 당신은 공휴의 사역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언약적 연대: 집사목사

청원자: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조직: Russellville (US: North Alabama)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 청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상호 사랑, 책임감, 거룩한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언약적 삶에 대한 헌신을 단언합니다. 이는 집사목사가 웨슬리안 제자도에 참여하고, 지역 교회와 연회를 강화하며, 언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서번트 리더십 구조에 순종하는 역할에 대한 공동의 기대를 확립합니다. 이는 지역 교회의 목회적 감독 하에 있는 집사목사의 역할이 장로목사의 권위 아래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지도자에게 최고 수준의 훈련과 탁월한 사역을 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구조가 아닌 신학적 언약에 대한 웨슬리안적 이해로 우리 자신을 재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정치 구조를 재정렬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09.3, ¶ 509.4 및 ¶ 509.5를 수정하고 ¶ 509.6을 대체합니다

- 1 ¶ 509. 3. 집사목사는 장로목사 안수 및 연회 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연회 소속
- 2 목회자이다. 파송으로 사역하지 않는 집사목사는 비활동 집사 목사로 분류되며, ¶ 52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3 연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 4 집사목사는 연회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언약적 책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장로목사의 안수 및 연회 관계를 제외한 모든
- 5 사안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연회의 정회원 목회자입니다.
- 6 4. 집사목사는 감독에 의해 개체교회(목사 포함) 또는 다른 사역 환경에서 사역 팀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파송되거나
- 7 감독의 승인과 파송을 받아 독자적인 직분을 확보할 수 있다.
- 8 집사목사는 지역 교회의 사역팀의 일원으로 섬기도록 감독에 의해 파송될 수 있으며, 지역 교회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 9 장로목사에게 순종합니다. 이 파송은 지역 회중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사역 현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0 5. 집사목사로서 장로 목사안수 소명을 고려 중이거나 감독 또는 감리사로부터 장로목사 직분에 대한 은사와 은혜가
- 11 인정되는 이는 개체교회에서 목사 직분에 파송될 수 있다. 그러한 파송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파송을 수락한
- 12 집사는 집사목사로서의 모든 교육 요건을 마친 후 장로 목사 안수 입후보를 선언하고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절차를
- 13 시작해야 한다.
- 14 장로목사 안수에 대한 소명을 고려하거나, 감독 또는 감리사에 의해 장로목사 사역에 대한 은사와 은혜가 인정된
- 15 집사목사는, 파송된 목사로서 또는 지도 감리사나 감리사의 감독을 통해, 파송된 장로목사의 섬기는 영적 리더십 아래 지역
- 16 교회의 목사직에 파송될 수 있습니다.
- 17 6. 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의해 해당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의 연대 구조 밖에서 사역하는 비활동 집사목사는 소속 연회
- 18 목회위원회와 감리사회가 결정한 보험 패키지(한도 포함)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에는 전문적 책임 및 위법 행위가
- 19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비활동 집사목사는 매년 연회가 추가 피보험자로 등재된 보험 증명서를 감리사회와
- 20 연회 사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 자신의 특별한 목회자 소명이 영구적인 집사목사가 되는 것임을 이해하는 개인은, 자신의 사역 전문 분야의 범위를
- 22 벗어나는 10개의 필수 과정 중 최대 한 과목을 자신의 전문 분야 내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 줄 것을 연회 사역위원회에

23 청원할 수 있습니다. 집사목사 후보생은 해당 사역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주어야 하며, 요구 사항 변경이 정당한
24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요청이 수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장로목사직이 아닌 영구 집사목사로 부르심을
25 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수락되고 과정 요구 사항이 수정된 후
26 후보생이 나중에 장로목사직으로의 부르심을 분별하게 되면, 원래 면제되었던 과정을 포함하여 20개 과정 전체를
27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론적 질문 추가: 집사목사 안수 시험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웨스트 플레인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현재 집사목사 안수 질문에는 명시적인 그리스도론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들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성찬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 또는 주님이시며 구세주로서 체험한 개인적 신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은 없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웨슬리안 신학적 전통과 글로벌 감리교회의 그리스도 중심 교리적 헌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09.1을 수정합니다

- 1 (a)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까?
- 2 (b) 당신은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3 (c) 당신은 은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4 (d) 당신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5 (e)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 6 (f) 당신은 부활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7 (g)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분을 주님이시며 구세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 8 경험하셧습니까?
- 9 (gh) 당신은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10 (hi) 당신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11 (ij) 당신은 목회사역에 어떤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 12 (jk) 성직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13 (kl) 성례전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 14 (lm) 당신은 우리의 교회 장정과 정치를 연구했으며, 이를 지지하고 유지하겠습니까?
- 15 (mn) 교회의 증언을 위해,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높은 이상에 자신을 헌신하며, 개인 습관에 있어 자제력을 발휘하고, 모든
- 16 관계에서 성실하며, 기혼일 경우 배우자와의 언약에 신실하고, 미혼일 경우 개인의 행실에 있어 순결을 지킬 의향이
- 17 있습니까?

18 연회 목회위원회는 후보자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 윤리 원칙 및 규율에 대한 충분한 기초와 헌신을 입증하는지
19 평가해야 합니다.

언약적 연대: 장로목사

청원자: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러셀빌 (미국: 노스앨라배마)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 청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상호 사랑, 책임감, 거룩한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언약적 삶에 대한 헌신을 단언합니다. 이는 모든 직급의 장로목사가 웨슬리안 제자도에 참여하고, 지역 교회와 연회를 강화하며,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서번트 리더십 구조에 순종해야 한다는 공통된 기대를 확립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목 책임이 신실한 목회적 감독을 받게 하며, 모든 지도자가 최고 수준의 훈련과 사역 탁월성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구조가 아닌 신학적 언약에 대한 웨슬리안적 이해로 우리 자신을 재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정치 구조를 재정렬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10을 수정합니다

1 ¶ 510. 장로목사 안수

2. 장로목사는 연회의 정회원 목회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다. 파송을 받았는데도 사역하지 않는 장로목사는 비활동으로 분류되며 ¶ 52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 장로목사는 감독에 의해 감리사로, 담임 목사로서 지역 사역에, 개체교회 직원, 목사로, 전도사로 또는 기타 사역 환경에 파송될 수 있다. 장로목사는 감독 직책에 선출될 자격이 있다.

- 장로목사는 소속 연회 사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언약적 책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연회의 정회원 목회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장로목사는 감독에 의해 감리사로, 담임 목사로서 지역 사역에, 지역 교회의 직원으로, 집사목사가 파송되거나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배정된 다른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목사로, 채플린으로, 전도사로, 또는 다른 사역 현장에 파송될 수 있습니다. 장로목사는 감독 직책에 선출될 자격이 있다.

- 교리와 장정을 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더욱 부합시키기 위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 ¶ 602. 역할 및 자격. 감독은 장로 목사 직분자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는 비전 있는 섬김의 지도력, 총괄 감독 및 감독 사역을 위해 따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감독들은 교회의 신앙, 직분, 예문, 교리 및 장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갖출 제자도의 기초는 개인적인 고결성, 영적 훈련,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에 있다. 감독은 진실한 믿음과 고결한 도덕적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목사로서 그들은 언약적 교제 안에서 생활하며 따라서 책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격려의 은사, 활기차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총회가 채택한 교회의 비전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독 후보자는 또한 전도, 제자도, 선교에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이끈 강력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웨슬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헌신으로 우리 교단의 교리와 정체를 유지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헌신해야 한다. (요한복음 21:15-17, 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5:2-3, 디모데전서 3:1-7)

20 ¶ 607. 연회 감리직.

1. 총리사는 언약적 교제 안에서 사는 삶을 바탕으로 소속 연회를 이끌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 모든 목회자의 언약적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포함하여, 연회의 목회자, 평신도, 교회들이 연회의 비전과 선교

23 전략을 수용하고 실행하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주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24 2. 연회와 총리사 간의 건강한 언약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선출된 연회 감리직 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가 있어야
25 합니다. 각 총리사는 감독이 승인한 우리의 언약적 교제에 대한 개인의 충실성을 고려하는 절차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아야
26 합니다.

27 ¶ 608. 선출 및 배치. 정회원이며 언약적 교제 안에서 생활하는 장로목사는 총리사의 추천에 따라 감독에 의해 지방(또는
28 그에 상응하는 구역)을 이끄는 감리사로 파송될 수 있습니다. 지방감리사는 매년 효율성 평가를 거쳐 임명된다.
29 지방감리사는 통산 12년을 초과하여 시무할 수 없으며, 연회 연대 협회의(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에서 매년 연장하고
30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감리사(PE)를 선출할 때 감독과 총감리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포용성을 반드시
31 고려해야 한다(¶ 406).

32 ¶ 613. 명예 감독의 지위

33 3. 명예 감독은 언약적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연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목회자 회원이 되며 선임
34 목회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520).

35 ¶ 908. 사법 고소

36 1. 고소 가능 위반 행위 – 연회의 감독이나 목회자 회원(선임 목회자 및 명예 또는 행정 처분에 있는 목회자 포함)은 다음
37 위반 행위 중 하나 이상으로 기소될 때(아래에 명시된 공소시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 e.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39 f. 언약적 교제를 저버리는 행위 (¶ 505 & ¶ 506)

40 (추후 번호 재지정)

41 공동 서명자 청원 사본 | 2026년 총회 준비용 |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 훈련 기금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의 제한된 행정 직원으로 인해, 우리는 교단을 통해 대출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연회에 기금을 배정하여 목사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대출 탕감 조항을 삭제하고, 각 연회가 배정된 기금 수령 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11 전체를 대체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는 목회자 교육을 위한 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단은 매년
- 2 기금을 심사하고, 배포될 수 있는 총액을 권고할 것입니다. 기금은 목회 및 고등교육 위원단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 연회에
- 3 배분됩니다.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고 있는 인증된 후보자나 목회자는 교육비 지원을 위해 연회 안수위원회에
- 4 장학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훈련 기금-수정된 형식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의 제한된 행정 직원으로 인해, 우리는 교단을 통해 대출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봉사로 상환하는 "대출"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연회가 관리하는 장학금으로 대체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11 전체를 대체합니다

- 1 ~~¶ 511. 목회자 훈련 기금. 글로벌감리교회 연대 협의회는 목회자 교육을 위한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 2 ~~후보자는 교육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목회자는 안수 후 5년 봉사 약정이~~
- 3 ~~요구되며,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사역하면 매년 대출 금액의 20%가 탕감됩니다.~~
- 4 ¶ 511. 목회자 훈련 기금.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는 목회자 교육을 위한 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정·행정·연금
- 5 및 복지 위원단은 매년 기금을 평가하고, 배포 가능 총액을 권고합니다. 기금은 목회 및 고등교육 위원단에서 정한 정책에
- 6 따라 연회에 배분됩니다. 안수를 위한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 중인 인준받은 후보자 또는 목회자는 교육비 지원을 위해
- 7 소속 연회 안수 위원회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훈련 기금 수정

조직: 미국: 노스조지아

입법 위원회: 사역

제출자 유형: 연회

근거:

우리가 글로벌 교회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바람은 총회 수준보다는 연회 수준과 연회를 구성하는 지역 교회에서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은사를 청지기답게 관리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청원은 목회자 훈련 방법에 있어 글로벌 감리교회의 다양한 맥락에 유연성을 허락합니다. 또한 할당된 기금에 대한 더 나은 책임감을 위해 청지기 직분의 책임을 지역 연회에 부여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11을 수정합니다

- 1 글로벌감리교회 연대 협의회는 목회자 교육을 위한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후보자는 교육 요건을 지원하기
- 2 위해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부금은 지역 연회의 사역 내 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 3 받는 목회자는 안수 후 5년 동안 사역해야 하며,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각 연도마다 대출 금액의 20%가
- 4 면제된다. 각 연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교부금 집행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 5 개발해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 512 단락 수정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자: Shreve Community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슈리브 지역 사회 교회 (미국: 오하이오)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성찬 집례 권한은 교회가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관행"에 따라 안수를 통해 부여합니다. (¶ 413). 목회자로서 섬기는 것은 "동료들에 의해 선출되고 감독에 의해 안수받은" 자들에게만 제한됩니다(¶ 503). 이 청원은 연회 내 목회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연회의 목회자에게 더 부여하고, 본처 전도사(임시목사)가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목표를 강화하며, 규율을 역사적 교회와 일치시키고, ¶ 413, 503, 512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며, ¶ 906 및 908에 따라 감독 방식을 명확하게 합니다.

본문:**본 청원은 ¶ 512.1, ¶ 512.2, ¶ 512.3, 및 ¶ 512.4를 수정합니다**

- 1 2.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인정하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이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2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목사가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성례전의 신학과 실행에 관한 연회 안수위원회의 훈련을 마친 후,
3 그는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성례전인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감리사는
4 적절한 경우 전도사 후보생 멘토를 이 역할에 배정할 수 있다. 안수위원회는 감리교 전통 내에서 성례전 신학에서 수강한
5 모든 과목을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인정하고,
6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이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목사가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성례전의
7 신학과 실행에 관한 연회 안수위원회의 훈련을 마친 후, 감독은 ¶ 413 조항에 따라 임시 목사가 개회 교회 목회자로 파송될
8 시 성찬 집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성례전인
9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감리사는 적절한 경우 전도사 후보생 멘토를 이 역할에 배정할 수 있다.
10 안수위원회는 감리교 전통 내에서 성례전 신학에서 수강한 모든 과목을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1 3. 전도사는 해당 직책에 파송된 후 총 5년 이내에 집사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임시목사가 필요한 교육 요건을 마칠 수
12 있도록, 안수위원회는 그 기간을 해마다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하는 임시 목사는 요청 사유와 교육 요건을
13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서면 계획서를 안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목사는 목회자 회의에서 승인을
14 받은 후 총 3년 이내에 집사목사로 안수받아야 합니다. 안수 후보자가 ¶ 507.3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5 임시 목사 자격이 중단됩니다.
- 16 4. 임시 목사는 연회 목회자 회원으로서 완전한 발언권을 가지며,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안수 및 회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17 안건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임시 목사는 감독, 사법 및 행정상 고소, 성찬 집례자, 그리고 ¶ 708.1에 따라 개회
18 교회에 허락되는평신도 대표 수를 계산하는 일에 있어, 연회의 목회자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모든 안건에 대해
19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임시목사의 명칭을 교구 목사로 변경

청원자: Burt Palmer

조직: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권장되는 변경 사항은 "교구 목사"입니다. 또한, 교구 목사에게 성례 집례 권한을 부여하는 현재의 절차는 교리와 장정에서 집사목사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지위의 명칭 변경과 교구목사의 성례전 권한이 집사목사와 일관되게 파송된 사역 환경 내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필수 교육 요구 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허락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12, ¶ 512.1, ¶ 512.2, ¶ 512.3, and ¶ 512.4를 수정합니다

1 512. 임시목사

- 2 1. 연회 목회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 506.3에 따른 안수 후보자인 개인을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전도사로
3 봉사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연회 안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독은 ¶ 506.3에 따라 안수 후보 자격을 갖춘 이들을
4 글로벌 감리교회 내 교구목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장로목사를 배정하는 것은 연회
5 목회위원회의 책임이다.
- 6 2.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인정하고,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7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도사가 글로벌감리교회의 성례전의 신학과 실행에 관한 연회 목회위원회의 훈련을 이수한 후,
8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감리사는 적절한 경우
9 전도사 후보생 멘토를 이 역할에 배정할 수 있다. 안수위원회는 감리교 전통 내에서 성례전 신학에서 수강한 모든 과목을
10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칙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교회 내
11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감리사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성례의 신학과 실천에 관한
12 연회 안수위원회의 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교구 목사에게 성례 집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수위원회는 감리교 전통
13 안에서 성례전 신학을 다루는 공인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을 해당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14 수도 있습니다. 이 성례전 권한은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감독과 권한 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교구
15 목사의 파송된 사역 환경으로 한정됩니다.
- 16 3. 전도사는 해당 직책에 파송된 후 총 5년 이내에 집사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전도사의 교육 요건을 완료하기 위한
17 연장은 매년 안수 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하는 전도사는 요청 사유와 교육 요건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18 자세히 설명한 서면 계획서를 안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구 목사는 해당 역할로 파송된 후 7년 이내에 집사목사로
19 안수받아야 합니다. 임시목사가 필요한 교육 요건을 마칠 수 있도록, 안수위원회는 그 기간을 해마다 연장해 줄 수
20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하는 교구목사는 요청 사유와 교육 요건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한 서면 계획서를
21 안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2 4. 임시목사는 연회의 목회자 회원으로서 완전한 발언권을 가지며, 집사목사 및 장로목사의 안수와 연회 관계를 제외한
23 모든 사안에서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교구 목사는 연회 목회자 회원으로서, 집사목사 및 장로목사의 안수와
24 회의 관계 및 총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본처 전도사 파송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현행 규칙에 따르면, 감독이 어느 인물을 본처 전도사로 파송하고자 할 때, 그 인물이 이미 공인 후보자로 승인된 경우에도 사역 위원회가 별도의 표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인 후보자 승인에 대한 표결만으로 감독이 해당 인물을 본처 전도사로 파송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허락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리사회와 감독이 주도하는 파송 과정과 사역 위원회(BOM)가 주도하는 자격 심사 과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BOM이 한 인물을 공인 후보자로 가결한 후에는 감독이 해당 인물을 본처 전도사로 파송하는 것이 허락됨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12.1을 수정합니다

1. 연회 목회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 506.3에 따른 안수 후보자인 개인을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전도사로
2. 봉사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 506.3에 따라 안수 공인 후보자로 승인된 이는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감독에 의해 본처
3. 전도사로 파송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장로목사를 배정하는 것은 연회 목회위원회의 책임이다.

본처 전도사를 위한 성례전 권한 연장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본처 전도사에게 성례전 권한을 연장하는 현재의 과정은 ¶ 413의 집사목사에게 적용되는 과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사목사는 자신이 파송된 교회/사역 외에서 성찬을 집행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 512에서는 본처 전도사에게 동일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본처 전도사가 장로목사와 유사하게 넓은 성찬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가,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이후에는 오히려 그 권한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처 전도사의 성찬 권한이 집사목사와 동일하게 파송된 사역 환경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12.2를 수정합니다

- 1 2.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칙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교회 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 2 제공하기 위하여, 연회 사역위원회에서 글로벌 감리교회 내 성찬의 신학과 실천에 관한 훈련을 이수한 본처 전도사에게
- 3 성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성례전인 세례식과
- 4 성찬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리사는 적절한 경우 전도사 후보생 멘토를 이 역할에 배정할 수 있다. 모든 신자의
- 5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칙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교회 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 6 감리사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성찬의 신학과 실천에 관한 연회 사역위원회의 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본처 전도사에게
- 7 성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역 위원회는 또한 감리교 전통 내에서 성찬 신학을 이수한 모든 과정을 해당 훈련 요구
- 8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 권한은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감독과 권한
- 9 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본처 전도사의 파송된 사역 환경으로 한정됩니다.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의 명확화된 자격 및 목회자 전도자 파송

청원자: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전도자 사역에 관한 현행 장정의 내용은 연회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직업 전도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의 파송 과정과 일치되도록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14를 수정합니다

1 ¶ 514. 전도자의 사역.

2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재 및 장차 임할 왕국에 대한 복음을 말과 행함과 표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여,
3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곧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4 효과적인 전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부르며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이끕니다 (막 1:15; 눅 24:19-32; 행
5 2:22-47; 롬 10:9; 요 3:3-8).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6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도자로서 특별히 기름 부음과 은사를 받은 이들을 부르셔서 교회에 주십니다 (엡 4:11-13). 이
7 평신도 및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의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파를
8 가속화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든 신자는 성화되고 제자를 삼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지역 교회에
9 소속되어야 합니다 (마 4:19, 16:13-19, 28:18-20; 행 8:4-40, 21:8; 엡 4:11-13).

10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의 자격. 글로벌감리교회는 평신도 전도자와 목회자 전도자를 모두 인정하고 축하한다.
11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전도자들은 지역 교회를 섬기기 위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전도자로 섬기는 사람은 다음의
12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회심,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14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15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을
16 보여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7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수용하고 확언해야 하며, 전도자의 공식적인 역할을 맡기 전에 일 년 동안 글로벌
18 감리교회 교인이었어야 합니다.

19 교회 협의회의 다수결 투표로 자신의 지역 교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연회 전도 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20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21 전도자는 개체 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도 사역에 대한 팀 접근 방식을 통해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22 양육되어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모든 계속 교육을 포함한 연례 사역 보고서를 자신의 구역회와 연회 전도 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24 합니다.

- 25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전도자 파송.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도자는 ¶ 610.10의 요건에 따라
26 전도자로 파송될 수 있다.

선교사 파송 자격 및 과정의 명확화

청원자: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평신도 선교사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선교 사역으로 부름받은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와 관련하여 장정의 파송 결정 고려 사항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연회 지도자들에게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함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15를 수정합니다

- 1 ¶ 515 선교사의 사역. 교회 역사에 걸쳐, 개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 여러 문화를 넘어 예수의
- 2 복음을 나누고, 먼 곳에서 제자를 삼으며, 신생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나누며 자비의 행위를
- 3 하도록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의
- 4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소명 선교사들입니다.
- 5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의 자격과 파송. 글로벌 감리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 모두를 인정하고 축하한다.
- 6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사 직의 파송은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연회 회기
- 7 중에 파송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8 타문화권 소명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밝힐 것;
- 9 그리스도께로의 회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을 것;
- 10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며, 제자를 낳는
- 11 제자를 만들도록 은사를 주셨음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을 것;
- 12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받아들이고 확언하며, 총칙에 부합하는 영성 훈련과 성결의 모범을 실천하는 데
- 13 헌신하고, 최소 1년 이상 글로벌 감리교회 회중의 온전한 자격을 갖춘 교인일 것;
- 14 다음에 대한 훈련을 받았을 것:
- 15 다문화 선교(퍼스펙티브스 또는 연회 선교 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구가 승인한 동등한 훈련과 같은);
- 16 전도, 제자 삼기, 그리고 제자 삼기 운동;
- 17 평신도 후보자는 인증 평신도 사역 요건(¶ 409) 또는 연회에서 승인한 최소 60 교육 시간의 동등 과정을 이수해야 함;
- 18 교회 평의회 투표를 통해 소속 개체 교회의 추천을 받고, 또한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것;
- 19 사역 현장에 있는 동안 개인 및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목회적/교인 돌봄 및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 20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

- 21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또는 그 지명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사역 또는 승인된 글로벌
22 감리교회 선교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그 감독 하에 사역함;
- 23 매년 구역회에 사역 보고서를 제출할 것.
- 24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선교사 파송.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교사는 ¶ 610.10의 요구 사항에
25 따라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전송

청원자: 연회 사역 위원회
조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한 회의에서 다른 회의로 목회자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5XX을 추가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 회의 간 전송
- 2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가 글로벌 감리교회 내의 다른 회의로 전송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사역을 원하는 회의의
- 3 감리직 담당자를 통해 전송을 요청해야 하며, 이 담당자는 2024년 장정 ¶ 607.1k 또는 2026년 총회의 다른 결의에 따른
- 4 재번호 부여를 준수하여, 필요한 정보—예컨대, (a) 해당 목회자가 양호한 상태로 떠나는지 등—를 파악하기 위해 송부
- 5 회의의 감리직 담당자 또는 관련 지도자와 소통하게 됩니다. (b) 해당 목회자가 마지막 파송을 떠난 사정은 어떠하였는가?
- 6 (c) 해당 목회자가 전송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d) 공유해야 할 기타 정보가 있는가?
- 7 전송을 신청하는 목회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a) 수임 회의의 사역 위원회와 면접을 실시할 것; (b) 신원 조회
- 8 및/또는 심리 검사를 받을 것; (c) 회의 및/또는 총회 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 기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 (d)
- 9 감리사 평가서 및 기타 감리사회 기록의 제공에 동의할 것; (e) 수임 회의에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
- 10 전송을 신청하는 목회자는 수임 회의의 목회자 프로필을 완성해야 합니다.
- 11 수임 회의의 감리직 담당자는 전송에 대해 양쪽 회의의 비서 및 사역 위원회 모두에게 적시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 12 (¶ 607.1.k 참조)

목회자 자격 증명의 이전

청원자: 연회 사역 위원회

조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다른 교단에서 전입하는 목회자의 이전 절차를 간결하게 반영하도록 516.1조를 명확히 하고 수정합니다. (참고: 본 조항은 새로 추가되는 516:1조와 일치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번호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현행 ¶ 516.1**을 수정하고 다른 청원에 따라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2. 다른 교단에서의 이전.
-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전입을 신청하는 목회자가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기 위해 현재의 **안수**
- 자격 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추천인이 포함된 공식 이력서, (b) 공식적인 **대면** 심사
- 절차를 갖춘 교단으로부터의 안수 증명. (c)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모든 학력에 대한 공식 성적 증명서; (d) 가능할 경우,
- 해당 목회자의 서면 요청 시 전 소속 교단에서 보관 중인 모든 인사 파일 사본을 사역 위원회로 송부.

다른 교단 출신 목회자의 파송

청원자: 연회 사역 위원회
조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의 연회 입장 절차, 지위 및 성례 집행 권한에 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517을 수정합니다

1. 사역 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목회자 세션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양호한 상태이며 최소 5년의 봉사 경력이 있는 다른
2. 기독교 교단 소속 목회자를 그들의 교단 소속을 유지한 채로 임지 또는 에큐메니컬 사역에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3. 파송은 사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유효한 집사목사로 임명됩니다. 승인된 유효한 집사목사는 2년 이내에 다음
4.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웨슬리안 신학과 교리, 글로벌 감리교회 감리교 역사와 정치, 웨슬리안 성례전 및 예배 이해,
5.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적 형성.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유효한 집사목사는 사역 위원회에 출석하여 면접을 받고, 이를 통해
6. 유효한 장로목사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다른 교단과의 소속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파송 받은
7. 목회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 회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8. 포함합니다: (1)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사명에 대한 증언. (2) 범죄 경력 및 신용 조회, 성적 부정행위 또는 아동 학대에 관한
9. 신고에 대한 허가 및 공개 동의. (3) 후보자가 중범죄 혹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성적 부정행위 또는 아동 학대로
10. 서면으로 고발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술서와, 만일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중범죄 혹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11. 받았거나 성적 부정행위 또는 아동 학대로 서면 고발된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b)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를
12. 가르치고, 지지하며, 유지하겠다는 동의서. (c) 심리 검사에 동의할 것. (d) 감리사와 사역 위원회와의 면접을 통해 교리와
13. 장정을 읽었으며 이를 이해하고 준수할 것이며, 글로벌 감리교회의 권징과 정체를 지지하고 유지할 것임을 증명해야
14. 합니다. (e)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임을 증명하는 적합한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면 심사 과정을
15. 거쳐야 합니다. (f) 교육 요건 이행 경과는 사역 위원회 연례 면접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16. 2.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확정된 목회자는 연회 감독의 허가에 따라 연회 내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한
17. 모든 안건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a) 헌법 개정; (b) 총회 또는 연회 대의원 선출; (c) 사역자 안수, 인성 및 연회
18. 관계에 관한 모든 사안.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는 연회의 모든 이사회, 위원단 또는 위원회(사역 이사회 및
19. 재단 이사회 제외)에서 봉사할 수 있다.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는 총회나 연회의 대의원으로
20. 선출될 수 없다.
21. 3. 연회 회기 사이에, 연회의 다음 정기 목회자 회기에서 승인될 때까지 안수 위원회는 그러한 사람의 파송을 승인할 수
22. 있다. 감독은 안수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을 임시로 파송할 수 있다. 모든 경우,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규율, 정체를
23.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그 사람의 이해, 수용 및 의지에 대해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4. 4.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는 파송 기간에 한하여 목회자 지위를 가집니다. 유효한 집사목사 및 장로목사가
25. 글로벌 감리교회의 정회원 목회자가 되고자 할 경우, ¶ 516.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6. 5.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의 성례 집행 권한은 자신이 파송된 사역지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ደህ ገጽ ሆኖ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글로벌 감리교회 내 유효한 장로목사 및 유효한 집사목사의 자격 기간 정의

청원자: Burt Palmer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 자격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성이 없었으며, 교육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재정 및 복지제도상의 목적으로 이전 교단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기준으로 그러한 예외를 승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효한 집사목사는 사역을 위한 보증으로 글로벌 감리교회를 활용하기보다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정회원 자격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 청원은 해당 인원을 사역 수련 후보생의 지위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17.1.e를 개정하고 ¶ 517.4를 추가합니다

- 1 ¶ 517.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한 목회자 파송
- 2 1.마. 글로벌 감리교회의 집사목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다른 교단이나
- 3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글로벌감리교회가 요구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목회자는 임시로 파송될 수 있으며,
- 4 임직 시작 후 3년 이내에 집사목사로서의 모든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요건 완료에 대한 진행 상황은 매년
- 5 표시되어야 한다. 3년 이내에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원은 a) 유효한 집사목사 자격이 중단되거나,
- 6 또는 b) ¶ 506에 명시된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사역 수련 후보생의 지위로 이동됩니다.
- 7 4. 유효한 장로목사의 지위는 연회 승인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5년 후, 해당 인원이 글로벌
- 8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역 위원회에 유효한 장로목사로서 추가 1년 승인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 9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a) 유효한 장로목사 자격이 중단되거나, 또는 b) ¶ 506에
- 10 명시된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사역 수련 후보생의 지위로 이동됩니다.

휴직 규정 개정

청원자: 이 부쉬와일러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Wisconsin Dells Dells Delton (US: Great Lakes)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본 청원은 휴직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임지위를 휴직의 한 형태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520항은 불필요해져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비자발적 휴직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항이 신설될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 518 전체를 대체하고, 새로운 ¶ 519를 추가하며, ¶ 520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1 ¶ 518. 자발적 신분 변경.

2 우리가 언약적 교제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자 할 때, 목회자는 파송 지위(610항) 또는 휴직 지위에 있을 수
3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연회 회기 중 목사회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연회 신분 변경은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을 수
4 있습니다:

5 요청. 목회자는 의료적 필요, 가족 상황 또는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목회 직무에서 서면으로 휴직을 요청할 수
6 있습니다. 신분이 양호하며 일시적으로 파송 사이에 있는 목회자에게도 과도기적 휴직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7 절차. 연회 신분 변경은 연회 사역위원회 3분의 2의 추천을 받아 연회 목회자 회원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거나 종료될 수
8 있습니다. 연회 회기 사이에, 휴직은 감독의 추천과 감리사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사역위원회 3분의 2의 투표로
9 승인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목회자는 선임지위를 제외한 모든 휴직 지위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10 갱신. 휴직 갱신은 파송 신분으로 복귀하려는 이들을 위해, 최대 5년 동안 목회자 회의의 과반수 투표로 매년 이루어질 수
11 있습니다. 선임 신분은 영구적이며 한번 부여되면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조건. 휴직 중인 목회자는 연회 기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금을 통해 연회 복지
13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회 위원단0,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총회에
14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15 연회 관계. 자발적 휴직 중인 자는 그 행실과 사역 수행에 관하여 연회의 지도를 계속 받아야 하며, 연회 사역위원회가 달리
16 허락하지 않는 한 연회의 모든 규정 안에서 연회와의 언약적 교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휴직 중인 모든 목회자는 연회
17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언약적 책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연회 회의의 최소 90일 전에 연회 서기에게 투표 회원으로
18 참여할 의사를 통지하면 연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모두 유지합니다.

19 휴직의 종류:

20 회복. 6년 연속으로 파송되어 사역한 목회자는 연구, 여행 또는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1 3개월 이하의 재충전 휴직 기간 동안 목회자에 대한 보상은 지역 교회에서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하의 회복
22 휴가는 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목회 협력 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3 안식년. 3개월을 초과하여 1년까지의 휴직은 연회 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안식년 휴직

24 기간 동안 목회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 개인의 책임이지만, 교회와 다른 이들의 지원이 권장됩니다.

25 선임 지위. 성경의 모본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아무도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법적 은퇴 지위를
26 얻기 위해 선임지위 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위에 대한 의무 연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임지위는 영구적인
27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자를 파송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위는 목회자를 파송의
28 필요에서 면제해 주며, 동기가 있을 경우 미파송 목회자로서 개체교회나 연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선임지위에
29 있는 모든 목회자는 연회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연약적 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30 출산 및 부성. 모든 목회자(목회자 부부의 경우 양 배우자 포함)는 출산, 입양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자녀가 가정에 오게 될 때,
31 최대 3개월 또는 교회가 위치한 관할권의 법률이 정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으로 출산 또는 육아 휴직을 요청할 수
32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은 감리사와 협의하에 목회 협력 위원회가 허가한다. 휴직 기간 동안 목회자의 연회 신분은 변경되지
33 않으며, 건강 및 복지 플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병가, 휴가 또는 기타 휴무를 포함할 수 있는 보상은, 교회가 정한 최소
34 2개월 이상의 기간 또는 교회가 속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른 기간 중 더 긴 기간에 맞춰 급여 지급 주체에 의해 제공되어야
35 합니다.

36 의료. 모든 목회자는 어떠한 질병으로든 최대 3개월 또는 교회가 위치한 관할권의 법률이 정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으로
37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은 감리사와 협의하에 목회 협력 위원회가 허가한다. 휴직 기간 동안 목회자의
38 연회 신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건강 및 복지 플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병가, 휴가 또는 기타 휴가를 포함할 수 있는 보상은
39 교회가 정한 기간(최소 2개월) 동안 또는 교회가 소재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단위에서
40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의료 필요가 있고 목회자 회원이 적절한 연약적 책임을 유지하는 한, 병가는 매년 갱신될 수
41 있습니다.

42 과도기. 모든 목회자 회원은 파송지를 떠나거나 변경할 때 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과도기적 휴직을
43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은 연회 사역위원회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44 명예로운. 목회자는 본인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명예 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본인이 선택한 개체
45 교회에서 담당 목회자의 서면 동의와 행정적 해임의 경우 목회 협력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목회적
46 봉사는 교인 자격이 있는 교회/단체로 제한되며, 담임 목회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47 부재. 모든 목회자 회원은 감리사와 협의하여 목회 협력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자발적 휴직을 요청할 수
48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은 사역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연회 목사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49 휴직은 세속적 고용, 군사 훈련 및 파병, 또는 비 GMC 사역 현장에서의 봉사와 같은 외부 기회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든
50 취할 수 있습니다.

51 휴직 변경. 목회자는 서면으로 신분 변경을 요청하고 연회 사역위원회 3분의 2의 추천에 따라 연회 목회자 회원 과반수
52 투표로 승인되거나 종료됨으로써 한 자발적 휴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3 휴직 종료. 목회자는 파송 상태로의 복귀를 요청하거나, 목회자 자격 증명을 포기 또는 이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휴직을
54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회에서 정한 대로 연약적 교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그들의 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55 간주됩니다. 감독에 의해 정해진 모든 파송(¶ 610)은 선임 신분을 제외하고 휴직 상태를 종료시킵니다.

56 **(신설) ¶ 519. 비자발적 신분 변경.** 목회자는 파송을 허용하지 않고, 연회 권리를 정지 또는 종료하며, 징계 절차를

57 개시하는 신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회원 지위의 비자발적 변경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58 요청. 비자발적 휴직은 감독, 감리사회 3분의 2의 찬성, 그리고 연회 사역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59 사역위원회는 또한 필요한 징계 조치나 기타 조건(예: 치료, 보수 교육, 목회 직무 정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60 합니다

61 절차. 비자발적 휴직 처분을 내리려면 연회 목사회회의에 참석한 목회자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하다. 모든 비자발적 휴직
62 절차에서는 행정 청문회를 위한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905-906 및 JPP).

63 갱신. 휴직 갱신은 목사회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매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64 조건. 비자발적 휴직 중인 목회자는 연회 기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나, 특별히 자격이 있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통해 연회
65 건강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66 연회 관계. 비자발적 휴직 중인 목회자는 지방회 또는 연회의 위원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67 연회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없으며, 연회에서 특별히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목회자
68 대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휴직 중인 사람은 휴직 기간 동안 어떠한 공식적인 사역 행위에도 참여해서는
69 안 됩니다.

70 비자발적 휴직의 종류:

71 교정적. 목회자와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 행정 심리와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회자를 교정 휴직 상태에 둘 수 있습니다.
72 교정 휴직 중인 모든 목회자는 연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교정적 휴직 중인 이들은 자신의
73 행위에 대해 계속 연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연회와 연약적 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74 행정적. 목회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자격 박탈 또는 기타 징계 조치가 있을 경우,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JPP) 지침
75 2.2c 및 3항에 따라 동의 없이 행정 휴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6 종료. 감독과 감리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비자발적 휴직의 종료가 발의되면, 연회 사역위원회는 휴직 조건이
77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지위를 부과하게 된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회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78 판단하는 경우 비자발적 휴직을 계속할 수 있다. 비자발적 휴직이 처음 부여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79 사역위원회는 행정 처분(¶ 518.7)을 추진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휴직의 종료는 심의 시 출석한 사역위원회 위원 3분의
80 2의 찬성과, 목사회회의에 참석한 목회자 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육아 휴직 복직

청원자: Hannah Hutchinson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Destin / 데스틴 (미국: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저희는 기존 육아 휴직 조항의 복원을 주장합니다. 자녀를 맞이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종종 스트레스가 많은 전환기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과도기적 지도자 협의회가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에서 삭제한 두 달 보상 정책을 복원함으로써, 저희는 젊은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일관된 교단 표준을 제공합니다. 이 복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향한 목회적 소명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신학적 헌신을 확인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 모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18.6을 수정합니다

6. 출산 및 육아 휴직. 모든 목회자(목회자 부부의 경우 두 배우자 모두 포함)는 입양 또는 양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 출산하거나 가정에 입양한 경우 최대 3개월 또는 교회가 위치한 관할 지역의 법률에서 정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출산
- 또는 육아 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은 감리사와 협의하여 목회 협력 위원회에서 허가합니다. 휴직 기간
- 동안 목회자의 연회 신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건강 및 복지 플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병가, 휴가 또는 기타 휴가를 포함할 수
- 있는 보상은 급여를 지급하는 단위에서 교회가 결정한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상은 최소 두 달간의 휴직을 위하여
- 급여 지급 단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또는 봉사하는 교회가 위치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될 경우 법에
- 따라야 합니다.

선임지위 목회자 투표권 개정안

청원자: Marion Hanfield

조직: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 503에 따르면 안수는 평생직이므로, 또한 안수된 목회자의 1차적 소속은 개체 교회가 아니라 연회에 있으며(¶ 503), 따라서 그들의 연회에서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연대된 유일한 기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이 제거됩니다. 수년간 신실하게 사역을 마친 원로신분 목회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본문:

본 청원은 ¶ 520을 수정합니다

- 1 ¶ 520. 선임(은퇴, 원로) 신분. 성경의 모범에 따라 목회자나 평신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서 은퇴할 수 없다. 그러나
- 2 파송을 받아 사역 중인 목회자는 안수위원회의 과반수 승인과 목회자회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 연회 내에서 원로 신분을
- 3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필수 연령은 없다. 선임직은 목회자가 감독으로부터 사역 파송을 받을 의무에서
- 4 면제되지만, 선임직 목회자는 자격이 있는 모든 사역 환경에 대해 감독의 임명을 자발적으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집사와
- 5 장로로의 안수는 평생직이므로(¶ 503), 그리고 목회자가 일차적으로 소속되는 기관은 개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연계된
- 6 연회이기 때문에(¶ 503), 은퇴 감독을 포함한 선임지위 목회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연회에서의 활동
- 7 신분과 발언권 및 투표권을 유지한다. 활동 신분과 발언권·투표권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글로벌 감리교회에
- 8 소속된 효력 발생일 또는 마지막 임명 종료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에 있는 경우, 단 연회 목사회 개회 최소
- 9 90일 이전에 연회 서기에게 투표 회원으로 참여할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b) 감독에 의해 최소 4분의 1 시간 이상의
- 10 사역으로 임명되어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있어야 한다. 앞 문장에 따라 자격이 없는 선임
- 11 목회자는 연회에서 발언권은 유지하지만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활동 중이든 비활동 중이든 선임 신분을 가진 사람은 총회
- 12 또는 지역 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지방회 또는 연회 위원단,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조건부 조항 삭제

청원자: Burt Palmer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선임지위를 다루는 법안이 채택될 경우, 조항 520은 삭제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520을 삭제합니다

모든 목회자를 위한 구역회 연대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역

근거:

개체 교회 구역회와의 연대를 요구함으로써 모든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글로벌감리교회의 감독 체계 아래에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합니다. ¶ 438.2는 선임 목회자가 구역회와 연대해야 함을 언급하지만, 이 연대가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필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로운 ¶ 521을 추가하고 이후 모든 조항의 번호를 재조정합니다

- 1 ¶ 520 다음에 이 내용을 추가하여 ¶ 521로 하고, 이후 모든 조항의 번호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2 연장 사역으로 파송된 목회자, 선임 지위 목회자, 비활동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안수받은 목회자는 반드시 개체교회
- 3 구역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감리직

all ¶ 600s

번호	¶	제목	페이지
1429	¶ 6XX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대한 기대 명확화	310
1418	¶ 603	제6부-감리직 개정	312
1051	¶ 603.5	총회와 연회 주재	313
1451	¶ 604	감독의 선거와 숙제	314
1260	¶ 604.1	감독 공천 방식 변경에 관하여	316
1292	¶ 604.1	AEC 회원의 선거를 연회에서 투표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317
1261	¶ 604.3	감독별 연회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 604:3	318
1198	¶ 604.5	604.5항을 수정하여 감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75%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다	319
1076	¶ 604.8	600년대 조항에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	320
1263	¶ 604.8	총회 연도와 감독의 임기 단축을 위해 ¶ 208 제VII조 및 ¶ 604:8	321
1336	¶ 604.8	감독 선출	322
1034	¶ 605	투표 비율 간소화	323
1424	¶ 605	GEC 멤버십의 적절한 배치	324
1155	¶ 605.1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공천의 일관성 (3/3)	325
1425	¶ 605.1	GEC 공천을 위원회 및 협의회와 일치시키기	326
1078	¶ 605.4	600년대 조항에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	327
1427	¶ 605.5	GEC의 기대 사항 명확화	328
1219	¶ 607	회의 감리사의 책임 명확화	330
1288	¶ 607	회의 총리사의 임기와 감독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331
1293	¶ 607.1	총리사의 의무 위임에 대한 유연성	332
1014	¶ 608	감리사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333
1184	¶ 608	감리사의 연례 평가 명확화	334
1456	¶ 608	608.1항을 추가하여 모든 연회에 지방 구조를 창설함	335
1015	¶ 609	감리사의 책임 통합 및 명확화	336
1220	¶ 609	감리사의 책임 명확화	338
1290	¶ 609	회의 총리사의 임무 위임에 대한 유연성	340
1285	¶ 610	총리사가 파송을 확정하게 함	341
1025	¶ 610.5	타인종 / 타문화 교육	344

번호	¶	제목	페이지
1335	¶ 610.5	공개 순회에 대한 책임	346
1024	¶ 610.7	파송결정 절차	347
1052	¶ 610.7	파송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350
1221	¶ 610.7	파송 명확화	351
1247	¶ 610.7	상담 파송 과정	353
1222	¶ 610.9	임시 파송 명확화	354
1334	¶ 610.9	임시 목회자	355
1035	¶ 610.10	연장사역 연대 유지	356
1223	¶ 610.10	기관목회/연장사역 파송 명확화	357
1432	¶ 611	이적하는 감독들을 명예 감독직으로 제한	358
1291	¶ 611.1	전임 감독이 감독구에 배정되는 허용 조항 삭제	359
1185	¶ 611.2	명예 감독의 지위 명확화	360
1433	¶ 612	공석 사유 추가	361
1436	¶ 613	재판 법원에 의해 면직된 자의 원로직 박탈	362
1438	¶ 614	휴직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제거	363
1439	¶ 615	고소 정보를 9색선에 적절하게 배치	364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대한 기대 명확화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장정에는 지역 감독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 ¶ 6XX를 추가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감독 지역에는 지역 감독직 위원회를 둡니다.
- 2 목적.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을 위한 봉사에서 건강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감독
- 3 지역에 배정된 감독과 회의를 갖습니다.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 604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감독 선거에 참여합니다.
- 4 구성.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5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감독 지역의 각 연회에서 평신도 회원 한 명과 교역자 회원 한 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총회 대표단은
- 6 ¶ 604.1b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회에서 해당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소속될 평신도 회원 한 명과 교역자 회원 한 명을
- 7 선출합니다. 선출된 사람은 대표단의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독직 공천을 수락한 사람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 8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 9 총회 위원회가 대표 배정을 확정한 후 연회가 소집되면, 해당 연회는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연회를 대표할 평신도 한
- 10 명과 교역자 한 명을 선출합니다. 신생 지역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대표권을 갖지 않습니다.
- 11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는 각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직권상 위원 한 명을 파견합니다. 이 직권상 위원은 지역 감독직
- 12 위원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 직권상 위원의 배정은 육 년 임기마다 평신도 회원과 교역자 회원 간에
- 13 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직권상 위원의 목적은 지역 위원회의 업무와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 간의 연계를 제공하는
- 14 것입니다.
- 15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합니다.
- 16 용어. 지역 감독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기 총회 개회 후 구집 일 이내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시작됩니다(¶ 604.3).
- 17 임기는 다음 정기 총회 전 본회의 개회 시에 종료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육 년 임기를 연속으로 두
- 18 회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는 총회 대표단에게 지역 감독직 위원회 대표 선출과 관련된 날짜
- 19 및 마감일을 지시합니다.
- 20 의무.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 21 배정된 감독과 그들이 섬기는 연회 간의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
- 22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정된 감독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

- 23 ¶ 604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감독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
- 24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감독의 업무 평가에 매년 참여하는 것.
- 25 감독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는 감독직 수행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감독직 위원회와 협의합니다.
- 26 은퇴 감독이 활용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지역의 연회들은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다른 감독들의
- 27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감독 지역 내의 다른 연회들에 다른 감독들이 임시로 배정되는 경우,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는
- 28 해당 연회 출신 지역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시로 배정된 감독과 관련된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발언권 및/또는 의결권을
- 29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지역 위원회 위원도 둘 이상의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동시에 의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30 공석. 각 연회는 해당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평신도 회원 한 명과 교역자 회원 한 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석이 발생할
- 31 경우, 가장 최근에 선출된 해당 연회의 총회 대표단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소집됩니다.

제6부-감리직 개정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현행 책임 규정에는 감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기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 하위 항 ¶ 603.14를 추가하여 ¶ 603을 수정합니다

- 1 배정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감독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부흥에 관한 사안에 대해
- 2 협력함으로써 협력과 동료애의 정신을 함양합니다.

총회와 연회 주재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연대 협의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감독과 총리사는 연회에 팀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감독들이 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반면, 총리사들은 그 연회의 영적·행정적 지도자로 파송됩니다. 이 입법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감독이 사회자 역할을 맡는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총리사가 본회의에서 주재 감독의 권한 아래 적당한 업무를 주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3.5, ¶ 708.7, 및 ¶ 708.8을 수정합니다

- 1 5. 지정된 대로 총회와 연회를 주재한다. 감독은 연회 주재를 총리사나 명예 감독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감독은
- 2 연회를 주재하거나, 다른 감독 또는 명예 감독이 주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재 감독은 연회 본회의 및/또는 업무
- 3 회기의 일부 진행 책임을 컨퍼런스 감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4 ¶ 708. 조직.
- 5 7. 특별연회는 감독과 협의하여 연회가 결정하거나 감리사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감독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회를
- 6 개최할 수 있다. 연회의 특별 회기는 연회가 3분의 2의 투표로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소집에
- 7 명시된 권한만 갖는다. 감독 또는 명예 감독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임명된 감독은 총리사에게 연회 특별 세션을
- 8 주재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총감리사에게 목회자 안수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9 8. 지명된 감독이 연회를 주재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감독이 주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감독 부재 시 감독은
- 10 총감리사 또는 명예 감독에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 603.5). 임명된 감독은 연회를 주재하거나, 다른 감독 또는 명예
- 11 감독이 주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재 감독은 연회 본회의 및/또는 업무 회기 일부 진행 책임을 총리사에게 위임할 수
- 12 있습니다(¶ 603.5). 이렇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총감리사에게 목회자 안수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감독의 선거와 숙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노스 앨라배마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이 제안된 개정안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감독 선거에 대한 교리 및 규율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인접 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604.2 및 604.3), 2) 감독으로 파송될 수 있는 모든 감독 후보자의 이전 봉사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604.4 및 604.5) 이루어집니다. 또한, ¶ 604.5에서는 이 개정안이 채택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을 제안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4.2, ¶ 604.3, ¶ 604.4, 및 ¶ 604.5를 수정합니다

- 1 ¶ 604.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총회 개회 후 90일 이내에,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출된 모든
- 2 사람으로 구성된 전원 회의체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 수에 따라 감독 지역을 정하기 위해 소집되어야
- 3 하며, 각 지역은 6개에서 8개의 연회로 구성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합니다.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이 회장이 된다.
- 4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전원 회의체에 제안된 감독 지역을 추천하며, 가능할 경우 그 구성에 있어 인접한 회의를 피하도록
- 5 노력해야 합니다. 감독 지역은 자리적으로 안점할 필요는 없으며 국제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각 추천된 감독 지역은
- 6 국제적인 구성이어야 하며, 적어도 하나의 연회가 다른 연회들과 다른 대륙에 위치해야 합니다. 추천된 어떤 감독 지역도
- 7 특정 국가에 위치한 모든 연회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추천 감독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 8 연회들의 상대적인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각 제안된 감독 지역에 다양한 재정 능력을 가진 연회들이 포함되도록
- 9 보장해야 합니다. 현직 감독들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회원들은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발언권은 가지나 투표권은
- 10 없다. 감독 지역에 대한 계획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 전원 회의의 단순 다수결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감독 지역 조정
- 11 계획은 총회에 앞서 총회가 모일 때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 12 ¶ 604.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개별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소집하여 자체 지도부를 선출하고, 원하는 대로 감독
- 13 후보자들과 면접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 개별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면접 후보자 명단에 해당 감독 지역의 연회에서 성직자
- 14 회원이었거나, 또는 이전 화폐 단위 내에서 이 지역 경계 안에서 봉사한 재선 대상 후보자나 감독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15 각 지역 감독 위원회는 감독 지역과 글로벌 감리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에 가장 부합하는 최대 5명의 후보자 명단을
- 16 작성해야 한다. 이 순위가 매겨진 명단에는 현직 감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현직 감독이 감독 지역 내 연회의
- 17 성직자 회원이 아니었거나 현재 회원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지역 감독 위원회는 글로벌 감독
- 18 위원회가 공개한 관련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동일한 후보가 두 개 이상의 지역 감독 위원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 19 후보인 경우,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투표 절차에 앞서 총회 대의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 20 ¶ 604.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독들은 총회 전체에 의해 각 정해진 감독 구역에 선출되어야 한다. 단, 어떠한
- 21 개인도 본인이 목회자 회원이었거나 현재 목회자 회원으로 속한 연회가 있는 정해진 감독 구역의 감독으로 선출될 수 없다.
- 22 " 대의원은 동일한 투표용지에 두 개 이상의 감독구에 대해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 한 감독 지역의 감독을
- 23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퍼센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후보가 동일한 투표용지에서 둘 이상의 감독 지역에 대한
- 24 최고 선택일 경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다음 투표용지 배부 전에 델리게이트들에게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 25 604.5에 대한 이 개정안은 채택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감독 공천 방식 변경에 관하여

청원자: Danjuma Juji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포용성과 일반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감리교회의 기반이 되는 지역 교회는 감독권 지도자 선출에 있어 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회 기간 동안 감독권 후보 공천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거를 실시할 총회 델리게이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4.1을 수정합니다

- 정기 총회 개최 12개월 전, 적법하게 선출된 연회 대표단은 다음을 행합니다: 연회 회기 중 델리게이트들은 자신들의 연회 소속 목회자를 한 명까지 감독권 후보로 공천합니다.
- 정기 총회 개최 12개월 전, 연회 회기 중에, 델리게이트들은 자신들의 연회 소속 목회자를 한 명까지 감독권 후보로 공천합니다.

AEC 회원의 선거를 연회에서 투표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규정이 시행되었고, 개최 연회 및 첫 장정 제정 직후였으므로 연회의 총회 대표단이 위원회 회원을 선출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직위가 연회 전체를 대표하는 만큼, 연회 자체에서 투표 및 인준을 받아 선출되어야 합니다. AEC 회원 선거 기간이 연회 총회 대표단 선출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4.1을 수정합니다

1. 정기 총회 개최 십아(12)개월 전에, 정기 총회 개최 십팔(18)개월 전에,
 - (a) 적법하게 선출된 연회 대의원단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선출된 연회 대의원단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속 연회에서 최대 한 명의 목회자를 감독직에 추천하고, 소속 연회 외부에서 최대 한 명의 목회자를 감독직에 추천합니다. 소속 연회에서 최대 한 명의 목회자를 감독으로 지명하고, 소속 연회 밖에서 최대 한 명의 목회자를 감독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추천에 현재 활동 중인 감독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 지명자에 대해 글로벌 감독 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평가 및 배경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자 추천서와 증빙 서류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b) 지역 감독 위원회에 평신도 한 명과 목회자 한 명을 선출한다. 연회는 지역 감독 위원회에 평신도 한 명과 목회자 한 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회원은 감독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감독별 연회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 604:3

청원자: Danjuma Juji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새로 형성되는 교회로서 효과적인 일반 감독권과 목적 있는 관리/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감독이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 있는 여섯에서 여덟 개의 연회를 감독하게 되면, 적절한 지도와 관리/지휘/감독이 필요한 새로 형성되는 교회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일종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프리카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글로벌 감리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도전과제를 수반하므로, 많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감독들이 그러한 지역에 부재하게 되는 결과는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4.3을 수정합니다

- 총회 개회 후 90일 이내에, 감독권 지역 위원회에서 봉사할 자로 선출된 모든 이들로 구성된 본회의가 소집되어, 글로벌
- 감독권 위원회에서 권고한 감독 수를 기준으로 감독 지역을 정의하며, 그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이 여섯에서 여덟: 네에서
- 다섯 연회로 구성되도록 한다.

604.5항을 수정하여 감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75%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다

청원자: Julius Julukon Nelson Jr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Refuge GMC (AF: Grain Coast (Liberia))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 연결, 연대 내에서 감독권 후보자와 재선거를 위한 임시 감독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이는 글로벌의 감리교회에서 주식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거룩한 대화를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감독으로 선출되기 위해 요구되는 투표 비율은 임시 감독 및 감독권 선거 과정과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604.5항에서 감독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비율을 60%에서 75%로 변경하여, 임시 감독을 선출하는 604.8항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본 청원은 ¶ 604.5를 수정합니다**

- 1 5. 감독은 총회의 전체 총대들에 의해 각 감독구에서 선출된다. 대의원은 동일한 투표용지에 두 개 이상의 감독구에 대해
- 2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 감독구에 감독을 선출하려면 최소 60 75 퍼센트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 후보가 동일한
- 3 투표용지에서 두 개 이상의 감독구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된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다음 투표 전에 대의원들에게
- 4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600번대 조항에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본 청원은 2024년 소집 총회에 대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4.8을 수정합니다

8. 감독은 최대 두 번의 기간을 섬길 수 있으며, 2026년 이전에 섬긴 기간은 그 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콧 J. 존스 감독과 마크 J. 웹 감독은 2026년 총회에서 선거에 임후보할 수 있습니다. 창립 총회 소집에서 감독으로 선출된 사람은 존스 감독과 웹 감독을 제외하고는 2026년 총회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3/4의 찬성표를 받지 않는 한 2026년 총회에서 감독권 선거에 임후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선출된 감독들 가운데 절반을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으며, 재선되는 경우 한 번의 6년 임기로만 가능합니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은 새로운 절반 인원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을 제외하고, 2024년에 선출된 감독들 중, 투표용지에 포함될 자격 기준인 3/4 이상의 표를 얻은 감독들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선 후보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1/2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득표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총회 연도와 감독의 임기 단축을 위해 ¶ 208 제VII조 및 ¶ 604:8

청원자: Danjuma Juji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감독의 6년 임기는 신생 교회에 너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6년 후에는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4년마다 감독 선거를 위한 특별 세션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8 및 ¶ 604.8을 수정합니다

- 1 감독은 6년 임기 2회, 4년 임기 3회까지 연속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감독 선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8. 감독은 6년 임기를 최대 2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4.8을 삭제합니다

8. 감독은 최대 두 번의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나, 스콧 J. 존스 감독과 마크 J. 웹 감독은 2026년 총회에서 입후보할 수
- 있다. 창립 총회 소집에서 감독으로 선출된 사람은 존스 감독과 웹 감독을 제외하고는 2026년 총회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 대의원의 3/4의 찬성표를 받지 않는 한 2026년 총회에서 감독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선출된 감독들 가운데
- 절반을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으며, 재선되는 경우 한 번의 6년 임기로만 가능합니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은 새로운 절반
-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을 제외하고, 2024년에 선출된 감독들 중, 투표용지에 포함될 자격 기준인
- 3/4 이상의 표를 얻은 감독들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선 후보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1/2 기준에
- 도달할 때까지 득표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투표 비율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로버트의 회의 규칙 편집자들은 "플러스 원" 언어가 예상치 못한 계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 총 7표가 투표되었을 때 4표가 명백한 다수입니다. 그러나 "50% 플러스 1" ($50\% = 3.5 \sim \text{플러스 } 1 = 4.5$)는 5표(71%에 해당)를 요구하게 됩니다. 60% 다수결 투표의 경우: 7표가 투표되었을 경우 60%는 4.2이므로 5표면 충분합니다. 기준값이 "60퍼센트 ... 플러스 1"이라면, 4.2에 1을 더하면 5.2가 되므로, 필요한 표 수는 6표가 됩니다. 이것은 곧 85퍼센트의 찬성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기준을 60퍼센트 또는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플러스 원(plus one)"이라는 표현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5를 개정합니다

- 총회 대의원은 현장에서 추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모든 후보자는, 평신도 6명과 목회자 6명을
- 선출하기 위한 투표 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의원은 평신도 및 목회자 후보 모두에게 투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 글로벌 감독위원회 선거에는 60% 다수결 투표가 요구됩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출석하여 유효 투표를 한 대의원 중 최소
- 60% 이상의 찬성에 1표를 더한 득표수가 필요합니다.

GEC 멤버십의 적절한 배치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본 규정은 멤버십을 ¶ 605.1으로 재배치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5를 수정합니다

- 1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총회에서 선출하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를
2 돕니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공천의 일관성 (3/3)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교리와 장정(BDD)은 연대 위원회들, 협의회, 그리고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봉사할 후보자 공천의 출처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원(기타 두 개의 동반 청원과 함께)은 일관된 용어를 제공하며, 공천이 총회로 선출된 각 연회 대표단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5.1을 수정합니다

- 1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 2 1. 각 연회에서 선출된 델리게이트들은 평신도와 목회자/사역자/성직자 델리게이트 모두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감독을
- 3 제외하고 평신도 또는 목회자/사역자/성직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평신도인 후보자 최대 두 명을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 4 후보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연대 협회와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서 봉사할 인물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인종, 성별을
- 5 고려하여 다양한 평신도 6명과 목회자 6명의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총회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연대
- 6 협의회는 연회 대표단으로부터 접수된 후보자 명단에서 지역, 민족,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신도 6명과
- 7 목회자/사역자/성직자 6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명단을 총회 30일 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총회
- 8 대의원은 현장에서 추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연회 대표단에 의해 공천되었으나 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 9 개인은 함께하는 삶을 위한 조직과 언약에 명시된 대로 그 대표단에 의해 재공천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본인의
- 10 동의를 얻어 평신도 위원 6명과 목회자 위원 6명을 선출하는 투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대의원은 평신도 및 목회자
- 11 후보 모두에게 투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출석하여 유효 투표를 한 대의원 중 최소 60% 이상의 찬성에
- 12 1표를 더한 득표수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6년 임기를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수행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난 후, 연대협의회는
- 13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독위원회에 목회자 위원 2명과 평신도 위원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GEC 공천을 위원회 및 협의회와 일치시키기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이는 공천 과정을 글로벌 감리교회의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5.1을 대체합니다

1. 연대 협회회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서 봉사할 인물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인종,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신도 6명과
2. 목회자 6명의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총회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총회 대의원은 현장에서 추가 후보를
3.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평신도 위원 6명과 목회자 위원 6명을 선출하는 투표 과정에
4. 참여해야 한다. 모든 대의원은 평신도 및 목회자 후보 모두에게 투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선출을 위해서는 출석하여 유효
5. 투표를 한 델리게이트의 60퍼센트 이상의 지지에 한 표를 더한 득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6년 임기를 두 번 이상 연속해서
6. 수행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난 후, 연대협회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독위원회에 목회자 위원 2명과 평신도
7. 위원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8. 1.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공천 및 선거 과정은 교리와 장정 ¶ 803에 명시된 규칙을 따릅니다. 위원회는 지역, 민족,
9.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여섯 명의 평신도와 여섯 명의 목회자로 구성됩니다. 연대 운영책임자는 발언권은 있으나
10. 의결권은 없는 회원이 됩니다.

600번대 조항에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본 청원은 2024년 소집 총회에 대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5.4를 수정합니다

4.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총회 회기 종료 후 60일 후에 임기가 시작되지만,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후 임기 시작 사이에
- 개최되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회의에 발언권(투표권 없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선출된 사람은 선출과
- 동시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정확히 동일한 조치를 제안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GEC의 기대 사항 명확화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이것은 서문을 포함하여 GE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GEC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더 정기적으로 회의해야 합니다. c) 평가 과정에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하고, 신규 i) 인사 파일 유지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f)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JPP가 이제 장정 BDD 제9섹션에 포함될 것을 가정합니다. g) 재정행정위원회 F&A와의 연계를 포함한 보상 설정 역할을 명확히 하고, h) 새로운 g항과 예산 책임을 통합하기 위해 삭제하며, 신규 h) 신흥 지역에 감독을 배정할 책임을 정의하고, k) 공석에 대한 배정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다음 하위 조항들을 수정, 대체 또는 추가함으로써 ¶ 605를 개정합니다

- 1 5.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분기별로 모여야 합니다
- 2 ¶ 605.5(c) 지역 감독직 위원회, 연회 총리사, 연회 평신도 지도자(해당하는 경우) 및 감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현직
- 3 감독을 매년 평가한다. 평가는 목표와 발전적 지원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이 직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 해당 평가는 감독의 인사 파일에 기록되어야 한다.
- 5 [신규] ¶ 605.5(i) 현직 감독, 전직 감독 및 원로 감독에 대한 인사 파일을 유지 관리하며, 해당 파일에는 감독의 연례 평가
- 6 결과, 감독이 피소인인 모든 정의 결의 합의, 감독에 대한 조사의 결과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글로벌 주교직
- 7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감독의 인사 파일에 추가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 8 ¶ 605.5 (f) 감독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다. 위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을 정직시키고,
- 9 해결을 목표로 하는 대응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에 대한 재판을 제공할 권한을 갖습니다
- 10 ¶ 605.5(g) 국가별 생활비 차이와 환율을 고려하여, 공천 당시 감독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책정한다. 총교회는
- 11 보상, 복리후생 및 여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재정행정위원회가 지시하는 예산 책정
- 12 과정에 따라 감독직 자금 지원을 위한 제안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 13 ¶ 605.5(h) 연회 위원회가 특정 지역이 미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정도로
- 14 발전했다고 결정할 때, 감독에게 신흥 지역을 배정한다. 이 신흥 지역에 배정된 감독은 해당 신흥 지역이 연회로 소집된
- 15 후에도 배정된 대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새로 배정된 감독에게 적절한 여행 경비를 배정한다.
- 16 [신규] ¶ 605.5(k) 현직 감독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현직 감독
- 17 또는 원로 감독을 활용하여 영향을 받는 연회에 감독 리더십을 배정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감독 지역(들)의 지역 감독직
- 18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회의 감리사의 책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h, i, j, m, o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경을 권고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1) 총리사에게 감리사회 소집 권한을 델리게이트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2) "감리사회"는 다른 곳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3) 파송과 관련한 성명서를 ¶ 610의 과정과 일치시켰습니다. (4) .j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장정 전체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간들을 삭제하였습니다. (5) 구역의 신설 또는 부서는 관련 감리사 및 지역 교회와의 상담, 협의가 필요하며, (6) .m은 명확성을 위해 공천 및 리더십 개발 위원회를 참조해야 합니다. (7) .o에서는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JPP)를 참조하지 않아야 하며, 두 위원회는 여기서 참조된 장정의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7.1.h, ¶ 607.1.i, ¶ 607.1.j, ¶ 607.1.m, 및 ¶ 607.1.o를 수정합니다

1. 총감리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2. 연회 감리사회를 (또는 지정인을 소집하도록 델리게이트하여) 소집하고 감독합니다. 감리사회는 연회의 총리사와 모든
3. 감리사로 구성됩니다. 회의 감리사는 평신도와 기타 목회자/사역자/성직자 또한 감리사회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4. 지방감리사들과 상의하여 교리와 장정이 지시하는 대로 연회에서 파송을 확정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610).
5. 감리사들과의 상담, 협의를 통해 연회 내 파송 변경 요청을 모두 감독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으십시오(¶ 610).
6. 선교 전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회, 구역, 교회 또는 선교 교회를 나누거나 통합한 다음 적절한 파송을 권고한다.
7. 감리사 및 관련 지역 교회와의 상담, 협의 후 필요에 따라 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하며, 적당한 파송을 추천합니다.
8. 정해진 연회 규정에 따라 연회 지도자 팀(또는 이에 상응하는 팀)의 의장을 맡는다. 회의 공천 및 리더십 개발 위원회(또는
9.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습니다.
10.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법 관행 및 절차에 따라 조사 위원회(¶ 710.6)와 행정 심사 위원회(¶ 710.7)를 추천합니다.

회의 총리사의 임기와 감독의 임기를 일치시키다.

청원자: Jay Therrell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회의 총리사는 감독의 담당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서로 다른 임기가 만들어졌으며, 이 임기들은 정렬되어야 합니다. 감독이 2회, 각 6년의 임기를 섬길 수 있다면, 선교적 정렬을 위하여 회의 총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회의 총리사를 포함하여, 파송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감독은 임기의 기간과 무관하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총리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607을 수정합니다**

- 1 총감리사의 최초 임기는 6년이며, ~~매년 연임이 가능하여 총 12년까지 역임할 수 있다.~~ 총리사의 최초 임기는 6년이며,
- 2 추가로 6년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총리사의 의무 위임에 대한 유연성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총 17개의 책임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총리사가 시간제로 봉사하며 동시에 파송을 받는 회의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교리와 장정(BoDD)에는 이 중 일부를 델리게이트(위임)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회의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더 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7.1을 수정합니다

1. 총리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은 감독의 인지와 승인을 받아 다른 목회자/사역자/성직자에게 위임할 수
- 2 있습니다):

감리사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청원자: Steven Taylor

조직: 파나마 감리교회 | 미국: 북동부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이 청원은 감리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하여, 연대적 교회정치에 충실하면서도 전 세계 교회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리사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목회적이며 감독적인 직무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담임 사역이나 기타 책임과 병행하는 공동소명 방식으로 수행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추가된 내용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글로벌 및 연대적 특성을 확인하며, 교회의 교리, 규율,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책임과 봉사 양식에 대한 상황별 변화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8을 수정합니다

- 1 ¶ 608. 선출 및 배치. 정회원 장로목사는 총리사의 추천으로 감독에 의해 지방(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이끄는 감리사로
- 2 임명될 수 있습니다. 감리사는 효과성 평가 후 매년 파송되며 일반적으로 지방(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 내 목회자와
- 3 교회를 지원하는 목회적이며 감독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직무는 연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담임
- 4 사역이나 기타 책임과 병행하여 수행되는 공동소명 형태의 직책입니다. 감리사는 연회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 5 조직)의 연장 결정과 총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통산 12년을 초과하여 봉사할 수 없습니다. 감리사의 선발과 배치에
- 6 있어, 감독과 연회 감리사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포용성, 그리고 그 세계적·연대적 성격(¶ 406)을 충분히 고려해야
- 7 합니다. 감리사의 책임, 권한 범위 및 봉사 양식은 연회(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문화적, 선교적, 조직적, 상황적 필요에
- 8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교회의 교리, 규율 및 사명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감리사의 연례 평가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감리사는 대부분의 회의에서 연례적으로 파송되지 않으며, 일회적으로 파송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감독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재직합니다. 감리사 파송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다른 파송 방식과 일치할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파송하는 대신, 감리사는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총리사의 권고에 따라 감독이 명시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8을 수정합니다

- 1 ¶ 608. 선출 및 배치. 정회원 장로목사는 총리사의 추천으로 감독에 의해 지방(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이끄는 감리사로
- 2 임명될 수 있습니다. 지방감리사는 매년 효율성 평가를 거쳐 임명된다. 감리사는 회의 총리사 또는 그 지정인에 의해 매년
- 3 효과에 대하여 평가받아야 하며, 회의 총리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감독이 성과가 저조할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 4 감리사는 연회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연장 결정과 총리사와 감독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통산 12년을
- 5 초과하여 봉사할 수 없습니다. 지방감리사(PE)를 선출할 때 감독과 총감리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포용성을 반드시
- 6 고려해야 한다(¶ 406).

608.1항을 추가하여 모든 연회에 지방 구조를 창설함

청원자: 리멤버 마삼바 목사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Nyamamowa (AF: Zimbabwe)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교회의 효과적인 선교와 사역은 모든 수준에서 강력하고, 접근 가능하며, 책임 있는 지도력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순회 또는 지방은 역사적으로 지역 회중과 더 넓은 교회 사이의 중요한 연대 역할을 해왔으며, 목회적 지원, 행정적 효율성, 선교적 협력을 증진해 왔습니다. 모든 연회에 그러한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필요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감독, 목회자 지원, 그리고 지역 교회들 간의 향상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이 청원은 하위 항을 추가하여 ¶ 608을 수정합니다**

- 1 ¶ 608.1. 모든 연회에는 각 순회 또는 지방을 관할하는 간소화된 구조로서, 평신도 지도자를 비롯하여 여성, 남성, 청년,
- 2 어린이를 위한 사역 코디네이터를 포함하는 평신도 지도력 구조와 함께 감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훈련, 선교,
- 3 자원 동원과 같은 분야에서 감리사의 지도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리사의 책임 통합 및 명확화

청원자: Steven Taylor

조직: 파나마 감리교회 | 미국: 북동부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본 청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대 구조 내에서 목회 및 감독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감리사의 책임을 통합하고 명확히 합니다. 목회의 감독과 행정 통제를 구분하여 중복을 줄이고 협력과 사건을 총리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정된 문단은 책임감과 역할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리사가 지역 교회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다양한 연회 상황 속에서 필요한 권한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마련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9 및 ¶ ¶ 609.1-6,을 수정하고 ¶ ¶ 609.7-12를 삭제합니다

- 1 감독직과 총리사의 직무 연장선으로서, 감리사는 자신이 임명된 지방 내 공동체에서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 2 사역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독직과 총리사의 직무 연장선으로서 감리사는 자신이 임명된
- 3 지방 내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에 대한 목회 감독과 돌보는 책임을 수행합니다. 감리사는 담임 공백이 발생했거나 담임자가
- 4 임명되지 않은 교회에 대해, 연회 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교회의 임시 행정 책임자로서 직무를
- 5 수행합니다. 감리사는 담임 공백이나 담임자의 부재가 발생한 경우, 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때에만 해당 교회의 임시
- 6 행정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리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 7 집니다:
- 8 (1)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지원, 돌봄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 9 미치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목회적 지원, 돌봄, 조언, 그리고 감독을 제공하며, 격려와 책무성, 지도를 위해 목회자들과
- 10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 11 (2) 감독과 총리사와 함께, 웨슬리안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에 표현된 사도적 신앙을 수호, 전수, 선포하며, 교리와 장정에
- 12 명시된 대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전달하고 옹호합니다.
- 13 (3) 지방감리사는 지방의 핵심 선교 자원으로서 선교적 책무성을 제공하고, 지방 내 교회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들의
- 14 사역 환경을 평가·이해하며, 지역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리더십 필요를 개발합니다. 지방감리사는 지방 안에서
- 15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격려하며, 속회와 기타 책임적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 연약적 제자도를 촉진하고, 각
- 16 교회가 지역적 상황을 분별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지원하며, 지방 내 미개척 지역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을 격려하고,
- 17 조직적인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함으로써 선교적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 18 (4) 감독, 총리사 및 감리사회와 협력하여 연회 사역 위원회가 정한 자격과 훈련을 갖춘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들의
- 19 파송과 배치를 수행합니다. 감독, 총리사, 감리사회, 연회 안수 위원회와 협력하여 목회자 파송, 자격 있는 평신도 사역자
- 20 배치 및 안수 및 평신도 사역 후보자 선발을 포함한 리더십 개발 관련 사항을 처리합니다.
- 21 (5) 목회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와 적절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여
- 22 효과적인 사역을 격려하고, 갈등이나 전환기에는 지침을 제공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리사나 감리사회에
- 23 이관합니다. 지방 내 교회의 목회협조 위원회로부터 목회자에 대한 서면 평가를 접수합니다.
- 24 (6)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방 내에서 신실하고 효과적인 사역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관계를 구축합니다.

- 25 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임명, 재산, 기타 연대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목회자, 개체교회, 지방의 필수 기록이
26 올바르게 유지·관리되도록 협력합니다.
- 27 (7) 지방 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연약 그룹, 속회 및 밴드 모임을 장려합니다.
- 28 (8) 목회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 조언과 감독을 제공하며, 각 파송 목회자와 배정된 평신도 사역자의 계속교육,
29 영성 훈련, 현재 사역 내용, 그리고 향후 사역 목표를 포함한 서면 또는 전자 평가를 제출받습니다.
- 30 (9) 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감리사는 기관 목회자를 포함하여 각 담당에 파송된 모든 사람들의 적절한 기록 유지가 제대로
31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32 (10) 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감리사는 지방의 재산, 기부금 및 기타 유형 자산과 관련된 적절한 기록 유지가 제대로
33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34 (11) 감독, 연회 감리사,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목회자 재조정, 대형 교회 구성, 협력 교회, 다중 사역자 배치, 개척 교회,
35 그리고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을 포함하여 지방 내 목회자를 가장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36 (12) 총리사 및/또는 감독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감리사는 지방 또는 연회 내 지역 교회의 건강성과 사역의 효과성을
37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리더십 책임을 맡습니다.

감리사의 책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아래와 같은 변경을 권고하며, 3, 4, 6, 7, 10, 12항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1)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축소합니다. (2) 평신도 사역자를 포함하기 위해 “목회자”라는 용어를 “성직자” 대신 사용합니다. (3) 감리사가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CS가 다른 장로목사에게 감리사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4) 사도적 믿음의 선포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5) 감리사가 목회자 모집에 있어 CS 및 감리사회와 협력하여 일함을 명확히 합니다. (6) .8항에 나오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보고임을 명시합니다. ¶ 445에 따르면, PPRC는 목사/목회자를 평가하며 감리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7) ¶ 610에 따라 지역 교회가 파송에 관해 협의됨을 명확히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9.1, ¶ 609.2, ¶ 609.5, ¶ 609.8, ¶ 609.9, 및 ¶ 609.11을 수정합니다

- 1 ¶ 609. 감리사의 책임. 감리사는 감독 및 연회 감리사 직분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임명된 지방의 지역사회에서 목회자와
- 2 교회의 사역을 감독합니다. 지방감리사(PE)는 목회 공백이 발생하거나 목회자가 임명되지 않은 모든 목회 책임의 대리
- 3 관리자이다. 감리사는 목회자가 임명 또는 파송되지 않은 모든 사목 책임에서 대리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감리사는
- 4 다음과 같은 구체적 책임을 가집니다. 이 책임들은 총리사가 다른 장로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5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원, 보살핌, 조언을 제공합니다. 감독과 함께 웨슬리적 관점에서
- 6 성경과 전통에 표현된 사도적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고, 선포하며,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대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 7 전달하고 옹호한다.
- 8 감독과 함께 웨슬리적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에 표현된 사도적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고, 선포하며,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 9 대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전달하고 옹호한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원, 보살핌, 조언을
- 10 제공합니다.
- 11 목회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총리사 및 감리사회와 협력하여 목회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 12 제도를 시행합니다.
- 13 상담 및 감독을 위하여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각 파송 목회자 또는 지명된 평신도의 계속
- 14 교육, 영적 실천, 현재 사역, 향후 사역 목표가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 평가를 받습니다. 지방 내 목사/목회자와 상담 및
- 15 감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각 목사/목회자의 계속 교육, 현재 영적 실천, 현재 사역, 향후 사역 목표가
- 16 포함된 연간 서면 또는 전자 신고를 받습니다.
- 17 총감리사의 자사에 따라 감리사는 연장 사역 중인 목회자를 포함하여 구역에 파송된 모든 사람의 적절한 기록이 적절하게
- 18 유지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감리사는 연장사역 중인 목회자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의 모든
- 19 목사/목회자의 적합한 기록이 잘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 20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목회자 파송의 재조정, 더 큰 교구, 협동 교구, 복수 직원 구성, 새로운 교회개혁,
- 21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등 지방회에서 가능한 최선의 목회자 전략적 배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감독, 총리사,
- 22 감리사회 및 영향받는 교회 또는 기관목회와 협의하여, 사목 책임의 재조정, 대형 교구, 협동 본당, 복수 직원 구성, 새로운

- 23 교회개혁,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등 지방 내에서 목회자의 최선의 전략적 배치를 개발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의 총리사의 임무 위임에 대한 유연성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상장된 책임은 열두 가지입니다. 이는 특히 우리 회의와 같이 감리사가 파트타임으로 섬기거나 전임 파송을 받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 일입니다. 교리와 장정(BoDD)에는 이 중 일부를 델리게이트(위임)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임무 중 어느 것도 델리게이트(위임)하지 않는 것은 연회 소속으로 고용되어 연대 지원을 받는 감리사들이 있는 회의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더 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9를 수정합니다

- 1 609. 감리사의 책임. 감리사는 감독 및 연회 감리사 직분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임명된 지방의 지역사회에서 목회자와
- 2 교회의 사역을 감독합니다. 지방감리사(PE)는 목회 공백이 발생하거나 목회자가 임명되지 않은 모든 목회 책임의 대리
- 3 관리자이다. 감리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책임을 집니다 (책임은 회의 총리사의 인지와 승인을 받아 다른 목회자에게
- 4 델리게이트(위임)할 수 있습니다):

총리사가 파송을 확정하게 함

청원자: Jay Therrell

조직: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현행 파송 과정에서 감독이 공식적으로 파송을 "확정"하는 절차는, 자주 감리사회가 권고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로 기능합니다. 이 법안은 1차적 파송 권한을 총리사에게 이양하며, 일상적으로 지역 교회와 목회자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감리사들이 깊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는 보조성 원칙에 따라, 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하위 단계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상위 권한은 상황에 더 가까운 이가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지 않고, 지원과 조정 역할만 해야 합니다. 한 교회의 일곱 가지 죽음의 말은 "우리는 전에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입니다. 형식이 기능을 따르도록 변화하는 것은 허락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0을 수정하고 ¶ 603.8을 삭제하며 새 ¶ 607.1.i를 추가하고 ¶ 609.4를 수정합니다

- 1 ¶ 610. 파송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 2 지역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 3 총리사에 의해 파송되며, 이 파송은 매년 회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4 파송은 교회와 기관의 필요와, 특성, 그리고 기회, 파송자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고려하고 개방적인 파송에
- 5 대한 우리의 약속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형 순회 제도란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출신,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또는
- 6 연령에 관계없이 파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7 교회에 자원을 지원하고 개방적인 순회목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회 간 약속을 장려해야 합니다. 양호한 상태의 목회자는
- 8 어느 연회에서나 자유롭게 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 총리사, 감리사회(Cabinet)는 교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에
- 9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10 파송결정은 구역의 고유한 필요, 커뮤니티 상황, 특정 목회자의 은사 등을 반영합니다. 각 사례별로 기준을 개발한 후
- 11 목회자 및 교회와 공유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회중, 목회자 및 선교지 환경의 프로필이 포함될 수 있다.
- 12 타인종/타문화 파송은 우리 글로벌 교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종/타문화 파송이란, 목회자의 인종적·민족적 및
- 13 문화적 배경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회중의 다수를 이루는 교회에 그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 14 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회는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목회자와 교회가 다인종 및 다문화 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 15 준비시켜야 한다.
- 16 각 연회의 감리직위원회는 총리사와 감리사들과 협력하여, 파송 과정에서 개방적 순회 사역에 대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 17 다양한 목회자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고려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18 매년 각 연회의 총리사는 다양한 인물이 파송 대상으로 고려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관한
- 19 보고서를 연회 감리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타인종/타문화 파송의 내용을
- 20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며, 아울러 타인종/타문화 파송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고려되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 21 연회 감리직 위원회는 매년 연회가 공개 순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글로벌

- 22 감독 위원회는 매년 각 연회의 공개 순회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연회 감리직 위원회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23 목회자에 대한 파송 보장권은 없다. 모든 효과적인 목회자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명을 받지 않은 집사목사와
- 24 장로목사는 비활동으로 간주한다(¶ 509.3, 510.2).
- 25 파송 절차는 철저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는 총리사 및/또는 감리사가 목회자와 목회 협력 위원회와 의논하여
- 26 (a) 교회의 필요, 특성, 선교 정책 (b) 목회자와 배우자 및 가족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전문적 경험, 기대, (c) 사역
- 27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파송 변경 기간 동안에는 더욱 집중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 28 교회와 목회자는 악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가용 인력과 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시 설교자가
- 29 교회를 섬기는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위해 감리사회에
- 30 의존하지만, 교회는 지방감리사와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목회자 탐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수위원회,
- 31 지방감리사, 총감리사의 승인이 없이는 최종 면접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감리사 또는 감리사회 지명자는 파송 절차에서
- 32 지원과 안내를 위해 개체 교회와의 최종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33 총리사는 제안된 파송안을 총리사 및 감리사로 구성된 감리사회에 제출합니다. 제안된 어떠한 파송도, 출석하여 투표한
- 34 감리사회 회원들의 4분의 3(3/4) 찬성 투표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파송안이 무효화된 경우, 총리사는 대체 파송을
- 35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감리사회 심사와 동일한 무효화 절차를 거칩니다. 총리사와 감리사회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 36 위하여 연간이 아니라 다년간의 지역 교회 파송을 지향해야 합니다.
- 37 임시 목회자. 지상명령과 성령의 권능(마태복음 28:18-20; 사도행전 1:8)에 신실하기 위하여, 교회가 목회자 파송의
- 38 전환기를 잘 통과하도록 돕기 위하여 때로는 임시 목회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속성이 끊기는 시간을 경험할
- 39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나 임시 목회자가 치유를 돕고 목회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다.
- 40 총리사와 감리사회는 그러한 교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평신도 또는 목회자 임시 목회자를 제공하고자 할 수
- 41 있습니다.
- 42 연장 사역 파송. 총리사와 감리사회의 권고가 있을 때, 총리사는 사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사목사와 장로목사를 지역
- 43 교회 밖의 연장사역에 파송할 수 있습니다. 파송은 교회의 사명에 따라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안수 사역의 본질을
- 44 반영해야 한다(¶ 401). 협의 절차는 개체 교회 이외에 파송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45 그런 사람은 현역 목회자로 있어야 한다.
- 46 학교로 파송. 총리사와 감리사회의 권고가 있을 때, 총리사는 집사목사와 장로목사가 공인된 학교, 대학, 신학대학에서
- 47 학업을 하거나, 공인된 임상 목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송은 개체 교회 밖의 연장
- 48 사역을 위한 파송과는 별개의 범주이다. 그런 사람은 현역 목회자로 있어야 한다.
- 49 ¶ 603.8 각 연회의 목회자 파송은 총감리사 및 연회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 50 ¶ 607 (1)(i) 교리와 장정 ¶ 610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연회에서 파송을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 51 ¶ 609 (4) 연회 사역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목회자를 파송하고 자격 있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 52 감독, 총리사 및 감리사회와 협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타인종 / 타문화 교육

청원자: Jonathan Le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타인종/타문화 파송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건강한 선교와 세계적인 특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단은 모든 감리사회와 교회가 타인종/타문화 사역 안에서 일치와 신뢰,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도록 돕는, 일관되고 신학적으로 견고하며 문화적으로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일에 전념하는 총회 차원의 팀을 세우고, 연회들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게 함으로써, 글로벌감리교회는 연대 전반에 걸쳐 공동의 자원과 강한 책임성, 그리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연회가 타인종/타문화 사역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증언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조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미국: 상부 중서부)

본문:

5. 타인종/타문화 파송은 우리 글로벌 교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종/타문화 파송이란, 목회자의 인종적·민족적 및 문화적 배경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회중의 다수를 이루는 교회에 그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회는 목회자와 교회가 초인종적·초문화적 파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 1 a. 각 연회의 감리직위원회는 감독, 총리사, 그리고 감리사들과 협력하여, 파송 과정에서 개방적 순회 목회에 대한 헌신아
- 2 지켜지고 다양한 배경의 목회자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고려되도록 할 책임을 집니다.

- 3 b. 매년 각 연회의 감독 및/또는 총리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파송 대상으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 4 다루는 보고서를 연회 감리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타인종/타문화 파송의 내용을
- 5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며, 아울러 타인종/타문화 파송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고려되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 6 c. 연회 감리직위원회는 개방적 순회 파송에 대한 헌신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해당 연회가 이룬 진전을 매년 글로벌
- 7 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개방적 순회파송이 더욱 충실하 이루어지도록 하기
- 8 위하여 연회 감리직위원회에 매년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9 5. 타인종/타문화 파송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성장과 증언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종/타문화적 파송이란, 목회자와 다른
- 10 인종적·민족적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교회의 다수를 이루는 교회에 그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이러한 파송이 효과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목회자와 회중 모두가 충분한 훈련과 지속적인
- 12 지원을 통해 준비되게 해야 합니다.

- 13 a. 각 연회의 감독과 감리사회는 파송 과정에서 개방적 순회 파송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배경의 목회자들이 공정하고
- 14 형평성 있게 고려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 15 b. 교단 전반에 걸쳐 일관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회는 총회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교단 차원의 타인종/타문화
- 16 훈련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팀은 모든 연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훈련 모듈, 그리고 평가 도구를
- 17 개발해야 합니다.

- 18 c. 교단 차원의 타인종/타문화 훈련팀은 모든 감리사회를 위하여 4년마다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타인종/타문화
19 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개체교회와 목회협력위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20 합니다. 각 연회는 교단 차원의 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그 연회의 목회자들과 감리사회, 그리고 교회들이 필요에 따라
21 적절히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22 d. 감독회는 모든 연회에서 이루어지는 타인종/타문화 훈련의 시행을 감독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소수민족
23 목회자들, 타인종 파송, 그리고 타문화 사역 현장을 위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개 순회에 대한 책임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비현실적입니다. 총리사들이 파송합니다. 감독들이 파송을 승인합니다. 그들은 이 업무에 대해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직접 책임을 집니다. 연회 감리직 위원회들은 이 정보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5.b 및 c. 각 연회의 감독 및/또는 총리사는 공개 순회에 대한 헌신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연회가 이룬 진전을 매년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공개 순회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및/또는 총리사에게 매년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0.5 삭제하여 ¶ 610.5.b 및 ¶ 610.5.c를 수정합니다

- 1 610.5.b 및 c. 매년 각 연회의 감독 및/또는 총감리사는 연회 감리직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고려하기
- 2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타인종/타문화 파송의 내용을
- 3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며, 아울러 타인종/타문화 파송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고려되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c. 연회
- 4 감리직 위원회는 매년 연회가 공개 순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글로벌 감독
- 5 위원회는 매년 각 연회의 공개 순회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연회 감리직 위원회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파송결정 절차

청원자: Jonathan Lee / 조너선 리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개방적 순회제, 선교적 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목회자와 회중의 공동 소명을 확언하는 연대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교단이 다양한 지역, 연회 및 문화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 610의 문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7항은 좋은 의도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연대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공평하며 성령 인도에 따른 파송을 보장할 충분한 명확성, 구조 및 책임성이 부족합니다. 본 청원은 파송 절차에 있어 협의적, 투명성, 선교 중심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개정을 제안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7. 파송결정 절차는 철저히 협의적이어야 합니다. 협의는 총리사 및/또는 감리사가 목사와 목회 협력 위원회와 협의하여 (a) 회중의 선교적 필요, 특성 및 기회, (b) 목사와 그 배우자 및 가족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전문적 경험과 기대, (c) 선교적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파송 변경 기간 동안에는 더욱 집중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교회는 2~3명의 목회자 후보자를 선정하여 목회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는 약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가용 인력과 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시 설교자가 교회를 섬기는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위해 감리사회에 의존하지만, 교회는 지방감리사와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목회자 탐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수위원회, 지방감리사, 총감리사의 승인이 없는 최종 면접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감리사 또는 감리사회 지명자는 파송 절차에서 지원과 안내를 위해 개체 교회와의 최종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감독회는 협의 절차의 실행에 대해 각 감독 지역 내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1 7. 파송 절차는 충분한 협의와 기도 가운데 선교적 관점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임명이 교회의 구속적 사명을 이루고
- 2 글로벌감리교회 연대체의 증언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 3 a. 협의란 총리사 및/또는 감리사가 목회자와 목회협력위원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와 함께 의논하며, 다음의
- 4 사항들을 공동으로 분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곧, (1) 회중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요와 특성 및 기회, (2)
- 5 목회자와 그 가족 안에 나타난 영적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 전문적 경험 및 기대, (3) 회중과 목회자가 섬기게 될
- 6 선교적 환경과 지역사회의 맥락입니다. 협의는 목회자의 재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회적 전환기
- 7 동안에는 더욱 긴밀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 b. 파송은 목회자들 사이의 경쟁적인 비교나 단회적인 설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비전에 기초한 분별 가운데
- 9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별의 과정은 목회자의 영적 은사와 소명, 그리고 목회자와 회중이 서로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지에
- 10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교회에는 기도 가운데 숙고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두세 명의 잠재적 목회자 후보가
- 11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교회는 참된 영적 분별을 돕고 후보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를 피하기 위해, 한 번에 한
- 12 명의 목회자와만 협의해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모두는 약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가용한
- 13 인력과 각 상황의 현실로 인해 때로는 한시적으로 임시 목회자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 14 c. 감리사 및/또는 총리사는 목회협력위원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와 함께 분명하고 일관된 협의 과정을 이끌어야
- 15 하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선교적 프로필과 목회자의 사역 비전이 모두 기도 가운데 신중히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 16 면담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곧, (1) 검토 중인 목회자(들)에 대한 안수위원회의 승인, (2)
- 17 감리사의 확인, (3) 총리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최종 면담에는 감리사 또는 감리사회가 지정한 대표가 반드시

18 참석하여, 임명의 언약 안에서 지원과 안내, 그리고 책임 있는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9 d. 파송은 복음의 세계적 성격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 뜻이 드러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1)
20 소수민족 목회자와 여성 목회자는 교회의 규모와 지역,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파송에서 공정하게
21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연회는 소수민족 목회자나 여성 목회자의 파송을 특정 유형의 교회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
22 파송은 은사와 준비 정도, 그리고 선교적 부합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감리직위원회는 소수민족 목회자,
23 여성 목회자, 그리고 인종과 문화를 넘어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공정한 임명 여부를 해마다 검토하고 보고해야 하며, 그
24 결과는 책임성과 점검을 위하여 감독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감독회는 각 감독 구역 안에서 이 협의적이고 공정한
25 절차가 일관되고 신실하게 시행되도록, 그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5) 총리사와 감리사는 임명 분별 과정의
26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온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협의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27 e. 각 연회는 타인종적·타문화적 사역이나 소수민족 목회자 및 여성 성직자 파송에 참여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28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문화 간 의사소통과 화해에 대한 교육,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29 인식, 갈등 해결과 신뢰 형성, 그리고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도록 돕는 공동 리더십 모델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30 합니다.. 감리사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임명을 오래도록 열매 맺는 사역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31 지속적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2 f.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위해 감리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지만, 개체교회는 감리사와 총리사의 사전 승인을
33 받아 목회자를 위한 자체적인 탐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교회의 모든 파송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34 최종 면담이나 추천은 제(c)항에 규정된 필요한 승인 없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35 g. 글로벌 감리교회는 목회자 파송이 목회자, 교회, 그리고 연회 지도부 간의 신성한 언약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36 파송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별과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선교적 비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목회자와
37 교회가 함께 나누는 소명, 곧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38 제자를 세우는 사명 안에서 함께 번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39 h.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목사와 교회의 관계는 신뢰, 상호 책임성 및 공동 사명을 기반으로 한 신성한 언약입니다.
40 그러므로 목회협력위원회와 목회자, 또는 감리사로부터 우려 사항이 제기될 경우, 감리사는 양측에 이를 알리고,
41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기도 가운데 체계적인 분별의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조정자를 세워, 그
42 절차가 공정하게, 비밀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 그 상황이 개인적 필요나 실무적
43 사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감리사, 목회협력위원회, 그리고 목회자가 함께 협력하여 장기간의 분별 기간을 요구하지 않고도
44 시기적절하고 질서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2) 그 우려가 갈등, 무너진 신뢰 또는 심각한 관계적
45 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분별의 과정이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조정자가 목회자와 교회가 문제를
46 분명히 드러내고, 치유와 화해를 추구하며, 서로의 기대를 분명히 하고, 건강하지 못한 긴장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 다음
47 단계를 분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그 과정이 끝나면, 조정자와 감리사는 감리사회에 서면 권고안을 제출해야
48 합니다. 목회자 변경에 관한 모든 권고는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정은 감리사회가
49 말아야 합니다. 모든 행위는 성령의 열매를 반영하며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와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파송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청원자: 연대 협의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연대 협의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목회자 후보를 두세 명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모든 지역교회에 반드시 두세 명의 목회자 후보가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택하다"라는 단어의 포함되어 있어서 개체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0.7을 수정합니다

- 1 7. 파송 절차는 철저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는 총리사 및/또는 감리사가 목회자와 목회 협력 위원회와
- 2 의논하여 (a) 교회의 필요, 특성, 선교 정책 (b) 목회자와 배우자 및 가족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전문적 경험, 기대,
- 3 (c) 사역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파송 변경 기간 동안에는 더욱 집중적인 관여가
- 4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교회는 목회자 면접을 위해 두세 명의 후보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회는
- 5 목회자 면접을 위해 한 명 이상의 후보자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악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부할 권리가
- 6 있으며, 이때 가용 인력과 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시 설교자가 교회를 섬기는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 7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위해 감리사회에 의존하지만, 교회는 지방감리사와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 8 자체적으로 목회자 탐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수위원회, 지방감리사, 총감리사의 승인이 없이는 최종 면접일이
- 9 정해지지 않는다. 감리사 또는 감리사회 지명자는 파송 절차에서 지원과 안내를 위해 개체 교회와의 최종 인터뷰에 반드시
- 10 참석해야 합니다. 감독회는 협의 절차의 실행에 대해 각 감독 지역 내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파송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저희는 유연성과 명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을 권고합니다: (1) 감리사와 총리사는 감리사가 부재 중이거나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협의를 위해 감리사회 중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 지역 교회가 목회자 청빙 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 섹션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별도의 섹션으로 만드는 것을 권고합니다. (3) 감리사가 최종 면접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항상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리사가 과정 전체에 걸쳐 필요할 때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4) 연회 내에서 협의 과정을 지휘하는 이는 총리사이므로,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아니라 총리사가 져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0.7 및 610.8을 수정합니다

- 1 7. 파송 절차는 철저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담, 협의는 총리사 및/또는 감리사(또는 그 감리사회 지정인)가
- 2 목회자 및 목회 협력 위원회와 의논하여
- 3 회중의 선교적 필요, 특성, 그리고 기회의 사항들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4 목회자와 배우자 및 가족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전문적 경력, 기대 등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 5 그리고 선교적 환경입니다.
- 6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파송 변경 기간 동안에는 더욱 집중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교회는 목회자
- 7 면접을 위해 두세 명의 후보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악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8 이때 가용 인력과 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시 설교자가 교회를 섬기는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9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위해 감리사회에 의존하지만, 교회는 지방감리사와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 10 목회자 탐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수위원회, 지방감리사, 총감리사의 승인이 없이는 최종 면접일이 정해지지
- 11 않는다. 감리사 또는 감리사회 지명자는 파송 절차에서 지원과 안내를 위해 개체 교회와의 최종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 12 합니다. 감독회는 협의 절차의 실행에 대해 각 감독 지역 내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리사 또는 감리사회
- 13 지정인은 파송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할 때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교회와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14 감독은 각 해당 지역에서의 협의 과정 실행에 대해 총리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15 8.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에 필요한 자원을 감리사회에 의존하겠지만, 교회는 감리사와 총리사의 승인을 받아
- 16 독자적으로 목회 리더십 청빙 과정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 위원회, 감리사, 그리고 총리사가 고려 중인 목회자의
- 17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가 파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상담 파송 과정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현재 언어는 "상담"에 의한 파송 과정이 아니라 "회중의 청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0.7를 수정합니다

- 1 7.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파송 변경 기간 동안에는 더욱 집중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교회는 목회자
- 2 면접을 위해 두세 명의 후보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악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3 이때 가용 인력과 파송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시 설교자가 교회를 섬기는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4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위해 감리사회에 의존하지만, 교회는 지방감리사와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 5 목회자 탐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수위원회, 지방감리사, 총감리사의 승인이 없이는 최종 면접일이 정해지지
- 6 않는다.
- 7 7.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파송 변경 기간 동안에는 더욱 집중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교회는 목회자
- 8 면접을 위한 두세 명의 목회자 후보자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감리사에게 잠재적 후보자를 제안할 수
- 9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악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 면접은 고려 중인 목회자(들), 감리사,
- 10 그리고 총리사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일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임시 파송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임시 사역에 대한 섹션이 장황하며, 임시 장관/목사가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을 간결하게 다듬고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0.9를 수정합니다

- 1 9. 임시 목회자. 자상 사명과 성령의 능력(마태복음 28:18–20; 사도행전 1:8)에 신실하고, 교회가 목회자 파송의 과도기를
- 2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 장관/목사가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속성이 끊기는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 3 이러한 상황에서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나 임시 목회자가 치유를 돕고 목회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감독, 총리사,
- 4 감리사회는 그러한 교회에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평신도나 목회자 임시 장관/목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 5 9. 임시 목회자. 교회가 목회자 파송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동안, 감독, 총리사, 감리사회는 치유를 돕고 회중에게 목회적
- 6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평신도나 목회자 임시 장관/목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기
- 7 목회자를 찾는 과정이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목회자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불필요한 9. 임시 교역자. 교회가 목회자 파송의 과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 목회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는 그러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평신도 또는 임시 목회자를 보낼 수 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0.9를 수정합니다

- 1 610.9. 임시 목회자. 자상 명령과 성령의 능력(마 28:18-20, 행 1:8)에 충실하고, 교회가 목회자 파송의 과도기를 잘
- 2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 목회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속성이 끊기는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 3 이러한 상황에서는 훈련받은 평신도 또는 성직자인 임시 목회자가 치유를 증진하고 목회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는 그러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평신도 또는 임시 목회자를 보낼 수 있다.

연장사역 연대 유지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인증받은 목사들은 연장 사역에 파송될 자격이 있으며, 이 문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장사역에 파송된 목회자들은 연회에서 쉽게 간과됩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대신, 이 제안서는 연장사역 목회자들과 연회 간의 연대를 위해 연장사역을 기존 구조에 통합 하고자 합니다. 연장사역에 파송된 목회자들은 우리의 연대 구조의 일부로서 지원과 책임을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방 감리사를 임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논리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0.10을 개정합니다

- 1 총리사와 감리사회의 추천에 따라, 감독은 사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증받은 목사, 집사목사, 장로목사를 개체 교회
- 2 밖의 연장사역에 파송할 수 있습니다. 파송은 교회의 사명에 따라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안수 사역의 본질을 반영해야
- 3 합니다(¶ 401).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파송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협의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 4 이들은 계속하여 현역 목회자로 남으며, 지원 및 감독을 위해 감리사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기관목회/연장사역 파송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첫 문장은 누가 무엇을 언제 요구되고 허락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을 유지하면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재작성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또한 감독이 집사목사와 장로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사역자/성직자를 기관목회/연장사역 목회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0.10을 수정합니다

10. 연장 사역 파송. 감독은 총감리사와 감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안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사목사와 장로목사를 개체
- 교회 밖에서 연장 사역을 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감독은 총리사와 감리사회의 권고와 사역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지역
- 교회 밖의 기관목회/연장사역에 목회자/사역자/성직자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파송은 교회의 사명에 따라 세상의 필요를
- 채워주는 안수 사역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401). 협의 절차는 개체 교회 이외에 파송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현역 목회자로 있어야 한다.

이적하는 감독들을 명예 감독직으로 제한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감독은 현직 감독으로 이적하지 않으며,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통해 명예 감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1을 다음과 같이 전면 대체합니다

- 1 ¶ 611 감독 이적. 웨슬리안 성결 전통에 뿌리를 둔 교단의 감독(현직 또는 은퇴)은 이적을 통해 목회자로서 글로벌
- 2 감리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적 신청서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리, 사회적 증언 및 교회 정치를 지지하고
- 3 확인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예 감독 칭호를 부여받고 영입되기 위해서,
- 4 이적하는 감독은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통해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와 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회
- 5 회기 사이에 명예 감독이 영입되는 경우, 교단 전체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이적으로 영입된 명예 감독은 감독직 후보로
- 6 추천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될 경우 6년의 한 임기를 시무할 자격을 갖습니다.

전입 감독이 감독구에 배정되는 허용 조항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이 단락은 다른 감리 교회에서 감독이 글로벌 감리교회로 전입될 경우, 그들이 자동으로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감독이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 절차는 이러한 과정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리 교단의 감독들은 매우 상이한 책임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신실하게 이끌 수 있다고 단순히 가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입니다. 그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명될 경우, 다음 총회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1.1을 수정합니다

- 1 자치 감리교회의 감독은 목회자 전입을 통해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적 신청서에는 본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 2 교리와 사회적 증언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확인과 장정의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입하는
- 3 감독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전입은 글로벌 감독권 위원회와 감독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 4 합니다. 총회 화가 사이에 감독이 부임할 경우, 감독회와 글로벌 감독권 위원회는 교회에 감독의 임자를 통보하여야
- 5 합니다. 모든 전입 감독은 다음 총회에서 선거에 입후보해야 하며, 전입 감독으로 선출된 후 다음 총회에서 선출될 경우 6년
- 6 임기의 감독직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명예 감독의 지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 611.2의 마지막 문장은 ¶ 613에 반복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그 문장의 삭제와 첫 문장에 ¶ 613에 대한 참조의 추가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1.2를 수정합니다

2.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은퇴한 감독은 원로장로목사가 되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와 연대 협의회가 원조금,
- 보조금을 승인하는 경우 명예 감독의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613). 명예 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목회자이며,
- 원로 목회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520).

공석 사유 추가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공석이 발생할 수 있는 누락된 상황을 추가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2을 개정한다

- 1 ¶ 612. 감독직의 공석. 감독직의 공석은 사망, 선임지위로의 전환, 사임, 정직, 재판 법원에 의한 면직, 휴직, 또는 병가로
- 2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감독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감독회의와
- 3 협의하여 해당 감독 지역에 대한 업데이트된 사역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명예 감독은 본인의 동의 하에 글로벌 주교직
- 4 위원회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역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재판 법원에 의해 면직된 자의 원로직 박탈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처벌로 면직된 감독은 이 칭호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하위 항 ¶ 613.4를 추가하여 ¶ 613을 수정합니다

- 1 4. 재판 법원에 의해 면직된 감독은 “원로 감독”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제거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불필요한 반복 줄이기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4.1을 수정하고 ¶ 614.2를 삭제합니다

1. 휴직. 감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의해 육 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2 휴직이 허락된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감독 책임에서 면제되며, 감독 책임에 대한 임시 계획은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 3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발표한다. 휴직 사유가 의학적인 것이었고, 육 개월 기간 후에도 감독이 건강 악화로 인해
- 4 온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일 개월 단위로 휴직을 추가 육 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또는 감독은 명예
- 5 정년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2. 병가 건강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완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감독은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의 휴직을
- 7 허가받을 수 있다. 휴직이 허락된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감독 책임에서 면제되며, 감독 책임에 대한 임시 계획은 글로벌
- 8 감독 위원회가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발표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건강 악화로 인해 여전히 완전한 업무를
- 9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1개월 단위로 휴직을 연장하여 6개월 더 연장하거나 감독이 장애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 정보를 9섹션에 적절하게 배치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9부에 포함시키기 위함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5 전체를 삭제합니다

- 1 ¶ 615. 감독에 대한 고소 1.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 지도자들은 다른 모든 안수자들과 안수에 대한 신성한 신뢰를
- 2 공유한다. 감독이 이 신뢰를 위반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직 연임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아
- 3 검토는 하나님의 정의, 화해, 치유의 역사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신성한 신뢰 위반에 대한 정당한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 4 합니다. 2. 효과, 역량 또는 교리와 장정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에 관한 모든 고소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 5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 제기는 위법 행위, 불만족스러운 목회 직무 수행 또는 나열된 위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 6 주장하는 서면 진술서입니다. 3. 고소는 사법 행정(제9부)의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감독의 비자발적 신분 변경은
- 7 조사위원회의 4분의 3 투표에 의한 추천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3분의 2 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글로벌
- 8 감리교회 사법 관행 및 절차, 3). 단, 재판에 따른 처벌은 그러한 추천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항소의 대상이 되나
- 9 즉시 시행됩니다.



연회

all ¶ 700s · Annual & Regional Conference Boundaries

번호	¶	제목	페이지
1312	¶ 206	추가 구역회 허용의 명시	367
1463	¶ 606	공개 회의	368
1464	¶ 611	연회 웹사이트의 최소 기준	370
1224	¶ 703	총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372
1225	¶ 703.1	총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373
1100	¶ 703.9	연대 협의회를 정의하고 설립할 총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십시오.	374
1226	¶ 703.9	총회 권한의 명확화	375
1227	¶ 703.14	총회의 입법적 권한 명확화	376
1071	¶ 705.1	700년대 단락의 구식 참조 삭제 청원	377
1314	¶ 705.3	하이브리드 총회에 대한 유연성 허용	378
1186	¶ 706	청원 및 해상도 제출 과정 명확화	379
1036	¶ 706.6	제목 참조 갱신 중	381
1259	¶ 708 (신설)	신설 ¶ 708. 총회의 재정 사항	382
1037	¶ 708.1	본처 전도사 투표의 일관성	384
1187	¶ 708.1	연회 평신도 멤버십 명확화	385
1136	¶ 708.9	연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 선거	386
1188	¶ 709.2	연회의 재정적 책임 명확화	387
1027	¶ 709.6	선거 절차 필수	388
1028	¶ 709.6	총회 대의원 선거 자격 목회자를 명확히 하는 청원	389
1189	¶ 709.6	연회 총회 대표단 정의	391
1287	¶ 709.6	신설 교회에서 온 델리게이트에 대한 용돈	392
1002	¶ 709.9	연회가 소속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93
1069	¶ 710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394
1132	¶ 710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395
1202	¶ 710	연회에서 평신도 위원회, 협의회의 설립	396
1141	¶ 710.1	연회 위원회 멤버십	397
1190	¶ 710.1	연회의 협의회, 위원회 및 위원회를 개별 단락으로 분리하기	398
1228	¶ 710.1	연회 연대 협의회의 회의 및 멤버십 명확화	399

번호	¶	제목	페이지
1064	¶ 710.4	연회의 재정 감사	401
1113	¶ 710.5	연회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의 선출 과정과 운영 지침	402
1265	¶ 710.5c	연회 이사회 및 위원회 ¶ 710:5c	405
1191	¶ 710.6	조사 위원회에 관한 용어 명확화	406
1192	¶ 710.7	행정 심사 위원회에 관한 용어 명확화	407
1055	¶ 710.9 (신설)	¶ 710 연회 임원회 및 위원회 수정에 대한 청원	408
1193	¶ 711	연대 기금과 델리게이트 산정 공식의 분리	409
1041	¶ 711.1	연회 연대 기금	411
1063	¶ 711.1	연회의 활동과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연회의 역량 강화	412
1059	¶ 711.2	총회에서의 공정하고 평등한 대의원 대표권	413
1244	신설 ¶ 7XX	기존 청소년 구조의 보호	414

추가 구역회 허용의 명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헌법 섹션에는 구역회의 업무, 정족수, 그리고 연례 구역회 외에 필요시 추가 구역회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더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헌법의 연회 섹션의 범위와 세부사항에 더 부합하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6.4를 추가하여 ¶ 206을 개정합니다

- 1 4. 추가 구역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감리사와 협의하여 조정됩니다.

공개 회의

청원자: 제프리 릭먼

조직: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한 기관에 신뢰를 부여하려면, 그 기관은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비밀리에 열리는 비공개 회의는 불신을 조장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그 교인들에게 반응하고 받고자 하는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교단은 모든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회의를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공표하고 공개하는 문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여러 하위 항을 추가함으로써 ¶ 705를 수정합니다

- 1 본 청원은 여러 하위 항을 추가함으로써 ¶ 708을 수정함
- 2 ¶ 705. 조직
- 3 공개 회의— 총회의 모든 공식 행정 기관 회의에 대한 공고는 회의 10일 전까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총회 웹사이트에
- 4 게시되어야 합니다. 수일간의 회의가 계획된 경우(예: 총회 기간 동안 매일 회의), 이는 단일 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5 각 회의의 의사일정은 회의 전날까지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6 총회의 모든 공식 행정 기관 회의는 장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고백 교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의
- 7 유일한 예외는, 위원회가 인사, 법률 또는 계약 문제를 다루고 있고, 위원회 과반수가 해당 특정 사안의 토론에 필요한 시간
- 8 동안만 회의를 비공개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집행부 회의에서 도달한 결정은, 해당 회의가 종료된 후
- 9 열리는 공개 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 10 회의는 가능한 경우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 11 행정 기관 회의나 소집된 총회에서는 해당 행정 기관의 공식 구성원과 초청된 손님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 12 총회 모든 행정 기관 회의의 회의록은 일주일 이내에 글로벌 감리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13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어떠한 비밀/비공개 그룹도 설립될 수 없습니다.
- 14 ¶ 708. 조직.
- 15 10. 연회의 모든 공식 행정 기관 회의에 대한 공고는 회의 10일 전까지 연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수일간의
- 16 회의가 계획된 경우(예: 연회 기간 동안 매일 회의), 이는 단일 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17 11. 각 회의의 의사일정은 회의 전날까지 연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18 12. 공개 회의. 연회의 모든 공식 행정 기관 회의는 장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당 연회 소속] 고백 교인에게

19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위원회가 인사, 법률 또는 계약 문제를 다루고 있고, 위원회 과반수가 해당
20 특정 사안의 토론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집행부 회의에서 도달한
21 결정은, 해당 회의가 종료된 후 열리는 공개 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22 13. 회의는 가능한 경우 반드시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23 14. 행정 기관 회의나 소집된 연회에서는 해당 행정 기관의 공식 구성원과 초청된 손님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24 15. 연회 모든 행정 기관 회의의 회의록은 일주일 이내에 연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25 16. 연회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어떠한 비밀/비공개 그룹도 설립될 수 없습니다.

연회 웹사이트의 최소 기준

청원자: 제프리 릭먼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보고 기준이 연회마다 다를 경우, 특정 기대치는 불합리해집니다. 연대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우리의 연약 기구들이 모두 동일한 최소 기준에 따라 상호 연관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대 조직의 문화, 예배 스타일 및 기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지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09.11을 수정합니다

- 1 ¶ 709. 권한과 의무.
- 2 11. 폐쇄 교회 기록(¶ 328.7)과 모든 지방 교회의 연례 통계 보고서(¶ 330, 339.10)를 포함한 연회의 기록을
- 3 유지합니다.
- 4 모든 연회는 웹사이트를 설계, 구현하고 충실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연회 웹사이트는 총교회 직원 및/또는 예산으로
- 5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회 직원과 임원은 모든 필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고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이러한 각 필수 항목은 직원과 임원에게 그들의 직무 또는 직책의 명시적인 일부로 할당되며,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모든
- 7 연회 웹사이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8 개인이 지역 교회 공동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모든 교회의 양방향 지도
- 9 지방을 구분하는 연회 지도(단순 PDF, 비양방향)
- 10 모든 교회를 검색할 수 있는 옵션과 연결된 각 지역 교회를 위한 페이지
- 11 모든 목회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옵션과 연결된 각 목회자를 위한 페이지
- 12 모든 회의의 장소, 관련 그룹, 의사일정이 기재된 연회 달력 또는 이러한 정보가 게시된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
- 13 모든 연회 직원 및 임원의 목록과 각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 14 연회의 후원과 권한 하에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 태스크 포스, 실무 그룹, 분과 위원회 및 기타 그룹의 목록, 각 그룹의
- 15 리더를 지정하고 해당 리더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
- 16 월별 기금 잔액 보고서 및 연간 감사. 모든 제한 기금, 지정 기금, 기부금 및 적립금은 연회 재무 또는 해당 보고서에 접근할
- 17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정기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재무 분석은 선택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 18 한 연회에 속한 모든 글로벌 감리교회 교인은 투명한 재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재정은 공개적으로 회계
- 19 처리되어야 합니다.
- 20 모든 제한 기금 목록과 각 기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

- 21 게시된 모든 소식지 기록. 비밀번호로 보호할 수 없음
- 22 모든 연회 회의록 기록 및 전체 PDF 무료 다운로드. 비밀번호로 보호할 수 있음.
- 23 현금 기능
- 24 모든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
- 25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정보는 해당 연회의 교단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총교회 직원 및 임원이 무료로 접근하고 쉽게
- 26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명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헌법이 2026년에 완전히 채택됨에 따라, 총회의 역할은 수정하는 것으로만 한정됩니다. (2) 우리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있으나, “이사회” 및 “대행사”는 없습니다. (3) 평신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단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참고 – 제5, 6, 7항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3.1, ¶ 703.2, ¶ 703.3, ¶ 703.4, 및 ¶ 703.8을 수정합니다

1. 글로벌감리교회의 헌법과 그 헌법 개정안을 채택한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모든 승인된
2. 개정안을 추가 표결을 위해 연회에 전달합니다.
3. 글로벌감리교회의 모든 사역, 기관, 목회자, 평신도, 직분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한다. 글로벌
4. 감리교회의 모든 사역, 사명/위원회, 협의회, 목회자/사역자/성직자, 평신도, 임원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5. 한다. 이를 통해 총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개체 교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총회는 지역 교회
6.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자원을 유지하여 글로벌 감리 교회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집사목사, 장로목사, 공급 목사 및 기타 지도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8. 정의한다.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집사목사, 장로목사, 본처 전도사, 감독, 그리고 지역 교회 및 그 이상의 영역에서
9. 지도자로 섬기는 평신도를 포함하여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한다.
10. 교인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하며, 교회 회원 자격은 인종, 색깔, 민족 또는 부족의 정체성,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11.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인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하며, 교회 회원 자격은 인종, 색깔, 민족 또는 부족의
12. 정체성,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장한다.
13. 개체교회를 통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위원회, 프로그램
14. 대행사, 또는 사명/위원회를 설립하고 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사역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개체교회를 통한 글로벌
15. 감리교회의 사명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회 위원회 및 협의회를 설립하고 감독 권한을
16. 부여하며, 사역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총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명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헌법이 2026년에 완전히 채택됨에 따라, 총회의 역할은 수정하는 것으로만 한정됩니다. (2) 우리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있으나, “이사회” 및 “대행사”는 없습니다. (3) 평신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단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참고 – 제5, 6, 7항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3.1, ¶ 703.2, ¶ 703.3, ¶ 703.4, 및 ¶ 703.8을 수정합니다

1. 글로벌감리교회의 헌법과 그 헌법 개정안을 채택한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모든 승인된
2. 개정안을 추가 표결을 위해 연회에 전달합니다.
3. 글로벌감리교회의 모든 사역, 기관, 목회자, 평신도, 직분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한다. 글로벌
4. 감리교회의 모든 사역, 사명/위원회, 협의회, 목회자/사역자/성직자, 평신도, 임원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5. 한다. 이를 통해 총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개체 교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총회는 지역 교회
6.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자원을 유지하여 글로벌 감리 교회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집사목사, 장로목사, 공급 목사 및 기타 지도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8. 정의한다.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집사목사, 장로목사, 본처 전도사, 감독, 그리고 지역 교회 및 그 이상의 영역에서
9. 지도자로 섬기는 평신도를 포함하여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한다.
10. 교인의 자격, 의무, 책임을 정하되, 교인 자격은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부족의 정체성, 성별, 또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11.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교인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하며, 교회 회원 자격은 인종, 색깔, 민족 또는 부족의
12. 정체성,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장한다.
13. 개체교회를 통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위원회, 프로그램
14. 대행사, 또는 사명/위원회를 설립하고 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사역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개체교회를 통한 글로벌
15. 감리교회의 사명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회 위원회 및 협의회를 설립하고 감독 권한을
16. 부여하며, 사역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연대 협의회를 정의하고 설립할 총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십시오.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현행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 제208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9항을 개정하면 더욱 명확해지고 두 조항이 서로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본 청원은 ¶ 703.9를 수정합니다**

- 1 9. 총회와 총회 회의 사이에 위임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연대협의회를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의하고
- 2 설립하되, 총회가 때때로 제정하는 제한 사항에 따르며, 총회 회의 사이에 위원회가 취한 모든 조치는 총회의 승인을
- 3 받아야 한다.

- 4 9. 총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총회 회기 사이에 연대협의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연대협의회를
- 5 규정하고 감독하되, 그 권한은 총회가 부과한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연대협회의의 모든 결의 사항은 다음 총회의 비준을
- 6 받아야 합니다.

총회 권한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명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총회는 다른 사명/위원회와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연대 협의회에 대해 명시적인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2) .10항에서는 현재의 문구가 총회가 연대 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며, ¶ 807.4.d의 서두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총회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총회가 하고자 하는 바의 관점에서 이를 서술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는 연대 기금도 언급되어야 하며, 이는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11항은 ¶ 711.2의 많은 부분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을 위해 문구가 하나의 장소에만 공식으로 포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복사된 부분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3.9, ¶ 703.10, 및 ¶ 703.11을 대체합니다

- 1 9. 총회와 총회 회의 사이에 위임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연대협의회를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의하고
- 2 설립하되, 총회가 때때로 제정하는 제한 사항에 따르며, 총회 회의 사이에 위원회가 취한 모든 조치는 총회의 승인을
- 3 받아야 한다. 10.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와 방향에 따라 매년 교회 예산의 수립을 글로벌감리교회 연대 협의회에 위임하는
- 4 것을 포함하여, 교회 사역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11. 연회 또는 연회에 속하지
- 5 않은 교단의 다른 부서가 보유한 교회 수와 정규직에 상응하는 목회자 임명 및 파송, 연대 협의회가 정한 마감일에
- 6 글로벌감리교회의 총 교회 수와 정규직에 상응하는 목회자 임명 및 파송, 기타 총회가 결정하는 요소에 따라 총회에 대한
- 7 대표 비율을 정한다.
- 8 9. 총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총회 회기 사이에 연대협의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연대협의회를
- 9 규정하고 감독하되, 그 권한은 총회가 부과한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연대협의회의 모든 결의 사항은 다음 총회의 비준을
- 10 받아야 합니다.
- 11 10.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배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연대 협의회에 우선순위와 지침을
- 12 부여하십시오. 여기에는 연대 기금의 수집, 그리고 매년 총회 예산의 책정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13 11. 총회에 대한 대표 비율을 확정하십시오.

총회의 입법적 권한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명확성을 위하여, .14, .15, .16, .18 규칙들을 하나의 하위항목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규칙들은 또한 헌법에 포함된 개정 및 해상도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 .17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3.14를 수정하고 ¶ 703.15, ¶ 703.16, 및 ¶ 703.18을 삭제하며 ¶ 703.17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우리의 사회적 증언”(파트 3)에 관한 모든 청원은 총회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합니다.
- 2 교회 교리(파트 1)에 관한 모든 청원은 제한 규칙(¶ 212)의 적용을 받습니다.
- 3 모든 해상도는 총회 4분의 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다음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개정 또는
- 4 재승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5 17. 병원, 학교 또는 기타 기관과 같은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감독 및/또는 관리한다.
- 6 18. ~~글로벌감리교회의 선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법률을 제정한다.~~

700번대 단락의 구식 참조 삭제 청원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이 청원은 창립 총회 소집에 대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5.1을 수정합니다

1. 규칙. 총회는 로버트의 회의 규칙과 총회에서 채택한 보충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하이브리드 총회에 대한 유연성 허용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이 제안은 전쟁, 질병,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표단의 참여가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연성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해당 문단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5.3을 수정합니다

- 1 가상 회의. 대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감독회의의 승인을 받아
- 2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회의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한 회의 진행을 승인할 수 있다(¶ 208).
- 3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우, 특정 연회의 대표단은 연회 전체 대표단을 포함하여 총회에 대하여 교회 감독들과
- 4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청원 및 해상도 제출 과정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장정에는 현재 해상도 제출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청원과 해상도 제출 과정의 기본 구조만 장정에 명시하고, 각 총회를 위하여 수립된 조직 계획과 언약이 과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로써 절차를 관리하는 경계가 마련되며, 연대 협의회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 및 적응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5항에서 "주요 언어"는 장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대체로 "공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용어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참고: 저희가 권고하는 추가로 인해 마지막 세 하위 항목의 번호를 다시 매겨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6을 수정합니다

1. 청원서는 총회 총무 또는 지정된 청원 비서에게 보내야 한다. 활자 또는 인쇄 또는 전자 형식, 또는 기타 총회 총무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되며, 총회의 총무가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2. 청원이나 해상도는 전자 형태 또는 총회 비서나 지정인이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총회 비서 또는 지정 청원 비서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들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3. 교리와 장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각 청원은 하나의 사안만을 다루어야 하며, 교리와장정 이 영향을 받는 경우 각 청원은 교리와장정 의 한 단락만을 다루어야 하지만, 두 개 이상의 단락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단락의 변경이 다른 단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원은 서로 일치하도록 해당 단락의 개정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리와 장정 의 한 단락 이상을 다루는 청원은 무효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복합 청원)은 여러 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4. 각 청원은 교리와. 장정의 한 단락만을 다루어야 하지만, 두 개 이상의 단락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한 단락의 변경이 다른 단락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이들 단락이 일치하도록 개정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교리와. 장정 의 둘 이상의 단락을 다루는 청원은 총회 비서 또는 청원 비서에 의해 무효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복합 청원)은 여러 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5. 각 해상도는 글로벌 교회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해상도는 교리와. 장정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해상도는 총회 비서 또는 청원 비서에 의해 무효로 지정됩니다.
6. 각 청원서는 제출하는 사람이 서명하고 주소, 지역 교회, 조직 또는 연회 등 적절한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최소 10명의 다른 교수 또는 목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된 각 청원서는 제출자의 신원과 위와 같은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며, 제출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유효한 전자 메일 반송 주소 또는 반송 팩스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 서명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허용된다.
7. 개인이 제출하는 청원 또는 해상도에는 해당 개인 및 모든 10명의 공동 서명자에 대한 유효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식 글로벌 감리교회 조직을 대표하여 제출되는 청원 및 해상도에는 해당 조직을 대표하여 제출하는 자의 유효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록 또는 기타 증빙 문서(총회 비서 또는 그 지정인이 승인한 경우)는 청원 또는 해상도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4 5. 글로벌 감리교회 소속 구성원이 청원 또는 해상도 제출에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구성원이 속한
 25 연회의 사무실이 구성원과 협력하여 제출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6 4. 청원 및 해상도는 총회 개회 120일 전까지 총회 비서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27 5. 적절하게 제출된 청원은 총회 전에 교회의 모든 주요 언어로 배포되어 총회 개회 최소 6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28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하게 제출된 청원 및 해상도는 총회 전에 교회의 모든 공용어로 배포되며, 총회 개회 최소 60일 전에
 29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 또는 해상도 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해당 청원 또는 해상도는 최초
 30 제출자의 이름과 추가 접수된 부수를 명시하여 한 번만 출판됩니다. 출판 후, 사전 출판물의 모든 번역본은 교단
 31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제공된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결의안은 총회의 배포
 32 승인을 받아 모든 대의원에게 인쇄 및/또는 배포할 수 있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해상도는 참석하여
 33 투표하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34 6. 총회의 비서 혹은 지정인은 총회 회기 내내 교리와, 장정에 대한 총회의 조치와 그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 모든 청원에
 35 대한 전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접근 권한은 교리와, 장정의 새 판이 출간될 때까지 최소한
 36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행은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제목 참조 갱신 중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교리와 장정에서 이 직분을 언급하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 직함을 총회 총무라고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06.6을 개정한다

- 1 총회의 총무는 총회 회기 동안, 총회 조치와 그에 따른 교리와 장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모든 청원에 대해 전자적으로
- 2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3 총회 총무는 총회 회기 동안, 총회 조치와 그에 따른 교리와 장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모든 청원에 대해 전자적으로
- 4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접근 권한은 교리와 장정 새 판 출판 시까지 유효합니다. 시행은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 5 협의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신설 ¶ 708. 총회의 재정 사항

청원자: Sterling Allen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휴스턴 코너스톤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이 제안된 단락은 총회의 소집 비용에 대한 재정 상한선을 설정하며, 미국 연회와 비미국 연회 소속 델리게이트의 자금 조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교단의 성장에 따라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총회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며, 집회의 자금을 지정하는 데 있어 재정·행정·연금·복지제도 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국가의 재정 현실을 반영하는 널리 인정받는 경제 지표로, 다양한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708을 추가하고 이후 모든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총회 예산.
- 총회 소집 비용의 총액은 직전 6년간의 연대 기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회의 자금 조달은
- 재정·행정·연금·복지제도 위원회가 지정한 기금에서 제공됩니다.
- 미국 연회의 책임.
- 미국 내 각 연회는 선출된 델리게이트, 대체 델리게이트, 그리고 파견 결정된 예비 대표의 여행, 숙박, 식사 및 기타 관련
- 비용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 비미국 연회에 대한 지원.
- 미국 외의 연회에 대하여 총회는 그 연회의 선출된 델리게이트, 대체, 예비 대표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재정적으로
- 지원합니다.
- 정부 비자 비용
- 육상 교통비
- 호텔 숙박(2인 1실 기준)
- 연회 장소를 기준으로 총회 위원회가 결정한 식비 일당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비미국 연회에 대한 추가 지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500달러 미만인
- 연회는 모든 경비가 총회 위원회에서 전액 지급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 중 1인당 GNI가 2,500달러 이상이지만 명확한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타 연회는 총회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항공권 지원을 추가로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비용.

19 배우자가 델리게이트와 함께 호텔 숙박을 할 경우, 배우자에게 해당하는 숙박비는 델리게이트가 부담하며 교단에서는
20 지원하지 않습니다.

21 예비 대표.

22 미국 외 연회에서 파견된 예비 대표에 대해 총회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은 해당 연회가 선출한 대체 인원의 수를 초과할
23 수 없습니다.

24 경제 및 지정학적 교란.

25 총회 예정지 또는 델리게이트를 파견하려는 회원국에 실질적인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연대 협의회는
26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단락의 어떠한 조항도 1회 총회에 한하여 임시로 조정하여 교회 사명과 사역에 더 잘 부합할
27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처 전도사 투표의 일관성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이 청원안은 ¶ 708을 ¶ 512에 대한 이전 개정 사항들과 일치하도록 맞추어 줍니다 ¶ 512.4 “임시 목사는 연회의 목회자 회원으로서 완전한 발언권을 가지며, 집사목사 및 장로목사의 안수와 연회 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임시 목사의 투표 권한은 ¶ 512.4에서 명확히 규정되었으나 “임시 목사”라는 문구가 ¶ 708.1 연회 투표회원 목록에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08.1을 개정합니다

- 1 연회의 투표 회원은 ¶ 520의 자격을 갖춘 장로목사, 집사목사, 본처 전도사, 및 파송 중인 과도기적 본처 목사(교리와
- 2 장정의 다른 곳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와 선임 목회자, 그리고 각 담당, 지방 또는 연회에서 선출된 최소한 동수의
- 3 평신도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연회 평신도 멤버십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연회 평신도 멤버십에 관한 규칙이 혼란스럽습니다. 한 문장에서는 연회가 "최소한" 평신도 회원 수가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나, 다른 문장에서는 평신도 회원과 목회자/사역자/성직자 회원 "동수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회는 반드시 평신도 수가 목회자/사역자/성직자 수와 "최소한" 같아야 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수화"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 평신도 회원 투표권에 관한 규칙 역시 혼란스러운데, 일부에서는 전체 연회에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추가 회원에 대해서는 "오직 평신도만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연회는 추가 회원 선출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8.1을 수정합니다

1.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지역 전체에서 공동의 사역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2. 지리적으로 다른 연회나 지방회의 경계와 겹치지 않는 특별 연회나 지방회는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구성할 수 있다. 연회의 투표 멤버십은 파송 중인 장로목사, 집사목사,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교리와. 장정의 다른 곳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과 ¶ 520의 자격을 충족하는 선임 목회자/사역자/성직자, 그리고 각 담당 혹은 지구/지방 또는 연회에서 선출한 최소한 동수 이상의 평신도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구역회에는 파송된 목회자 수만큼의 평신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연회는 연회 지도자직에 있는 평신도 회원과 그 외 평신도 회원을 필요에 따라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연회는 목회자 수와 똑같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평신도 회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동등한 평신도 선거에서는 평신도만 투표할 수 있다. 연회는 추가 평신도 회원 수와 선거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회원은 구역회, 지구/지방 회의, 연회 평신도 세션 또는 연회에서 선거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선거로 선출되어야 하며 파송될 수는 없습니다.

연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 선거

청원자: Gene Floore/진 플로어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Destin / 데스틴 (미국: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서 평신도의 본질적인 역할을 확언합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임을 가르치면서(베드로전서 2:9), 사역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책임을 확언합니다; 연회 차원에서 일관되고 공인된 평신도 지도자의 존재는 개체교회, 연회, 그리고 더 큰 교단 간의 연대를 강화합니다; 연회 평신도 지도자 또는 동등한 임원은 주요 지도부 토론 및 의사결정에서 평신도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8.9를 수정합니다

- 1 708.9. 연회는 서기, 평신도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원 및 연회가 결정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합니다.

연회의 재정적 책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현재 연회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요구 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회의 사역과 선교가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종종 “자신의 지역”을 넘어 확장되며(일부 연회는 “지역” 기반이 아니라 공통의 신앙에 근거하기도 함), 자금의 배분은 단순히 “연회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9.2를 대체합니다

- 1 2. 해당 지역에서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 2 2. 연회(₩ 711.1)의 연대 기금 할당률을 결정하고, 연회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식별하며, 자금이 어떻게 배포될 수
- 3 있는지를 설명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연회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선거 절차 필수

청원자: 총회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추가된 내용은 투표가 개별 대의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선출된 순서대로 임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연회가 원하는 대표를 연회 지도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선출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09.6을 개정합니다

- 1 ¶ 709.6을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재구성하고, c절에 다음의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합니다:
- 2 (6) 총회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 3 a.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선출 전 최소 2년 이상 봉사하고, 품행이 단정한 상태의
- 4 정회원이어야 한다. ¶ 521.2a의 조항에 따라 장로목사 또는 집사목사로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 5 정회원이 되며,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선출되기 전 최소 2년 이상 시무하고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 6 경우 목회자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7 b. 평신도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의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 8 c. 목회자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단순 과반수 투표로 선출하며, 목회자는 목회자 대의원에게, 평신도는 평신도
- 9 대의원에게 투표합니다. 대의원, 대체자 및 예비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순서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연회에서는 대의원
- 10 후보자들을 한꺼번에 추천할 수 없으며, 투표는 개별 후보자에 대해 이뤄져야 합니다.

총회 대의원 선거 자격 목회자를 명확히 하는 청원

청원자: 총회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이 개정은 총회 목회자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모든 조항을 한 곳에 명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장정의 어디에서도 답하지 않은 회색 영역과 질문을 명확히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09.6을 개정합니다

1 709.6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6) 총회와 연대 협의회가 정한 공식과 배분에 따라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
3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선출 전 최소 2년 이상 봉사하고, 품행이 단정한 상태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521.2a의
4 규정에 따라 장로 또는 집사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정회원이 되며, 신앙과 행정에 흠이 없는 양호한
5 상태를 유지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에서 선출 이전 최소 2년 이상 사역한 경우 목회자 대의원이 될 수
6 있습니다.

7 대의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는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성됩니다:

8 사역 또는 학교에 파송되어 사역 중인 장로목사(§ 510.2 610.11)

9 사역 또는 학교에 파송되어 사역 중인 집사목사(§ 509.3 610.11)

10 안수 승인을 받고 사역 또는 학교에 파송된 과도기적 본처 목사(§ 521.2a-b)

11 선임 지위를 취득한 후 최소 4분의 1 시간으로 파송되었거나 선임 지위 취득 후 첫 7년 이내의 선임 목회자(§ 520)

12 최대 6개월까지 자발적 휴직 중인 목회자(§ 518.2)

13 안식년 휴직 중인 목회자(§ 518.3)

14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중인 목회자(§ 518.6)

15 행정 또는 사법적 고소를 받아 그 고소가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절차로 이첩된 목회자는 양호한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며
16 대표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사법 관행 및 절차 2.2.6)

17 비활성 목회자는 양호한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18 평신도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의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목회자
19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단순 과반수 투표로 선출하며, 목회자는 목회자 대의원에게, 평신도는 평신도 대의원에게
20 투표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연회 총회 대표단 정의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장정에는 현재 "연회 대표단"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회 대표단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본문단에서 그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정 ¶ 711에는 교단 연대 협의회가 델리게이트 배분 공식을 승인하는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고, 총회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변경사항을 본문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9.6을 수정합니다

- 1 6. 총회에서 결정한 공식에 따라 총회에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한다. 총교회 연대 협의회가 승인한 공식에 따라
- 2 총회에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선출 전 최소 2년
- 3 이상 봉사하고, 품행이 단정한 상태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 521.2a의 규정에 따라, 장로 목사또는 집사 목사 안수를
- 4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정회원이 되며, 글로벌 감리 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선출되기 전 최소 2년 이상
- 5 봉사한 정회원 자격을 갖춘 경우 목회자 대의원이 될 수 있다. 평신도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의 고백
- 6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단순 과반수 투표로 선출하며,
- 7 목회자 대의원은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의원은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된 모든 목회자/사역자/성직자 및 평신도
- 8 델리게이트는 총회를 위한 연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델리게이트는 연회 대표단에 대체 및 예비 델리게이트가 봉사하는
- 9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신설 교회에서 온 델리게이트에 대한 용돈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제안된 개정안은 새로 조직된 교회의 평신도 회원이 연회의 목소리로서 총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연회가 그 관할 아래 모든 교회로부터 누가 델리게이트가 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09.6을 수정합니다

- 1 총회에서 결정한 공식에 따라 총회에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 2 교회에서 선출 전 최소 2년 이상 봉사하고, 품행이 단정한 상태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의 조항에 따라 ¶ 521.2a의
- 3 조항에 따라, 장로목사 또는 집사목사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정회원이 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 4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에서 선출 전 최소 2년 이상 사역한 경우 목회자 델리게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
- 5 델리게이트는 선출 전 최소 2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합니다. 단, 평신도
- 6 델리게이트가 신설 교회의 회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목회자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단순 과반수 투표로
- 7 선출하며, 목회자 대의원은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의원은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연회가 소속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청원자: Siloam Springs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US: Trinity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이는 본 단락을 교리와 장정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시키며, 특히 목회 협력위원회를 통해 지역 교회의 사역과 관련하여 연회가 그 소속 목회자의 복지를 돌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직:

미국: 트리니티

본문:

¶ 709. 권한과 의무.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지역 전체에서 공동의 사역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연회는 서로를 세우고 교제하며 영감을 나누기 위해 모일 뿐 아니라, 다음의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 1 9. 필요한 경우 목회자들의 전반적 복지(건강·생명보험, 연금 사택 및 기타 사역 주거(¶ ¶ 443.4e, 445.8m)를 보장하기
- 2 위한 최소 기준을 필요 시 설정합니다.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청원자: Laura Ballinger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로렌스버그 디어본 힐스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개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자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뻐하시며, 이는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에 따라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힘 있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연회들과 개체교회들로 이루어진 기도와 중보의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연회 기도 네트워크는 또한 GM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틈에 서서' 중보할 기도 지도자들을 더욱 세워 가고자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710.6을 추가하여 ¶ 710을 수정합니다

- 1 710.6.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각 연회 또는 신설 지역은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연회 또는 해당 지역
- 2 내에서의 기도 활성화를 촉진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 3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4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기타 지도 기구는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연회 또는 지역을 위한 한 명 이상의 지역 기도
- 5 코디네이터를 식별하여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조정과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 6 위원회와 연계하여야 한다. 해당 조정자는 연회 또는 지역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의 사역을 이끌어야 합니다. 코디네이터는
- 7 연대 협의회 또는 다른 지도 기관의 당연직 회원으로서, 연대 협의회와 중요한 심의와 방향에 대해 최적의 기도 지원이
- 8 이루어지도록 봉사할 수 있습니다.
- 9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각 개체 교회가 그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기도와 중보기도를 조직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기도
- 10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도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저희는 모든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집이 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뜻과 비전으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글로벌 감리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우리 모두의 큰 유익을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한 비전 아래,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기도하는 연회와 개체 교회들의 기도와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와 세상에 충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회 기도 네트워크는 또한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기도 지도자들을 더욱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710.6을 추가하고 이후 모든 하위 항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 710.6.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각 연회 또는 신생 지역은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연회 또는 그
- 2 지역 내에서의 기도 활성화를 증진하여 글로벌 감리교회 및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 3 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4 연회 연대 협의회 또는 기타 지도부는 자체 규칙에 따라 연회 또는 지역을 위한 한 명 이상의 지역 기도 담당자(들)를
- 5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조정과 지원을 위해 글로벌의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 6 담당자는 연회 또는 지역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의 사역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해당 담당자는 연회 연대 협의회 또는 기타
- 7 지도부의 당연직 회원으로서, 연대 협의회와 중요 심의와 방향에 대하여 최적의 기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 8 있습니다.
- 9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각 개체교회가 그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기도와 중보기도를 조직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기도
- 10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도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멘토로서 지원합니다.

연회에서 평신도 위원회, 협의회의 설립

조직: AF: 그레인 코스트(라이베리아)

입법 위원회: 연회

제출자 유형: 연회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의 평신도 회원들은 교회의 비전, 사명, 사역, 예배, 봉사 및 증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회, 순회, 지구/지방의 90% 이상을 구성합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회의 수적 성장과 영적 깊이를 향상시킵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하위 항 ¶ 710.9를 추가하여 ¶ 710을 수정합니다

- 1 710에 추가하여 710에서 새 단락을 만드십시오.
- 2 연회 차원의 평신도 위원회, 협의회가 있으며, 평신도 지도자가 의장을 맡습니다. 기타 모든 회원은 연회의 공천
- 3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연회에서 선출합니다. 연회에서 확인한 청소년, 젊은 성인, 남성, 여성, 장애인 및 소수 민족과 부족
- 4 등 모든 연령대의 평신도 대표를 포함하는 평신도 위원회, 협의회의 인원 수는 연회의 연례 회의에서 연회가 결정합니다.

연회 위원회 멤버십

청원자: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올네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동수의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 대표를 두고자 하는 것은 고귀한 목표이지만, 이는 때로 해당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이들이 평신도 혹은 목회자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평신도와 목회자가 각각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자들이 이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0.1.a를 수정합니다

1.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 - 연대 협의회는 연회 이사회와 위원회 간의 의사소통과 사역 조정을 목적으로 연
2. 회 이상 대면 회의(전자 또는 다른 형태의 회의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를 한다.
3. a. 연대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4. 연회의 상임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회에서 선출된 동수의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 회원;
5. 연회가 연회의 현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출한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 회원의 동수 구성을 지향하되,
6.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가 각각 3분의 1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7. 감독 또는 총감리사;
8. 지방감리사 1명이 감리사회를 대표한다;
9. 연회 총무;
10. 연회 평신도 대표, 있는 경우;
11. 연회에서 선출한 기타 연회 임원들;
12.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다양성 증진 또는 특정 은사,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3. 당연직 회원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한다;
14. 총리사가 결정한 적절한 연회 직원은 협의회 위원으로서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

연회의 협의회, 위원회 및 위원회를 개별 단락으로 분리하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이 섹션은 각 협의회, 위원회 및 위원회를 각각 별도의 단락에 두는 지역 교회 섹션과 같이 구성될 경우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론 단락을 새로 만들고자 하며, ¶ 710을 서론으로 변경하고, 이 단락에서 위원회, 협의회, 협의회를 기술한 하위 항목 1-7을 각각 별도의 단락으로 번호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하위단락 8은 몇 가지 수정 사항과 함께 서론의 일부로 남아 있지만, 2번으로 재번호화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현행 ¶ 710 전체를 다음 내용으로 대체을 삭제합니다

- 1 1. 연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2 a. 연대 협의회
- 3 b. 사역 위원회
- 4 c. 감리직 위원회
- 5 d. 재무 및 행정 위원회
- 6 e. 조사 위원회
- 7 f. 행정 심사 위원회
- 8 2. 연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위원회, 협의회, 태스크 포스 및 기타 단체를 구성할 수
- 9 있습니다.

연회 연대 협의회의 회의 및 멤버십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명확성과 유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을 권고합니다: (1) 연대 협의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2) 누가 반드시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3) 감독은 연대 협의회 회원이 아니어야 하며, 총리사는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4) 회의는 감리사회 소속 누구든지 연대 협의회에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5) 회의 비서는 ¶ 708.9에서 "임원"으로 상장되어 있으므로, 모든 임원을 다루는 .a.6에 상장되어야 합니다. (6) 평신도 지도자가 복수인 회의의 경우, 모두 연대 협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일반 회원은 기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8) 누가 연대 협의회 의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출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0.1을 수정합니다

1.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 - 연대 협의회는 연회 아사화와 위원회 간의 의사소통과 사역 조정을 목적으로 연
- 2 회 이상 대면 회의(전자 또는 다른 형태의 회의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를 한다. a. 연대 협의회 멤버십은
- 3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1) 연회의 현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회가 선출한 동수의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
- 4 회원; 2) 감독 또는 총리사; 3) 감리사회를 대표하는 장로목사 1인; 4) 연회 비서; 5) 연회 평신도 지도자(있는 경우); 6)
- 5 연회에서 선출한 기타 임원; 7)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연회가 다양성 증진이나 특정 은사, 기술, 전문성
- 6 확보를 위하여 선출한 일반 회원(있는 경우); 8) 총리사가 회원으로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적당한 연회
- 7 직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직원.
- 8 1.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 연대 협의회는 최소한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매년 최소 한 번은 대면
- 9 회의를 갖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연대 협의회 목적은 연회의 각 위원회, 협의회 간의 사역을 소통하고 조정하는
- 10 것입니다.
- 11 a. 연대 협의회 멤버십은 연회가 연회의 현재 규칙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선출한 동수의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
- 12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 13 회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4 총리사;
- 15 감리사회를 대표하는 대표;
- 16 연회 평신도 지도자(있는 경우);
- 17 회의에서 선출한 모든 임원, 회의 비서를 포함하여;
- 18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가 지명하고 연회가 선출하는, 다양성 증진 또는 특정 은사, 기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명된 일반
- 19 평신도와 목회자/사역자/성직자. 일반 회원의 기간은 최대 6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 20 회원에는 총리사가 결정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회의 직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1 연대 협의회 의 의장 및 기타 임원은 위에 상장된 회원 중에서, 연회의 현재 규칙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연회의 재정 감사

청원자: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 및 행정 위원단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재정적 투명성은 개체교회가 연회에 부여하는 신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례 감사는 회의의 기금이 정책과 법률에 따라 수령, 관리, 분배되고 있음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여, 교회와 사역 파트너들이 연대적 헌금이 신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감사는 오류, 잘못된 관리 및 부정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전 세계로 성장함에 따라, 명확하고 일관된 재정적 책임은 신뢰를 유지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교회 각 계층에서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이라는 우리 공동의 소명을 존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0.4를 수정합니다

- 1 연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 2 4. 재무 및 행정 위원회. 재무 및 행정위원회는 연회의 재정 및 행정 정책, 예산, 절차, 그리고 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 3 조정된 계획으로 개발·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회의 모든 기금, 기관, 계정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해
- 4 연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완전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된 재무제표는 공개 플랫폼에 게시되며
- 5 연회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감사란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팀이 재무 보고서, 기록, 그리고 내부 통제를
- 6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재정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자산이
- 7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관련 법률 및 연회의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연회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의 선출 과정과 운영 지침

청원자: Daniel Fuller

조직: Binghamton Hawleyton (미국: 북동부)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가 리더십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회의 모든 지역과 구성원이 충분히 대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정치 체계는 이 점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회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 회원이 현재 총리사에 의해 임명되고 있어, 상명하달형 리더십 모델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는 연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원들을 풀뿌리 수준에서 선출하는 것은 위원회가 자신들이 대표하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0을 수정하여 ¶ 710.5.a 및 ¶ 710.5.b를 대체하고 ¶ 710.5.c-f 및 ¶ 710.5.h를 추가하며 ¶ 710.5.c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1 단락 710.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2 ¶ 710.5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는 연회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봉사할 목회자와 평신도를 공천할
3 책임이 있습니다.

4 a. 위원은 총감리사가 추천하고 연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에서
5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한다. 회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회에서 선출된 목회자와 평신도 외에도, 총리사와
6 감리사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고 위원회에 함께 봉사합니다.

7 b.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총감리사는 마사용 임가의 남은 기간을 수행할 임시 위원을
8 임명한다. 연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9 a. 위원회는 연회의 각 지방에서 선출된 대표 1명으로 구성됩니다. 20개가 넘는 지방을 둔 연회는 대표 선출 목적을 위해
10 인접한 지방을 지역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최소 10명의 대표가 선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710.5에서
11 지방에 관한 언급은 이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감리사들이 함께 선거를 진행합니다.) 총리사와 최대 다섯 명의 당연직
12 위원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원이 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13 각 지방의 절반(플러스 마이너스 1)은 해당 지방의 목회자들이 선출한 목회자(감리사 포함)가 대표하게 됩니다.

14 지방의 절반(또는 하나 더 많거나 적은 수)은 해당 지방 교회의 고백교인 평신도 회원들이 선출한 평신도 회원이 대표로
15 참여합니다.

16 다양성을 증진하거나 특정한 은사,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리사는 최대 다섯명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공천할
17 수 있습니다. 감리사가 한명도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당연직 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감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18 당연직은 평신도와 목회자 간에 분배되며, 위원회 전체 직책 수(총리사를 포함)도 각 선거 주기마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19 동수로 배분됩니다. 총리사가 지명한 당연직 위원은 연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회의에서 교체될 수 있다.

20 b. 각 지방별로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선거는 대면 또는 온라인 지방회에서 실시될 수 있으며,

- 21 방식은 감리사가 정합니다. 선거일 최소 30일 전에 해당 지역 감리사는 자원봉사자/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22 후보자는 자신이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300단어 이내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들은 선거 최소
 23 15일 전까지 해당 지방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대면 회의에서는 비밀 투표로, 온라인 회의에서도 기술적 여건이 허락하는
 24 경우 비밀 투표로 실시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지방의 대표가 됩니다.
- 25 c. 각 지방의 대표는 임기 만료 시 평신도와 목회자 간에 교대로 선출합니다. 위원회는 두 그룹으로 나뉘며, 최초 임기의
 26 기간을 3년 간격으로 차등 적용하여 일정한 순환을 이룹니다. 최초 순환 이후 모든 기간은 6년으로 합니다. 선출직 및
 27 임명직 의원은 연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의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 28 d. 각 지방의 초기 대표 유형(평신도 또는 목회자)과 초기 임기 구분은 기존 지명 및 리더십위원회가 제안하여 2027년
 29 연회에서 승인받도록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각 지방 대표의 초기 선출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30 하며, 선출된 이들은 일반 대표들과 함께 2028년 연회가 종료된 직후 즉시 임기를 시작하여 기존 위원회를 대체합니다.
- 31 e. 지방 수가 변경될 경우,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는 기간 만료 시 연회에 평신도/목회자 비율 및 등급 균형 유지를 위한
 32 순환 조정을 권고해야 한다.
- 33 f. 지방 대표에 결원이 임기 중 어떠한 사유로든 발생한 경우, 동일 유형(평신도/목회자)의 대표를 잔여 임기 동안
 34 봉사하도록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다음 지방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
 35 총리사는 남은 미사용 기간 동안 봉사할 임시 회원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연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 36 e.g. 총리사가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 간사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37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연회의에서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38 h. 운영 지침 - 연례 공천 과정 중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는 감리사, 연회 위원회 의장, 평신도 지도자의 의견을 구하고, 연회
 39 전체 연락처 목록을 통해 후보자 및 자원자 대상으로 연례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격려됩니다. 위원회는 후보자를
 40 추천할 때 다양성, 특정 재능, 기술 또는 전문성을 장려하는 데 유의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연회 이사회 및 위원회 ¶ 710:5c

청원자: Danjuma Juji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총리사는 동일한 위원회의 의장과 그 위원들을 모두 지명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후에는 위원회의 의장이 아니라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10.5.c를 수정합니다

- 1 총리사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합니다.
- 2 총리사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합니다.

조사 위원회에 관한 용어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 710의 서문은 연회에 조사 위원회를 두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 710.6.f는 회의가 위원회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를 파송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필수 위원회이며, 그 선거를 안내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CS에게 이를 파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0.6 삭제하여 ¶ 710.6.f를 수정합니다

- 1 f. 연회가 아직 조사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총감리사 또는 임시 감독회장이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 2 임명한다.

행정 심사 위원회에 관한 용어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 710의 서문은 연회가 반드시 행정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710.7.f는 회의가 위원회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를 파송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필수 위원회이며, 그 선거를 안내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CS에게 이를 파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0.f를 삭제합니다

- 1 f. 연회가 아직 행정심사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총감리사는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PETITION 1055

¶ 710.9 (신설)

¶ 710 연회 임원회 및 위원회 수정에 대한 청원

청원자: Conferences Commission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Global Methodist Church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일부 연회는 행정 및 위원회 구조보다 사역과 선교에서 더 먼저 성장을 경험합니다. 연회 조직에 대한 현재의 기대는 타당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모든 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수 없어서 이미 활발하게 결실을 맺고 있는 사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회위원회가 대안적인 조직 구조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승인하도록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회가 확실한 핵심 기능과 책임감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정의 현행 문구는 연대협회의 검토와 총회의 감독권한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직: 연회위원단

본문:

신설 ¶ 710.9 추가

9.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 거리, 기술 부족 등으로 위에 언급된 연회위원단의 정기적인 행정이 어려운 연회에서는, 감독의
- 승인을 받아 대체 연회 구조 승인을 위한 계획을 연회위원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대 기금과 델리게이트 산정 공식의 분리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연대 기금과 델리게이트 배당 공식은 한 단락으로 통합해서는 안 되며, 각각 두 개의 상이한 단락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본 단락들의 문구에 대해 몇 가지 수정을 제안합니다: 1. .1은 현재 연대 기금이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회가 수행하는 모든 일은 곧 사역이므로, 이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회가 해당 단락 및 장정에 명시된 요건 내에서 모든 것을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문장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2. 우리는 총회에서 델리게이트 배분을 위한 공식이 현재의 정규직과 교회 수를 사용하는 방식 대신 예배 출석 인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1 및 다음으로 대체 새 ¶ 711 및 ¶ 712를 삭제합니다

1. 연회는 연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 교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에 최대한의 자원이
남을 수 있도록 연회 자금 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회 내외부의 사역에 대한 자원은 이러한 자금
조달 비율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과 개체 교회의 선교 현금으로 모금되어야 합니다. 연회는 그 기금 비율을 정할 때
글로벌감리교회가 제시하는 지침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회 교회 기금비율은 연회의 조정 없이 총회에서
정합니다.

2. 총회에 대의원을 배정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는 연회가 연회 내 교회 명단과 연회 내 전임에 준하는
목회자 파송 및 배정 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거한을 정한다. 총회 대의원 배정은 마감일 기준, 글로벌감리교회 전체의 총
교회 수와 정회원에 준하는 파송 및 임명된 목회자 수를 기준으로, 각 연회가 보유한 교회 수와 정회원에 준하는 파송 및
임명된 목회자 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711. 연회 연대 기금.

연회는 연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 교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에 최대한의 자원이
남을 수 있도록 연회 자금 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회는 그 기금 비율을 정할 때
글로벌감리교회가 제시하는 지침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회 교회 기금비율은 연회의 조정 없이 총회에서
정합니다.

¶ 712. 총회 델리게이트 배분.

총회 델리게이트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대 협의회에서 승인한 공식을 따라, 정기 총회 개최 최소 180일 전에 연회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해당 공식은 정기 총회 개최 직전 연도의 2년 동안 각 연회 내 모든 교회의 평균 대면 예배 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연대 협의회 또는 그 지정인은 지역 교회 예배 출석 인원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각 연회가 총회의 총무에게 예배
출석 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정합니다. 연평균 예배 출석 인원을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거나, 직전 총회 마지막
날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소집되었거나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한 연회는 델리게이트 2인이 배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연회 연대 기금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총회 대의원단 (미국: 노스조지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우리 운동은 사역의 유연성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길을 열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연회들이 연회 예산 안에서 선교적 협력 사역이나 재해 구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투자하기를 원하며, 실제로 많은 연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일부 연회들은 별도의 501(c)(3)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절차와 구조가 한층 더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구를 삭제하면, 각 연회가 자기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와 사역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1.1을 수정합니다

1. 연회는 연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 교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에 최대한의 자원이
- 2 남을 수 있도록 연회 자금 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회내외부의 사역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자금
- 3 조달 비율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과 개체 교회의 선교 현금으로 모금되어야 합니다. 연회는 그 기금 비율을 정할 때
- 4 글로벌감리교회가 제시하는 지침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회 교회에 대한 기금 비율은 총회가 정하며, 연회는
- 5 이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연회의 활동과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연회의 역량 강화

청원자: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 및 행정 위원단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연회는 개체 교회들의 사역적 필요와 재정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연회의 연대기금의 배분 방식을 연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적 책임감을 유지하면서 웨슬리안 연대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연회가 가장 크고 전략적인 영향이 있다고 믿는 곳에 자유롭게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연대기금을 사용하거나 개인 및 개체 교회로부터 추가적인 선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711을 수정합니다

1. 연회는 연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 교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에 최대한의 자원이
- 2 남을 수 있도록 연회 자금 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회 내외부의 사역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자금
- 3 조달 비율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과 개체 교회의 선교 현금으로 모금되어야 합니다. 연회는 그 자금 비율을 정할 때
- 4 글로벌감리교회가 제시하는 지침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회 교회 기금비율은 연회의 조정 없이 총회에서
- 5 정합니다. 연대기금 액수는 ¶ 449에 따라 정해집니다.

총회에서의 공정하고 평등한 대의원 대표권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중남부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동등한 대의원 배당은 모든 연회가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 공동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대적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세계적인 교단으로서,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배경을 존중하며, 신규 혹은 소규모 연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대규모 조직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구성원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방식은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중시하고 책임을 나누는 현재의 운영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이끄는 것은 수적 규모가 아니라 신실함, 사명감, 그리고 세계적인 비전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11.2 전체를 대체합니다

- 1 ¶ 711.2.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는 총회 대의원 배정을 위해 기한을 정해야 하며, 각 연회는 해당 기한까지 소속 교회
- 2 명단과 정회원 목회자 파송 및 임명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회 대의원 배정은 마감일 기준, 글로벌감리교회 전체의 총
- 3 교회 수와 정 회원에 준하는 파송 및 임명된 목회자 수를 기준으로, 각 연회가 보유한 교회 수와 정 회원에 준하는 파송 및
- 4 임명된 목회자 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5 공정하고 포괄적인 전 세계적 연대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 대의원은 각 연회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연회에 동일한
- 6 인원수를 배정합니다. 연회당 배정 가능한 대의원 최대 정원은 총회위원단에서 제안하고 연대협의회에서 확정합니다.
- 7 이때 관련 규정(¶ 208, Article VII)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8 **편집자 주:** 본 청원은 각 연회에 동일한 수의 델리게이트를 배분할 것입니다. 헌법 ¶ 208(제7조, 총회)은 총회
- 9 델리게이트가 “비례 배분 원칙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된다”고 규정합니다. 균등 배분은 ¶ 208의 “비례”라는 단어와
- 10 상충됩니다. 이 청원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법 위원회에서 비례 배분 원칙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 208 관련
- 11 개정안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청소년 구조의 보호

청원자: Frank Weber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입법 위원회: 연회

근거:

선행 화폐 단위들은 파송된 지도자에만 의존하는 청소년 사역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해체될 위험에 직면함을 보여줍니다. 본 청원은 해당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연대 청소년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그 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결의 사항을 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구조를 보호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장악이나 자금 중단을 방지하는 책임감을 설정함으로써,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본다”(¶ 103)는 소명을 구현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글로벌 감리교회 아프리카 청년 네트워크와 같은 효과적인 사역을 조직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이들의 사역이 임원 개개인의 재량권에 좌우되지 않고 존중되고 지속되도록 보장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7XX을 추가합니다

- 어떠한 회의 총리사, 감독 또는 연대 임원도 해당 청소년 지도자의 서면 동의 및 연대 청소년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그
-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청소년 사역 구조를 설립, 해산, 통제, 또는 자금 조달 방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헌법, 연대 조직, 재정

¶ 449 · all ¶ 200s, ¶ 800s, and ¶ 1000s

번호	¶	제목	페이지
1313	¶ 201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1 제거	419
1086	¶ 204	문법 수정	420
1239	¶ 204	모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 헌법 가치로 삼기	421
1087	¶ 206	개체 교회의 정의	422
1310	¶ 206	구역회에 대한 서두 성명서의 명확화	423
1316	¶ 206.1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6.1의 언어 제거	424
1088	¶ 207	연회의 업무와 목적 명확화	425
1317	¶ 207.1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207.1 제거	427
1318	¶ 207.2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207.2의 문장 일부 제거	428
1245	¶ 207.4	델리게이트 총회 선출 절차	429
1319	¶ 207.8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융통성: ¶ 207.8 제거	430
1048	¶ 208	교리와 장정 207과 208 단락을 수정하는 청원.	431
1089	¶ 208	총회 회의 명확화	432
1241	¶ 208	총회에서 이해 상충을 피하기	433
1320	¶ 208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에서 문장의 일부 제거	434
1090	¶ 208.1	교회 내 평신도 지도력 명확화	435
1262	¶ 208.1	총회 연도와 감독의 임기 단축을 위해 ¶ 208 제VII조 및 ¶ 604:8	436
1091	¶ 208.5	연대 협의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437
1281	¶ 208.9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9의 추가	438
1280	¶ 208.10	글로벌 일치와 지역적 유연성: ¶ 208.10의 문장 정비	439
1279	¶ 208.13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13의 언어 정비	440
1092	¶ 209	감독회 정의	441
1093	¶ 210.1	연대상소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442
1049	¶ 210.3	교리와. 장정 210 단락을 수정하는 청원.	443
1094	¶ 211	항소권을 제한 규칙의 언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규칙을 삭제하다.	444
1095	¶ 212.1	2026년 총회에서 제안되는 교리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칙을 수정합니다.	445
1444	¶ 212.1	총회가 웨슬리의 설교 및 노트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도록 허용	446
1447	¶ 212.1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허용	447

번호	¶	제목	페이지
1097	¶ 213	개정 과정 명확화 및 구식 표현 삭제	448
1004	¶ 449	개체 교회 연대 기금 및 혜택	449
1215	¶ 449.1	연대 기금의 웨슬리안 가치 명확화	450
1278	¶ 449.1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1 조항 삭제	451
1216	¶ 449.2	연대 기금 산정 명확화	452
1277	¶ 449.3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3 삭제	454
1217	¶ 449.6	연대 기금의 설정, 이체 및 설명 절차 명확화	455
1276	¶ 449.6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6에 형용사 추가	456
1065	¶ 449.7	개체 교회 연대기금 송금 방법 선택지	457
1218	¶ 449.8	선교 교회 지정 절차 명확화	458
1275	¶ 449.9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9 삭제	459
1465	¶ 708	연회 설립 근거 제한 사항	460
1026	¶ 8XX	글로벌 연합 위원단	461
1068	¶ 8XX (신설)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463
1115	¶ 8XX (신설)	양호한 신분상태에 관한 청원	464
1133	¶ 8XX (신설)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466
1177	¶ 8XX (신설)	연회 평신도 지도자 위원회 설립	467
1283	¶ 8XX (신설)	연대 위원회들의 이해 상충	468
1333	¶ 8XX (신설)	청소년 위원회 설립	470
1274	¶ 801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융통성: ¶ 801 개정안	471
1038	¶ 801.2 (신설)	연대 위원단 공개 회의	472
1273	¶ 802	글로벌의 일치, 지방의 유연성: ¶ 802 개정	473
1101	¶ 802.3	신규 - 연대 위원단들의 명칭을 명확히 함	474
1272	¶ 802.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02.3의 개정안	475
1452	¶ 802.3	위원회 명칭 변경: 왕국 발전 위원회	476
1102	¶ 802.7	중복된 문구 삭제	477
1194	¶ 803	모든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를 위한 공천 및 선거 과정 단순화	478
1072	¶ 803.1	청원 - 800년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481
1152	¶ 803.2	신규 - 연대 위원회들 및 연대 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1 / 3)	482
1153	¶ 803.2	행정 공천 위원회 제한	484
1143	¶ 803.3	총회 위원회 멤버십	485
1073	¶ 804.1	청원 - 800년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486
1103	¶ 804.1	위원단 의장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487
1134	¶ 804.1	위원단 임원 선거	488
1157	¶ 804.1	신규 - 연대 위원회들의 리더십	489
1123	¶ 804.2	위원단 임원 선거	491

번호	¶	제목	페이지
1282	¶ 804.4	총리사를 신규 - 연대 위원회들에 추가	492
1458	¶ 805.1	운영의 탁월성: 위원회에 직접적인 인사 책임과 권한 부여	493
1286	¶ 805.2	규칙에 대한 항소의 필요성	494
1470	¶ 805.5	거룩한 결혼 축하	495
1039	¶ 807.1	연대 협의회 공개 회의	496
1050	¶ 807.2	연대 협의회에 대표되어 있는 신규 - 연대 위원단들	497
1074	¶ 807.2	청원 - 800년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498
1053	¶ 807.4	연대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공석 총원	499
1066	¶ 807.4	교회 전체 예산의 90퍼센트 한도 제거	501
1075	¶ 807.4	청원 - 800년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502
1121	¶ 807.4	연대 협의회 교단 복지제도 역할 삭제	503
1122	¶ 807.4	교단 복지제도에서 "연금"을 삭제	504
1270	¶ 807.4	글로벌의 일치, 지역의 융통성: ¶ 807.4.i 삭제	505
1271	¶ 807.4	글로벌 연합, 지역의 유연성: ¶ 807.4.d.4-5의 삭제	506
1104	¶ 808	왕국 확장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507
1242	¶ 808.2	도달하지 못한 종족 집단에 대한 지속적 헌신	510
1268	¶ 808.2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08c의 일부와 ¶ 808d 전체 삭제	511
1269	¶ 808.2	글로벌의 통합, 지역의 유연성: ¶ 808.2.A.1-5 및 ¶ 808.2.b 삭제	512
1422	¶ 808.2	신설 위원회: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역 위원회	513
1267	¶ 809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09 삭제	515
1437	¶ 809	제자도, 교리 및 윤리 위원회로 명칭 변경	516
1105	¶ 810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518
1129	¶ 810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	519
1106	¶ 810.2	사역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목회와 고등교육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522
1266	¶ 810.2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10.2a 삭제	523
1107	¶ 810.3	승인 절차에서 목회와 고등교육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524
1264	¶ 810.3	글로벌 일치와 지역적 유연성: ¶ 810.3 – 승인 위원회 삭제	525
1108	¶ 811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 역할 명확화	526
1329	¶ 811.2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을 위한 연금과 복지제도	528
1029	¶ 812.2	총회 행정 위원회 추천자 제한 해제 청원	529
1109	¶ 812.2	총회 위원단 역할 명확화	530
1016	¶ 813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531
1257	¶ 813.1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13.1 삭제	534
1110	¶ 813.2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에서 불필요한 표현 삭제	535
1256	¶ 813.3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3.3 삭제	536
1116	¶ 813.5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537

번호	¶	제목	페이지
1255	¶ 813.5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3.5의 축소	538
1254	¶ 813.6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3.6에서 한 문장 삭제	539
1117	¶ 813.7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에서 연합 계획 과정 명확화	540
1118	¶ 814.3	연회 위원단 역할의 명확화	541
1119	¶ 814.6	연회위원단 역할에서 불필요한 언어 삭제	542
1253	¶ 814.6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814.6의 삭제	543
1054	¶ 815	연대운영책임자	544
1120	¶ 815	연대 운영 책임자의 역할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548
1252	¶ 815.1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15.1c 삭제	549
1040	¶ 815.4	투표 비율 간소화	550
1251	¶ 815.6	글로벌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5.6m 축소	551
1332	¶ 1002	연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탁 조항' 사용권 요청	552
1195	¶ 1005.1	현지 법률 준수 명확화	553
1196	¶ 1006	임원회 관련 단락 번호 재지정	554
1249	¶ 1010	글로벌의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1010의 축소	555
1208	¶ 1012	구역회가 임원회의 요청을 인준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십시오.	556
1197	¶ 1012.9	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557
1248	¶ 1012.9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1012.9d 제거	559
1417	¶ 1012.9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560
1250	신설 ¶ 10XX	글로벌 통일성, 지역 유연성: 새로운 ¶ 1014에 대한 제안서	561
1243	신설 ¶ 8XX	연대 청년 사역부의 설립	562
1067	Resolution	교리와 장정의 글로벌의 상황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	564
1330	Resolution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을 위한 연금 혜택 설립	566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1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201항은 정보 제공용일 뿐 지시적이지 않으며, 다른 부분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1을 삭제합니다

- 1 초기부터 기독교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안 교회로 특징 지어져 왔다. 아 네 가자 특성은 서로
- 2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기원, 본질, 사명을
- 3 증거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반영하고,
- 4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믿는 모든 사람을 교화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감리교
- 5 전통에 따라 공동 규율 아래 함께 조직하는 글로벌 감리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
- 6 같이 헌법을 채택했다.

문법 수정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professing"(고백), "being"(되는 것), "demonstrating"(보이는 것)이 현재분사이므로, "repentance"(회개)는 다른 단어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repenting"(회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4를 수정합니다

- 1 ¶ 204. 제3조. 모두를 위한 교회—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 2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에 참여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 3 믿음을 고백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거룩한 삶을 살코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보이는 것을
- 4 통해, 연대 내의 모든 개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 5 예배하고, 사역에 참여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6 세례를 받는 것, 거룩한 삶을 살코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보이는 것을 통해, 연대 내의 모든 개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 7 있습니다.

모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 헌법 가치로 삼기

청원자: John Lomperis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우리의 사회적 증언은 이러한 기본 원칙들과 광범위한 범주들의 의미와 세부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중하게 다듬어진 표현을 우리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을 글로벌 감리교회의 토대로 삼으며, 이는 훗날 누구라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인정함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 헌법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을 이와 같이 단언하고, 또한 인종 차별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명확히 언급하는 데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4를 수정합니다

- 1 ¶ 204. 제3조. 만인을 위한 교회 — 모든 사람은, 잉태의 순간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 2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에 참여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 3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 4 보여줌으로써 연결된 모든 개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어떤 인류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거나
- 5 존중하지 않는 모든 죄된 관행, 즉 착취, 학대, 괴롭힘, 인종 차별 등에 어디서나 단호히 반대합니다.

개체 교회의 정의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헌법에는 현재 개체 교회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개체 교회와 제자 삼기의 역할의 우선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가 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6.1을 수정합니다

1.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역은 주로 개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지되, 구역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2. 사역은 주로 개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개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들을 "교리와 장정"에 따라
3. 조직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을
4.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체 교회들은
5. 구역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습니다. 모든 글로벌 감리 교회 조직의 목적은 개체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구역회에 대한 서두 성명서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헌법 섹션에는 구역회의 업무, 정족수, 그리고 연례 구역회 외에 필요시 추가 구역회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더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헌법의 연회 섹션의 범위와 세부사항에 더 부합하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6을 수정합니다

- 1 206. 제5조. 구역회— 구역회는 지역 교회, 연회, 그리고 총회 사이를 잇는 연결 끈이 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조직의 모든
- 2 목적은 지역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역회는 지역 교회, 연회, 그리고 총회 사이를 잇는 연결 끈이
- 3 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역은 주로 개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지되, 구역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6.1의 언어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206.1의 불필요한 단어인 “overseen and”는 불명확하며, 삭제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6.1을 수정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역은 주로 개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지되, 구역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 2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역은 주로 지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역회의 관리를 받습니다.

연회의 업무와 목적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단락에는 명확하게 정리되고, 간소화되며, 교리와 장정의 다른 부분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회 회원 자격에서 “시니어”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의 정의, 그리고 연회가 모든 교회와 연회 내 각 그룹이 대표될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평신도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등이 있습니다. 또한 .1과 .2에 일관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3은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4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6은 목회자/사역자/성직자 세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삭제하며, .8은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보험 및 복지제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회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10은 구역회 신고를 명확히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207을 수정합니다

- 1 제6조. 연회—연회는 공동 사역과 책임감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연회는 목회자와
- 2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교리와 장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목회자는 회원이 됩니다 각 구역은 최소한 동수의 평신도
- 3 회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연회는 지방 또는 연회를 통해 추가 평신도 회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에는 파송된
- 4 목회자 숫자 만큼 평신도 회원을 둘 수 있다.
- 5 연회는 교화, 교제, 영감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6 1.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 증언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역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 7 위원회나 기관을 구성하고, 각 기구의 구성을 규정하며, 그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8 2.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성하고 배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 9 관리할 수 있습니다.
- 10 3. 연회 내에 둘 수 있는 지방 또는 이와 유사한 하위 단위의 수를 정합니다.
- 11 4. 총회에 목회자와 평신도 대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목회자 대의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신분이 양호해야 한다. 평신도
- 12 대표는 글로벌 감리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모두 단순 다수결로 선출하며, 목회자
- 13 대표는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표는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 14 5. 총회가 승인하고 비준을 위해 연회에 배포한 모든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한다.
- 15 6. 연회 사역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안수를 승인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목회자 신분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
- 16 목회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 17 7. 기존 교회의 후원을 승인하는 등 새로운 교회 개척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새로운 교회 설립을 허가합니다.
- 18 8. 목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최저 사례, 목사관 및 주택 기준, 건강 보험, 필요할 경우
- 19 기타 복지제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0 9. 한 연회에서 다른 연회로, 또는 다른 연회로부터의 교회 이전을 단순 다수결로 승인한다.
- 21 10. 폐쇄된 교회의 기록과 모든 구역회의 연례 보고서를 포함하여 연회 기록을 유지합니다.
- 22 11. 교리와 장정의 요구 사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자체 운영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207.1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207.1은 모호하며 불필요합니다. 해당 조항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7.1을 삭제합니다

- 1 필요한 위원단 또는 기관을 구성하고 각 기구의 구성을 명시하고 그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의 사명을
- 2 완수하고 교회의 증거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역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 내에서 마련한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207.2의 문장 일부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207.2의 추가 문구는 모호하며 불필요합니다. 새로운 문장은 더 명확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7.2를 수정합니다

- 1 연회의 관할 지역 내에서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배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 2 관리한다.
- 3 연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배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관리한다.

델리게이트 총회 선출 절차

청원자: Simon Mafunda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Genesis (AF: Zimbabwe)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청원은 모든 투표 회원이 후보자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델리게이트 선거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략한 약력과 사진의 제출 요건은 투표자들이 후보자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며, 개인적 친분보다 자격(장점)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델리게이트 총회 선거가 영적 규율이자 엄숙한 책임임을 고려할 때, 이 절차는 연회가 교단의 정책 결정 기구에 신실하게 가치를 더할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 207.4를 수정합니다

- 207.4에 추가하여 수정하다
- 총회 델리게이트를 선출하는 연회의 각 회기 중, 자격이 있고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목회자 및
- 평신도 회원은 사전에 간략한 약력과 최근 여권용 사진을 회의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성명서에는 해당 회원이
- 연회를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는 위와 같은 약력과 사진을 수합하여 연회
- 투표 회원에게 연회 매일 소식지 혹은 동등한 공식 문서로 배포될 수 있도록 편집, 출판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연회 회기
- 개회일로부터 최소 21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융통성: ¶ 207.8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207.8은 불필요합니다. 연회는 원한다면 이 일을 스스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장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7.8을 삭제합니다

- 1 원하는 경우, 목사관 및 기타 사역자 주택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교리와 장정 207과 208 단락을 수정하는 청원.

청원자: Shreve Community

조직: US: Allegheny West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헌법의 암묵적인 목표는 연대주의의 핵심인 상호의존성을 격려하고, 진흥하며,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Keith Boyette). 총회의 입법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연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완전히 상명하달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글로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연회들이 그 연회에 멤버십을 둔 목회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고, 각 지역의 개체교회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개정은 제한받지 않는 권한을 다시 연회로 돌려주되, 그 권한은 여전히 총회의 감독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조직:

슈리브 커뮤니티 처치 (미국: 앨러게니 웨스트)

본문:

¶ 208 제VII조. [...]

- 1 총회는 특히 연대적안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2 총회는 연대와 명확히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입법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 3 갖습니다:
- 4 **¶ 207 제VI조 11.** 자기 고유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또한 헌법에 따라 총회에 위임되지 않은 그 밖의 권한에 관한
- 5 규정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교리와 장정의 요구 사항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그 목적은 지역교회의
- 6 사역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고 지원하는 데 있다.

총회 회의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창립 총회에 관한 섹션은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감독적 지도력”과 “교회의 감독들”에 대한 두 참조는 “감독회”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4.1을 수정합니다

- 1 제7조. 총회—감리교회의 "함께 의논하다"라는 감리교 전통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는 처음에 창립총회 소집을
2 위해 모여며, 그후 약 2년 뒤에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이후 총회는 6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총회는 200명 이상 700명
3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로 하며, 총회가 결정한 비례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한다.
4 총회는 그 숫자 안에서, 재량에 따라 다른 자치 감리교 기관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거나 혹은 없는 제한된 대의원의
5 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정 사안이나 필요를 다루기 위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총회 또는 감독 지도부의 과반수 찬성으로
6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직전 총회의 대의원 또는 그 합법적 후임자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총회는
7 교단 감독회의와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화상으로 모일 수 있다.
- 8 제7조. 총회—감리교회의 "함께 의논하다"라는 감리교 전통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는 매 6년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9 총회는 200명 이상 7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로 하며, 총회가 결정한
10 비례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는 그 숫자 안에서, 재량에 따라 다른 자치 감리교 기관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11 있거나 혹은 없는 제한된 대의원의 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정 사안이나 필요를 다루기 위한 특별총회는 총회 또는
12 감독회의 다수결 투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직전 총회의 대의원 또는 그 합법적 후임자로
13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총회는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해 상충을 피하기

청원자: John Lomperis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선한 지배, 행정력 원칙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기초를 마련하며, 책임감, 사법부의 독립성, 지배, 행정력 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총회의 역할인 기타 우리 연결, 연대 부문들을 지휘함을 보존합니다. 총회 델리게이트는 신실한 글로벌의 감리교회 교인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쟁점, 예를 들어 논란이 되는 선거 또는 입법 제안과 같은 사안들을 반드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화폐 단위 전체의 직원들은 어느 한 “측면”, 파벌, 또는 후보자를 편애하거나 그리 보일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을 때 모든 글로벌의 감리교회와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회 직원이나 지역 교회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문구가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8을 수정합니다

- 1 ¶ 208. 제7조. 총회 - "함께 협의하는" 감리교회의 전통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는 처음에는 창립 총회 소집을 위해
 - 2 모이고, 그 후 약 2년 후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후 총회는 6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총회는 200명 이상 700명 이하의
 - 3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로 하며, 총회가 결정한 비례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한다. 현직
 - 4 감독,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 회원, 또는 교회 본부 직원은 총회 델리게이트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총회는 그 숫자
 - 5 안에서, 재량에 따라 다른 자치 감리교 기관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거나 혹은 없는 제한된 대의원의 수를 포함시킬 수
 - 6 있다. 특정 사안이나 필요를 다루기 위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총회 또는 감독 지도부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7 이러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직전 총회의 대의원 또는 그 합법적 후임자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총회는 교단 감독회의와
 - 8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화상으로 모일 수 있다.
- 9 총회는 특히 연대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0 ...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에서 문장의 일부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는 창립 총회 소집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반영하기 위해 ¶ 208의 서두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208을 수정합니다

- 총회—감리교회의 "함께 의논하다"라는 전통에 따라, 총회는 그 이후 약 2년 뒤에 개최되며, 이후부터 총회는 매 6년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
- 총회—감리교회의 "함께 의논하다"라는 전통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는 매 6년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교회 내 평신도 지도력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평신도를 명시함으로써,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8.1을 수정합니다

- 1 (1) 교회 내에서 집사목사, 장로목사, 기타 목회자 범주, 감독,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평신도와 목회자가 섬길
- 2 때 요구되는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합니다.
- 3 (1) 교회 내에서 집사목사, 장로목사, 기타 목회자 범주, 감독,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지도자로 섬기는 평신도의 자격, 의무 및
- 4 책임을 정의한다.

총회 연도와 감독의 임기 단축을 위해 ¶ 208 제VII조 및 ¶ 604:8

청원자: Danjuma Juji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일반적이고 글로벌의 최고의 실행인 지배 및 행정력 원칙은 민주적으로 사용되고 준수됩니다. 이는 권력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교회가 회원을 인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 운영을 관찰할 수 있도록 4년마다 모임이 필요합니다. 감독의 6년 임기는 신생 교회에 너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6년 후에는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4년마다 감독 선거를 위한 특별 세션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04.8을 수정합니다

- 1 이후 총회는 6년~~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연대 협의회 권한과 권위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연대 협의회는 이미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 단어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총회"가 5번이나 등장하여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중 1개를 삭제하고 이 하위 문단을 두 문장으로 다시 작성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8.5를 수정합니다

- 1 (5) 총회와 총회 사이에 위임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총회의 위임 권한을 가진 연대 협의회를 정의하고 설립하며,
- 2 총회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제한 사항 및 총회 사이에 이루어진 연대 협의회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기준을
- 3 받도록 합니다.
- 4 (5) 연대 협의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총회 회의 사이에 연대 협의회에 위임된 모든 사항을 총회가
- 5 부과하는 제한 내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연대 협의회 모든 결의 사항은 총회의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9의 추가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208.9를 개정하여 언어를 글로벌 교회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8.9를 수정합니다

- 1 교단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 2 글로벌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글로벌 일치와 지역적 유연성: ¶ 208.10의 문장 정비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208.10의 문장을 정비함.

본문:

본 청원은 ¶ 208.10를 수정합니다

- 1 교회의 모든 사역, 위원회, 목회자, 평신도, 임원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 2 지역 교회에서 양육됨을 확인하며,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지역 교회 수준에 두도록 힘쓴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역 교회에서 양육됨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지역 교회 수준에 두도록 힘쓴다.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13의 언어 정비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208.13의 언어를 정비하여 해상도에 관한 불필요한 언급을 제거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08.13을 대체합니다

- 1 교회 조직 및 정치와 관련된 청원을 처리하고, 비규율적 사안에 관한 해상도를 처리하여 전체 교회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 2 위해 해상도는 총회의 4분의 3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다음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 3 교회 조직 및 정치와 관련된 청원을 처리합니다.

감독회 정의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감독회 정의

본문:

본 청원은 ¶ 209를 수정합니다

- 1 제 8조. 감독권 — 글로벌 감리교회의 총감리직은 감독들에게 맡겨지며, 이들은 교회에 영적 지도력을 제공하고 총회에서
- 2 채택한 대로 현세적 권위를 행사합니다. 감독은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총회의 재량에 따라 교회의 믿음,
- 3 질서, 일치, 전례, 교리 및 장정을 수호하기 위해 사역합니다. 모든 현직 감독은 감독회의 회원이 됩니다.

연대상소협의회회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단락의 .1과 .2는 일치해야 합니다. 헌법 내에서 현직 감독에 관한 모든 표현을 "감독회"로 표준화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10.(1)을 수정합니다

- 1 (1)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5분의 1이 항소하거나, 총회의 현직 감독 지도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총회의 어떤
- 2 행위나 결정의 헌법성, 또는 그 의미·적용·효과를 판단합니다.”
- 3 (1)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5분의 1이 항소하거나, 총회의 현직 감독 지도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총회의 어떤
- 4 행위나 결정의 헌법성, 또는 그 의미·적용·효과를 판단합니다.

교리와. 장정 210 단락을 수정하는 청원.

청원자: Shreve Community

조직: US: Allegheny West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 헌법에는 감독들이 법률 질문에 대해 반드시 판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 감독들은 어떤 법률 질문에 대해 판결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사실상 갖게 됩니다. 이는 감독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제기된 질의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항소 절차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목회자와 교인의 항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 XI 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판결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그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아울러 그 판결의 한계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헌법을 다시 제한규정과 일치하도록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조직:

슈리브 커뮤니티 처치 (미국: 앨러게니 웨스트)

본문:

¶ 210.3 모든 감독이 내린 법률 판결을 검토하고, 이를 인준하거나, 수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 연회나 지역연회를 주재하는 감독은 회기의 정규 업무 중 그 감독에게 제기되는 모든 법률 질문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은 연회 총무가 연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독의 결정은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연대 항소협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권위가 없습니다. 각 감독이 내린 모든 법률 결정은 매년 그 개요와 함께 연대 항소협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항소협의회는 이를 확인, 수정 또는 번복합니다.

항소권을 제한 규칙의 언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규칙을 삭제하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제한 규칙은 역사적으로 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왔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항소권 보호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하위항은 수정된 ¶ 211에 더 적합합니다. 제 X조. 항소권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211을 수정하고 ¶ 212.2를 삭제합니다

- 1 ¶ 211. 제10조. 상소권 — 총회는 교단을 위해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재판과 상소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 제도를
- 2 확립해야 합니다.
- 3 ~~¶ 212.2 총회는 목회자의 위원회에 의한 재판 및 상소할 권한을 폐지해서는 안되며, 또한 교인이 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 4 ~~재판받고 상소할 권한도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 5 ¶ 211. 제10조. 상소권 — 총회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재판과 상소권을 보장하는 사법 제도를 확립해야
- 6 하며, 목회자의 위원회를 통한 재판과 상소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이 교회 또는 위원회를 통한 재판과
- 7 상소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총회에서 제안되는 교리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칙을 수정합니다.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2026년 총회에서 통합된 종교강령 과 신앙 고백을 채택할 경우, 새로운 문서가 제한 규칙에서 종교강령 및 신앙고백을 대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본 청원은 ¶ 212.1을 수정합니다**

1. 총회는 교회가 제정하고 구성 기준에 구체화된 종교강령, 신앙 고백, 웨슬리의 신약 성경 주석,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 2 또는 그 밖의 우리의 교리적 기초를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기존 기준에 반하는 새로운 교리적 기준이나 규칙을
- 3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 규칙은 교단이 승인한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의 통합 개발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종교강령 및 신앙 고백의 모든 후속 문서는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 5 1. 총회는 교단이 제정하고 구성 기준에 구체화된 종교강령, 웨슬리의 신약 성경 주석,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또는 기타
- 6 우리의 교리적 기초를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기존 기준에 반하는 새로운 교리적 기준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 7 없습니다.

총회가 웨슬리의 설교 및 노트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도록 허용

청원자: John Lomperis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일부 글로벌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이 제한 규칙이 해당 웨슬리안 표준에 관한 설명문에 이미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델리게이트들이 “웨슬리의 설교 및 노트에 대한 이해 명확화”라는 별도의 청원(제107항의 그러한 설명문 중 일부를 수정하는)을 채택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제212.1항의 현행 문구에 의해 저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2026년 총회 델리게이트들은 그 청원과 이 청원을 모두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13.2조에 따라, 연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이 청원이 비준되면 다른 청원의 채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좁고, 시간 제한적인 예외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본 청원은 ¶ 212.1을 개정한다**

- 1.1. 교단 총회는 교회가 제정하고 구성 기준에 구체화시킨 종교 강령, 신앙 고백, 웨슬리의 신약성경 주석, 존 웨슬리의
- 표준 설교 또는 기타 우리의 교리적 기초를 취소,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우리의 기존 기준에 반하는 새로운 기준이나 교리
-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제한 규정은, 그러한 수정안이 기독교 제자도를 위한 우리의 기초 웨슬리안 표준에서 목록에
- 있는 특정 설교나 신약성경 주석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존 웨슬리의 특정 설교 목록 및 존 웨슬리의 “신약성경
- 주석”을 웨슬리안 표준으로 지정하는 것과 구별되는 제107항의 설명문을 2026년 총회가 수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 않습니다. 이 제한 규칙은 교회가 승인한 통합된 총칙과 신앙 고백의 개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교 강령 및 신앙 고백의
- 후속 문서는 총회에서 4분의 3의 찬성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허용

청원자: John Lomperis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델리게이트가 별도의 청원인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제106조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채택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현행 제212.1조의 문구에 의해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026년 총회 델리게이트는 해당 청원과 이 청원 둘 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13.2조에 따라, 연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이 청원이 비준되면 다른 청원의 채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 제한 규칙에 대한 이 예외 조항은 의도적으로 매우 좁게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주제에 대한 우리의 교리적 기준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총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212.1을 수정합니다

1. 교단 총회는 교회가 제정하고 구성 기준에 구체화시킨 종교 강령, 신앙 고백, 웨슬리의 신약성경 주석,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또는 기타 우리의 교리적 기초를 취소,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우리의 기존 기준에 반하는 새로운 기준이나 교리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제한 규칙은 교단이 승인한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의 통합 개발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의 후속 문서는 총회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이 제한 규칙은, 독신으로서의 순결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에서의 신실함이라는 윤리를 확인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웨슬리안 증언을 위한 우리의 규범적 기준(제106조)을 수정하려는 2026년 총회의 어떠한 결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과정 명확화 및 구식 표현 삭제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의 .1과 .2의 시작 부분은 구식이며 삭제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다른 범주의 개정안은 각각 별도의 섹션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문장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표현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독립된 섹션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213 삭제하여 ¶ 213.1 및 수정 ¶ 213.2 및 ¶ 213.3을 수정합니다

- 1 제12조. 개정—헌법 개정은 총회 또는 연회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 2 제한 규칙을 수정하려면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деле게이트 4분의 3 이상의 찬성(기권 제외)과, 뒤이어 출석하여 투표한
- 3 연회 деле게이트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투표(기권 제외)가 필요합니다.
- 4 1. 제한 규칙을 제외하고, 헌법 개정은 2026년 총회 폐회 전까지 총회의 단순 다수결 투표로 채택됩니다.
- 5 2026년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 3분의 2의 다수결(기권 제외)이
- 6 요구되며, 출석하여 투표한 연회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기권 제외)가 뒤따라야 한다. 제한 규칙 외에,
- 7 개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деле게이트 3분의 2의 다수결과 뒤이어 출석하여 투표한 연회 деле게이트 총수의 3분의 2
- 8 이상의 찬성 투표(기권 제외)를 요합니다.
- 9 모든 연회는 총회 폐회 후 18개월 이내에 총회가 확인한 각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연회 투표 후 1개월
- 10 이내에, 총회 회의 비서는 총 투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의결된 개정안이 비준된 후에는, 승인 공표와 동시에 효력이
- 11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상기 명시된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개정안은 확인이 공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12 필요하다면, 총회는 총회와 연회의 필수 투표에 의해 개정안이 비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정안의 시행 임법을 제정할 수
- 13 있다. 필요한 경우, 총회는 총회와 연회의 필수 투표에 의한 개정안의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법률 활성화를
- 14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개체 교회 연대 기금 및 혜택

청원자: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조직: US: Trinity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모든 개체 교회는 교단의 번영을 위하여 총회 차원과 개체 교회 차원 모두에게 재정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 소속 목회자의 전반적 복지를 위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연대기금과 연금 및 보험금은 개체 교회가 함께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체 교회가 각자에게 맡겨진 재정 책임을 교리와 장정의 다른 영역들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조직:

미국: 트리니티

본문:

¶ 449. 개체교회 연대기금 및 복지. 1. 글로벌감리교회의 각 개체 교회는 연대사역헌금을 통해 개체교회를 넘어 단교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한다. 개체교회 재무 또는 지명자는 전년도 개체교회 운영 수입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0일까지 ¶ ¶ 449.3 및 4에 따라 송금할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1 ...

- 2 10. 개체 교회는 파송되거나 배정된 목회자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여기에는 충분한
- 3 건강 보험(그 재원방식은 연회에서 판단할 수 있음), 연금 및 생명 보험이 포함될 수 있다.

연대 기금의 웨슬리안 가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 “while”이 포함된 것은 책임감과 연대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변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변명해야 할 일이 아니라, 견고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이 섹션은 역사적 주석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은혜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1을 수정합니다

1. 연대 기금의 웨슬리안 가치. 글로벌 감리교회는 은혜로 충만하지만, 우리 개인과 공적 삶 전반에 걸쳐 책임감과 사기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교회 구조 모델은 상호 책임 그룹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감리교 운동은 초창기부터 연대 시스템 안에서 상호 자원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연대 조직을 통해 교회는 더 큰 왕국에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책임과 자격을 보장하며, 신학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연대 시스템을 소중히 여기며 개체 교회에 대한 자원과 돌봄 역할이 풍성해 지기를 희망한다.
7. 감리교 운동은 초기부터 연대 체계 안에서 상호 지원을 실천해 왔으며, 이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루고, 올바른 책임감과 자격 심사를 확보하며, 신학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허락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은혜와 책임감을 통해 지역 교회들을 위한 이 연대 체계를 이어갑니다.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1 조항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449.1의 문구는 모호하며 불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1을 삭제합니다

- 1 연대 기금의 웨슬리안 가치. 글로벌 감리교회는 은혜로 충만하지만, 제자들은 개인적-공적 삶 전체에 걸쳐 책임감을 지며
- 2 살아가야 함을 인식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교회 구조 모델은 상호 책임 그룹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산을
- 3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감리교 운동은 초창기부터 연대 시스템 안에서
- 4 상호 지원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연대 조직을 통해 교회는 더 큰 왕국에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책임과 자격을
- 5 보장하며, 신학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는
- 6 연대 시스템을 소중히 여기며 개체 교회에 대한 지원과 돌봄 역할이 풍성해 자기를 희망한다.

연대 기금 산정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연대 기금 산정에 대한 3가지 변경을 권고합니다: (1) 연회는 각 교회가 매년 운영 수입을 신고하도록 하여 연회 차원에서 연대 기금 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합니다. (2) 연대 기금이 복지제도를 위한 기금 운용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지역 교회의 복지제도 납입금이 연대 기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3) 수입 제외 항목 목록에서, 호의헌금에 관한 주석은 기부자가 호의헌금으로 지정한 헌금에만 적용되며 지역 교회가 호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총회 기금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음과,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또는 보육시설의 수입도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2, ¶ 449.3, 및 ¶ 449.4를 수정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지역 교회는 연대 기금을 통하여 지역 교회를 넘어선 교회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합니다.
- 2 연회는 각 지역 교회가 송금해야 할 금액을 ¶ 449.5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지역 교회는
- 3 전년도 운영 수입을 매년 1월 30일까지 ¶ 449.4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연회는 또한 지역 교회가 ¶ 449.4 및 .5에
- 4 따라 연대 기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연회에 신고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 5 3. 연대 기금에는 지역 교회가 목회자 및 글로벌 감리교회의 해당 복지제도에 속한 추가 직원의 보험 복지제도 및 연금
- 6 부담금을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랜 가입자를 위한 보험 혜택 및 연금 납입금은 개체교회의
- 7 연대사역헌금 송금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연대 기금은 연회 또는 총회가 지역 교회 목회자나 직원의 보험 및 은퇴
- 8 복지제도 등 복지제도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복지제도 관련 납입금은 연대 기금 송금과
- 9 별도로 지역 교회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10 4. 연대 기금 송금액 산정 시, a. 다음 항목은 지역 교회 운영 수입에 포함됩니다: 확인된 기부자 및 미확인 기부자의 헌금,
- 11 운영에 활용된 투자 수입, 건물 사용료 및 임대 수입, 기타 제한 없는 운영 수입. b. 다음 항목은 지역 교회 운영 수입에서
- 12 제외됩니다: 호의로 지정된 헌금(지역 교회가 지원하는 외부 사역), 자본 모금 수입, 차입금, 운영 외 비용을 위한 모금,
- 13 부채 감면 수입, 추모 헌금, 기부금, 유증(제한 여부 무관), 글로벌 감리교회 특별 선교 프로그램 수입, 기타 조직으로부터의
- 14 보조금 및 지원, 토지·건물·기타 교회 자산 매각 수입, 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또는 보육시설의 수입, 기타 비운영
- 15 수입.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3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449.3의 표현은 이전에는 필요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글로벌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3을 삭제합니다

- 1 플랜 가입자를 위한 보험 혜택 및 연금 납입금은 개체교회의 연대사역헌금 송금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연대 기금의 설정, 이체 및 설명 절차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단락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변경이 필요합니다. (1) .6에서 언급되는 비율은 .5에서 정한 비율의 한도가 아니라, 총회 또는 연회에서 정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 연회가 지역 교회들로부터 총회 연대 기금(CF) 납부금을 수납하여 이를 총회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이외 국가의 교회들이 미국 은행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유익할 것입니다. (3) .9 항의 반복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6, ¶ 449.7, 및 ¶ 449.9를 수정합니다

- 1 7. 개체교회는 매월 총회 연대 기금 연간 총액의 12분의 1을 글로벌감리교회 재무에게, 연회 연대사역현금의 12분의 1을
- 2 해당 연회에 송금해야 한다. 지역 교회는 매월 총회 연대 기금 연간 총액의 최소 12분의 1과 연회 연대 기금 연간 총액의
- 3 최소 12분의 1을 각 연회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연회 재무는 매월 지역 교회들로부터 수납한 모든 총회 연대 기금을 글로벌
- 4 감리교회 재무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 5 9. 개체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은 개체교회 구성원들이 연대사역현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대사역현금을 해석하고,
- 6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연대사역현금을 교육하고 해석해야 한다. 지역 교회의 목회자 및
- 7 지도부는 모든 교회가 연대 기금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대해 지역 교회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 8 정보를 공유하며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6에 형용사 추가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율에 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 449.6에 형용사를 추가함으로써 명확성이 증대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6을 대체합니다

- 1 ~~¶ 449.5a의 비율은 총회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인상할 수 있다.~~
- 2 ¶ 449.5a의 최대 비율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청원 1065

₩ 449.7

개체 교회 연대기금 송금 방법 선택지

청원자: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조직: Global Methodist Church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 및 행정 위원단

본문:

본 청원은 ₩ 449.7을 수정합니다

- 1 7. 개체 교회는 매월 연간 총회 연대기금 총액의 12분의 1을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에게, 연간 연회 연대기금 총액의
- 2 12분의 1을 해당 연회에 송금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총회 연대기금을 총회 또는 해당
- 3 연회에 송금하여 이를 총회로 전달해야 합니다. 연회는 송금된 기금의 수령 교회와 해당 기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총회에
- 4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체 교회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연회 연대기금을 해당 연회에 송금해야 합니다.

선교 교회 지정 절차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선교 교회 지명에 관한 섹션은 연회가 지역 교회를 연대 기금을 교단이나 연회 중 한 곳 또는 양쪽 모두에 납부하는 것에서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이 섹션에서는 연회가 교회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 연대 기금 납부만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더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8을 수정합니다

8.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은 개체교회를 선교 교회로 지정하고 해당 교회는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 총회 또는 연회 연대사역헌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선교 교회는 개척 교회, 새로 재개한 교회,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 지역사회에 위치하거나 그곳을 섬기는 교회여야 한다. 연회 연대 협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은 지역 교회를 선교 교회로
-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해당 교회가 교단 또는 연회, 또는 양쪽 모두에 납부하는 연대 기금의 전부
-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선교 교회는 개척 교회, 재개 교회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회에
- 위치하거나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9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449.9가 장정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하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449.9를 삭제합니다

- 개체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은 개체교회 구성원들이 연대사역헌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대사역헌금을 해석하고,
-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연대사역헌금을 교육하고 해석해야 한다.

연회 설립 근거 제한 사항

청원자: 제프리 릭먼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급진적이고 초월적인 교리인 '이마고 데이' 교리에 근본적으로 헌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인종의 경계에 따른 집단화가 타고난 특성에 따라 분리, 경쟁, 분노를 바람직하지 않게 영속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교단의 구조에서 그러한 선택지를 제거하여, 모든 지역에서 모든 목소리가 동등하게 다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708.1을 수정하고 ¶ 451을 삭제합니다

- 1 ¶ 708. 조직. 1. 구성.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지역 전체에서 공동의 사역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 2 구성됩니다. 연회는 오직 지리적 영역에 근거하여 조직되어야 합니다. 각 연회의 경계는 다른 연회의 경계와 중첩되어서는
- 3 안 됩니다. 어떠한 연회도 인종/민족, 신학적 파벌, 선교적 의제 또는 교단 내 인구의 기타 다른 차이점에 근거하여
- 4 설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연회나 지방의 경계와 중첩되는 특별 연회나 지방은 교화 그룹의
- 5 요청에 따라 과도가 지도자 협의회의 결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연회의 의결권 있는 회원은 파송받은 장로목사,
- 6 집사목사, 과도기적 개체교회 목사(¶ 519.2b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제외)와 ¶ 520의 자격을 충족하는 원로 목회자,
- 7 그리고 각 구역이나 지방회 또는 연회에서 선출된 최소 동수의 평신도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구역회에는 파송된 목회자
- 8 수만큼의 평신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연회는 연회 지도자 직책에서 봉사하는 연회 평신도 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9 연회는 목회자 수와 똑같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평신도 회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동등한 평신도
- 10 선거에서는 평신도만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은 구역회, 지역 총회 또는 연회에서 선출할 수 있지만, 임명직이 아니라
- 11 선출직이어야 한다.

- 12 ¶ 451 삭제

글로벌 연합 위원단

청원자: Jonathan Le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문화 간에 성령이 이끄는 연합을 의도적으로 육성해야 하기에 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공유된 교리만으로는 관계적 신뢰나 공정한 리더십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분열과 부족주의적 태도, 그리고 문화적 오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두면 우리의 증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연합을 위한 위원단은 우리 교단이 성경적 가르침과 문화 간 형성, 그리고 관계적 구조를 갖추도록 도와, 신뢰와 화해와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됨을 신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미국: 상부 중서부)

본문:

글로벌연합위원단.

1. 사도행전 2장 1-12절에 나타난 오순절 초대교회의 변화시키는 연합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보좌 앞에
2. 모이는 요한계시록 7장 9-10절의 비전에 뿌리를 둔 이 위원회는,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장벽을 넘어
3. 사랑을 실천하고,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과 큰 계명(마태복음 22:37-40)에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4.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해 가도록 준비시키게 될 것입니다.글로벌연합위원단은 성경 연구와 신학적 성찰을 통하여, 성령의
5.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운동과 충실한 타인종/타문화 사역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 세계적인 민족 분열과
6. 자민족중심주의, 부족주의, 그리고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7. 2.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명의 회원과 위원장 및 해당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단은 이후 아프리카,
8.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북미 및 태평양 제도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가진 최대 21명의 회원과 위원장 및 위원회에
9. 배정된 감독을 제안할 것이며, 이는 연결 협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밖의 위원들은 총회에서 전체 대표들에 의해
10. 선출되어야 합니다.
11. 3. 이 위원단은 다음의 사역 분야에서 개체교회와 연회, 그리고 총회가 전략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자료를
12.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연합과 화해, 그리고 부족주의와 성차별, 자민족중심주의를 없애기 위해,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13. 중보기도에 힘쓰도록 하는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b.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14. 이루어지는 지도력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목회자와 감리사,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부족주의와 성차별,
15.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민족적 분열이라는 영적·문화적 장벽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16. 4. 기도 운동과 타인종/타문화 훈련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터뷰와 기도 일지, 설문조사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17.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변화를 위한 전략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18. 5. 전 세계 각 연회가 기도에 기초한 초민족적·초문화적 교육과 실천을 통합하도록 장려하고, 지역 간 모범 사례를
19. 공유함으로써, 부족주의와 성차별 및 자민족중심주의를 근절하며 하나님 나라 중심의 거룩한 문화를 세워 가야 합니다.
20. 6. 임시 목회자와 임시 목회 사역 단체들이 회중과 대화하며, 성령께서 회중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목회자나
21. 여성 목회자를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22 7. 글로벌연합위원단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 사명을 측정 가능한 결과와 함께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23 인도할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분명한 감독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한 보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청원자: Laura Ballinger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로렌스버그 디어본 힐스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개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자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뻐하시며, 이는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에 따라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힘 있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연회들과 개체교회들로 이루어진 기도와 중보의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기도 네트워크는 또한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틈에 서서' 중보할 기도 지도자들을 더욱 세워 가고자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8XX을 추가합니다

- 8XX.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기도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며, 글로벌 감리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교단 내 기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위원회는 지원과 책임감을 위하여 연대 협의회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책임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절차는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

양호한 신분상태에 관한 청원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는 "양호한 신분상태"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이 용어는 교리와, 장정의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양호한 신분상태의 요구 사항을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양호한 상태가 아님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이 선출된 기관 또는 파송된 직위에서 자발적으로 예배, 봉사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항을 마련합니다. 또한 양호한 상태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8XX을 추가합니다

- 1 8XX. "양호한 상태"의 요구 사항. 글로벌 메소디스트 교회의 어떤 수준에서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 2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하며",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 3 가져야 하며",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2, 7, 8, 11). 교리와 장정의 특정 단락들은 누군가가
- 4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봉사 자격이 있다고 요구합니다 (¶ 207.4, 423, 439.7, 442.2, 515.1e, 517.1, 518.1, 610.3,
- 5 709.6, 710.6b, 710.7b, 906.2, 910.3).
- 6 목회자의 경우 "양호한 상태"란 비활동 상태이거나 비자발적 휴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509.3, 510.2, 518.2, 518.5).
- 7 선임지위 목회자는 비활동 상태에 있더라도 봉사가 가능합니다 (¶ 520). 평신도의 경우 "양호한 상태"란 개체교회의
- 8 비활성 회원 명단에 올라 있지 않거나, 메모백교인에서 제명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420, 422).
- 9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또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범죄(¶ ¶ 906–908, 910–911)에 대해 공정한 해결 합의에 이르지
- 10 못한 이후 조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평신도 회원 또는 목회자
- 11 언약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 또는 행정 조치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 12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범죄도, 그 사람의 양호한 상태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히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 13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예배, 봉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14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또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혐의가 공정한 해결 합의로 종결된 경우, 그 합의의 조건 적용 대상이
- 15 아님을 의미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공정한 해결에서 확인된 사안들을 다루고 양호한 상태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 16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17 양호한 상태가 아닌 사람은 자발적(무보수) 선출직 또는 파송된 모든 직위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으며, 즉시 사임하거나
- 18 총리사 또는 감독에 의해 면직되어야 합니다.
- 19 양호한 상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정한 해결 합의 또는 재판위원회가 부당한 조건을 해당 조건의
- 20 감독 책임을 지닌 개인 또는 기관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복됩니다. 한 번 사임하거나 기관 또는
- 21 직위에서 해임된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직위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양호한 상태가 복원된 경우, 그들은 자격이 되는 모든
- 22 직위에 다시 새로이 선출되거나 파송될 자격을 갖게 됩니다.
- 23 본 단락의 규정은 목회자 파송이나 기타 사역 직위에 대한 임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임명 자격은 ¶ 901
- 24 이하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그 절차 안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ደህ ገጽ ሆኖ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자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글로벌 감리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우리 모두의 큰 유익을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비전을 따라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기도와 중보기도의 네트워크, 즉 기도하는 연회와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개발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 안팎과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기도 네트워크는 또한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틈을 메우는” 기도 지도자를 더욱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8XX을 추가합니다

- 1 ¶ 8XX. 글로벌의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교단
- 2 내에서 기도를 촉진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 3 합니다.
- 4 위원회는 지원과 책임감을 위하여 연대 협의회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책임에 관련된 모든 과정과 절차는
- 5 글로벌 감리교회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연회 평신도 지도자 위원회 설립

청원자: Gene Floore/진 플로어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Destin / 데스틴 (미국: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공식적이고 인정받는 연대 구조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협력, 공동의 비전, 그리고 교단(화폐 단위)과 연회 전반에 걸친 소통을 촉진합니다; 이는 결정이 지역 교회 및 연회 내 평신도들의 실제 리더십 경험에 근거하여 이뤄지도록 보장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가르치고(베드로전서 1 2:9), 사역에서 평신도의 부르심과 책임을 단언합니다; 위원회는 지역 교회 평신도 지도력을 위한 준비, 훈련, 도구 및 자료 개발의 사안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경험 있는 목소리로 공동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상호 협력과 공동의 책임을 통하여 각 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사역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강화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8XX을 추가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연회에서 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또는 해당하는 자로 구성되는 연회 평신도 지도자 위원회를
- 2 둡니다.
- 3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자체 임원을 선출합니다.
- 4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분기별로 최소 한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 5 위원회는 입법, 집행 또는 사법적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 6 각 평신도 지도자는 본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7 위원회는 화폐 단위 내 적당한 지도 기관에 전략적 통찰력과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개발한 사업 및
- 8 전략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 9 위원회는 지역 교회 평신도 지도력을 준비시키기 위한 도구와 자료의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 10 위원회는 평신도 이니셔티브들이 글로벌 감리교회의 더 넓은 사명과 지도력에 일직선으로 정렬되도록 돕습니다.
- 11 위원회는 연대 협의회에 그 활동에 대한 연간 상세 보고를 제출할 것입니다.

연대 위원회들의 이해 상충

청원자: Jay Therrell

조직: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위원회 결정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회원 중 위원회 또는 기타 교회 기구의 결정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한 교단의 세금 면제 자격을 보호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8XX을 추가합니다

- 1 목적.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연대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갖추어
- 2 행동해야 하며, 교회의 최선의 이익에 공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인지된 모든 이해
- 3 상충을 피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심의, 토론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에 적용됩니다.
- 4 이해 상충의 정의.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혹은 회원의 가정에 거주하는 자)이 다음 중
- 5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때 이해 상충이 존재합니다:
 - 6 위원회 또는 기타 기구에서 심의 중인 어떠한 단체, 계약,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 7 경제적 이해(보상, 투자, 소유권, 또는 잠재적 이익이나 손실 포함) 또는
 - 8 회원의 객관성이나 독립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개인적, 직업적, 관계적
 - 9 이해관계.
- 10 공개의 의무.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각 회원은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의장에게(의장에게 이해 상충이 있을
- 11 경우 부의장 또는 전체 기구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록에
- 12 기록되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고용, 계약, 금융 자산 또는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기타 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례
- 13 공개 서류를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비서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14 재정적 이해 관계에 대한 의무적 회피. 회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심의 대상 단체, 계약,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사항에
- 15 재정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회원은 그 사안에 대한 모든 토론, 논의 및 표결에서 스스로를 회피해야 합니다. 회피한
- 16 회원은 해당 사항이 심의되는 동안 회의실을 떠나거나(온라인 회의의 경우 접속을 종료)야 하며, 단, 전체 공개 후 남은
- 17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해 관계가 매우 미미하여 이해 상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 18 있습니다. 회피 사항은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 19 고용 또는 계약상의 관계. 어떠한 단체, 프로그램, 기관의 소유 지분이 있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자문 역할을
- 20 수행하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단체나 프로그램, 기관의 자금, 감독, 정책, 결정 등이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 21 상정된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심의, 토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
- 22 서면으로, 본인 고용주나 계약업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자신을 회피하고 그 결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옹호 활동을
- 23 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선출 후 고용 또는 계약 관계가
- 24 계속되더라도 완전한 자격 상실은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피해야 합니다.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5 이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서의 해임 사유가 됩니다.

26 연회 특정 사안. 총회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원이 성직자 회원, 평신도 회원 또는 특정 연회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27 연회에만 직접적이고 독특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예: 특정 연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분배, 징계 조치, 자산 처리,
28 또는 오직 그 연회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 결정 등)에는 어떠한 토론, 논의 또는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29 모든 연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나 전체 연대의 일상 예산 또는 정책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30 회피하여야 하며, 그 회피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31 회피 및 정족수 절차.

32 회피는 각 회원 개인의 책임이지만, 타 회원의 이해 상충에 관한 문제 제기는 어느 회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의장(또는 의장
33 부재 시 전체 기구)이 해당 문제에 대해 판정하며, 전체 기구로의 항소가 가능합니다. 기구의 결정은 과반수 투표로
34 정해지며 최종적입니다.

35 회피한 회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회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36 회의록에는 모든 공개 사항, 회피 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투표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37 위반 및 구제책. 이 정책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은 의장과 연대 협의회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조사
38 후 연대 협의회는 3분의 2 찬성 투표로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연대 협의회 회원이 본 정책을 고의로 위반할 경우
39 감독회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조사 후 감독회는 3분의 2 찬성 투표로 연대 협의회 회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40 적용 범위. 본 정책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연대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소위원회 및 대행사에 적용됩니다. 연회 및
41 지역 교회는 자교회 위원회 및 위원회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청소년 위원회 설립

조직: 아프리카: 북부 나이지리아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제출자 유형: 연회

근거:

청소년들은 전 세계 교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열정, 혁신, 그리고 강력한 선교적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그들의 풀뿌리 필요를 조정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해결하기 위한 통일된 글로벌 구조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에 참여할 명확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특히 기초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감리교회의 기존 8개 협의회와 위원회 중 어느 곳도 청소년 개발, 참여 또는 책임감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구조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사역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새로운 ¶ 8XX를 추가할 것입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는 이에 '글로벌 청소년 위원회'로 알려질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 2 이 위원회는 교회의 다른 협의회 및 위원회와 함께 인정받으며, 전 세계 글로벌 감리교회 내 청소년들의 활동, 관심사 및 리더십 개발을 조직, 조정, 지원하도록 위임받습니다.
- 4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글로벌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구조화 및 운영 설정을 시작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임명합니다.
- 6 글로벌 청소년 위원회의 제안된 위임 사항
-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
- 8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 지역 전반에 걸쳐 청소년 사역을 조정합니다.
- 9 국가 및 지역 청소년 구조를 지원하고 강화합니다.
- 10 글로벌 프로그램, 회의 및 리더십 개발 계획을 조직합니다.
- 11 감리교 청소년들 간의 글로벌 교제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12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 13 제자도, 선교, 교육 및 지역 사회 봉사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른 교회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 14 교단의 협의회 및 의사 결정 기구에서 청소년들이 대표성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융통성: ¶ 801 개정안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01 개정안은 더 명확해졌으며,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1를 수정합니다

- 1 연대적 생활 각 회중의 공통된 사명을 반영하여 제자 삼는 일과 성서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2 총회, 지역 및 연회 차원에서 연대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기존
- 3 사역, 교회, 연회 및 기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들은
- 4 교회와 전 세계의 상황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표준을 설정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적절하게 운영될 때 아
- 5 연대성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자금조달 채널을 제공하는 한편, 최소한의 구조와 직원으로 검소하게 운영함으로써
- 6 개체교회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구현한다 (마
- 7 20:28).
- 8 연대적 생활 연대적 구조는 제자 삼기와 성경적 거룩함을 전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회 및 연회
- 9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형성된 단체들은 지역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10 그들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 사역, 교회, 연회 및 기타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고 그
- 11 안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연대 위원회들은 지역 교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자금 조달의 50% 이하만이 총
- 12 교회 모금에서 마련될 수 있고, 최소 50%는 지역 교회, 연회 및 개인, 기초, 기타 기부자의 예배, 봉사 수수료 및 기부금에서
- 13 조달되어야 합니다.

연대 위원단 공개 회의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일반적으로 공개 회의는 투명성과 신뢰를 증진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공개 회의는 의심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 437.3은 개체 교회 기구에 대해서는 "공개 회의" 원칙을 수립하였으나, 총회 연대 위원단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로운 ¶ 802.2항을 추가하고 이후 하위 항들의 번호를 재지정합니다

- 1 이 내용을 ¶ 802.1 다음에 ¶ 802.2로 추가하고 나머지 하위 조항들의 번호를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2 공개 회의. 모든 연대 위원단의 회의는 공개 회의로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위원회가 인사, 법률 또는
- 3 계약 문제를 다루고, 위원회 과반수가 그 특정 문제들에 관한 시간 동안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투표하는
- 4 경우입니다. 투표는 공개 회의 중에 실시되며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비공개 세션은 가능한 한 드물게 사용해야
- 5 합니다.

글로벌의 일치, 지방의 유연성: ¶ 802 개정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현행 ¶ 802의 문구는 불필요합니다. 이 청원은 더 큰 명확성을 목표로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2를 수정합니다

- 1 연대 위원회들. 총회의 연대 위원회들은 개체 교회들과 연회를 대신하여 우리의 공동 사역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 2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이 위원회들은 교안,
- 3 목회자, 개체 교회, 선교부 또는 연회를 지원하거나 교회와 그 구성 기관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총회를 섬기기
- 4 위해 존재합니다. 연대 위원회들은 항상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섬기고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주님을 섬기기
- 5 위해 존재합니다.
- 6 연대 위원회들. 신규 - 연대 위원회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투명하며
- 7 협력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주님을 섬깁니다.

신규 - 연대 위원단들의 명칭을 명확히 함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 단락에는 노후되었거나 하위 단락 전체에서 일관되지 않게 사용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훨씬 더 명확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02.3을 개정합니다

- 1 3.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연대 위원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도, 교회 증식, 선교적 동원 및 재난 응답
- 2 위원단; 제자도, 교리 및 정의 사역 위원단;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 재정, 관리,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 총회 위원단;
- 3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연회 위원단.

- 4 3.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연대 위원회들이 설립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회; 제자도, 교리 및 정의로운
- 5 사역 위원회;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회; 재정, 행정 및 복지제도 위원회; 총회 위원회,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 및 연회
- 6 위원회.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02.3의 개정안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청원은 세 개의 사명/위원회를 삭제하고, 또 다른 하나를 약간 조정합니다(우리는 연금 제도가 아닌 은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 802.3에 반영됩니다. 삭제된 사명/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글로벌의 차원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더 지역적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2.3을 수정합니다

- 1 3.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연대 위원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도, 교회 증식, 선교적 동원 및 재난 응답
- 2 위원단; 제자도, 교라 및 정의 사역 위원단;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 재정, 관리,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 총회 위원단;
- 3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연회 위원단.

- 4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 다음과 같은 연대 위원회들이 설립됩니다: 재정, 행정, 은퇴 및 복지제도 위원회; 총회 위원회;
- 5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 그리고 회의 위원회.

위원회 명칭 변경: 왕국 발전 위원회

청원자: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2024년 총회에 이어, 전도, 교회 증식, 선교 동원 및 재난 대응 위원회는 감독회 및 연대 협의회 위원들을 포함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주요 구성원들로부터 위원회 명칭을 더 짧고 설득력 있는 이름으로 변경해 달라는 여러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국 발전 위원회”라는 명칭은 2026년 총회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2025년 2월 연대 협의회에서 임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02.3를 수정합니다

3.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연대 위원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도, 교회 증식, 선교적 동원 및 재난 응답
- 위원단; 제자도, 교리 및 정의 사역 위원단;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 재정, 관리,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 총회 위원단,
-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연회 위원단.
-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3.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연대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왕국 발전 위원회; 제자도, 교리 및 정의로운
- 사역 위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회;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회; 총회 위원회,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 그리고
- 연회 위원회.

중복된 문구 삭제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 802.7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 805.1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를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2.7을 삭제합니다

- 1 7. 모든 교단 직원은 연대협의회에 의해 고용되며, 연대운영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위원단을 지원하고 자원을
- 2 제공하도록 배정된다. 모든 직원 직책은 연대 협의회가 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연대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를 위한 공천 및 선거 과정 단순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모든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공천 및 선거 과정은 동일해야 합니다. 현재 7개 위원회와 연대 협의회는 하나의 과정을 따르고 있지만, 연대 상소 협의회와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다른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 920 & ¶ 605.1의 공천 및 선거 과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희는 해당 항들의 관련 부분 삭제 또한 권고하는 바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03.1, ¶ 803.3, ¶ 803.4, ¶ 920.5, 및 ¶ 605.1을 수정하고 ¶ 803.2를 삭제하며 새 ¶ 803.2를 추가합니다

1. 2024년 창립 총회에서 채택된 '함께하는 우리 삶의 조직 계획 및 연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각 연대위원단에 지명된
2. 사람은 2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사람은 2026년 총회에서
3. 후보 자격이 주어지며, 2년 임기는 ¶ 803.2에 명시된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2. 2026년 총회부터는 연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후보자 선정 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5. 봉사하도록 선출 또는 임명된 모든 사람의 임기는 6년이며, 위원은 한 번 재선 또는 재임명되어 총 12년까지 봉사할 자격이
6. 있습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사람은 2026년 총회에서 공천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2년 임기는 위 임기
7.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총회부터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8. 2. 공천 및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9. a. 각 연회는 평신도 및 목회자 대의원 과반수 투표로 최대 16명(목회자 또는 평신도, 단 감독은 제외)을 연대 위원회
10. 후보로 공천해야 하며, 이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은사, 훈련, 및 교육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개의
11. 연대위원단에 지명됩니다. 각 연회 대의원단은 평신도 및 목회자 대의원 과반수 투표로 최대 20명(목회자 또는 평신도, 단
12. 감독은 제외)을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 후보로 공천할 수 있습니다. 피공천인의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각
13. 피공천인은 공천에 동의해야 하며, 그 후 은사, 훈련 및 경험에 따라 대의원단에 의해 하나의 연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14. 위원회에 지명됩니다. 20명 미만이 공천된 경우, 대의원단은 총 지명 수가 20이 될 때까지 최대 2개의 위원회, 협의회 또는
15. 위원회에 인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된 인원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다양한 인종, 민족, 부족, 성별, 경제 및
16. 연령별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7. b. 공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천 시점에 글로벌 감리교회(또는 그 전신) 내의 지역 교회 또는 연회에서 최소 2년간
18. 회원이어야 합니다.
19. c. 총회 행정 공천 위원회는 연회 대의원단으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에서, 교회의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20. 봉사할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된 후보자 명단을 총회 선거에 제안해야 합니다. 단, 후보자 명단에 없는 연회 공천자는
21. 현장에서 공천될 수 있습니다. 각 신규-연대 위원회들의 후보자 리스트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회원 수와 위원회가
22. 신규-연대 위원회 의장으로 공천하는 인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후보자 명단에는
23.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위원 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에서 의장 지명에 대한 다른 절차를 명시하지
24. 않는 한, 각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장이 될 사람도 공천해야 합니다.

25 3. 총회는 각 연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선출해야 합니다. 각 연대 위원회의 나머지 3분의 1은 해당 연대 위원회의
 26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총회는 토론이나 논의 없이 단순 과반수로 각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27 명시된 수의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각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해당 연대 위원회의 공천에
 28 따라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됩니다. 위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련 연대 위원단에 신청할 수 있다. 연대 협의회에서
 29 선출하는 위원들은 연대 위원회의 사역에 필요한 포용성, 경험 또는 특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출된다. 달리
 30 명시되지 않는 한, 연대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감독과 의장을 제외한 각 연대 위원회의 회원은 평신도가 1/2 이상이어야
 31 합니다.

32 4. 감독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연대 위원회(연대 협의회는 포함하지 않음)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33 감독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연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의장을
 34 포함한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합니다.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들의
 35 여비 및 회의 비용은 각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36 ¶ 920.5

37 5. 추천. 총회에 앞서 행정공천위원회는 교회의 지리적, 인종적, 성별 다양성을 대표하는 총 21명을 해당 평신도 및 목회자
 38 부문에서 다수결로 지명한다. 교단총회 첫날에 목회자 또는 평신도의 공천을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다. 이름, 연회 회원
 39 자격 및 100 자를 초과하지 않는 이력서를 교단총회 선거 시간 최소 48시간 전에 총회 대의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40 공개되어야 한다. 선거는 논의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41 ¶ 605.1

42 1. 연대 협의회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서 봉사할 인물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인종,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신도 6명과
 43 목회자 6명의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총회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총회 대의원은 현장에서 추가 후보를
 44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평신도 위원 6명과 목회자 위원 6명을 선출하는 투표 과정에
 45 참여해야 한다. 모든 대의원은 평신도 및 목회자 후보 모두에게 투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출석하여 유효
 46 투표를 한 대의원 중 최소 60% 이상의 찬성에 1표를 더한 득표수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6년 임기를 두 번 이상 연속해서
 47 수행할 수 없다. 총회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끝난 후, 연대 협의회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
 48 목회자 위원 2명과 평신도 위원 2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청원 - 800번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본 청원은 2024년 소집 총회에 대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3.1을 수정합니다

- 2024년 창립 총회에서 채택된 '함께하는 우리 삶의 조직 계획 및 연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각 연대위원단에 지명된 사람은
- 2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사람은 2026년 총회에서 후보
- 자격이 주어지며, 2년 임기는 ¶ 803.2에 명시된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 - 연대 위원회들 및 연대 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1 / 3)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BDD)은 연대 위원회들, 협의회, 그리고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봉사할 후보자 공천의 출처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원(기타 두 개의 동반 청원과 함께)은 일관된 용어를 제공하며, 공천이 총회로 선출된 각 연회 대표단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3.2.a AND ¶ 803.2.c를 수정합니다

- 1 교리와. 장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 연대 위원회들 회원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 2 ...
- 3 2. 2026년 총회부터는 연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후보자 선정 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만
- 4 연임할 수 있어 총 12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총회부터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5 각 연회는 평신도 대의원과 목회자 대의원 모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대 16명(감독 제외, 목회자 또는 평신도)을
- 6 연대위원회 후보로 지명하되, 최소 절반이 평신도이어야 한다. 적법하게 선출된 각 연회 대표단은 평신도 및
- 7 목회자/사역자/성직자 델리게이트의 다수결 투표로, 감독이 아닌 목회자/사역자/성직자 또는 평신도 중 최대 16명을 신규
- 8 - 연대 위원회들 및/또는 연대 협의회 후보자로 공천하여야 하며, 이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은사,
- 9 훈련, 및 교육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개의 연대위원단에 지명된다. 다양한 인종, 민족, 부족, 성별, 경제 및 연령별 특성을
- 10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11 후보 자격을 갖춘 사람은 후보 추천 당시 2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그 전신) 소속 개체 교회 또는 연회의 회원이어야
- 12 합니다.
- 13 총회의 행정 공천위원회는 연회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에서 총회가 선출할 교회의 연대 위원단에서 봉사할 다양한
- 14 개인들의 명단을 제안하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연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은 회의석상에서 추천할 수 있다. 총회의 행정
- 15 공천위원회는 연회 대표단들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에서 교회의 신규 - 연대 위원회들 및 연대 협의회에 봉사할 다양한
- 16 개인들의 후보자 리스트를 총회 선거를 위해 제안하여야 하며, 연회 대표단이 공천하였으나 후보자 리스트에 상장되지
- 17 않은 개인은 우리의 함께하는 삶의 조직과 언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대표단이 재공천할 수 있습니다. 각 신규 - 연대
- 18 위원회들의 후보자 리스트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회원 수와 위원회가 신규 - 연대 위원회 의장으로 공천하는 인물이
- 19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행정 공천 위원회 제한**청원자:** Dennis Rader**조직:** Ocean View Mariners Bethel (미국: 북동부)**제출자 유형:** 개인**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근거:**

이 조항은 신규 - 연대 위원회들을 위한 공천 과정의 진실성, 공정성,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행정 공천 위원회와 자문팀은 후보자를 심사하고 지도자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하므로, 회원이 스스로를 공천하거나 자신이 작성하는 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실제 또는 인지된 이해 상충을 방지합니다. 과거에 회원이 자신을 공천하거나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후보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우선적 접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제한은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이 개인의 진보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도록 단언하며, 총회가 현장에서 적극적인 위원회 회원을 공천할 권한을 보존함을 확인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3.2 다음 내용 추가를 수정합니다

- 1 행정 공천 위원회 또는 자문팀의 회원은 자신을 공천하거나, 위원회가 자신을 공천하여, 행정 공천 위원회에서 또는 그와
- 2 함께 섬기는 기간 동안 어떠한 연대 사명/위원회에 봉사하도록 공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공천 위원회 회원 및
- 3 자문위원은 총회 현장에서 공천될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총회 위원회 멤버십

청원자: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조직: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올네이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동수의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 대표를 두고자 하는 것은 고귀한 목표이지만, 이는 때로 해당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이들이 평신도 혹은 목회자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원회의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평신도와 목회자/사역자/성직자가 각각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사명/위원회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3.3를 수정합니다

- 1 3. 총회는 각 연대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각 연대 위원회의 나머지 3분의 1은 해당 연대
- 2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련연대 위원단에 신청할 수 있다.
- 3 연대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위원들은 연대위원회의 사역에 필요한 포용성, 경험 또는 특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 4 목적으로 선출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대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감독과 의장을 제외한 각 연대 위원회의 회원은
- 5 평신도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6 총회는 각 연대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각 연대 위원회의 나머지 3분의 1은 해당 연대
- 7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련연대 위원단에 신청할 수 있다.
- 8 연대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위원들은 연대위원회의 사역에 필요한 포용성, 경험 또는 특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 9 목적으로 선출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대 사명/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감독과 의장을 제외하고, 각 연대
- 10 사명/위원회의 멤버십은 목회자/사역자/성직자와 평신도 회원이 동수에 가깝도록 노력하되, 각각 최소 3분의 1 이상이
- 11 되어야 합니다.

청원 - 800년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청원은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 대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4.1을 수정합니다

- 1 위원단 의장. 각 연대 위원단의 회의 의장은 연대 위원단의 의장이 됩니다. 의장은 평신도 또는 목회자일 수 있으며, ¶
- 2 803.2b와 회원 자격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이후, 연대위원단은 각 연대위원단에 선출된 사람 중에서 각
- 3 연대위원단의 의장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각 의장은 기간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거나 2년
- 4 동안이며, 2026년 총회 이후에는 재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 총회부터, 각 연대 위원단의 의장은 ¶ 803.2c에
- 5 규정된 대로 선출됩니다. 2026년 총회 및 그 이후에 선출된 각 의장은 기간 6년을 맡으며, 한 번 재선되어 둘째 기간 6년을
- 6 더 연임할 자격이 있습니다. 연대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위원장의 총 임기 제한에 포함된다. 의장직의 공석은 관련
- 7 연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채웁니다.

위원단 의장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 문단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음 두 문장을 수정함으로써 더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4.1을 대체합니다

1. 위원단 의장. 각 연대 위원단의 회의 의장은 연대 위원단의 의장이 됩니다. 의장은 평신도 또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며,
- 2 각 연대 위원단의 사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 803.2b의 멤버십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이후,
- 3 연대위원단은 각 연대위원단에 선출된 사람 중에서 각 연대위원단의 의장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각
- 4 의장은 기간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거나 2년 동안이며, 2026년 총회 이후에는 재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
- 5 총회부터 각 연대위원단의 의장은 ¶ 803.2c에 규정된 대로 선출한다. 2026년 총회 및 그 이후에 선출된 각 의장은 기간
- 6 6년을 맡으며, 한 번 재선되어 둘째 기간 6년을 더 연임할 자격이 있습니다. 연대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위원장의
- 7 총 임기 제한에 포함된다. 의장직의 공석은 관련 연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채웁니다.
- 8 1. 위원단 의장. 각 연대 위원단의 의장은 평신도 또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연대 위원단의 사회자가 되어야
- 9 합니다. 각 연대 위원단의 의장은 ¶ 803.2c에 규정된 대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각 의장은 6년의 기간 동안 임기하며, 둘째
- 10 6년의 기간에 한 번 재선될 자격이 있습니다. 연대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위원장의 총 임기 제한에 포함된다.
- 11 의장직의 공석은 관련 연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채웁니다.

위원단 임원 선거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변경 사항은 각 위원단의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임원 선거 및 교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과정이 더욱 신속해질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4.1을 수정하고 ¶ 804.2를 삭제합니다

- 1 ¶ 804. 연대 위원회의 리더십. 1. 위원단 의장 — 각 연대 위원단의 사회자는 그 위원단의 의장이 됩니다. 의장은 평신도
- 2 또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며, ¶ 803.2b의 회원 요건을 따라야 한다. 2024년 창립 총회 이후, 연대위원단은 각
- 3 연대위원단에 선출된 사람 중에서 각 연대위원단의 의장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각 의장의 임기는 2년
- 4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며, 2026년 총회 이후 재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총회부터 각 위원단은 그 회원
- 5 중에서 임원(의장, 부의장, 서기)을 선출합니다. 각 연대 위원단의 의장은 ¶ 803.2c에 규정된 대로 선출됩니다. 2026년
- 6 총회 및 그 이후에 선출된 각 의장은 기간 6년을 맡으며, 한 번 재선되어 둘째 기간 6년을 더 연임할 자격이 있습니다.
- 7 연대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위원장의 총 임기 제한에 포함된다. 의장직의 공석은 관련 연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 8 연대 협의회에서 채웁니다. 임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각 위원단은 그 회원 중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합니다.
- 9 2. 임원 — 연대 위원단은 서기를 선출하고,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른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 연대 위원회들의 리더십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 신규 - 연대 위원회들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이는 연대 협의회, 향소위원회, 감독회,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 기관은 자체 회원 중에서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또한, 현재 제안된 의장 선출 방식은 공천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장이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신규 - 연대 위원회들이 선출된 회원들 중에서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연대 협의회가 감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4.1 및 ¶ 803.2.c를 수정합니다

1. 위원단 의장 - 각 연대위원단의 회의 의장은 연대위원단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평신도 또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며, ¶
- 2 803.2b의 회원 요건을 따라야 한다. 2024년 창립 총회 이후, 연대위원단은 각 연대위원단에 선출된 사람 중에서 각
- 3 연대위원단의 의장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각 의장의 임기는 2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며,
- 4 2026년 총회 이후 재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총회부터 각 연대위원단의 의장은 ¶ 803.2c에 규정된 대로
- 5 선출한다. 2026년 총회 및 그 이후에 선출된 각 의장은 기간 6년을 맡으며, 한 번 재선되어 둘째 기간 6년을 더 연임할
- 6 자격이 있습니다. 2026년 총회에서 선출된 각 의장은 기간 6년을 맡습니다. 연대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위원장의
- 7 총 임가 제한에 포함된다. 2032년 총회부터 각 신규 - 연대 위원회는 그 회원들 중에서 의장과 필요에 따른 기타 임원을
- 8 공천해야 합니다. 리더십 공천은 선거를 위해 연대 협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의장직의 공석은 관련 연대 위원회의
- 9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채웁니다.

¶ 803. 연대위원단의 위원직

...

2. 2026년 총회부터는 연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후보자 선정 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만
- 연임할 수 있어 총 12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총회부터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c. 총회의 행정 공천위원회는 연회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에서 총회가 선출할 교회의 연대 위원단에서 봉사할 다양한
- 개인들의 명단을 제안하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연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은 회의석상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각 연대
- 위원회의 명단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위원 수와 위원회가 연대 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천하는 인물이 포함되어야
- 합니다. 각 신규 - 연대 위원회 및 연대 협의회 후보자 리스트에는 교리와 장정에서 규정한 회원 수가 포함되어야
-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위원단 임원 선거

청원자: Beth Ann Cook /베쓰 앤 쿡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Poseyville St Pauls UMC (미국: Great Lakes)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변경 사항은 각 위원단의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임원 선거 및 교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과정이 더욱 신속해질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4.1을 수정합니다

- 1 ¶ 804 연대 위원단들 리더십 1.위원단 의장 — 각 연대위원단의 사회자는 해당 연대 위원단의 의장이 됩니다. 의장은
- 2 평신도 또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며, ¶ 803.2b의 회원 요건을 따라야 한다. 2024년 창립 총회 이후, 연대위원단은 각
- 3 연대위원단에 선출된 사람 중에서 각 연대위원단의 의장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각 의장의 임기는 2년
- 4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며, 2026년 총회 이후 재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총회부터 각 위원단은 그 회원
- 5 중에서 임원(의장, 부의장, 서기)을 선출합니다. 각 연대 위원단의 의장은 ¶ 803.2c에 규정된 대로 선출합니다. 2026년
- 6 총회 및 이후에 선출된 각 의장의 임기는 6년이며, 둘째 6년의 기간 동안 한 차례 자격을 갖추어 재선될 수 있습니다.
- 7 임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각 위원단은 그 회원 중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합니다.

총리사를 신규 - 연대 위원회들에 추가

청원자: Jay Therrell

조직: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더 나은 조정, 소통, 그리고 결정의 실행을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총리사들이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하위 항 ¶ 804.4을 추가하여 ¶ 804를 수정합니다. 본 청원은 새 하위 항 ¶ 803.4을 추가하여 ¶ 803을 수정합니다

- 1 4. 총리사의 역할. 각 신규 - 연대 위원회는 감독회가 선정하는 총리사 중 최소 1명을 회원으로 두며, 이들은 연회 간의
- 2 소통과 조정 유지를 돕기 위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봉사합니다. 총리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 3 경우, 감독회는 다른 총리사를 지명하여 그 공석을 채웁니다.
- 4 ¶ 803. 연대위원단의 위원직
- 5 4. 총회는 각 연대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각 연대 위원회의 나머지 3분의 1은 해당 연대
- 6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련연대 위원단에 신청할 수 있다.
- 7 연대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위원들은 연대위원회의 사역에 필요한 포용성, 경험 또는 특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 8 목적으로 선출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대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감독 또는 총리사 및 의장을 제외한 각 신규 - 연대
- 9 위원회의 회원은 1/2 이상이 평신도이어야 합니다.

운영의 탁월성: 위원회에 직접적인 인사 책임과 권한 부여

청원자: James Wesley Griffin Jr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enter Point GMC (US: North Georgia)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연대 위원회들은 각자의 고유한 사역 분야에서 “업무와 사업”을 관장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현재, 장정은 위원회 직원의 채용, 감독 및 평가를 연대 운영 책임자에게 맡기고 있어, 위원회가 자체 인력에 대해 직접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직 리더십은 사명을 책임지는 사람들과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책임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청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전 세계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위원회에 운영의 탁월성을 추구할 책임과 권한을 모두 부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05.1을 수정합니다

1. 직원. 각 연대 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 직책은 연대협의회가 정한 예산
- 2 한도에 따라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대 운영 책임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연대 운영 책임자(₩ 815)에 의해
- 3 모집, 지정 및 평가되며, 임의로 고용됩니다.
- 4 연대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연대 협의회에서 수립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 또는 그 지정된 리더십에 의해
- 5 채용, 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임의 고용 직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연대 작업
- 6 임원은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교단 정책 준수를 보장해야 하지만, 위원회 직원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 또는 평가 권한을
- 7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에 대한 항소의 필요성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우리는 전체 교회가 외부 단체가 "글로벌 감리교회와 일치하는지"에 항상 동의한다고 단순히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들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5.2를 수정합니다

2. 연대위원단은 사명을 수행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교단 내 조직, 선교단체 및 교단 기관, 다른
- 교회 기관 또는 교단 외 조직 및 사역과 계약할 수 있으나, 선교 및/또는 신학적 입장이 연대위원단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와
- 일치하지 않는 조직과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단의 예산을 초과하는 재정적 영향을
- 미치는 계약은 연대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단체가 글로벌 감리교회와 일치하지 않는지에 관한 항소는
- 연대 협의회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결혼 축하

청원자: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조직: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은 결혼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성경적 결혼에 대한 기술은 유익하고 명확합니다. "...로 이해된다"는 말은 결혼에 대한 이전의 정의와는 별개로 모호합니다. "일부일처"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제시된 감독과 집사목사의 자격을 반영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05.5를 수정합니다

5. 차별금지. 글로벌감리교회는 각 위원회와 기관에서 직원의 고용, 유지, 보수, 승진 및 퇴직 절차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합니다.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현재 또는 잠재적인 임신, 만성 또는 잠재적 불치병에
-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개인은 자신에게 할당된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증언의
- 일부분으로 교회에 고용된 개인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 및 도덕 표준에 동의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 아해되는 결혼 생활의 신실함, 또는 독신의 순결을 포함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동일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 증언의 일부로서, 교회에 고용된 개인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및 도덕 기준에 동의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 일부일처제 결혼 생활에서의 신실함 또는 독신으로서의 순결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 합니다.

연대 협의회 공개 회의

청원자: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조직: US: Great Lakes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일반적으로 공개 회의는 투명성과 신뢰를 증진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공개 회의는 의심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 437.3은 지역 교회 단체에 "공개 회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총회 위원단과 연대 협의회에는 이 원칙 적용이 간과 되어 있습니다.

조직:

총회 대표단 (미국: 대호수 지역)

본문:

¶ 807.1.a 추가를 제안합니다

- 1 a. 공개 회의 및 회의록. 연대 협의회 모든 회의는 공개 회의이며, 비밀이 아닌 모든 토론에 관한 회의록이 정기적으로
- 2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위원회가 인사, 법률 또는 계약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
- 3 과반수가 해당 특정 비밀 사항을 다루는 시간 동안에만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회의를 일시적으로
- 4 비공개로 전환하는 투표는 공개 세션에서 실시하며, 그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비공개 세션은 가능한 한
- 5 드물게 사용해야 합니다.

연대 협의회에 대표되어 있는 신규 - 연대 위원단들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연대 협의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 연대 협의회에는 네(4) 개의 연대 위원단들만이 대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대 협의회는 한(1) 개의 추가적인 위원단의 참석과 의견을 원합니다. 이 변경으로 연회 위원단의 대표가 추가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2를 수정합니다

- 2.a. ~~¶ 808-811에 명시된 각 연대위원단은 감독이 아닌 목회자 한 명과 평신도 한 명을 선출하여 연대협의회에서~~
- ~~위원단을 대표하도록 한다. ¶ 808-811 및 ¶ 814에 명시된 각 연대 위원단들은 감독이 아닌 목회자 한 명과 평신도 한~~
- ~~명을 선출하여 연대 협의회에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위원은 총회 후 첫 번째 위원단 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위원단의 위원 자격이 종료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결원이 발생한~~
- ~~경우 위원회에서 후임 위원을 선출합니다.~~

청원 - 800번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본 청원은 2024년 소집 총회에 대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2.c를 수정합니다

- c. 총회는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채택된 함께하는 삶의 조직과 연약 계획에 따라, 그리고 교리와. 장정(¶ 803)에
- 명시된 바와 같이 2026년 총회부터 목회자 4명과 평신도 4명을 선출합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 2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선출된 이들은 6년의 기간 동안 또는 다음 총회에서 후임자가
-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공석이 발생할 경우 연대 협의회가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연대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공석 충원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 교리와 장정에는 연대상소협의회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대체위원 자리를 충원하는데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공석 채우기에 관한 지침도 미비합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공석을 채울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4.1, ¶ 920.2, 및 ¶ 605.3,을 수정하고 새 하위 항 ¶ 605를 추가합니다

1 4. 연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2 1.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연대위원단 위원의 공석을 해당 연대위원단의 공천을 받아 채웁니다.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3 연대위원단, 글로벌 감독위원회, 그리고 연대상소협의회 대체 위원의 공석을 채웁니다. 연대위원단들은 자체 위원단에
4 봉사할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연대협의회의 심의와 선거를 통해 결정됩니다.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자체
5 위원회에 봉사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연대 협의회의 심의와 선거를 통해 결정됩니다. 감독회는
6 연대상소협의회의 대체 위원으로 봉사할 개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연대 협의회의 심의와 선거를 통해 결정됩니다.

7 ¶ 920. 멤버십

8 2. 대체자. 목회자와 평신도는 향후 6년 임기 동안 연회대상소협의회에서 재임할 수 있는 수와 동일한 수의 교체 위원으로
9 선출되어야 합니다. 협의회의 위원 유고시에는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위원이 협의회 회기 동안 해당 역할에 임해야
10 합니다. 협의회 위원이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범주에서 다음으로 선출된 대체위원이 임기 잔여
11 기간을 채우며, 해당 임기는 최대 임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된 대체자 풀이 셋 이하로 줄어든 경우, 감독회는
12 연대상소협의회의 대체 위원으로 봉사할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연대 협의회의 심의와 선거를 통해 결정됩니다.

13 ¶ 605. 글로벌 감독위원회.

14 3. 글로벌 감독위원회 위원이 교단의 감독으로 지명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글로벌 감독위원회에서의 시무는 감독으로
15 지명되는 즉시 종료된다.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그 사람의 남은 임기 동안 봉사할 목회자를 선출한다.

16 605항 아래 신설 단락.

17 공석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적당한 목회자 또는 평신도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는 연대
18 협의회의 심의와 선거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교회 전체 예산의 90퍼센트 한도 제거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글로벌 감리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웨슬리안 교단으로, 사역이 전 세계에 걸쳐 확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연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다양한 맥락/내용/컨텍스트의 교회, 회중을 섬기는 데 있어, 신실하고 유연한 재정적 청지기 정신은 필수적입니다. 연대 기금은 개체 교회들이 세계 교회의 사역을 진전시키기 위해 주어진 관대함을 반영하는 것이지, 과도한 적립금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90% 예산 상한(ceiling)이 있으면, 사역을 위해 맡겨진 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연대 기금에 대한 완전한 접근은 모든 헌금이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고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4.d를 수정합니다

- 1 4. 연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 2 ...
- 3 d.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와 방향에 따라 매년 총회의 예산을 수립하되, 각 연도 예산은 직전 2년간 총회의 연대 사역헌금
- 4 평균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나, 2025년 예산은 2024년 총회의 연대 사역헌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총회가
- 5 제공한 우선순위와 지침에 따라,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단(FAPBC)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총회 예산을
- 6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교회 전체 예산을 수립할 때 연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7 교회 전체 예산을 수립할 때 연대 협의회와 FAPBC(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단)은 아래의 재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 8 권고해야 합니다:
- 9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보증할 수 있는 책임감.
- 10 글로벌감리교회의 연대 전반에 걸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투명성.
- 11 교회 선교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개체교회 중심.
- 12 연회와 개체 교회의 사역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첩하고 간결한 연대 단체 구조를 유지합니다.
- 13 사역이 제한되지 않고 번창할 수 있게하는 제한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

청원 - 800번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청원은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 대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4.(d)를 수정합니다

- (d)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와 방향에 따라 매년 총회 예산을 수립하되, 각 연도 예산은 직전 2년간 받은 총회 연대 기금
- 평균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25년 예산은 2024년 총회 연대 기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회의
- 예산을 수립할 때, 연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적 가치를 따릅니다:

연대 협의회의 교단 복지제도 역할 삭제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단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 사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4.(i)를 삭제합니다

- 1 재정·행정·연금·복지제도 위원단의 추천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금 및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 2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교단 복지제도에서 "연금"을 삭제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의 은퇴 복지제도는 실제 "연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금"이라는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지제도"라고만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은퇴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연대 협의회가 총회 직원에 대해서만 복지제도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4.(i)를 수정합니다

- 1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의 권장 사항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의 복지제도 프로그램의 변경을 평가하고
- 2 승인합니다. 재정·행정·연금·복지제도 위원단의 추천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금 및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 3 변경 사항을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 4 재정, 행정 및 복지제도 위원단의 권장 사항에 따라 총회 직원의 복지제도 및 정책의 변경을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글로벌의 일치, 지역의 융통성: ¶ 807.4.i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능은 더 지역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7.4.i를 삭제합니다

- 1 재정·행정·연금·복지제도 위원단의 추천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금 및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 2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의 유연성: ¶ 807.4.d.4-5의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문구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07.4.d.4 및 ¶ 807.4.d.5를 삭제합니다

- iv. 연회와 개체 교회의 사역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첩하고 간결한 연대 단체 구조를 유지합니다. v. 사역이 제한되자
- 않고 번창할 수 있게하는 제한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

왕국 확장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위원단은 왕국 확장 위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교리와 장정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2에서 해당 위원단이 따라야 할 "전략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위원단이 연대 협의회가 ¶ 807.4.b에 따라 개발하고 승인한 전략 계획임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전도자에 관한 설명이 선교사에 관한 설명보다 훨씬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 대부분을 삭제하면 선교사 섹션과 일치하게 됩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이는 왕국 확장 사역의 역할이 연회와 개체교회를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8를 수정합니다

- 1 ¶ 808. 전도, 교회 증식, 선교 동원, 재난 대응 위원단.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명의 위원과 위원장 및 해당 위원단에
- 2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된다. 이후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을 더한 최대 21명 이내의 위원 수를 제한하고,
- 3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위원단은 다음 사역 영역에서 전략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 연회 및
- 4 총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5 a. 전도. 전도를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모든 개인과 교회가 전도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 6 알도록 인도하고 교단 전체의 영적 갱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과 교회 모두를 훈련하고 준비시킨다. 이 위원단은 또한
- 7 (1) 전도자의 사역과 직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회에서 승인된 전도자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의 인증 기준을
- 8 수립하고, (2) 전도 사역에 파송된 이들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조와 정책을 제안하고,
- 9 그들이 전문직 및 목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 감독, 연회, 개체교회에게 이렇게 임명받은 이들을 위해
- 10 설명하고 후원하며, (4) 전도자로 파송된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계속 교육 기회를 발굴하고, (5) 다른 기독교 신앙 공동체,
- 11 전도단체, 대학, 신학교 및 연회와 협력하여 전도자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공유합니다.
- 12 b. 교회 증식.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 개척과 배가를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제공하며, 감독들, 연회 지도자들과,
- 13 개체교회들과 협의하여 교회 개척과 배가를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교회 개척자를 발굴·모집·훈련하며, 교회의
- 14 개척과 배가를 장려합니다.
- 15 c. 선교 동원. 개체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향한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돕고, 언어적·국가적·지리적
- 16 경계를 넘어 제자들을 배가하는 적극적인 선교 참여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지방교회들을 준비시키는
- 17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사역 및 전략적
- 18 파트너들과 개체교회·지방회·연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선교사 사역과 직무를 위한 파송 기준을 개발하여
- 19 연회가 GM 교회 선교사들을 모집·훈련·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감독·연회 지도자·교회·선교 파트너들과
- 20 협의하여 전략적 선교 동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영적·육체적 필요를 모두 다루는 총체적 선교 전략과 복음 중심의
- 21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합니다.
- 22 d. 재난 대응. 연회 내 재난 대응, 구호 및 복구 사역의 개발을 조정하고,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 23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장비를 갖추며, 연회의 자원과 확장된
- 24 글로벌감리교회 연대의 도움으로 개체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대응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응
- 25 서비스 배치에 협력한다.

26 e. 전도, 교회 배가, 선교 동원,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연대협의회가 위임한 기타 책임들을 수행합니다.

27 ¶ 808. 왕국 확장 위원단

28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명의 위원과 위원장 및 해당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된다. 이후 위원회는 위원장과
29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을 더한 최대 21명 이내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0 2. 이 위원단은 연대협의회가 개발하고 승인한 전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역 분야에서 개체교회, 연회, 그리고
31 총회에 자원을 제공합니다.

32 전도. 개인과 회중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고 교단 전반에 걸쳐 영적 쇠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도에
33 관한 자원을 개발하고 추천하며, 모든 개인과 교회가 전도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킵니다. 이
34 위원회는 또한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를 위한 전도 사역과 직무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그러한 임무에 임명된 이들을 위해
35 감독, 연회, 그리고 개체교회에게 설명하고 후원합니다.

36 교회 증식.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 개척과 배가를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제공하며, 감독들, 연회 지도자들,
37 개체교회들과 협의하여 교회 개척과 배가를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교회 개척자를 발굴·모집·훈련하며, 교회의
38 개척과 배가를 장려합니다.

39 선교 동원. 개체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향한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돕고, 언어적·국가적·지리적 경계를
40 넘어 제자들을 배가하는 적극적인 선교 참여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개체교회들을 준비시키는 자원과
41 훈련을 제공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파트너들과
42 개체교회·지방회·연회 간의 연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선교사 사역과 직무를 위한 파송 기준을 개발하여 연회가 글로벌
43 감리교회 선교사들을 모집·훈련·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감독·연회 지도자·교회·선교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44 전략적 선교 동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영적·육체적 필요를 모두 다루는 총체적 선교 전략과 복음 중심의 지역사회
45 개발을 촉진합니다.

46 재난 대응. 연회 안에서 재난 대응, 구호, 회복 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연회들과 협력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47 지역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자격부여·지원·장비할 수 있는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
48 감리교회 재난 대응 파트너들과 개체교회·지방회·연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며, 연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응
49 서비스를 배치하는 데 협력하되, 연회와 확장된 GMC 연결망, 승인된 재난 대응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개체교회와
50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대응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1 연대협의회가 위임한 전도, 교회 배가, 선교 동원, 재난 대응 그리고 기타 책임들과 관련된 책임들을 수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도달하지 못한 종족 집단에 대한 지속적 헌신

청원자: John Lomperis

조직: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도달하지 못한 종족 집단(UPGs)이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의 중요한 상설 우선순위로 남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주요 선교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30억이 넘는 인구가 거듭난 신자가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거의, 혹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민족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 수 없는 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곳이 복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의 지출 중 극소수만이 도달하지 못한 종족 집단에 할당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과 언어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모두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에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8.2.c를 수정합니다

1 2. 위원단은 다음 사역 영역에서 전략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 연회 및 총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2 ...

3 c. 선교 동원. 개체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향한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돕고, 언어적·국가적·지리적
4 경계를 넘어 제자들을 배가하는 적극적인 선교 참여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지방교회들을 준비시키는
5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사역 및 전략적
6 파트너들과 개체교회·지방회·연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선교사 사역과 직무를 위한 파송 기준을 개발하여
7 연회가 GM 교회 선교사들을 모집·훈련·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감독·연회 지도자·교회·선교 파트너들과
8 협의하여 전략적 선교 동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영적·육체적 필요를 모두 다루는 총체적 선교 전략과 복음 중심의
9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미전도 종족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며 그들 가운데 선교를 증진합니다.

10 ...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08c의 일부와 ¶ 808d 전체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고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위에서 삭제된 기능들은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더욱 지역적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본문:**본 청원은 ¶ 808.2.c를 수정하고 ¶ 808.2.d를 삭제합니다**

- 1 c. 선교 동원. 개체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향한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돕고, 언어적·국가적·지리적
- 2 경계를 넘어 제자들을 배가하는 적극적인 선교 참여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지방교회들을 준비시키는
- 3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사역 및 전략적
- 4 파트너들과 개체교회·지방회·연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선교사 사역과 직무를 위한 파송 기준을 개발하여
- 5 연회가 GM 교회 선교사들을 모집·훈련·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감독·연회 지도자·교회·선교 파트너들과
- 6 협의하여 전략적 선교 동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영적·육체적 필요를 모두 다루는 총체적 선교 전략과 복음 중심의
- 7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합니다. d. 재난 대응. 연회 내 재난 대응, 구호 및 복구 사역의 개발을 조정하고, 재난의 영향을 받은
- 8 지역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장비를 갖추며,
- 9 연회의 자원과 확장된 글로벌감리교회 연대의 도움으로 개체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대응 활동을 주도할
- 10 수 있도록 대응 서비스 배치에 협력한다.
- 11 c. 선교 동원. 지역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위한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더욱 심화하고, 전 세계의 언어적, 국가적, 지리적
- 12 경계를 넘어 제자를 배가하는 적극적인 선교 참여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지역 교회에 자원과 훈련을
- 13 제공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지역 교회, 지구/지방, 연회 간의 연결과 파트너십을 증진합니다.

글로벌의 통합, 지역의 유연성: ¶ 808.2.A.1-5 및 ¶ 808.2.b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의 기능들은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보다 지역적 차원의 수준에서 가장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8.2.a.1-5 및 ¶ 808.2.b를 삭제합니다

- 1 (1) 전도자 사역과 직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교회에서 승인된 전도자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증서/자격증을
- 2 인증하며, (2) 전도 사역에 파송된 이들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정책을 제안하며, 그들이
- 3 전문적 및 Pastoral 자원을 받게 하며, (3) 감독, 연회, 교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파송된 이들을 위해 해석하고 위하여
- 4 후원하며, (4) 전도자로 파송된 이들을 위해 양질의 계속 교육 기회를 발굴하고, (5) 다른 기독교 신앙 공동체, 전도 조직,
- 5 대학, 신학대학원, 회의와 연계하여 전도자들을 위한 비전과 기회를 공유합니다.
- 6 b. 교회 증식.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 개척과 배가를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제공하며, 감독들, 연회 지도자들,
- 7 개체교회들과 협의하여 교회 개척과 배가를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교회 개척자를 발굴·모집·훈련하며, 교회의
- 8 개척과 배가를 장려합니다.

신설 위원회: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역 위원회

청원자: Ronald Tool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Destin / 데스틴 (미국: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은 현재 왕국 진전(그 주된 목적에 전도, 제자도, 교회 배가가 포함됨) 안에 위치하며, 사역의 이러한 분야에 참여할 때 지역 교회와 연회의 필요를 구현하고 지원하는 것 모두와 관련하여 이 분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필요에 전념하는 더욱 직접적이고 독특하게 집중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 넓은 왕국 진전의 목표들과 일치하며 때로는 복음을 나누고 교회 개척 노력들을 지원할 기회들을 만들지만, 이러한 독특한 사역들은 중대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여 구체적인 봉사 활동들을 통해 복음을 나눕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08을 수정하고 새 ¶ 809를 추가합니다

- 1 ¶ 808. 전도, 교회 증식, 선교 동원, 재난 대응 위원단. 전도, 교회 증식 및 선교 동원 위원회.
- 2 위원단은 다음 사역 영역에서 전략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 연회 및 총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3 재난 대응. 연회 내 재난 대응, 구호 및 복구 사역의 개발을 조정하고; 훈련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하며, 재난의
- 4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장비 갖추게 하며; 대응 서비스 배치에 협력하여 지역
- 5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지역 사회를 위한 대응 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이는 연회와 확장된
- 6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의 지원을 받습니다.
- 7 **¶ 809.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대응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역 위원회.**
- 8 본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온 연회 재난 구호 코디네이터 및/또는 연회 재난 구호 팀 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역 교회와
- 9 연회에 행정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6년 임기 또는 총회 한 번의 임기를 위해 봉사할 의장, 부의장, 비서를
- 10 선출하며, 회원들은 두 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봉사할 수 없으며, BODD(교리와 권징의 책)에서 달리 안내하는 바에
- 11 따릅니다.
- 12 지역 교회와 연회를 통해 글로벌 감리교회의 재난 대비, 대응, 구호, 복구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역의 개발 및 구현을
- 13 조정합니다.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훈련, 자격 심사, 자원 제공 및 장비를 제공하여 재난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영향을
- 14 받은 지역 사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대응 서비스의 협력적 배치를 촉진하여, 지역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
- 15 내에서 대응 노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통합된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대응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역
- 16 위원회를 통해 연회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연대 협의회에서 할당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 17 추가적인 책임을 수행합니다.
- 18 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법적 비영리 지위를 확립하고, 지역,
- 19 주, 국가 및 국제 VOAD(재난 활동 자원봉사 조직)에서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정부 요구 사항과 일치시키고, 재난 구호 및
- 20 인도주의적 지원에 특화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어 글로벌 연대 전반에 걸친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에 자금을
- 21 조달합니다.
- 22 본 사역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재정 지원은 지역 교회, 연회, 개인 기부자 및 민간 부문 지원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23 공헌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경우 정부 보조금을 통해 제공됩니다.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09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09의 기능들은 모호하거나, 글로벌 감리교회 내 보다 지역적 차원과 감독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09 전체를 삭제합니다

제자도, 교리 및 윤리 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원자: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정의'는 기독교 윤리라는 더 큰 주제에 속하는 주제이며, 교회로서 우리는 앞으로 다루어야 할 복잡한 윤리적 문제와 도덕적 혼란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기독교 윤리'라는 주제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제자를 양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단지 사역 활동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자료를 제공하고 감독회를 도와, 글로벌 감리교인들을 모든 정의로 인도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 809의 제목을 수정하고 ¶ 809.2.c를 대체합니다

- 1 ~~¶ 809. 제자도, 교리, 정의 사역 위원회.~~
- 2 ¶ 809. 제자도, 교리 및 윤리 위원회.
- 3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명의 위원과 의장, 그리고 해당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됩니다. 그 후 위원회는 의장과
- 4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 외에 최대 21명의 위원 수를 제안해야 하며, 이는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2. 이 위원단은 개체 교회, 연회, 총회가 이러한 사역 영역의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6 제자도. 수업, 밴드 및 기타 소그룹과 같은 제자도 프로그램, 지도자 훈련, 그리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체 교회와 전체
- 7 교회가 사용할 예배 예식 및 순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 교회의 모든 계층에 있는 개인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 8 격려하고 지원하며, 전반에 걸쳐 인종, 부족, 성별, 언어의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 9 교리.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일치하는 전례 자료의 사용을 통해 우리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 10 이해를 높이고, 교리문서의 개정을 연구하고 제안하며, 다른 기독교 교단과의 에큐메니칼 참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11 윤리. 개인과 교회가 '우리의 사회적 증언'과 모든 개인의 신성한 가치 및 평등에 대한 약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의롭게 살
- 12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위원회의 업무에는 가르침, 훈련 자료 및 정책 개발이 포함되며, 이는 성경적 정의의 비전을
- 13 표현하는 것입니다. (¶ 805.4 참조). 위원회는 연회와 지역 교회가 성경과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에
- 14 뿌리를 둔 교회의 사회적 증언에 참여하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 15 제자훈련, 교리, 정의 사역과 관련하여 연대협의회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한다.
- 16 장정의 다른 모든 관련 조항에 기재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승인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은 507.2항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0.2.a 및 ¶ 810.3.b.(2)를 수정합니다

- 1 목회 자격 증명.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 2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연회 안수 위원회에 자원을
- 3 제공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배경 평가를 보장하고, 추천 교육 기관으로 신학교를 승인합니다. 총회가 다양한
- 4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 5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연회 사역위원회에 자원을 제공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 6 및 배경 평가를 보장하고, 507.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안수를 위한 학교 및 프로그램을 승인합니다.
- 7 해당되는 경우 북미신학대학협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및/또는 북미 성경 고등 교육
- 8 협회(Association of Biblical Higher Education) 또는 기타 승인된 동등 인증 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9 해당되는 경우 학교가 북미신학대학협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및/또는 북미 성경 고등 교육
- 10 협회(Association of Biblical Higher Education) 또는 기타 승인된 동등 인증 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함.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

청원자: 목회 및 고등 교육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개정안은 위원단의 범위 내에 글로벌의 신학 교육을 통합하며, 전 세계적 시행을 위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위원단, 승인위원회 및 자문그룹 간의 역할과 책임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본 개정안은 인가, 교과 과정, 평신도 및 목회자 훈련 경로에 관한 용어를 표준화하며, 사역 자격 증명과 신학 교육을 정합시키며, 신학 교육 자문위원회(TEAC)와 같은 자문 구조를 통합합니다. 또한 기관 인준, 검토 절차, 전세계적인 인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 810 및 모든 하위 항을 수정하고 ¶ 810.4 및 ¶ 810.5를 추가합니다

- 1 ¶ 810. 안수(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
- 2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명의 위원과 의장, 그리고 해당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 3 위해 신학 고등교육 기관의 임원급 또는 전임 직원이나 재단 이사는 위원단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승인위원회의 의장은
- 4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선출된 위원이 추가하여 위원단의 위원으로 봉사합니다. 그 후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에 배정된
- 5 감독을 더한 최대 27명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2. 이 위원단은 개체 교회, 연회, 총회가 이러한 사역 영역의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7 2. 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사역 분야에서 개체교회, 연회, 그리고 교단을 섬겨야 합니다:
- 8 a. 사역 인증.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양성을
- 9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연회 안수 위원회에 자원을 제공하며,
- 10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배경 평가를 보장하고, 추천 교육 기관으로 신학교를 승인합니다.
- 11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양성을 위한 교육
- 12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승인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에 자원을 제공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 13 배경 평가를 권고하고, 신학교와 신학 교육 기관을 승인합니다.
- 14 b. 고등 교육. 교회와 관련된 고등 교육 기관 내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격려함으로써 “지식과 활력있는 경건”을 하나로
- 15 통합하고, 그러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전 세계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웨슬리안 신학적 관점을 갖춘 기독교
- 16 대학과 신학교의 설립, 성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17 사역에의 부르심이 곧 고등 교육에의 부르심임을 인식함으로써 "지식과 활력 있는 경건"의 통합을 돕습니다. 이 통합은
- 18 교회와 연계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격려하고, 이러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전 세계 특히 소외된
- 19 지역에서 웨슬리안 신학적 관점을 갖춘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의 설립, 성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20 c. 공인 평신도 사역자. ¶ 405에 명시된 대로 연회 평신도 사역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과 지침을 수립합니다.
- 21 e. d. 사역 인준 채플린 등 비교회 사역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수립 및 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훈련

22 프로그램을 평가 및 승인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교회 사역을 위한 후보자를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며, 그 사역에 종사하는
23 자들을 지원합니다.

24 채플린 사역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교회 사역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검토 및 승인하고, 이러한 기준과 자격을 충족하는
25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 및 승인하며, 이러한 사역에 종사할 사람들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며, 비교회 사역에 종사하는
26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27 e. 목회자 훈련 기금. ¶ 511에 명시된 대로 기금의 배당, 배분, 배급 및 배포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수립합니다.

28 df. 목회 및 고등 교육에 관련하여 연대 협의회가 부여하는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29 3. 승인 위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은 글로벌 감리교회 안수 후보자를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의 승인을 위원단에
30 권장할 승인위원회를 임명합니다. 승인은 학위 및 비학위/자격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되며, 총회의 매 정기 회가 후
31 갱신됩니다 승인은 학위, 비학위 및 증서 프로그램(¶ 507.2.c.에 정의됨)에 적용되며 총회의 매 정기 회기 이후에
32 갱신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학교는 매 7년에 한번씩 검토를 거쳐야 한다.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은 위원단의 권장 사항에
33 따라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학교는 승인 신청을 초대받거나, 안수 위원회의 승인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34 승인을 요청하는 학교는 승인위원회가 추천하고 위원단이 승인한 기침인과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35 a. 승인위원회는 감독 1인과 장로목사, 집사목사, 평신도로 구성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이어야
36 한다. 이 위원회에는 다양한 국제적 맥락과 다양한 학술 기관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에는 다양한 국제적 맥락과
37 다양한 학술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신학 고등 교육 기관의 직원이나
38 이사진은 승인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39 b. 승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평가 과정 개발 및 개선. ¶ 507.2.c에 기술된 목회자 자격 심사를 위한
40 교육 과정, 즉 학위, 증서/교과 과정 프로그램 및 글로벌 감리교회 사역 학교에 적용되는 목회자 신학 교육을 위한 글로벌
41 표준을 인정하는 평가 과정을 개발하고 개선합니다. (b) 해당되는 경우 북미신학대학협회 및/또는 성경고등교육협회 또는
42 기타 승인된 동등 인증 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기관 소재지에 따라 인정받은 인가 기관의 승인을
43 확보하도록 합니다. (c) 각 학교가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우리 교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믿음을
44 고백하는 후보자를 배출하도록 보장합니다. (d) 평가 후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일. (e) 승인,
45 우려 사항이 있는 승인 또는 삭제 권고 사항과 함께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승인, 잠정
46 승인 또는 승인 취소 권고와 함께 위원단 및 고등 교육 위원단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f) 특정 기관의 과정이
47 ¶ 507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원회는 연회 사역위원회와 협력하여 목회 훈련을 위한
48 역량과 과정을 추천하고, 승인된 학위, 증서/교과 과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이 기준들은 매년 글로벌의
49 감리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50 c. 승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감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승인위원회는
51 위원회의 의장 또는 감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안수
52 후보자 교육 승인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모든 요청 또는 권장 사항을 고려합니다. 승인된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려
53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교육 또는 안수 후보자 교육 기관으로 승인을
54 받고자 하는 학교로부터의 요청이나 권고 사항을 검토합니다. 승인된 학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55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언제든지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단에 권고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6 다. 각 승인된 신학교육 기관의 CEO(총장 또는 학장)는 승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CEO는 자신을 대신할
57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두 번 모여 도전과 기회, 우려 사항에 대해 상호 및 승인위원회 회원들과
58 논의합니다.

59 4. 신학 교육 자문위원회(TEAC). 완전히 승인받은 각 신학 교육기관의 대표이사(총장 또는 학장)는 위원단 및
60 승인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CEO는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최소 연 1회
61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교육자문 위원회(TEAC)는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최대 연속 2회까지 연임할 수
62 있습니다.

63 5. 글로벌 교육위원회.글로벌 교육위원회는 전 세계 지역에 걸쳐 웨슬리안 신학 교육을 장려하고 연결하며, 글로벌
64 감리교회의 사명과 신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 훈련의 일관된 기준을 보장합니다.

사역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목회와 고등교육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승인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은 507.2항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0.2.a를 수정합니다

- 1 2.a. 목회 자격.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 2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연회 안수 위원회에 자원을
- 3 제공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배경 평가를 보장하고, 추천 교육 기관으로 신학교를 승인합니다.
- 4 2.a. 목회 자격.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 5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연회 안수 위원회에 자원을
- 6 제공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배경 평가를 보장하고, 안수를 위해 507.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및
- 7 프로그램을 승인합니다.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10.2a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10.2a의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며,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더 지역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0.2.a 전체를 삭제합니다

- 1 a. 사역 인증.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양성을
- 2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연회 목회위원회에 자원을 제공하고, 후보자에
- 3 대한 적절한 심리 및 배경 평가, 추천 교육 기관으로 신학교 승인 등을 수행한다.

승인 절차에서 목회와 고등교육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승인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은 507.2항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0.3.b.(2)를 수정합니다

- ¹ b. (b) 관련될 경우, 북미 신학교 협회 및/또는 북미 성경 고등 교육 협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승인받은 인증 기관의 승인을
- ² 받도록 보장함,
- ³ b. (b) 관련될 경우, 학교가 북미 신학교 협회 및/또는 북미 성경 고등 교육 협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승인된 인증 기관의
- ⁴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함.

글로벌 일치와 지역적 유연성: ¶ 810.3 - 승인 위원회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10.3의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더 지역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0.3 전체를 삭제합니다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 역할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위원단의 역할은 현재 미국 중심적이며, 50개국 이상에 걸친 교회의 복지제도를 감독할 수 없습니다. 현행 미국 기반 시스템이 "연금"이 아니므로 "연금"을 제거하며, 또한 "복지제도"가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은퇴 급여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복지제도"로 대체합니다. 2번 항목에서는 위원단이 따라야 할 "전략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 807.4.b에 따라 연대 협의회가 개발하고 승인한 전략 계획임을 명확히 하며, 현재 2.b에는 FAPB가 전 세계 개체교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FAPB는 총회의 법률 사안만을 담당해야 합니다. FAPB의 급여 관련 역할은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11을 수정합니다

- 1 ¶ 811. 재정, 행정, 복지제도 위원단.
- 2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명의 위원과 의장, 그리고 해당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됩니다. 그 후 위원회는 위원장과
- 3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을 더한 최대 27명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2. 이 위원단은 연대협의회의가 개발하고 승인한 전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역 분야에서 개체교회, 연회, 그리고
- 5 총회에 자원을 제공합니다.
- 6 a. 재정. 감독회, 위원단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단의 재정 및 수탁자 업무를 감독하여, 모든 단체의 구체적인 지출과
- 7 수입을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감독회와 각 위원단의 재정에 대해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교단이 받은 모든 수입을
- 8 징수 및 배분하고, 매년 교단을 위한 예산을 연대 협의회에 추천함으로써 그 무결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 9 b. 법률 고문. 교단의 법률 업무를 관리하고, 교단 소유의 모든 소유재산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를 제공합니다.
- 10 c. 기록 보관소 및 역사. 글로벌 감리교회의 기록 보관소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 11 7:12, 개역한글)이란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역사 연구를 장려합니다.
- 12 d. 통계. 회원, 사역,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교인들의 참여와 관련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통계를 수집하고, 공개하며,
- 13 그 해석을 돕습니다.
- 14 e. 복지제도. 연회와 개체교회에 목회자 및 평신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 프로그램(예: 은퇴, 보험, 장애 등)에 대한 권장
- 15 사항을 제안합니다. 또한 연대 협의회에 교단 직원을 위한 복지제도 프로그램의 권장 사항을 제안하며, 연대 협의회가
- 16 승인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 17 f. 재정, 행정,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연대 협의회의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을 위한 연금과 복지제도

청원자: Wilton Odongo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미국 외 국가에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 연회의 대다수는 극도로 빈곤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급여/사례비는 가족, 사역, 건강 관리를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의료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그들의 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의 관련 연금 및 복지제도 지원을 통해, 희생적으로 섬기는 이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은퇴 후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청원은 미국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전제를 두지 않으며, 단지 미국 외 지역의 은퇴자들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11.2.f를 추가합니다

- 1 2. 이 위원단은 개체 교회, 연회, 총회가 이러한 사역 영역의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f. 미국 외 지역 목회자를 위한 복지제도. 감독회, 관련 총리사 및 연회 간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해당
- 3 조항이 미비한 미국 외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을 위한 연금 및 건강 복지제도를 확보하는 절차를
- 4 수립한다. 이 절차는 해당 지역의 준거법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야 하며, 다른 글로벌 교회 기구들의 최고의
- 5 실행에 대한 연구, 공휴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 개발, 그리고 이자와 투자를 통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현지
- 6 공헌 및 건전한 재정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 7 사.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연대 협의회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총회 행정 위원회 추천자 제한 해제 청원

청원자: General Conference Commission

조직: Global Methodist Church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행정 위원회 멤버십을 이전 총회 대의원들로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은 새로 구성된 연회에 불이익을 줍니다. 이는 또한 새롭게 선출된 젊은 지도자들이 중요한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직:

총회 위원단

본문:

812.2g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g) 총회를 위한 행정 위원회의 수를 정하고, 해당 행정 위원회에서 봉사할 이전 총회 대표자를 지명하여 연대 협의회에서
- 2 선출합니다.
- 3 (g) 총회를 위한 행정 위원회의 수를 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해당 행정 위원회에서 봉사할 대표들을 지명하여 연대
- 4 협의회가 선출하도록합니다.

총회 위원단 역할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2.e, f, g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두 번의 총회 동안 조직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직 계획 관련 한 줄로 통합해야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2.2.(e), ¶ 812.2.(f), 및 ¶ 812.2.(g) 및 다음으로 대체 새 ¶ 812.2.(e)를 삭제합니다

- 1 입법위원회의 수와 해당 위원회에 입법 자료를 배정하는 절차를 연대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2 총회에 '함께하는 삶을 위한 조직 계획 및 연약' 개정안을 추천합니다.
- 3 총회를 위한 행정 위원회의 수를 정하고, 해당 행정 위원회에서 봉사할 전 총회의 대의원을 지명하여 연대 협의회에서
- 4 선출합니다.
- 5 조직 계획과 우리의 공동 생활 언약에 대한 수정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입법 위원회의 수와 해당 위원회에 입법 자료를
- 6 배정하는 절차, 그리고 총회의 행정 위원회 수와 그 구성원 선출 절차를 포함합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청원자: Ecumenical Relationships Commission

조직: Global Methodist Church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글로벌 감리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활동이 명시된 사명과 더 잘 일치하도록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활동이 그 한 예입니다. BoDD에 표현된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초기 비전은 칭찬할 만하지만 글로벌 감리교회의 기본 단위로서 개체 교회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단은 협의회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조하거나 교파에 기반한 언약을 맺는 것보다 개체 교회들이 지역 사회의 다른 교회들과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맺도록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자 이 청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본문:

¶ 813.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1. 글로벌 감리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교단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모든 제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 긴밀한 교제를 추구하도록 강권합니다. 지역 및 세계적으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유다서 1:3)에 헌신하는 기독교 교단은 예배, 전도, 제자 양육 및 자비의 사역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를 기꺼운 동역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개체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기본 단위인 만큼, 우리는 지역 또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파트너십 구축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개체 교회가 그들의 지역 사회 내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더 넓은 지역 사회에 유익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도록 장려하는 자원을 개발할 것입니다.
2. 매 총회 때마다 위원단의 의장인 감독을 제외한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모든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단의 의장은 감독회에서 임명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이 맡습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의장인 감독 외에 4명의 목회자와 4명의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는 의장인 감독 외에 5명의 목회자와 5명의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이들은 2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하며, 2026년 총회에서 재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총회부터 각 임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선출될 경우 두 번째 6년 임기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각 임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선출될 경우 두 번째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3.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그 사역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도덕 원칙 및 정치 체제를 특별히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그 파트너십과 교육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도덕 원칙 및 정치 체제를 특별히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4.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원 자격에 관한 권고안을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다른 기독교 단체의 협의회, 네트워크 또는 연합체,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연합체와의 언약, 그리고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단체와의 유기적 연합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신학적 역사와 정치 체제에서 공통된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웨슬리안 및 감리교 그룹과의 더 큰 일치치를 도모하기 위해,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다른 기독교 단체의 협의회, 네트워크 또는 협회에 가입하는 것, 다른 기독교 교파 또는 교회 연합과 협약을 맺는 것, 그리고 다른 기독교 교파 또는 그룹과의 잠재적인 유기적 연합에 관한 회원 자격에 대해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웨슬리안/감리교 조직에서 회원 가입이 권고될 경우, 이 권고는 총회 사이에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각기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회원들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26 총회에 비준을 위해 상정되어야 하며,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27 5. 글로벌 감리교회는 신학, 역사 및 정치 체제의 공통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웨슬리안 및 감리교 그룹과 더 큰 연합을
 28 촉진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영적 계승자들 간의 연합은 '연대적' 운동으로서 우리의 유산에
 29 뿌리를 둔 글로벌 감리교회의 깊은 희망이자 소망이며, 이는 교회와 연회를 협력 사역과 상호 격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30 다른 웨슬리안 그룹과의 긴밀한 관계는 세계 선교와 전도 기회를 증가시키고, 사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풍부하게 하며,
 31 자원과 전문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탐색합니다: (a)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원 자격. (b) 다른
 32 웨슬리안-감리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유럽 감리교 협의회,
 33 글로벌 웨슬리안 연합, 범감리교 위원회와 같은 조직들입니다. 웨슬리안/감리교 조직에서 회원 가입이 권고될 경우, 아
 34 권고는 총회 사이에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각기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회원들의 단순
 35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총회에 비준을 위해 상정되어야 하며,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36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37 5. 6. 글로벌 감리교회는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연합체와의 연약 관계를 환영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교단 중심의
 38 언약보다는 지역적 파트너십을 더 강조합니다. 이러한 연약 관계를 설정하는 목적은 상호 기독교적 증거와 효과를
 39 강화하고, 어느 한쪽이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로의 확장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기독교 교단
 40 또는 교회 연합체와의 언약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여겨질 경우 그 목적은 상호 기독교적 증거와 효과를 강화하고, 어느
 41 한쪽이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로의 확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42 이러한 연약 관계에는 세례 및 안수 사역에 대한 상호 인정, 성찬식 교제, 치리화에서의 공동 대표, 그리고 공동 사역 및
 43 자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언약 교회로서의 공식적인 관계를 위한 대화를 진행할
 44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안은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각 회의는 출석 회원의 단순 과반수
 45 찬성과 유효한 투표를 통해 승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총회에 비준을 위해 상정되어야 하며, 출석하여 유효한
 46 투표를 한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언약에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미래의 글로벌 감리교회
 47 존재를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8 7. 6.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 또는 지정된 대표자는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연합체와의 연합과 관련된 대화에서
 49 글로벌 감리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한 연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0 (a) 선호하는 미래에 관한 비전 진술;

51 (b) 교리적 및 신학적 일치에 관한 진술; 및

52 (c) 연합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연회와의 협의 증거를 포함한 사역 통합 계획.

53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계획은, 총회 회기 사이에 비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
 54 교단이 신학적으로 웨슬리안 전통에 속할 때에는 감독회와 연대협의회 각각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표를 행사한 구성원
 55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표를 행사한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56 찬성으로 비준한다. 연합은 그러한 비준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른 교단은 본 문서에서 규정된 연합 계획이
 57 비준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자체의 치리 구조를 해산하기로 미리 의결했어야 한다. 교리와 장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58 계획이나, 신학적으로 웨슬리안 전통에 속하지 않는 교단과의 계획은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표를 행사한 대표자 4분의
 59 3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13.1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가에 일치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13.1의 문언은 불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3.1 전체를 삭제합니다

1. 글로벌 감리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교단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모든 제자가
- 2 "다 하나가 되어"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 긴밀한 교제를 추구하도록 강권한다. "성도에게
- 3 단번에 주신 믿음"(유 1:3)에 헌신하는 개체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 전도, 제자 삼가, 자비의 사역에 있어
- 4 글로벌감리교회에서 기꺼이 동참하는 동역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에서 불필요한 표현 삭제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소집 회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단락을 간결하게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3 대체하여 ¶ 813.2를 수정합니다

- 1 2. 각 총회는 위원단의 의장인 감독을 제외한 모든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구성원들을 선출합니다. 위원단은
- 2 감독회에서 파송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이 의장을 맡습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의장인 감독 외에 4명의
- 3 목회자와 4명의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이들은 2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하며,
- 4 2026년 총회에서 재선될 자격이 있습니다. 2026년 총회부터는 6년 임기로 선출되며, 당선될 경우 두 번째 6년 임기를
- 5 수행할 수 있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 6 2. 각 총회는 위원단의 의장인 감독을 제외한 모든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구성원들을 선출합니다. 위원단은
- 7 감독회에서 파송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이 의장을 맡습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의장인 감독 외에 4명의
- 8 목회자와 4명의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각 임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선출될 경우 두 번째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 9 있습니다. 2026년 총회 이전의 봉사는 6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 10 봉사합니다.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3.3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13.3의 문구는 명백하며 불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3.3 전체를 삭제합니다

3. 에큐메니칼 관계위원단은 그 활동에서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 도덕 원칙, 정치정체(정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단체를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웨슬리안/감리교 조직"이라고 간단히 언급하면 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3.5를 대체합니다

- 1 5. 위원회가 다음을 깊이 조사합니다:
- 2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원.
- 3 아시아감리교위원회, 유럽감리교위원회, 글로벌의 웨슬리안 연합, 범감리교 위원회 등과 같은 다른 웨슬리안/감리교
- 4 조직의 멤버십의 타당성.
- 5 5. 위원회는 웨슬리안/감리교 단체 가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3.5의 축소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항목은 ¶ 813.5에 불필요한 언어를 정리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3.5를 수정합니다

- 1 5. 글로벌감리교회는 신학, 역사, 정체의 공통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웨슬리언 및 감리교 그룹과의 연합을 증진하는 데
- 2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와 연회를 협력적 사역과 상호 격려로 연결하는 '연대적' 운동이라는 우리의 유산에
- 3 뿌리를 두고 있는 글로벌감리교회에게 요한 웨슬리의 영적 계승자들 간의 연합은 깊은 희망이자 소망이다. 다른 웨슬리언
- 4 그룹과의 긴밀한 관계는 세계 선교와 전도의 기회를 늘리고, 사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풍부하게 하며, 자원과 전문성을
- 5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a.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원. b. 아시아감리교협의회, 유럽감리교협의회, 글로벌의 웨슬리언 연합, 범감리교위원회와 같은 다른 웨슬리언/감리교 단체 가입의 타당성.
- 6 웨슬리언/감리교 조직에서 회원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는 감독회의와 총회 간 연대협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 7 하며, 각 총회는 출석하고 유효한 투표를 한 회원의 단순 과반수로 찬성 투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총회에
- 8 기준을 위해 상정되어야 하며,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 9
- 10 5. 글로벌감리교회는 신학, 역사, 정체의 공통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웨슬리언 및 감리교 그룹과의 연합을 증진하는 데
- 11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웨슬리언/감리교 조직에서 회원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는 감독회의와 총회 간 연대협의회에
- 12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각 총회는 출석하고 유효한 투표를 한 회원의 단순 과반수로 찬성 투표되어야 한다. 이러한
- 13 결의 사항은 다음 총회에 상정되어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용지를 제출한 델리게이트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비준되어야
- 14 합니다.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3.6에서 한 문장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 문장은 불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3.6 삭제하여 다음 내용 문장을 수정합니다

- 1 이러한 연합 관계를 맺는 목적은 상호 기독교적 증거와 효과를 높이고, 서로의 존재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지역이나
- 2 국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에서 연합 계획 과정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연합 계획 과정을 명확히 하고 연합 날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3.7.(c)를 수정합니다

1 7.

2 사역 통합을 위한 계획에는, 연합 계획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회와의 상담,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3 입증하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계획은 총회와 회기 사이에
4 감독회와 연대협의회(상대방이 웨슬리안 신학인 경우)에서 각각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5 찬성으로 비준하거나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연합은
6 그러한 비준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른 교단은 본 문서에서 규정된 연합 계획이 비준될 때 효력이
7 발생하도록, 자체의 처리 구조를 해산하기로 미리 의결했어야 한다. 교리와 장정 을 변경하거나 웨슬리 신학이 아닌 단체와
8 관련된 계획은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7.

10 사역 통합을 위한 계획에는, 연합 계획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회와의 상담,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11 입증하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의 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신학적으로 웨슬리안
12 전통에 속한 단체와의 연합 계획은, 총회 회기 사이에 감독회와 연대위원장 각각에서 출석하여 유효표를 행사한 회원의
13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되거나,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표를 행사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4 비준됩니다. 교리와 장정 을 변경하거나 웨슬리 신학이 아닌 단체와 관련된 계획은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15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은 그러한 비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는 상대
16 단체가 자체의 지배구조를 해산하기로 결의한 때에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연회 위원단 역할의 명확화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연회위원단은 기존 연회들에 대한 분할, 통합 또는 자격 박탈을 추천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4.3을 수정합니다

3. 연회 위원단은 새로운 연회의 설립과 기존 연회의 재조정, 부서, 합병 또는 자격 박탈을 권고합니다.

연회위원단 역할에서 불필요한 언어 삭제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하위 단락 6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 UMC 연회들에게 일정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떠한 종교 단체든—이전 UMC 단체를 포함하여—제5항의 규정에 따라 GMC에 가입할 수 있다.”

본문:

본 청원은 ¶ 814.6을 삭제합니다

- 1 6. 연합감리교회와 이전에 연합했던 연회나 그러한 연회의 목회자 및 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회위원단은 그러한
- 2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그러한 그룹이 글로벌감리교회의 일부로서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814.6의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14.6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4.6 전체를 삭제합니다

6. 연합감리교회와 이전에 연합했던 연회나 그러한 연회의 목회자 및 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회위원단은 그러한
-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그러한 그룹이 글로벌감리교회의 일부로서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연대운영책임자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개정안은 연대운영책임자의 의무와 임원이 감독회와 맺는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출 과정을 단순화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표현이나 세부사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감독회가 연대운영책임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가지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5 및 여러 하위 항, 및 ¶ 606.7을 수정합니다

- 1 ¶ 815. 연대 운영 책임자. 연대 운영 책임자는 모든 총회 아사회, 위원회 및 협의회가 총회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 2 함께 일하면서 총회의 모든 위원회와 협의회가 열매를 맺고 책임감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 3 연대운영책임자는 연대협의회와 총회 산하의 모든 위원단, 위원회, 협의회가 글로벌감리교회의 사명과 총회에서 채택된
- 4 모든 선교적 명령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할 때, 그것들이 열매 맺게 그리고 책임 있게 기능하도록 책임을 집니다.

5 1. 선택.

- 6 a. 연대 운영 책임자는 목회자 또는 일반인일 수 있습니다.

- 7 b. 필요에 따라 연대 협의회는 연대 운영 책임자의 직무 설명을 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자격을 갖춘 글로벌의
- 8 후보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직위를 공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 9 c. 협의회는 자격을 갖춘 많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직위 공고를 널리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10 d. c. 지원자 풀에서 협의회가 최소 세 명, 최대 여섯 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감독회에
- 11 전달해 심의를 요청합니다.

- 12 e. 감독회는 협의회가 전달한 후보자 가운데 면접할 후보를 선정합니다.

- 13 f. d. 감독회의는 자체적으로 선택한 절차(예: 합의, 단순 다수결, 3분의 2)에 따라 후보를 선출합니다. 감독회는
- 14 자체적으로 정한 과정에 따라 선출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 15 g. e. 감독회는 선정한 후보를 협의회에 알립니다. 감독회는 선정한 후보를 협의회에 알리고, 협의회 의장은 선정된
- 16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직책을 제안합니다.

- 17 h. 협의회 의장은 선정된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6년 계약서를 전달합니다.

- 18 i. 협의회는 연대운영책임자의 영입과정을 책임집니다.

- 19 2. 용어. 연대 운영책임자의 임기는 6년이며, 감독회와 합의회가 승인할 경우 추가로 6년 기간을 한 번 더 섬길 수
- 20 있습니다.

- 21 3. 성과 평가. 연대협약회의의 의장은 매년 연대 운영 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근거한 보고서를
22 작성한다. 협약회는 평가를 위해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 외부 인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23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대 운영책임자와 협약회에 전달됩니다. 연대 운영 담당자는 보고서에 추가할 자체 평가를 포함할
24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연대 협약회는 매년 연대 운영책임자의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 25 4. 직위 공석. 연대 운영책임자가 사임하거나, 중대한 질병, 승인된 휴직, 사망 또는 해임 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6 조치합니다:
- 27 a. 즉시 감독회의에 결원 사실을 알립니다.
- 28 b.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연대 운영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필요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운영책임자로
29 임명합니다.
- 30 c. 연대 운영책임자가 영구적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연대 운영책임자에게 ¶ 815.1의 조항을 적용 하고, 전임자의
31 잔여 기간에 대한 계약이 제시됩니다. 연대 운영책임자가 영구적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 ¶ 815.1 조항을 적용합니다.
- 32 d. 감독회와 협약회가 승인하면, 전임자의 기간 중 남은 잔여 연도를 모두 마친 후에 전체 6년 임기를 모두 수행할 수
33 있습니다. 감독회의 3분의 2 찬성과 협약회의 60퍼센트 플러스 1명의 찬성으로 둘째 추가 6년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34 5. 직위 해임. 연대 운영 담당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임의로' 고용된 직원입니다. 따라서 연대 운영책임자는 글로벌
35 감리교회가 설립된 주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경고 없이 연대 협약회의의 다수결 투표로 해임될 수
36 있습니다. 기독교 원칙과 윤리 기준에 따라, 연대 협약회는 연대 운영책임자 해임에 나서기 전에 업무 성과에 결함이 있을
37 경우 먼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약회는 금전적 보상과 비방 금지조항이 포함된 퇴직 계약을 제안할 수
38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책임자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설립된 주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연대
39 협약회의의 다수결 투표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 40 6. 책임과 의무.
- 41 a. 연대 협약회, 신규-연대 위원단들, 태스크 포스가 총회 사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42 책임감 있게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최고 운영책임자로 봉사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업과 총회의 선교적명령을
43 수행하기 위해 연대 협약회, 연대 위원단들, 위원회, 협약회의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 운영책임자로 봉사합니다.
- 44 b. 연대 협약회 의장과 비서와 협력하여 연대 운영책임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연대 운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45 연대협약회의 회의를 지원합니다:
- 46 i. 대면 회의의 장소를 포함하여 협약회의의 모든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 47 ii. 회의에 필요한 모든 항목(예: 의사일정, 회의록, 신고, 협약회 조치가 필요한 제안서 등)을 회의 최소 1주 전에 준비하여
48 협약회 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회의 최소 3일 전에 준비하여 협약회 위원들에게
49 전달합니다.
- 50 iii. 협약회의의 연례 보고서를 감독회에 제출하며, 매년 감독회에 출석하여 신고 개요를 설명하고, 총회의 비전과 교회에

- 51 대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선교명령의 이행 관련 안내 요청에 응답하고 질의에 답할 준비를 갖춥니다.
- 52 c. 연대 협의회, 감독회,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합니다.
- 53 d. 총리사 및 기타 연회 직원에게 필요시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 54 e. e.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모든 교회 임원급 직책을 협의회가 정한 제약과 절차에 따라 채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회와
 55 상담하여 총회 임원급 직원을 채용하고, 이 직원들을 감독하며, 해당 직책을 맡은 이들을 해임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 56 d.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대로 모든 전무 이사급 직책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57 e. 협의회와 협력하여 임원급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해임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 58 f. 모든 일반 교회 행정 직원의 채용, 배치 및 유지를 감독합니다. 총회 교회 직원의 채용, 배치, 유지를 감독합니다.
- 59 g. 정기적으로 총회 집행이사 회의를 소집하여 협의회 지시가 이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정기적으로 총회 직원과 이사
 60 회의를 소집하여 협의회 지시가 이행되도록 합니다.
- 61 h. 총회에서 승인한 연대 예산과 모든 재무 기록의 유지를 감독합니다. 연대협의회에서 승인한 연대 예산, 모든 재무 기록
 62 유지 및 총회 재정의 연례 감사를 감독합니다.
- 63 i. 모든 교회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연례 감사를 감독합니다.
- 64 j. i. 재정, 행정, 연금, 복지제도 위원단과 재정 책임 담당자와 협의하여 심의, 개정, 승인 대상인 총회 예산을 준비합니다.
- 65 k. j. 총회 사역 및 시설에 대한 계약 협상 및/또는 감독을 합니다.
- 66 l. k. 협의회와 총회 임원들을 인도하고, 2년에 한번 총회 위원단 및 이사회의 선교 열매를 검토,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67 관련 분야에 진행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협의회와 총회 임원들을 인도하고, 매년 총회 위원단의 선교 열매를 검토,
 68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에 진행 수정을 제안합니다.
- 69 m. l. 협의회와 상담하여 교리와 장정 및 시행 법률의 개정안을 총회에 건의합니다. 협의회와 함께 교리와 장정 개정 관련
 70 입법을 총회에 제출합니다.
- 71 n. 협의회와 상담하여 교회의 사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연구를 감독합니다.
- 72 ¶ 606. 감독회의 임시 감독을 포함한 감독들은 선출과 봉헌을 통해 감독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특별한 언약으로 함께
 73 묶여 있습니다. 감독회의는 감독 리더십의 공동체적 표현으로서 교회에 대해, 교회에서 세상에 대해 목회적으로
 74 발언합니다. 감독회의는 모든 현역 감독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75 ...

76 9.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할 연대 운영 책임자 지명. 연대 협의회가 ¶ 815.1에 근거해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연대
77 운영책임자를 선출합니다.

연대 운영 책임자의 역할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제5항에서는 미국 중심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위항목 6에서도 불필요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5.5 및 ¶ 815.6.(j)을 수정합니다

- 1 5. 직위 해임. 연대 운영 담당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임의로' 고용된 직원입니다. 따라서 연대 운영책임자는 글로벌
2 감리교회가 설립된 주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경고 없이 연대 협의회와 다수결 투표로 해임될 수
3 있습니다. 기독교 원칙과 윤리 기준에 따라, 연대협의회는 연대 운영 책임자의 해임을 추진하기 전에 성과에 결함이 있는
4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의회는 금전적 보상과 비방 금지조항이 포함된 퇴직 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5 6.
- 6 ~~재정, 행정, 연금, 복지제도 위원단과 재정 책임 담당자와 협의하여 심의, 개정, 승인 대상인 총회 예산을 준비합니다.~~
- 7 5. 직위 해임. 연대 운영 담당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임의로' 고용된 직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책임자는, 글로벌
8 감리교회가 법적으로 설립된 관할 지역의 적용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연대협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9 사전 경고 없이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원칙과 윤리 기준에 따라, 연대협의회는 연대 운영 책임자의 해임을 추진하기
10 전에 성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의회는 금전적 보상과 비방 금지조항이 포함된 퇴직 계약을
11 제안할 수 있습니다.
- 12 6.
- 13 재정, 행정, 복지제도 위원단과 재정 인도자와 협의하여, 심의, 개정 및 승인을 위한 교회 일반 예산을
14 준비합니다.재정·행정·복지제도위원단 및 재정 총괄이사과 협의하여, 심의·수정·승인을 위한 총회 예산안을
15 준비합니다.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15.1c 삭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15.1c는 불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5.1.c 전체를 삭제합니다

- 1 c.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많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채용 공고를 널리 게시할 책임이
- 2 있습니다.

투표 비율 간소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로버트의 회의 규칙 편집자들은 "플러스 원" 언어가 예상치 못한 계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 총 7표가 투표되었을 때 4표가 명백한 다수입니다. 그러나 "50% 플러스 1" ($50\% = 3.5 \sim \text{플러스 } 1 = 4.5$)는 5표(71%에 해당)를 요구하게 됩니다. 60% 다수결 투표의 경우: 7표가 투표되었을 경우 60%는 4.2이므로 5표면 충분합니다. 기준값이 "60퍼센트 ... 플러스 1"이라면, 4.2에 1을 더하면 5.2가 되므로, 필요한 표 수는 6표가 됩니다. 이것은 곧 85퍼센트의 찬성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기준을 60퍼센트 또는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플러스 원(plus one)"이라는 표현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815.4를 개정합니다

- 1 감독회와 협의회에서 승인하면 전임자의 임기 잔여 연수를 모두 채운 후 6년 임기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2 감독회 3분의 2 찬성과 협의회 60퍼센트 플러스 1 찬성으로 두 번째 추가 6년 임기를 부여합니다. 감독회와 협의회에서
- 3 승인하면 전임자의 임기 잔여 연수를 모두 채운 후 6년 임기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회의 3분의 2 찬성과
- 4 협의회 60% 찬성으로 두 번째 6년 임기를 수행합니다.

글로벌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5.6m 축소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815.6m의 삭제된 문구는 불필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815.6.m를 수정합니다

- 1 m. 협의회와 상담하여 교리와 장정 및 시행 법률의 개정안을 총회에 건의합니다.
- 2 m. 위원회와 협의하여 교리와 장정의 변경 사항을 총회에 건의합니다.

연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탁 조항' 사용권 요청

조직: 아프리카: 북부 나이지리아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제출자 유형: 연회

근거:

그 근거는 일부 연회가 현지 법률 또는 국가 교회 연합 기구의 등록 요구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지역 교회는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각 교회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라 교회가 정부에 국가 단위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 교회 연합 기구는 해당 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해 통합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 청원은 연회가 필요에 따라 신탁 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여 이를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연회는 각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이 개정되면 1003조에도 연회가 포함될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02와 ¶ 1003을 개정합니다

- 1 ¶ 1002. 자산 관리 책임 개체교회, 연회, 연대 위원회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다른 단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신탁
- 2 조항은 없다. 연회가 그 재산을 위탁하기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체교회, 연회 또는 연대위원회는 법인 해산
- 3 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법인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 4 ¶ 1003. 탈퇴 절차. 최소 90일간의 분별과 기도의 기간을 거친 후, 글로벌 감리교회의 한 교회는 교회 총회 또는 연회의
- 5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한 교회는 최소 90일간의 분별과 기도 기간을 거친 후
- 6 교회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

현지 법률 준수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단락은 미국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욱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05.1을 수정합니다

1. 현지 법률 준수. 이 교리와. 장정의 속성(부동산 및 동산), 법인 설립 및 운영, 그리고 합병에 관한 모든 조항은 현지
2. 법률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지 법률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 법률이 우선한다. 단, 이 요구 사항은 적법
3. 절차 없이 글로벌 감리교회의 속성을 박탈하거나, 주법령에 의한 규제가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4. 위반하거나, 교회의 연대 구조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교회의 동의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지 법률과 충돌이
5. 발생하는 경우 현지 법률이 우선한다. 단, 이 요구 사항은 적법 절차 없이 글로벌 감리교회의 속성을 박탈하거나, 종교의
6. 자유와 정교 분리를 위반하거나, 교회의 연대 구조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령에 따라 교회의 업무가 규제될 수 있음에
7.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임원회 관련 단락 번호 재지정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현재 ¶ 1006 단락은 임원회의 의무를 설명하는 단락 옆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임원회와 재단 이사가 동의어임을 알 수 있도록, ¶ 1006을 ¶ 1011로 번호를 변경하며, ¶ 1006-1011 사이의 모든 단락을 그에 맞게 이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06을 수정하여 이를 ¶ 1011로 번호를 다시 매기고 현행 ¶ 1006 및 ¶ 1011 사이의 모든 항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 1 ¶ ~~1006.1011~~. 이사와 위원은 동의어. 본 교리와 장정에서 사용된 "수탁자"와 "재단 이사회"라는 용어는 법인에 적용되는
- 2 "이사"와 "이사회"와 동의어로 해석될 수 있다. 개체교회가 대체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 위원회(이사회) 역할을 할 기관을
- 3 지정해야 한다.

글로벌의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1010의 축소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이는 ¶ 1010에 있는 해석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언어를 정리합니다. 또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담보 언어도 삭제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10를 수정합니다

- 1 ¶ 1010. 감사 및 교회 임원의 지불보증보험 가입. 글로벌감리교회 단위(개체교회 제외)에 속한 신탁 기금, 증권 또는 모든
- 2 종류의 금전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지시하는 대로 신뢰할 수 있는
- 3 회사에 의해 충분한 금액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위의 회계는 인가된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 4 사람에 의해 최소한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 교리와 장정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글로벌감리교회
- 5 단위의 보고서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승인되지 않는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 6 그러한 감사를 받을 때까지 승인될 수 있다.
- 7 ¶ 1010. 교회 임원에 대한 감사. 글로벌 감리교회 단위(지역 교회 제외)에 속한 신탁 펀드, 증권 또는 모든 종류의 금전을
- 8 보유한 모든 사람은 해당 단위 또는 연대 협의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감사(audit)를 받아야 합니다.

구역회가 임원회의 요청을 인준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십시오.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 1012는 구역회가 부동산 관련 사항을 승인하는 여러 조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을 위하여 이 단락에도 이에 대한 주석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16을 추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하위 항 ¶ 1012.16을 추가하여 ¶ 1012를 수정합니다

16. 구역회는 지역 교회 임원회에서 교회의 부동산을 매입, 매각, 임대, 신축 또는 저당하는 모든 요청(¶ 1012)에 대해
-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단락에는 명확하게 정리되고, 간소화되며, 교리와 장정의 다른 부분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9.e는 ¶ 446.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합니다. 2. .9.f에서는 구역회 소집 절차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 438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9.8에서는 현재 60%의 회원이 판매 수익을 운영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60%로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회원의 60%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12.9.e 및 수정 ¶ 1012.9.f 및 ¶ 1012.9.g를 삭제합니다

- 1 교회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법적 설명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 2 개체교회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각 증서에서 양수인의 분명한 이름;
- 3 개체 교회가 소유한 모든 개인 재산의 목록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 4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에서 받은 소득 금액과 이와 관련된 지출의 세부 목록;
- 5 부동산의 건축, 재건축, 리모델링 및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과 항목별 지출 명세서;
- 6 미결제 자본 부채 및 계약 방식;
- 7 공동 보험 또는 기타 제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각 부동산
- 8 구획에 대해 가입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 9 개체 교회의 모든 법적 서류의 관리인 이름과 보관 장소;
- 10 지역 교회가 수혜자인 모든 신탁의 상세 목록과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명사; 그리고
- 11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단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과 일정 수립.
- 12
- 13 f. 재산의 구매, 판매, 임대, 건축 및 저당. ¶ 1012.3에서 부여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가 어떠한 부동산을 구매,
- 14 판매, 임대 또는 저당하거나 건물을 건축 또는 개축하기 전에, 그러한 행위를 승인하는 결의안이 구역회에서 회원들이 법인
- 15 회원 자격으로서,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된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 16 해당 회의 및 제안된 행위에 대해 강단과 주간 교회 후보, 소식지 또는 교회 전자 공지, 또는 지역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 17 기타 수단으로 최소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가 담임 목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 18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은 (교회법인) 이사회가 해당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계약, 증서,
- 19 매매 증서, 모기지 또는 기타 서면 문서를 여기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정기 또는 임시

- 20 회의에서 이사회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지역 법률에서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결의안을
21 채택해야 합니다. 승인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계약, 증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증서, 모기지 또는 기타
22 서면 문서는 법인의 임원 중 2명이 법인의 이름으로 작성, 서명해야 이렇게 작성되는 문서는 (교회)법인의 결정으로
23 구속력과 효력을 갖습니다.
- 24 g. 저당 또는 매각 수익금에 대한 제한. 적법하게 소집된 교회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 60퍼센트의 승인과 감리사의
25 충분한 인지 및 협의 없이는 개체교회의 경상 예산이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회 건물이나 목사관이 있는 부동산을
26 저당하거나 매각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1012.9d 제거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 1012.9d는 불필요하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1012.9.d를 삭제합니다

- 1 d. 접근 가능한 건물(¶ 446.5e). 아사회는 매년 건물, 부자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감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 2 참여를 방해하는 물리적, 건축적 또는 의사소통상의 장벽을 발견하고 파악하며, 그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 3 세우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불필요합니다. 구역회는 지역 교회의 치리 위원회입니다(437.1). 모든 교회 협의회 회원은 구역회의 투표 회원이며(438.2), 이 구역회는 감리사가 주재합니다(438.3). “교회 총회”와 교회 전체 투표는 구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사 결정을 회중 형태의 행정적 승인으로 전환합니다. 공개 회의와 감리사의 참석은 주요 결정이 투명성과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신탁 조항이 없고 재산이 지역 교회에 속하므로 재산 매각에 대한 특별 조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1012.9.g를 수정합니다

- 1 g. 저당 또는 매각 수익금에 대한 제한. 교회 건물이나 목사관이 위치한 부동산은 회원 60퍼센트의 승인과 감리사의 충분한 인자 및 협의 없이는 지역 교회의 현행 예산이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당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 3 g. 저당 또는 매각 수익금에 대한 제한. 교회 건물이나 목사관이 위치한 부동산은 구역회의 승인 없이는 지역 교회의 현행 예산이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당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 4 예산이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당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통일성, 지역 유연성: 새로운 ¶ 1014에 대한 제안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에는 연합과 사명을 위해 필수적인 지침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글로벌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2) 지역 교회를 강화한다; 3) 제자 삼기에 일직선으로 맞춘다; 4) 사명을 위해 구조가 유연하도록 허락한다; 5)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현재 장정에는 지역 교회 폐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연회 차원에서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1014를 추가합니다

- ¶ 1014 – 교회 폐쇄. 지역 교회 폐쇄 절차는 연회에서 결정합니다. 연회는 지역 교회 폐쇄 시, 적시에 교단에 이를
- 통보해야 합니다. 폐쇄 절차는 교리와. 장정의 여타 조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대 청년 사역부의 설립

청원자: Frank Webere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교리와. 장정은 연대 조직(¶ 801-899)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을 위한 영구적이고 자치적인 구조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청년들은 이미 글로벌 감리교회 아프리카 청년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체를 통해 스스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바를 인정하고, 청년들이 변화하는 지도부의 우선순위에 의존하지 않고 사명에 동등한 동역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호된 자금 조달, 직접적인 대표성, 공식 입법 심사 권한, 그리고 정관을 제정할 명확한 경로를 갖춘 헌신적인 연대 기구는 차세대가 교회의 사명 속에서 수십 년 간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8XX을 추가합니다

- ¶ []. 연대 청년 사역부.
1. 목적과 비전. 연대 청년 사역부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영구적인 연대 조직으로 설립됩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사명에서 청년들을 리더십으로 준비시키고, 권한을 부여하며, 동원하여,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목소리, 은사, 그리고 관점이 교회의 삶과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2. 지배, 행정력. 연대 청년 사역부는 총회 이전 각 지역 협회에서 선출된 청년들에 의해 선출된 연대 청년 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글로벌 교회의 지리적, 언어적, 인구통계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회원은 위원회의 내규에 따라 정해진 임기를 봉사하며, 총회의 비준을 받습니다.
3. 연대적 책무 내 자율성. 연대 청년 위원회는 교리적 기준과 총회의 일반적 감독을 전제로, 자체 프로그램, 인사, 정관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연대 협의회는 교회의 모든 지역 대표를 포함한 기존 청년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연대 청년 위원회를 위한 구체적인 정관과 선거 절차를 초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은 늦어도 다음번 총회에서 인준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권한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대 체계 내에서 행사되며, 총회와 연대 협의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책임을 집니다.
4. 대표. 연대 청년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 총회 모든 본회의에서 당연직 좌석과 발언권을 가집니다;
 - 연대 협의회 및 교회의 모든 주요 위원회와 기관에서 투표 회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 청년이 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연대 기관에 선출될 후보로 청년을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자금 조달. 총회는 전체 교회 예산의 [X]% 이상을 연대 청년 사역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연대 청년 위원회의 지휘 하에, 연대 협의회와의 협력 속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재정 정책과 감독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위원회는 예산 요청안을 연대 협의회 및 총회에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직접 접근권. 감독, 총리사, 연대 지도자들은 청년 사역부의 선출된 지도부와 청년들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직접

- 21 소통해야 합니다. 지역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조정은 청년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를 우회해서는 안
22 됩니다.
- 23 7. 연대 청년 위원회에 의한 필수 검토. 총회 또는 연회 앞에 제출되는 청소년 사역, 교육, 전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4 모든 청원, 해상도, 또는 구조적 제안서는 최종 표결 전에 심의와 권장 사항 작성을 위하여 연대 청소년 위원회에
25 참조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권장 사항은 입법 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포함되며 본회의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청원 1067

교리와 장정의 글로벌의 상황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

청원자: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글로벌의 교단으로서, 글로벌 감리교회는 그 운영 문서가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리적 통일성은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교리와 장정의 일부는 주로 미국적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구성된 태스크 포스는 전 세계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참여시키며, 사려 깊고 대표적이며 연대적인 분별력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학적 완전성을 지키면서도 더욱 글로벌의 관련성, 적당한 적응성, 선교적 효과를 증진하도록 2032년 입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본 청원은 결의안입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는 다양한 문화, 언어, 경제, 지정학적 맥락을 가진 사역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전 세계적 공동체임을
- 2 감안하여; 그리고
- 3 교리와 장정은 교회의 교리, 치리, 통치행정력, 실천을 안내하는 기본문서 역할을 하며; 그리고
- 4 현재 교리와. 장정의 구조, 언어, 전제는 상당 부분 미국 중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 5 글로벌 감리교회의 지속적 성장과 활력은 교리적으로 충실하면서도 그 글로벌 연결성 전반에서 맥락에 맞게 조정 가능한
- 6 규율에 달려 있음을 감안하여; 그리고
- 7 보다 글로벌한 관점을 반영하는 장정은 연합을 강화하고, 선교적 효과성을 높이며, 아프리카·유럽·필리핀 및 기타 지역
- 8 교회의 실제적 삶의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할 것임을 감안하여;
- 9 그러므로, 2026년 총회가 연대협의회에 글로벌 상황화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것을 지시할 것을 결의하며; 그리고
- 10 또한 연대협의회가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결정하되, 글로벌 감리교회의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폭넓은 지리적 대표성과
- 11 사역자와 평신도를 모두 포함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그리고”
- 12 또한 태스크 포스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할 것을 추가로 결의합니다:
- 13 교리와 장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적 또는 구조적으로 미국 중심적인 조향을 식별하는 일;
- 14 전 세계 교회의 지역 지도자, 연회, 그리고 신학적 목소리들과 협의하는 일;
- 15 글로벌 상황에 더 적절하고 연대성에 부합하는 장정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을 권고하는 일; 그리고
- 16 교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글로벌 특성을 반영하는 교리와 장정 개정안 및 입법 제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 17 또한 태스크포스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2032년 총회 입법 절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한 내에 제안 입법안을
- 18 연대협의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며; 그리고

- 19 또한 연대협의회는 제안된 입법안이 2032년 총회 이전에 연대 전역에 충분히 배포되어 연구, 피드백, 그리고 기도 가운데
20 숙고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하며; 그리고
- 21 마지막으로, 글로벌 감리교회가 교리적 공유된 교리에 뿌리를 두면서도 그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섬기는 다양한 맥락에
22 주의를 기울이는 진정한 글로벌 교회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역에 헌신할 것을 결의합니다.

청원 1330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을 위한 연금 혜택 설립

청원자: Wilton Odongo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입법 위원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근거:

이 결의안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을 위한 연금 및 복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조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종교 연금 계획을 시작하는 데에는 각 국가의 법에 따른 제도 합법화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교단 전체의 이 일회성 기부금은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결의안입니다

- 1 이에 총회는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회에 위원회가 연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글로벌 감리교회 연회의 미국
- 2 외 지역 목회자 및 평신도 직원을 위한 연금 및 복지 제도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가
- 3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들과 협의하여 교단 전체의 일회성 모금 운동을 시작하고 감독하도록 지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 4 목적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함으로써 본 청원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법 행정

all ¶ 900s · the Judicial Processes & Procedures

번호	¶	제목	페이지
1284	¶ 9XX (신설)	상소 협의회의 회피 및 이해 상충	568
1114	¶ 903	해결되지 않은 고소에 대한 추가적 유연성	570
1327	¶ 903	온전한 성경적 책임감	571
1045	¶ 905	교리와. 장정 905항을 수정하는 청원.	572
1081	¶ 905	공정 절차를 보복 금지와 회복적 소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기	573
1440	¶ 905	다수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있는 고소의 처리를 위한 과정	574
1453	¶ 906.2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 위원 공천	575
1082	¶ 908.2	평신도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한 범죄	576
1421	¶ 908.2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의 성적 비행에 대한 사법적 고소	577
1423	¶ 908.2	평신도 회원의 징계 대상 행위 수정	578
1311	¶ 909.2	재판 대기 중 평신도 회원의 지도자직 정지	579
1046	¶ 917.3	교리와. 장정 917항을 수정하기 위한 청원.	580
1414	¶ 920.1	연대상소협의회에 선출될 성직자 및 평신도 인원수 설정	581
1289	¶ 920.4	상소 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대 허락	582
1154	¶ 920.5	연대상소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2/3)	583
1130	Part IX / JPP	사법 행정 과정(장정 및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통합	584

상소 협의회의 회피 및 이해 상충

청원자: Jay Therrell

조직: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그 결정에 대해 엄정한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은 이해 상충, 의무적 회피, 그리고 외부인과의 연락 금지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정립하여 모든 사안이 공식 기록에 근거하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판단되도록 보장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9XX를 추가합니다

- 1 목적.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의의 회원들은 절대적인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교회의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 2 있는 실제적 또는 인지된 이해 상충, 편향, 또는 부적절한 외관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는 모든
- 3 항소, 검토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모든 참여를 규율합니다.
- 4 외부인과의 연락 및 사전 참여 금지.
- 5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의의 어느 회원도, 위원회에 항소, 확인 판결 요청, 또는 기타 사법 절차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 6 만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자나 단체에게도 조언, 상담 또는 의견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7 어떠한 회원도, 공식 절차 외에 어떠한 당사자, 상담자, 연회 임원 또는 기타 관련 인사와도 해당 사안에 관한 토론, 회의,
- 8 서신 왕래, 기타 의사소통(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9 이 금지 규정은 해당 사안이 접수되거나 예상되는 때부터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재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10 적용됩니다.
- 11 우발적 참여 및 의무적 회피. 어떤 회원이 우연히 토론에 참여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그 사안이 후일
- 12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경우 그 회원은 즉시 그 상황을 의장(또는, 의장이 당사자일 경우 부의장 또는 전체 위원회)에
- 13 서면으로 알리고 그 사안에 대한 모든 추가 참여에서 스스로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일방 관여의 경우, 기피는 의무적이며
- 14 위원회의 어떠한 표결로도 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15 재정적 및 개인적 이해 상충.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혹은 회원의 가정에 거주하는
- 16 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때 이해 상충이 존재합니다:
- 17 해당 사안에 영향을 받는 어떠한 단체, 계약, 보조금, 결과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이해(보상, 투자, 소유권,
- 18 잠재적 이익이나 손실 포함)가 있거나,
- 19 회원의 객관성을 합리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기타 개인적, 직업적, 관계적, 또는 이전의 관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회원은
- 20 서면으로 해당 이해 상충을 완전히 공개하고, 그 사안에 대한 모든 토론, 심의, 표결에서 스스로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 21 회피한 회원은, 나머지 회원들이 전체 공개 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이해관계가 매우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 22 않음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간건 심의 중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피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3 연회 특정 사안.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의 회원이 특정 연회의 목회자 회원, 평신도 회원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24 연회만을 특정하고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징계 조치로 인한 항소, 헌법적 쟁점, 자금 배정 결정, 행정적 검토 등)을
25 다루는 토론, 심의, 표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연회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 또는 그 주제가 원
26 연회를 넘어서는 범위에 적용되는 연회 법률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회피하여야 하며, 그 회피는
27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8 공개의무 및 연례 진술서 작성. 안건에 상정된 사안에 대한 회의나 심의 전에, 각 회원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모든 이해
29 상충 또는 일방 관여를 지체 없이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이해 상충 또는 일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30 고용, 계약, 금융 자산, 관계 또는 기타 상황을 명시하는 연례 공개 성명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1 회피 및 정족수 절차.

32 기피는 개별 회원의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어느 회원이든 다른 회원에 관한 이해 상충 또는 일방 관여의 문제를 제기할 수
33 있습니다. 의장(부재 시 위원회)은 그 질문에 대해 판결하며, 이 판결은 전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남은
34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35 회피된 회원은 해당 안건에 한해 대체 회원으로 교체됩니다.

36 비서는 모든 공개, 회피 및 관련 표결에 대해 (적절한 기밀 유지 하에) 공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37 위반 및 구제책. 이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공개 또는 회피의무 불이행 포함) 즉시 의장 및 연대 협의회에 신고하여야
38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연대 협의회는 관련 사실을 조사합니다. 연대 협의회는 3분의 2의 과반수 투표로 해당 섹션 VI -
39 연대상소협의회의 회원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체 연대 협의회에서 변론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소에 대한 추가적 유연성

청원자: 연회 연대 협의회
조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현재 903항은 총리사에게 접수된 모든 고소가 현재 명시된 전체 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추가 문구는, 고소인이 총리사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진정성 있는 해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감독이 판단하는 경우, 감독이 그 고소장을 개체교회와 해당 감리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903을 수정합니다

- 1 섹션 I. 고소 ¶ 903. 고소. 책임 규명 절차는 공식적인 고소가 제기될 때 시작된다. 고소는 ¶ 908.1-2에 정의된 부적절한
- 2 행위(사법적 고소) 또는 목회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행정적 고소, ¶ ¶ 906-907)을 주장하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 3 서명된 진술입니다. 고소가 감독에 관한 것이라면, 고소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가 목회자에
- 4 대한 것일 경우, 그 고소는 해당 목회자의 목회 협력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감리사, 그리고 총리사에게
- 5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개체교회 교인에 대한 것이라면, 그 고소는 해당 개체교회의 감리사, 해당 교회의 교회임원회
- 6 의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해당 교회의 목사, 그리고 총리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접수한 후, 총리사는 해당
- 7 고소가 개체교회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리사는 그 고소를 개체교회와 해당
- 8 감리사에게 돌려보내어 목회적 해결을 시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체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 9 성공하지 못한 경우, 총리사 또는 그 지정인은 고소 처리 과정 전반을 담당합니다. 고소를 접수하면 정식으로 권한을
- 10 부여받은 수령인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고소인")과 고소를 당한 사람("피고소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고소 절차를
- 11 설명해야 한다. 고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수령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적시에 사법처리
- 12 과정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 서면으로 계속 설명해야 한다. 모든 본래의 시간 제한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하에 한 번만
- 13 삼십 30 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경적 책임감

청원자: Tyson Heins

조직: Madison Ebenezer (US: Heartland)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기밀 정보가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구하고 감독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최고의 가장 엄격한 책임감 수준을 지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3:1). 그들은 성경적(베드로전서 5:2-3,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5-9) 자격 요건과 교리와 규율서(¶ 503, ¶ 505, ¶ ¶ 601-603,)의 자격 요건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해당 화폐 단위 내에서 회의순서/진행/주문을 유지하는 동안 그들의 행위와 결의 사항에 대해 온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 901). 따라서, ¶ 903을 수정하는 것은 ¶ 908.3-908.4의 제한 사항에 따라, 비행 또는 불만족스러운 성능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고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903을 수정합니다

- 1 책임 규명 절차는 공식적인 고소가 제기될 때 시작된다. 고소는 ¶ 908.1-2에 정의된 부적절한 행위(사법적 고소) 또는
- 2 목회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행정적 고소, ¶ ¶ 906-907)을 주장하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진술이입니. 고소는
- 3 기밀 회의 및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소인이 주장된 비행 또는 불만족스러운 성능을 발견한 상황에
- 4 관계없이 유효하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감독에 관한 것이라면, 고소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고소가 목회자에 대한 것일 경우, 그 고소는 해당 목회자의 목회 협력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감리사,
- 6 그리고 총리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개체교회 교인에 대한 것이라면, 그 고소는 해당 개체교회의 감리사, 해당
- 7 교회의 교회임원회 의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해당 교회의 목사, 그리고 총리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 8 접수되면 총감리사 또는 그 지명인은 고소 사항을 처리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소를 접수하면 정식으로 권한을
- 9 부여받은 수령인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고소인")과 고소를 당한 사람("피고소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고소 절차를
- 10 설명해야 한다. 고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수령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적시에 사법처리
- 11 과정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 서면으로 계속 설명해야 한다. 고소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고소
- 12 수령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과정의 새로운 부분을 적시에 서면으로 계속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본래의 시간 제한은
- 1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하에 한 번만 삼십 30 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905항을 수정하는 청원.

청원자: Shreve Community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슈리브 지역 사회 교회 (미국: 오하이오)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웨슬리안 전통을 포함하여 교회 사법 관행에서 오랫동안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 안에서 이해됩니다. ¶ 915.2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으려면 [...] 재판부는 해당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보다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질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질적임을 요구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요구는, 공정한 절차가 적용되는 모든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본 청원은 ¶ 905를 수정합니다**

- 1 ¶ 905 글로벌 감리교회 멤버십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룩한 언약의 일부로서, 아래의 절차들은 행정 및 사법 과정에서
- 2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아래 단락에 명시된 원칙은 행정적 또는 사법적 고소가 있을 때마다 지켜져야 한다.
- 3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공정한 과정의 원칙으로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고소를 처리하는
- 4 위원회는 인종, 민족 및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 절차를 보복 금지와 회복적 소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기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미국: 트리니티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고소의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새 ¶ 905.11 및 ¶ 905.12를 추가하여 ¶ 905를 수정합니다

- 1 11. 보복 방지. 교리와. 장정의 적용을 받는 그 누구도, 진심 어린 우려를 신고하거나, 공정한 과정을 행사하거나,
- 2 제거/파송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재에 참여하거나, 항소하다, 항의하다를 추구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 3 고소인, 피고소인, 증인, 지원인 또는 기타 참가자에게 결의 사항으로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4 12. 평판과 소통. 고소나 혐의가 기각되거나 항소를 통해 반복된 경우, 절차 의장은 정당한 필요가 있는 개인이나 기구에게
- 5 해당 사안이 해결되었으며, 결정된 처분 외에 어떠한 부정적 추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 6 있습니다.

다수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있는 고소의 처리를 위한 과정

청원자: 글로벌 감독 위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사법적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소인이 개별적으로 해당 이익/요구를 추구할 권리를 고려하여, 동일한 피고소인 및 동일한 이익/요구와 상황과 관련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의 고소(또는 다수의 서명인이 있는 하나의 고소)를 제9부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통합하는 과정을 허용하되,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새 하위 항 ¶ 905.11을 추가하여 ¶ 905를 수정합니다

- 1 11. 복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제9부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사법적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 2 동일한 피고소인에 의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개인은 함께
- 3 피고소인을 상대로 단일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단일 고소를 제기하는 다수의 당사자는 고소에 서명한
- 4 모든 당사자를 위한 고소인 역할을 할 대표 한 명을 선정해야 하며, 그 고소인은 고소 과정을 위한 지원인을 선정할 권리를
- 5 가집니다.
- 6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익/요구, 행위 또는 상황에 근거하여 동일한 피고소인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가 제기되는
- 7 경우, 절차 의장은 고소 과정 동안 처리를 위해 여러 고소를 병합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
- 8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별도의 고소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를 위한 고소인 역할을 할 고소 당사자 중 한
- 9 명을 선정해야 하며, 그 지정된 고소인은 고소 과정을 위한 지원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10 위 (a)항 및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하나의 고소를 제기한 여러 당사자 또는 여러 고소를 제기한 여러 사람이 위에
- 11 명시된 대로 절차 의장에 의해 병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고소 또는 고소들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고소 과정의 모든
- 12 단계에 출석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각자는 지원인을 둘 자격이 있습니다.
- 13 하나의 고소에 여러 피고소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각 피고소인은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 및 진술할 동일한 권리를
- 14 가집니다.
- 15 여러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관련된 고소의 당사자, 또는 동일한 이익/요구, 행위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동일한
- 16 피고소인에 대한 여러 고소에 지명된 당사자는 고소에 기재된 이익/요구의 분할(분리)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 17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절차 의장 또는 사회자에 의해 분할될 수 있습니다.
- 18 절차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병합된 고소 또는 통합된 절차 내의 개별 고소가 기각되더라도, 동일한 절차적 결함의 대상이
- 19 아니었던 이익/요구(들)를 가진 개별 고소는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원래의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 20 않습니다.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 위원 공천

청원자: 연회 사역 위원회

조직: 미국: 노스 앨라배마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607.1(o)항과 710.7(b)항은 총리사가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 위원을 공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06.2항은 감독이 공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두 조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은 모든 조항을 일치시킵니다. 총리사가 연회의 행정 리더십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총리사가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906.2을 개정한다

- 1 906.2. 각 연회에는 감리사회, 사역 위원회 또는 이 두 그룹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아닌 안수받은 목회자 3명과 대체 위원
- 2 2명으로 구성된 행정 심사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자격에)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녀야
- 3 한다. 위원회는 감독이 지명하고 연회 목회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총리사가 지명하고 연회 목회자 회의에서
- 4 선출됩니다. 이 위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입증된 행정 고소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절차가 JPP 2와 3의 요건과 공정한
- 5 과정(¶ 905)에 따라 적절히 준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한 범죄

청원자: 회의 대표단 (총회)

조직: 미국: 트리니티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목회자 제거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기소 가능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목회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908.2.(f)를 수정합니다

- 1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절도 또는 폭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 2 재정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재정 부실관리;
- 3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차별이나 성희롱;
- 4 글로벌감리교회가 제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나 관행을 조장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것;
- 5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장정에 대한 불순종; 또는
- 6 목회자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관계나 행위, 그리고 사임·지위 변경·전출 요청을 강제로 요구하려는 시도.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의 성적 비행에 대한 사법적 고소

청원자: Wilton T.A. Odongo / 윌튼 T.A. 오동고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근거: ¶ 104에 따르면, 성경은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를 포함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도덕, 봉사에 대한 으뜸가는 규칙이며 권위이고, 다른 모든 권위는 이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리적 순종이나 도덕에 있어 성경의 인도를 받을 때 항상 평신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신앙, 도덕적 기준, 그리고 봉사에 관하여 동등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이 청원은 ¶ 908.2(g)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1 ¶ 908. 2. (g) 성적 학대나 비행, 음란물의 사용이나 소지, 또는 불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
- 2 간의 사랑에 기초한 일부일처 결혼 관계 밖의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 교회 회원.

평신도 회원의 징계 대상 행위 수정

청원자: Miguel Velez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Brookhaven Skyland (미국: 북조지아)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스카이랜드 교회는 그러한 조치가 회중 내에 야기하는 분열과 불신을 이유로 들어, 회원 간의 공식적인 징계 협의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보다 내부적 해결, 교제, 상호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908.2.d를 수정하고 ¶ 908.2.e를 삭제합니다

- 1 글로벌 감리교회가 제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나 관례를 조장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교회의
- 2 사역을 방해하거나 목회자의 사역을 훼손할 경우 징계 대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3 ¶ 908.2.e
- 4 e.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재판 대기 중 평신도 회원의 지도자직 정지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버지니아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본 청원은 ¶ 909를 수정하여, 평신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사역 환경 및 피고응답자와 관련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권한을 무효화하며 보호하기 위하여 평신도의 활동적 지도자직 정지를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조사 중인 목회자/사역자 및 감독에 대한 기존 관행과 유사하며, 교회의 모든 회의순서에서 일관성, 공정성, 책임감을 보장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909.2를 수정합니다

- 1 2. 정직. 교회나 목회 환경 또는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피고소인이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 2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의장 또는 피고소인이 성직자인 경우 감리회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감독은 사법 고소에 대한
- 3 감리 및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모든 사역 책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피고소인은 목회 직무가 정지된 동안 주택, 급여
- 4 및 혜택의 지속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지만, 목회 직무에서 정직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파송된
- 5 임시 감독이나 목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응답자가 평신도일 경우, 총리사, 감리사, 그리고 목사가 만장일치로
- 6 동의할 때, 감독적 및 조사 절차(사법적 고소)에 따라 해당 평신도를 지역 교회의 모든 지도자 직책에서 정지시킬 수
- 7 있습니다. 피고응답자가 정지된 동안, 지정된 임시 지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 8 고소가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고소인의 정직은 그 시점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교리와. 장정 917항을 수정하기 위한 청원.

청원자: Shreve Community

제출자 유형: 단체

조직: 슈리브 지역 사회 교회 (미국: 오하이오)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현재 교리와 장정에는 감독이 법률적 질의에 대해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으며, 그로 인해 감독이 어떤 질의에 대해 판결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사실상 부여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제기된 질의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항소 절차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목회자와 교인의 항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 XI 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판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리와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범위를 정하며, 그러한 판결의 한계를 지시합니다. 이 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장정을 헌법과 다시 일치시키게 될 것입니다.

본문:**본 청원은 하위 항 ¶ 917.3을 추가하여 ¶ 917을 수정합니다**

- 1 ¶ 917.3 연회 또는 지역 총회를 주재하는 감독은 회의의 정기 회무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모든 법률 질문을
- 2 결정합니다. 해당 결정은 연회 총무가 연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독의 결정은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 3 연대 항소협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권위가 없습니다. 각 감독이 내린 모든 법률 결정은 매년 그 개요와 함께 연대
- 4 항소협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항소협의회는 이를 확인, 수정 또는 번복합니다.

연대상소협의회에 선출될 성직자 및 평신도 인원수 설정

청원자: Vicky Johnson

조직: Rogers Bland Chapel (US: Trinity)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2024년에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뿐이었으므로, 2024년부터 6년 주기로 교대하게 되면 신규 회원을 선출할 총회가 없는 2030년에 위원 수에 변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된 개정안은 2026년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며, 향후 총회가 개최되는 연도와 일치하도록 6년 교대 주기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임기 제한의 적용에 현 회원들의 최초 2년 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총회에서 채택될 경우, 이 조항은 2026년 총회에서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을 선출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920.1을 수정합니다

- 1 ¶ 920. 멤버십. 1. 연대상소협의회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위원회는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창립
- 2 총회에서 초기 협의회를 선출할 때, 4명의 위원은 목회자로 그리고 3명의 위원은 평신도로 구성한다. 2024년 창립 총회
- 3 소집에서 선출된 회원은 2026년 총회에서 피천 자격이 있으며, 이들의 2년 임기는 본 조항에 명시된 임기 제한에 산입되지
- 4 않습니다. 2026년 총회에서는 4명의 회원이 목회자이며 3명의 교인이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5 위원은 최대 2회 연속하여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원수는 6년마다 교대하여 목회자는 해당
- 6 임기 동안 4명, 평신도는 다음 6년 임기 동안 4명으로 한다. 위원은 글로벌감리교회의 정회원 목회자나 평신도로서
- 7 고백교인이어야 한다.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교인(목회자 또는 평신도)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연대상소협의회에
- 8 선출될 자격이 없다. 본 청원안은 2026년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소 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대 허락

청원자: Jay Therrell

조직: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제출자 유형: 개인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새로운 기피 규칙에 따라, 위원회 회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일 연회와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 개정은 해당 위원회 회원이 연회, 지방회, 지역 교회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연회 및 미국 외 지역의 연회에서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920.4를 수정하고 추가합니다

- 1 ¶ 920.4. 부적격.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은 총회 델리게이트 또는 모든 총회 혹은 연회 위원회, 위원단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은 총회 델리게이트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총회 위원회 또는 위원단에서
- 2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원은 기피, 이해 상충 및 ex parte 소통에 관한 ¶ 9XX의 조항을 준수하는 한 연회, 지방회 또는
- 3 지역 교회의 위원회, 협의회, 혹은 위원단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상소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2/3)

청원자: 연대 협의회
조직: 글로벌 감리교회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교리와 장정(BDD)은 연대 위원회들, 협의회, 그리고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봉사할 후보자 공천의 출처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원(기타 두 개의 동반 청원과 함께)은 일관된 용어를 제공하며, 공천이 총회로 선출된 각 연회 대표단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 920.5를 수정합니다

1 ...

- 2 5. 공천. 정식으로 선출된 각 연회 대표단은 평신도 및 목회자 델리게이트 모두의 다수결 투표로, 위원회 후보로 최대
3 2명(감독을 제외한 목회자 또는 평신도)을 지명해야 합니다. 총회에 앞서 행정공천위원회는 교회의 지리적, 인종적, 성별
4 다양성을 대표하는 총 21명을 해당 평신도 및 목회자 부문에서 다수결로 지명한다. 총회 행정공천위원회는 연회
5 대표단으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 중에서 교회의 지리적, 민족적, 성별의 다양성 및 적절한 평신도와 목회자 범주를
6 대표하는 21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제안하며, 연회 대표단에 의해 공천된 자가 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교회
7 조직 및 함께하는 삶에 대한 언약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대표단이 재공천할 수 있습니다. 총회 첫째 날에 목회자 또는
8 평신도의 공천을 화약석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연회 회원 자격 및 100 자를 초과하지 않는 이력서를 교단총회 선거
9 시간 최소 48시간 전에 총회 대의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선거는 논의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와
10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사법 행정 과정(장정 및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통합

청원자: Chris Gadlage/크리스 갤라지

제출자 유형: 개인

조직: Avon Bartlett Chapel/바틀렛 채플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입법 위원회: 사법 행정

근거:

2024년 사법 행정 입법 위원회의 여러 회원이 제9부와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의 누락된 요소, 충돌 및 불명확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 독립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저희가 안내하는 원칙은 성경적이고, 명확하며, 단순하고, 실용적인 사법 절차였습니다. • 명확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여기서 제9부와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을 통합하였습니다. • 또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일관된 처리와 실질적으로 공통 용어의 사용을 위해 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우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자 대표자들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제9부의 제안된 변경 사항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마지막에 ¶ 710.2.e를 추가합니다.

본문:

본 청원은 **현행 제9부 전체와 사법 관행 및 절차를 대체하고 ¶ 710.2.e를 추가합니다**

1 현재의 제9부와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전체를 다음으로 교체합니다:

2 제9부 – 사법 행정

3 ¶ 901. 교회의 책임.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근거한 신실함과 거룩함의 부름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법 행정은
4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화해 사역(고린도후서 5:18)에
5 기초합니다. 그 목적은 개인과 교회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잠언 25:9-10;
6 갈라디아서 6:1-2). 평신도와 목회자는 각각 자신의 교인 서약 혹은 안수 서약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룩한 신뢰의 책임
7 관계에 들어가며, 성령의 증거와 성경의 진리가 인도하는대로 은혜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전도서 4:9-10;
8 골로새서 3:16).” 모든 고소 또는 상소의 목적은 회개, 용서,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져, 의로움을 추구하는
9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1-2).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지혜, 공정성, 기밀 유지, 절차의
10 투명성,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서로를 신실하게 돌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에베소서
11 4:15; 야고보서 1:26). 은혜 안에서 행사되는 이러한 규율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그리고 세상에 베푸시는
12 구원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13 ¶ 902. 정의.

14 1. 고소인. 공식 고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고소인이라고 부릅니다.

15 2. 피고소인. 고소가 제기된 상대방을 피고소인이라 부릅니다.

16 3. 기밀 유지. 모든 공식적 고소와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고소 사실을 통보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17 당사자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고소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예: 해당 사건의 목격자) 또는 절차를
18 주관하는 자가 허용하는 경우, 혹은 교리와 장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19 4. 공식 수령인. 공식 고소의 공식 수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일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 21 b. 피고소인이 총리사이면 피고인의 감독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 22 c. 피고인이 현직 감독이나 총리사가 아닌 목회자일 경우는 해당 목회자의 감리사 또는 총리사가 공식 수령인입니다.
- 23 d. 피고소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해당 개체교회의 감리사가 공식 수령인입니다.
- 24 5. 과정의장. 고소 처리와 지휘함, 인도함을 담당하는 사람을 과정의장이라 부릅니다. 과정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일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 26 b. 피고소인이 총리사이면 피고인의 감독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감독인 경우, 과정 의장은
- 27 감독회에서 지정합니다.
- 28 c.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해당 목회자의 총리사가 과정 의장입니다.
- 29 d. 피고소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해당 교회의 총리사가 과정의장이 됩니다.
- 30 6. 지정인. 과정의장은 감독자 대응 단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고소 과정의 하나 이상의 단계를 집행할 다른
- 31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장이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인 경우, 지정인은 글로벌 감독위원회 회원 중에서만
- 32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장이 총리사인 경우, 지정인은 감리사회 회원 중에서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 33 7. 회의. 고소 과정상 회의 또는 청문회는 참석자 모두가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대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할 수
- 34 있으며, 가능하다면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수단으로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그 회의에
- 35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36 8. 사회자. 재판법원을 주재하는 정식으로 인가된 직무 담당자. 적절한 직함표기에 대해서는 ¶ 914.11을 참조하십시오.

37 섹션 I. 고소

- 38 ¶ 903. 고소. 고소 과정은 공식 고소가 제출됨으로써 시작됩니다. 고소란 ¶ 908에 정의된 바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 39 대한 주장(사법적 고소) 또는 ¶ 906, 907에 정의된 바와 같은 목회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에 대한 주장(행정적
- 40 고소)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진술을 말합니다. 제9부에서의 모든 기간 계산은 과정의장이 행정고소 또는
- 41 사법고소를 피고소인에게 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과정 의장은 피고소인이 고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 42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43 1. 모든 고소는 공식 수령인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에 대한 행정 고소의 경우, 공식 수령인은
- 44 지역 교회 목회 협력 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시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공식 고소 이전에
- 45 목회협력 위원회에 참조되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지역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식 수령인은
- 46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47 2.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수령자는 해당 고소를 즉시 해당 과정의장과 피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고소는 과정의장이
- 48 전 과정에 걸쳐 처리합니다.

49 3. 고소가 접수되면 과정 의장은 고소를 행정 고소 또는 사법적 불만/고소로 지정하고, 고소 사본을 피고소인에게
50 전달하며, 당사자들에게 제9부 및 특히 ¶ 925에 따라 고소 과정 설명문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과정의장은
51 고소장을 접수한 후, 해당 고소를 행정 고소 또는 사법 고소로 지정하고, 고소장의 사본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하며, 고소
52 절차에 대한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제9편, 특히 ¶ 92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서면을 고소 접수일로부터 10일
53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사법적 고소가 특정 교회법 위반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정의장은 그 고소를 무효로 선언할 수
54 있습니다.

55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과정 의장은 글로벌 감독 위원회, 감독회, 해당 감리직 위원회 및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그
56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과정 의장은 이 모든 기관에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57 b.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과정 의장은 해당 목회자의 목회 협력 위원회(또는 동등한 위원회) 의장과
58 총리사(혹은 피고소인이 연회 총리사인 경우 총리사 위원회 의장)에게 행정 또는 사법적 불만/고소가 접수되었음을
59 통지해야 합니다. 과정 의장은 이 모든 기관에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60 c. 피고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과정 의장은 피고인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피고인의 개체교회
61 교회 임원회 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 피고인의 개체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총리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정 의장은
62 이 모든 기관에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63 4. 고소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은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은 감독적 대응 회의의 최소 5(오)일
64 전까지 과정의장과 고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과정의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65 고소 처리의 모든 진전 사항을 적시에 안내해야 합니다.

66 5. 과정 의장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나 자의에 의해 지정된 모든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30)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7 제9부에 따라 별도 허용된 연장 이외에 추가 연장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정에서 정한 모든 최소 기간
68 요건은 모든 당사자와 과정의장의 서면 동의하에 사례별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69 6. 고소인은 최종 결정 이전,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든 서면으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통지는 모든 관련
70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동일한 범죄 혐의와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고소를 철회한 경우, 다시 제기할 수
71 없습니다.

72 ¶ 904. 공정한 해결 합의서. 고소는 공정해결 합의서로 어느 단계에서나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해결 합의서란
73 사람과 지역 사회의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 책임감 이행, 가능한 한 일을 바로잡고,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데
74 중점을 둔 것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훈련되고 공정한 제 3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지원을 통해
75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정당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정성, 정의, 회복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문화적, 인종적,
76 민족적, 성별 차이가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깊게 고려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든 고소의
77 해결에는 혐의 진술, 모든 고소 당사자의 명단, 사실 조사, 상황 설명, 후속 책임감을 포함한 결의 사항 계획 또는 합의된
78 징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의 조항에 대한 불순종이 포함된 주장이 있는 고소의 공정한 해결
79 합의서에는 피고소인이 관련 징계 요건을 모두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한
80 해결합의서는 강제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고소인, 피고소인, 현 단계 과정을 주재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고소
81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공정한 해결 합의서는 관련 고소 사건의 최종
82 처리로 간주됩니다. 공정한 해결 합의서에 향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불이행 시의 영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83 과정의장과 감독 기관(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 위원회, 그 외에는 감리사회)은 향후 요구 사항 이행

84 확인과, 필요시 제재 조치를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85 1. 공정한해결 합의서를 교부받는 모든 당사자는 해당 합의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정의 결의 합의서는 피고소인이
86 목회자일 경우 인사기록에 보관됩니다. 공정한 해결 합의서는 교리와 장정에서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나 단체를
87 제외하고는 공표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정한 해결 합의서에는 교리와 장정의 이 단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8 ¶ 905. 공정한 절차의 원칙. 글로벌감리교회의 구성원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룩한 언약의 일부로서 다음 절차는 개인과
89 교회 행정 및 사법 절차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래 단락에 명시된 원칙은 행정적 또는 사법적 고소가 있을 때마다 지켜져야
90 한다. 모든 사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고소를 다루는 위원회는 인종, 민족, 성별의 다양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91 1. 진술권. 과정 의장, 고소인, 피고소인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최종 결의 사항이 내려지기 전에 진술권을 가집니다.

92 2. 통지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 정보와 함께 심리를 통지받을 권리가
93 있다. 통지는 모든 심리 최소 30일(30)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고소인, 피고소인, 과정 의장의 명시적 동의하에
94 단축될 수 있습니다.

95 3. 출석 및 동반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모든 심리에 출석할 권리와, 회의에 발언권이 있는 지원자를 동반할 권리가
96 있습니다. 조력자는 글로벌감리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지정된 통역인은 지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97 교회는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보상하거나 상환하지 않는다.

98 4. 기록 열람. 피고소인은 심리 최소 30일(30) 전에 고소 서류를 포함하여 과정 결과 판정시 참고될 모든 기록의 열람권을
99 갖습니다.

100 5. 일방적 의사교환. 감독 대응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류
101 중인 사안을 심리하는 기관의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단, ¶ 905.6은 예외입니다. 심리
102 의장에게 절차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답변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103 6. 변론의 불이행. 피고소인이 감리 면담 불참, 우편물 거부, 과정의장과의 개별 소통 거부, 감리나 공식 위원회 요청에
104 미응답 등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라도, 이러한 결의 또는 부작위는 교회 절차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로 삼을 수
105 없으며, 해당 과정은 개인의 참여 없이도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6 7. 치유. 책임 규명 과정의 일환으로, 감독과 감리사회는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한 심리, 재판, 상소 기구의 사회자와
107 협의하여, 그 사안으로 인해 교회, 연회, 또는 사역 환경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치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108 치유를 위한 자원에는 해당 과정에 대한 소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위의 정의된 대로 과정 또는 기밀 유지를
109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110 8. 일사부재리. 누구나 일사부재리(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고소/제소당하지 않는) 원칙에 적용된다. 공정한 해결합의서나
111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의 최종 결의 사항을 통해 유사한 고소가 이미 판결된 경우,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동일한 범죄에
112 대해서는 새로운 고소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범죄의 새로운 사례에 대해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113 배제하지는 않는다. 교회 측 대리인, 또는 피고소인은 이중위험에 관한 결정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10일
114 이내에 연대상소협의회(¶ 921.9.c)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고소 절차와
115 모든 일정 및 기한은 중지됩니다.

116 9. 기소 면책. 교회 (사법) 절차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항상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 감독,
117 총리사, 감리사회, 목회위원회, 증인, 지원인, 변호인, 행정 심사 위원회, 집행회의에서 투표하는 목회자 및 교회 절차에
118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들이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특정 절차에서 자신의
119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된 고소로부터 면책권을 가진다. 특정 사법 절차에서 해당 인물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에 대해
120 진행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고소인/원고는 해당 인물의 행동이 고의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에
121 해당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 명시된 면책권은 민사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122 민사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123 10. 교단 변호사. 위반 혐의 발생일 또는 그 이후에 글로벌 감독위원회, 감리사회, 연회 직원, 목회위원회 또는
124 조사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은 교단 변호인으로 임명되거나 사건의 피소인 또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변호인으로
125 봉사할 수 없다. 교회 측 대리인은 봉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교회법과 교리와 장정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126 표명하는 것입니다. 교단 변호사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압박함에 있어 교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127 11. 복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제 9부의 모든 절차에서, 사법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모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을
128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29 a. 행위 또는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이 한 건의 고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
130 모두는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하고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에 여러 피고소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각
131 피고소인은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 및 진술할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132 b.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근거한 다수의 고소는, 모든 고소인의 동의 및 과정의장의 제안에
133 따라 한 건 또는 복수 건의 고소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134 c. 복수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연루된 고소에서, 어느 한 당사자라도 사건 분할(분리) 요청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135 입증된 경우 분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136 12.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고소 과정 중 또는 이후, 현직 감독 피고소인은 고소인 목회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파송을 감독회
137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8 ¶ 906.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에 관한 행정 고소. 행정 고소는 무능력, 비효율성, 또는 목회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139 없거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목회적 직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수행 혐의를 포함한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비행 혐의는
140 행정 고소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 908-의 규정을 통해 처리한다. 행정 고소는 피소인의 사역 범위 내에 있는 평신도,
141 피소인의 사역에 익숙한 다른 목회자, 감리사, 연회 감리사 또는총감리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고소에는 불만족스러운
142 수행의 구체적 사례, (해당되는 경우) 대략적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43 1. 행정고소 처리에는 행정감독 응답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조사 응답, 행정 검토 및 상소가 뒤따라야 합니다.

144 a. 감독적 대응 - 행정 고소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고소인, 피고소인, 과정의장이 참석하는 필수적 회의입니다. 양
145 당사자와 과정의장은 회의에, 본인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지원자를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예정된
146 회의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며, 서면 고소장은 어떠한 감독적 대응 회의보다도 최소 30일 전에 피고소인에게
147 제시되어야 합니다. 감리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과 설명을 고려하여,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148 판단하고, 목회적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있는 경우)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149 감리대응은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합니다:

150 과정의장은 사실이나 교회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각에는 감리사회의
151 과반수 찬성 투표가 요구됩니다(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면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과반수 찬성투표). 이러한 경우
152 과정의장은 고소 기각의 서면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피고소인 인사 파일에 보관하며, 사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153 제공해야 합니다.

154 모든 당사자들이 공정한 합의안에 동의하고 서명하고, 이를 피고소인 인사 파일에 보관합니다.

155 정당한 해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의장이 제기된 주장에 사실적 근거와 교회법적 타당성이 있어 대응이
156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는 심사업무 및 조사 과정을 위해 안수 위원회 내 조사 위원회에
157 넘겨집니다.

158 감독적 대응은 과정의장이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가 요청할
159 경우 과정의장의 재량권에 따라 1회 30일 연장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 903.5에 따릅니다.

160 b. 조사 대응. 안수 위원회 내 조사 위원회가 소집되어 고소장의 진술(¶ 910 참조)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 대응의 목적은
161 가능한 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과 해명을 검토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목회적 직무 수행의
162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혐의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163 있으며 증인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증인 면담 시, 피고소인과 고소인 및 그들의 지원인은 입회하여 질문할 권리가
164 있습니다.

165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하면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며, 피고소인과 고소인 및 각 지원인은 출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혐의와
166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에게 질문하며 위원회에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167 심리 기록()을 작성하여 피심인의 인사 파일에 보관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위원회는 혐의 해결을 위한 집행 회의에
168 들어갑니다. 위원회의 조사는 고소가 조사 위원회로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고 심리가 열려야 하며, 피고소인과
169 고소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한 차례 30일 연장됩니다. 근거를 포함한 위원회 결정의 서면 보고서는 피고소인의 인사
170 파일에 보관되며 사본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제공합니다.

171 조사 대응은 다음 세 가지 결과 중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172 위원회는 신고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위원회 다수결
173 투표로써 결정되어 안수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174 위원회는 제기된 주장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안수 위원회의 정기적 감독과 연례 검토를 전제로 적절한 기준점과
175 후속 조치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조치는 다음 사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76 연장 교육 프로그램;

177 개인 상담 또는 치료;

178 경력 평가 프로그램;

179 동료 지원 및 감독;

180 이 결과는 위원회 다수결 투표로써 결정되어 안수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181 3. 위원회는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임장과 자격 포기, 해임조치, 비자발적 휴직 또는 비자발적 퇴직과 같은
182 비자발적 신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위원회 4분의 3 투표, 안수 위원회 과반수, 목회자 회의 과반수의
183 기준이 필요합니다.

184 c. 행정 심의. 연회 행정검토위원회는 조사적 대응의 보고서와 사역위원회가 조사적 대응에서 사용한 전체 절차를
185 검토하여, 그 절차가 ¶ 906의 요구 사항과 공정한 과정(¶ 905)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186 사실관계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조사적 대응의 절차와 그 과정이 교리와 장정을
187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해당 기관들이 조사적 대응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188 전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감리사 회의, 안수 위원회, 그리고 목회자 회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보고에
189 앞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오류가 무해하다고
190 판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여부는 목회위원회와 목회자 회의의 대응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 심의
191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92 d. 상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모두 안수 위원회의 조사 응답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소는 먼저 전체 안수
193 위원회(조사 위원회 회원은 전체 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여 표결할 수 없음)에서 심리되고, 그 후 목회자 회의에 상소할 수
194 있습니다. 양측은 조사 대응 보고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상소 제기 과정에서 양측이 추가 증거, 증언 및 진술을 제출할
195 수 있습니다. 안수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 발표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감독에게 상소 통지가 제출되지 않는 한
196 최종적이며, 그 사본이 행정 고소의 다른 당사자에게도 송부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회의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197 상소할 수 없습니다.

198 e. 비용. 목회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위한 모든 비용은 피고소인과 후원인의 여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연회가
199 부담한다.

200 2. 모든 연회는 행정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 710.7에 명시됩니다. 이 위원회의 유일한
201 목적은 입증된 행정 고소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절차가 본 부(Part)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는데
202 있습니다.

203 ¶ 907. 현직 감독에 관한 행정 고소. 행정 고소는 무능력, 비효율성, 또는 목회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감당하지
204 못함으로 인한 목회적 직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수행 혐의를 포함한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비행 혐의는 행정 고소를 통해
205 처리하지 않고 ¶ 908-의 규정을 통해 처리한다. 행정 고소는 감독이 시무하는 감독권 구역 내의 평신도, 목회자, 감리사,
206 감리직 위원회 또는 다른 현직 감독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소에는 불만족스러운 수행의 구체적 사례, (해당되는
207 경우) 대략적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직 감독에 대한 행정 고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8 1.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 906에 명시된 행정 과정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209 a.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 910.1에 따라 조사 위원회를 파송해야 합니다.

210 b. 현직 감독의 비자발적 신분 변경의 승인은 조사 위원회 4분의 3의 찬성으로 추천되고 글로벌 감독 위원회 3분의 2의

211 찬성(¶ 615, 605)을 받아야 합니다.

212 c. 고소가 제기된 연회의 연회 행정검토위원회는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글로벌 감독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213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4 d.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215 2. 비용. 감독과 관련된 고소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의 모든 비용은 총회에서 부담한다.

216 ¶ 908. 사법 고소 사법 고소는 아래의 열거된 고소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고소는 평신도 또는 목회자,
217 감리사, 총리사, 또는 현직 감독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아래에 명시된 기소 가능한 위반 중 최소 하나(1)
218 이상의 위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위반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실적 근거(필요시) 대략적 날짜와 시간 포함)가
219 들어 있어야 합니다.

220 1. 기소 가능한 위법 행위. 현직 감독, 현직 감독으로 봉사하지 않는 목회자(선임 목사, 명예 목사, 행정 처분 하에 있는
221 목사를 포함), 또는 지방교회의 고백교인은 다음의 하나 이상의 범죄로 기소될 경우(¶ 908.3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을
222 받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3 a.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한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224 b. 재정 불법 행위 또는 재정적 위법;

225 c.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차별;

226 d. 성희롱;

227 e. 글로벌감리교회가 정한 교리와 실천에 부합하지 않는 교리나 관행을 홍보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228 예식이나 예배를 집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229 f.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장정에 대한 불순종;

230 g.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의 사역을 저해하는 관계 및/또는 행위; 또는

231 h.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혼인 언약 밖에서의 성적 행위를 하는 것.

232 2. 공소시효. 최초 고소장 접수 직전 6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은 주장은 어떠한 사법적 고소나 기소로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233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 혐의 또는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234 없다. 휴직 기간은 (공소시효)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235 3. 위법 시점. 어떤 사람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기소 가능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될 수
236 없습니다. 제기된 모든 고소장은, 성적 학대 또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237 시점에 효력을 가진 교리와 장정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고소장은 고소가 접수된 당시 효력이 있는

238 교리와 장정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고소는 교리와 장정에 고소 가능한 위법행위로 열거된 행동과 관련 되어야
239 합니다.

240 ¶ 909. 사법 감리대응.

241 1. 사법 감리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확립하고, 상황과 설명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할 가치가 있는 문제가 있는지
242 결정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위반으로 부터 피해를 시정하는 고소의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다. 감리대응은
243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합니다:

244 a. 과정의장은 사실이나 교회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각은 피고소인이 현직
245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다수결 투표가, 그 외의 경우 감리사회 다수결 투표가 있어야 승인됩니다. 이런 경우
246 과정의장은 기각에 대한 서면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소인이 목회자 또는 현직 감독일 경우 해당 인사 기록에
247 보관되고, 사본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48 b. 모든 당사자가 공정한 해결합의서에 동의하여 서명하면, 피고소인이 목회자 또는 현직 감독일 경우 인사 기록에
249 보관됩니다.

250 c. 공정한 해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과정의장은 제기된 혐의가 사실적 근거와 교회법적 타당성이 있어 대응이
251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고소는 심사 및 조사 과정 진행을 위해 조사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252 2. 사법 감리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53 a. 사법 고소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고소인, 피고소인, 과정의장이 반드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양 당사자와 과정의장은
254 회의에, 본인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지원자를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는 예정일 최소 삼십(30)일 전에
255 통지받아야 하며, 서면 고소 사항은 어떠한 감리대응 보다 최소 삼십(30)일 전에 피고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56 3. 사법 감리대응은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257 a. 절차의장은 고소가 교회법상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피고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에는
258 글로벌감독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이, 그 외의 경우에는 감리사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과정의장은 고소를
259 기각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면은 피고인의 인사기록(목회자 또는 현직 감독인 경우)에
260 보관되고, 그 사본은 고소인과 피고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61 b. 모든 당사자가 공정한 해결 합의에 동의하여 서명하면, 피고소인이 목회자 또는 현직 감독일 경우 인사 기록에
262 보관됩니다.

263 c. 정당한 해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과정 의장은 제기된 혐의가 사실적 근거와 교회법적 타당성이 있어 대응이
264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고소 사항은 교단 측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조사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 및
265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66 4. 사법 감리대응은 과정의장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전달한 날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어느 한
267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과정의장 재량권으로 한 번만 삼십(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 연장은 ¶ 903.5에 따라야 합니다.

268 5. 정직. 신뢰할 만한 증거에 비추어 계속된 사역이 하나 이상의 유형의 위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69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70 a. 과정의장은 감독기구의 과반수 찬성(피고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글로벌감독위원회, 그 외의 경우 감리사회)을 얻어,
271 피고인을 모든 사역 책임에서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정지는 사법 고소에 대한 감리 및 조사 과정 전체에 걸쳐 유효합니다.
272 피고소인은 목회 직분에서 정직된 동안에도 주택, 급여, 복지제도 등 모든 권한과 특권을 유지하되, 정직 기간 중 임시로
273 파송된 감독이나 목회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고소가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274 피고소인의 정직은 그 시점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정직 통보는 고소 통지를 받았던 모든 당사자와, 과정의장이 필요하고
275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당사자(교회, 일반 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76 b. 피고소인이 평신도일 경우, 과정의장은 감리사회 다수결 찬성으로 감리 및 조사 과정 전체에 걸쳐 피고소인을 교회,
277 회중의 모든 의무와 교회생활 참여에서 정지시켜야 합니다. 정직 기간 동안 피고소인은 교회나 또는 파송 혹은 배정된
278 목회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고소가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고소인의 정직은 그 시점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279 c. 피해 표준. 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해의 기준은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280 신뢰도. 위해에 대한 주장이 구체적이고, 증인진술, 문서, 행동양식 또는 기타 증거로 입증될 때 신빙성에 근거하여 정직
281 조치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해에 대한 주장의 출처가 익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위해에
282 대한 주장은 일반적인 인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283 심각성. 만약 주장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집단 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정체성 및 증거에 실질적인 신체적,
284 심리적, 영적, 전문적 피해를 끼칠 때, 심각성을 이유로 정직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285 즉각성. 위해위험이 실재하고 지속적이며, 가정적·추정적이거나 과거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고소인이 담당자로서
286 활동할 경우 피해 위험이 합리적으로 증가·지속·악화될 수 있다고 볼 때 즉각성을 사유로 정직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287 즉각성을 판단할 때 감독 기구(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 위원회, 그 외는 감리사회)는 정직 조치에 이르지
288 않는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예방 조치들만으로도 위험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89 섹션 II. 조사 대응

290 ¶ 910. 조사위원회 구성

291 1.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조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292 다섯(5) 명의 회원(현직 감독이 아닌 안수받은 목회자 세(3)명과, 평신도 고백 교인 두(2)명) 및 두(2) 명의 대체 회원(현직
293 감독이 아닌 안수받은 목회자 한(1)명과 평신도 고백교인 한(1)명)으로 구성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연회 소속의 회원과
294 대체자는 두 명으로 제한합니다. 회원 또는 대체회원은 피고소인이 관할하는 연회 소속이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295 (자격에)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위원회는 파송 후 의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조직을 구성해야
296 합니다. 위원회 회원 중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 2명과 평신도 회원 1명(또는 해당 대체 회원)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297 이룹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위원회 위원은 화상 회의를 통해 회의 및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98 2.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연회 조사위원회(¶ 710)는 연회 소속 목회자에 대한 사법적 고소를
299 심의합니다.

300 3.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 과정의장은 본 고소 사항에 한해 봉사할 평신도 고백교인 4명과 정회원 목회자 3명으로
 301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조사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302 선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자격에)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5(5) 명의 회원이 정족수를
 303 구성합니다.

304 ¶ 911. 제출된 고소장을 교회측 변호인에게 송부.

305 1.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306 a. 정당한 해결합의가 체결되지 않고 고소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 과정의장은 고소가 교회 측 변호인에게 회부되었음을
 307 ¶ 903.1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08 b. 사법 감독 과정이 종료된 후 삼십(30)일 이내에, 공정한 해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소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
 309 과정의장은 피고인과 동일한 지리적 지역에 속한 장로목사 한 명을 교회 측 변호인으로 지명하여야 합니다. 교회측
 310 변호인은 사법 절차에서 교회를 대표합니다.

311 c. 교회 측 변호인은 감리 과정의 정보, 피고소인의 인사기록에 포함된 관련 정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추천 명단
 312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의 중인 모든 문서 증거와 사법 고소장을 준비·서명하여 조사위원회 의장, 고소인,
 313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교회 측 대리인은 임명일로부터 고소가 해결될 때까지, 사법 고소의 진행 상황에
 314 대한 경과 보고서를 삼십(30) 일마다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는 사법 고소 접수일로부터
 315 30일 이내에 사법 고소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원장은 사법 고소를
 316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317 d. 조사위원회 위원 6명 이상이 권고하면,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을 정직시킬 수 있지만
 318 주택, 급여 및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319 e. 글로벌 감독위원회 어느 구성원의 추천과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320 동안 비자발적 휴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휴직 기간 동안 피고인은 주택, 급여, 복지 등을 포함한 감독직의
 321 권리와 특권을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에 대해 무죄로 판명될 경우, 총회는 비자발적
 322 휴직 기간 중 상실한 모든 급여, 주택, 복지제도에 대해 전액 보상을 제공합니다.

323 2.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324 a. 감독 과정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정한 해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소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 과정의장은
 325 위반 혐의가 발생한 연회 내의 장로목사 한 명을 교회 측 대리인으로 지명하여야 합니다. 교회측 변호인은 사법 절차에서
 326 교회를 대표합니다.

327 b. 교회 측 변호인은 감리 과정의 정보, 피고소인의 인사기록에 포함된 관련 정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추천 명단
 328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의 중인 모든 문서 증거와 사법 고소장을 준비·서명하여 조사위원회 의장, 고소인,
 329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교회 측 변호인은 임명일로부터 고소가 해결되는 날까지, 사법 고소의 진행
 330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30일마다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는 사법 고소 접수일로부터
 331 30일 이내에 사법 고소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원장은 사법 고소를

332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333 c. 5명 이상의 조사위원회 위원이 권고하는 경우, 감독은 재판과정이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이 주택, 급여 및 혜택을
334 계속받지만 파송된 사역과 직무에 관련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피고소인은 목회 직무가 정지된 동안 연회
335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파송된 임시 목사를 방해해서는 안
336 된다.

337 d. 비자발적 휴직. 감독 또는 총리사의 추천과 감리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은 사법 절차가
338 진행되는 동안 비자발적 휴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휴직 기간 동안 피고소인은 해당 과정을 해결하기 전까지
339 급여, 주택, 복지제도를 포함한 직분상의 권리와 권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에 대해 무죄로 판명되면,
340 개체교회는 비자발적 휴직 기간 중 상실한 모든 급여, 주택, 복지제도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연장 사역의 경우,
341 임지가 종료되었을 때 퇴직 합의서에서 보장되지 않은 보상은 어떤 항목이든 연회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342 3.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

343 a. 감독 과정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정한 해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소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 과정의장은
344 위반 혐의가 발생한 연회 내의 장로목사 한 명을 교회 측 대리인으로 지명하여야 합니다. 교회측 변호인은 사법 절차에서
345 교회를 대표합니다.

346 b. 교회 측 병인은 감리 과정의 정보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추천 명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의 증인
347 모든 문서 증거와 사법 고소장을 준비·서명하여 조사위원회 의장, 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교회
348 측 변호인은 임명일로부터 고소가 해결되는 날까지, 사법 고소의 진행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30일마다 모든
349 당사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는 사법 고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법 고소에 대한 서면
350 답변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원장은 사법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351 조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352 c. 5명 이상의 조사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권고하면, 교회의 목사나 감리사(PE)는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의
353 교회에서의 직분 수행을 정지, 정직시킬 수 있다.

354 ¶ 912. 조사위원회 절차

355 1. 소개. 조사 위원회의 역할은 사법적 고소에 제기된 진술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고소장 및 진술서를
356 재판에 회부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란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 기소 가능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믿을 만한 충분한
357 이유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고소장과 진술서를 준비하고, 서명 및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혐의를
358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359 2.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360 a. 당사자 및 변호인 - 당사자는 응답자와 교회입니다.

361 b. 교회 측 변호인 - 발언권이 없는 보조 대리인 1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조 대리인은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362 측 변호인과 보조 변호인의 모든 합리적인 비용은 연회가 부담하여야 하며(피고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에는 총회가

부담한다), 단 어떠한 사례비나 보수도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단 변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역을 떠나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 연회는 연회 비용으로 보충 사역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 조사 위원회 – 조사위원회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에 한하여 법률 자문가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법률 자문가는 연회(또는 피고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총회)의 비용으로 하되 연회 법률고문일 수 없습니다.

d.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 또는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글로벌 감리교회의 평신도 교인 또는 목회자를 피고소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발언권이 없는 보조 변호인 1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조 변호인은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피고소인은 변호사 사용과 관련된 비용 또는 수수료에 대한 보상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e. 평신도 피고소인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평신도 회원 또는 목회자를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발언권이 없는 보조 변호인 1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조 변호인은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피고소인은 변호사 사용과 관련된 비용 또는 수수료에 대한 보상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예비 회의 - 기본적인 절차적 결정은 예비 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에서는 피고소인, 피고소인 변호인, 고소인 및 교회측 변호인이 의장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절차적 쟁점에 대해 주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절차적 결정과 조사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정은 사건의 모든 가능한 추가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조사위원회에서의 심리가 시작되기 최소 5일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의 판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조사위원회 심리

a. 가능하다면 피고소인과 고소인(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대면이 불가능하더라도 조사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심리 통지는 신고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는 증언 중에는 출석할 수 있지만 심의 중에는 출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 절차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적 결정은 위원장이 내립니다.

b. 심리 이전 또는 심리 외에서의 증인 면담 –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은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두 명을 지정하여 증인을 면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당사자는(발언권 없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면담의 일시와 장소는 면담일 최소 3일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임명된 위원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후 서명을 통해 기록을 인증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c. 증인 심문 – 조사위원회는 고소 사실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 과정의 자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인물들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인으로부터 심문 대상자 목록, 서면 자료의 출처 또는 질의할 질문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들) 모두 반대 심문 권리가 없습니다.

d. 증거-위원회는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만 고려해야 합니다. 의장 또는 주재자는 양측의 변호사와 협의한 후 관련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이의 제기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공소시효(¶ 908)에 의해 금지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증거, 증거 서문 또는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재판장이 양측 변호인과 협의한 후 해당 자료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e. 녹취록- 조사위원회의 모든 회의 진행 상황은 위원회가 실행회의에서 회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 그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실행회의란 위원회가 단독으로 회의하거나, 위원회의 법률 자문가만을 동석시킨 회의를 의미합니다. 고소가 기각되거나 과정의장에게 반환되는 경우, 발언 내용의 기록은 보관을 위해 연회 서기에게 송부됩니다.

f. 고소장 및 진술서, 심의, 투표 및 추천 - 각 고소장 및 진술서에 대한 투표는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위원회의 각 위원은 혐의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투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 또는 기타 이유로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려 하지 않는 회원이 있으면, 해당 회원은 본 사안에서 물러나야 하며,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려는 대체 회원, 또는 다른 회원을 위원회에 임명하여 위원회가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소장 및 진술서 - 고소는 ¶ 908-에 나열된 고소 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고소는 두 개 이상의 고소 가능한 위법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두 개 이상의 혐의가 제기되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고소는 해당 고소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 고소에는 하나 이상의 사실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실적 사건을 단독으로 주장하는 각 진술서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날짜, 장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사건 등의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합리적 근거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및 공소장과 명세서의 재판 회부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 고소 또는 진술서 채택 투표는 단순 다수결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채택된 고소장과 진술서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연회 서기, 글로벌 감독 위원회의 의장 및 회원, 교회측 변호인, 연회 감리직 위원회 의장(해당시)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 고소 또는 진술서 채택 투표는 단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합니다. 조사 위원회에서 채택된 고소장과 진술서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연회 서기, 안수 위원회 의장, 교단측 변호인, 피고소인 소속 감리사, 총리사(피고소인이 총리사인 총리사 위원회 의장)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 - 고소 또는 진술서 채택 투표는 단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고소장 및 진술서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피고소인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자, 교회측 변호인, 목회자, 감리사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합리적 근거 외의 다른 판단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조사위원회가 혐의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 고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안을 해당 직권 교회 책임자에게(피고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에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의장에게,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에는 총리사에게, 평신도인 경우에는 담임목사에게)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해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결정의 서면 근거와 함께 피고소인, 고소인, 교단 측 변호인 및 적절한 추천 교단 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부는 ¶ 905에 따른 기각 또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통지는 피고소인, 고소인, 교단 측 변호인 및 적절한 추천 교단 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측 대리인과 피고인 측 대리인의 권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 사안을 ¶ 904의 규정에 따른 공정한 해결 합의를 모색하는 절차를 위해 다시 과정의장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장은 해당 과정을 개시하고,

428 훈련된 공정한 제3자 진행자 또는 중재자의 도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은 ¶ 905에 따른 기각 또는
 429 일사부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단 측 변호인, 피고소인 측 변호인 및 고소인을 포함한 적절한 사람들은 기밀 유지에
 430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 중에는
 431 마감일이 유예됩니다.

432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모든 약관을 포함하여 해당 해결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에 절차를 설명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한
 433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할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결의안으로 인해 목회자
 434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공개 동의서는 그러한 변경 사항을 보고하거나 재입교에 필요한 징계 공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435 조사위원회는 해결 합의의 이행을 위해 명시된 기간 동안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해결합의 조건의 이행
 436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건이 완료되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조건과 조항이 모두 이행되면,
 437 조사위원회는 그 사실을 인증하여 피고인의 지위 변동과 함께 총리사 또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438 합니다.

439 이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또한 재판이 종료된 후 배심원의
 440 결정(들)에 따라 그 조건과 조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배심원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의
 441 이행을 감독하고 이행 완료를 인증하기 위한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부여됩니다. 피고소인이 배심원의 결정에 따른 조건과
 442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재판의 주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재자는 추가 심리를 위해 재판부를
 443 재소집할 수 있습니다.

444 5. 특별 조사- ¶ 908에 열거된 기소 가능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피고소인이 자격을
 445 반납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관할권이 종료된 경우, 주재 감독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446 목회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447 a. 본질적으로 사법적이지 않습니다;

448 b. 증인을 받아들이고 증거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449 c. 피고소인 멤버십이 있는 기관에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50 6. 조사 위원회 기록 – 조사 과정(결론)이 종료되면, 청문회 녹취록을 포함하여 조사 위원회에서 사용한 모든 관련 문서는
 451 총회 총무(피고소인이 감독일 경우) 또는 연회 서기(그 외의 경우)에게 전달되어 보관됩니다. 해당 문서는 기밀 파일로
 452 보관되며 재판 목적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 시 교회측 변호인, 피고소인, 재판 법원의 사회자만 열람할 수
 453 있습니다. 문서 수령인은 재판 및 상소 종료 후 총회 총무 또는 연회 서기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454 7.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 감리사는 조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사법 고소장 및 답변서 사본을 제공받으며,
 455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습니다.

456 섹션 3. 재판

457 ¶ 913. 일반 (재판) 조직 및 재판 이전 과정 재판의 기본 원칙.

458 교회 재판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시정하고 사안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만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규정된 어떠한 재판도 ¶ 905에서와 같이 면책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인, 피고인 또는 교회의 법적 민사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판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합당하게 구성된 법원이 충분히 조사 후 일관된 기독교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원 임원 - 임원은 사회자를 포함하며, 사회자는 서기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임명합니다. 사회자는 법률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법률 고문은 총회나 연회 법률 고문이 될 수 없고, 재판을 진행하는 총회나 연회의 비용으로만 봉사하며, 오직 재판 중 사회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봉사합니다.

2. 재판 시간 및 장소 - 사회자(¶ 914 정의)는 시간 및 장소 결정을 위해 당사자와 상의하여 피고소인, 교회측 변호인,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 해당 당사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출석하고 피고소인이 재판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의 기준은 사회자가 결정하되, 그 기간은 45일(45) 미만이거나 90일(90)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재판 전 동의신청 및 추천 - 재판에 앞서 발생한 모든 절차적 또는 실체적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재판이 개시되기 40일 전까지 반드시 재판 사회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소 권리가 상실됩니다. 소송 절차의 적법성과 고소장 및 규격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모든 이의 제기 및 동의는 심리 법원의 소집 20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사회자는 모든 예비 이의 제기 및 동의에 관하여 판결합니다. 진실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자는 진술서나 고소장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개정을 허용할 수 있고, (1)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거나 (2) 진술이 사실이라 해도 고소 가능한 위반행위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 고소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 904 조항에 따라 공정한 해결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을 교회 측 변호인, 피고 측 변호인 및 고소인 모두의 동의 하에 총리사(피고가 현직 감독인 경우에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총리사 또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은 해당 과정을 시행하고, 훈련된 공정한 제3자 진행자(들) 또는 중재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부는 ¶ 905에 따른 기각 또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결을 추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경우, 교단 측 변호인, 피고소인 측 변호인, 고소인 등 적절한 사람들은 기밀 유지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요약하는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모든 약관을 포함하여 해당 해결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에 절차를 설명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할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결의안으로 인해 목회자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공개 동의서는 그러한 변경 사항을 보고하거나 재입교에 필요한 징계 공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조사 위원회는 합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러한 서면 진술서는 재판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재판장은 합의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해당 사안이 재판장에게 반환됩니다.

4. 장소 변경 - 피고인은 재판 출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십(10)일 이내에 법원의 사회자에게 서면으로 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응답자와 교회 측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한 후 해당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재판장은 재판이 열릴 감독구 밖의 연회를 지명하고 해당 연회의 감독에게 통지하며, 감독은 법원을 소집해야 합니다. 배심원단은 재판이 열리는 연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회의 적합한 인원이 부족하여 배심원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연회에서 추가 인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 비용은 사건이 발생한 회의에서 부담합니다. 장소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재판 소집일은 일시 중지됩니다. 장소 변경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사회자는 새로운 재판 일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5. 공지 사항

495 a. 조사, 재판 및 상소와 관련하여 요구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지를
 496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서명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제공해야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전달되어야
 497 합니다. 이러한 공지사항은 당사자 또는 해당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사본을 직접 전달하거나 기타 배송 시스템을 통해
 498 해당 당사자의 알려진 최종 거주지 또는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통지 확인서가 제공되며 사건 기록의
 499 일부가 됩니다.

500 b. 총리사 또는 감리사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된 모든 경우에, 그 혐의가 바로 그 사람에게 제기된 것이라면, 그러한
 501 통지는(피고소인에게 주어지는 통지 외에) 총리사의 경우에는 감독에게, 감리사의 경우에는 총리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502 6. 재판 일정 및 계속 - 적법한 통지 후, 피고소인이 지정일·장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소홀히 하는 경우, 피고소인 없이
 503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자의 재량권에 따라 피고소인이나 필수 인물의 불출석에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504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자는 판정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재판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05 7. 변호인 - 모든 경우에 피고소인은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글로벌 감리교회의 평신도 또는 성직자 회원인 변호인을
 506 스스로 선택하여 그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와 교회는 구두 변론, 서면 변론 또는 그 둘 다로
 507 변호인의 변론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소집을 담당하는 해당 직권자는(¶ 914 참조) 고발장과 명세서 사본을
 508 접수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 905, 911의 규정에 따라 교회 측 대리인이 이미 임명되지 않은 경우 교회 측
 509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교회 또는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과 피고소인을 위한 변호인은 각각 발언 권한이 없는 보조
 510 변호인 한 명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그 보조 변호인은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511 피고소인은 변호사 사용과 관련된 비용 또는 수수료에 대한 보상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512 8. 증인 - 출석 통지는 양 당사자가 지명할 수 있는 증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회 명의로 발행되고 재판의 주재자가
 513 서명해야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는 소환을 받으면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리사가
 514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한 질문에 대한 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불복종으로
 515 간주될 수 있으나, 답변 거부가 주 또는 연방 형법에 따라 증인에게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주장에 근거하거나
 516 목회자와의 비밀 정보 주장에 근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증인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의 회원이
 517 아니어도 됩니다.

518 9. 법정 외 증언 위탁 — 사건이 계류 중인 법정의 사회자는 당사자 또는 증인의 필요가 요구되는 경우 언제든지, 증인을
 519 재판 심리 외에서 신문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증언을 채택하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
 520 당사자에게 최소 삼(3)일 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지며 법정
 521 외 증언을 의뢰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사람이 증언을 주재합니다. 양 당사자의 변호인은
 522 증인 또는 증인들을 조사하고 교차 심문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이 채택됩니다. 증언은 재판 기록에 포함될 수
 523 있도록 필사되어야 합니다. 증언은 재판 중 재심을 위해 비디오로 녹화될 수도 있습니다. 증언은 사건이 계류 중인
 524 재판부의 재판장 및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525 10. 조사 위원회에서 이전에 검토하고 기각한 혐의 또는 진술은 증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재판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526 11. 공개/비공개 재판 - 배심원 선정과 심의는 항상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다른 모든 세션은 공개됩니다.
 527 재판장은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 측 변호인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판단하여 특정 재판 회기를
 528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엄중함과 관련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절차의 비디오 녹화 또는 사진
 529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 심리 과정에서는 사회자, 배심원, 최초 고소인(들), 교회 변호사, 피고소인 및

530 피고소인 변호사는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531 12. 여러 사람의 통합 재판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경우, 동일한 범죄에
532 대해 이들의 재판을 하나의 재판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병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533 ¶ 914. 재판부 소집

534 1. 모든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회자가 배정됩니다:

535 a. 관련 당사자들의 변호인과 협의한 후, 사건 제기에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할 권리, 단 그 시간은 양측 모두에게
536 동일해야 합니다. 사회자의 권한은 교회와 피고인의 적법한 대리인 자격 판단, 증거의 채택 여부, 재판의 휴정·휴회·재개,
537 재판 시작 시와 배심원단이 평의를 위해 퇴정하기 직전에 사건에 관련된 교회법을 배심원단에게 고지하는 일, 그리고
538 배심원단과 함께 하는 민사 법원의 판사가 통상적으로 부여받는 기타 권한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회자는 배심원단이
539 회부할 수 있는 평결 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어떠한 판단도 선고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피고인의 유죄
540 또는 무죄를 결정할 배타적 권한은 배심원단에게 있습니다.

541 2. 답변 진술 — 배심원단이 선정된 후, 사회자는 피고인에게 고발장에 제시된 혐의(들)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542 답변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답변(들)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543 경우, 공판은 필요하지 않으나, 적절한 처벌에 관하여 증거가 수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벌이 부과됩니다. 피고소인이
544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고소인이 변론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무죄"의 변론을 기재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545 합니다. 피고인은, 아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 동안 언제든지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제시하며, 문서
546 증거를 제출하고, 그 밖의 방식으로 변론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547 3. 재판 순서 – 모든 당사자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증거가 어떻게 제시될 것인지 알리기 위한 개시 진술을 할 수
548 있습니다. 그런 다음 증인에 대한 심문과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서 및 기타 증거를 통해 증거를
549 제시해야 합니다. 각 변호인들은 배심원이 평결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 변론을 할 기회를 갖습니다. 배심원의 심의와 평결
550 수령이 뒤따릅니다.

551 4. 선서 - 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재판장은 모든 당사자에게 교단 회원의 의무와 책임 및/또는 목회자
552 언약에 대해 상기시켜야 합니다. 진실하게 증언하지 않을 경우 증인은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불복종한 혐의가
553 적용될 수 있습니다.

554 5. 리세스 및 재판 절차 – 법원은 편의상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휴정할 수 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배심원들은 어떠한
555 경우에도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556 a. 서로 또는 타인과 재판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

557 b. 어떠한 당사자도 사건, 당사자 또는 증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558 c. 사건, 당사자 또는 증인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읽거나, 관찰하거나, 듣는 행위.

559 배심원들은, 사건·당사자 또는 어떠한 증인에 관하여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접촉을 시도할 경우, 즉시 재판

560 주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추가로 지시받아야 합니다. 배심원 또는 재판 법정의 임원에 대한 위협이나 부당한 개입은
 561 글로벌 감리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불복종으로 간주됩니다. 재판장은 결정이 내려지고 조사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562 남아서 주재하며, 그 후 서명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563 6. 이의 및 판결 – 소송 당사자의 이의는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판 전 상소, 이의신청 및 요청에 대한 모든 판결은
 564 기록됩니다. 재판 진행 중 변호인의 모든 이의제기 및 신청은 재판 법정의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모든
 565 이의제기 및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판결문과 함께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566 7. 증인 배제—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하고, 상대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 다른 증인을 심문하는 동안에는 그 증인이
 567 출석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먼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심문하고, 이어서 반대 당사자가 교차 심문하며, 사회자의
 568 승인을 받아 배심원단의 구성원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심문과 교차 심문을 마친 후, 교회 측 변호인은
 569 증인에 대해 다시 직접 심문을 할 수 있지만, 교회 측 변호인이 제기하는 질문이 증인이 이미 제공한 증언과 관련이 있는
 570 경우에 한합니다. 재직점 심문이 완료되면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재교차 심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 측 변호인이
 571 제기하는 질문은 직접 또는 재직점 심문 중에 증인이 이미 제공한 증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합니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572 증거의 관련성 및 증거 능력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573 8. 절차의 기록 - 재판의 모든 절차는 속기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축적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574 작성하여 재판장 또는 서기가 인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모든 증거물, 서류 및 증거를 포함한 공식 기록은 상소할 수
 575 있는 모든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576 9. 증거 - 6년의 소멸시효 기간(¶ 908)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증거의 서면으로, 또는 재판 절차에서
 577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재판장이 양 당사자의 변호인과 협의한 후 해당 자료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578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서 증거는, 배심원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의
 579 동안 배심원단이 실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580 10. 지시 및 고지 — 사회자는 증거를 검토하거나 설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제시하는 배심원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581 재판장은 재판부가 심의하는 동안 법률이나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어느 쪽 변호인의
 582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자는 사건에 적용되는 교단법에 관하여 배심원단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재판 시작 시, 재판 중,
 583 배심원단이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기에 지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요청이
 584 있을 경우, 심의 중에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하거나 설명하거나 사건의 쟁점에 대해 언급해서는
 585 안 됩니다.

586 11. 재판 소집, 배심원 선정 및 기록 유지. 재판은 다음 조항에 따라 소집됩니다:

587 a. 현직 감독 재판. 현직 감독의 재판에서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의장이 법원을 소집하다. 하고, 현직 감독 또는 은퇴
 588 감독을 사회자로 지정합니다.

589 b.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 재판.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감독이 법원을 소집하고, 총리사가
 590 피고소인의 감독이 아닌 현직 혹은 은퇴 감독을 사회자로 지정합니다.

591 c. 평신도 재판. 평신도 재판에서는 피고소인 소속 감리사가 법원을 소집하며, 본인이 사회자를 맡거나, 또는 (피고소인,
 592 고소인과 관계없는) 안수받은 목회자를 지명하여 재판의 사회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d. 배심원 구성. 배심원단은 13명의 배심원과 2명의 대체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삼십 육(36)명 이상의 풀에서 선출되는데, 신자 평신도와 안수받은 성직자의 수가 동일하도록 구성되고, 본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출됩니다. 인종, 연령, 민족, 성별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원이 지원자 후보에 포함되도록 특별히 배려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배심 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 감리사회, 안수 위원회, 조사 위원회 회원이었던 사람은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현직 감독 재판에서는 후보군을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감독 관할 지역에서 균등하게 지명합니다.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 재판에서는 삼십육(36)명 이상의 후보자 풀을 피고소인 소속 연회의 안수받은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한 연회에서 적절한 범주에 속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풀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연회에서 추가 인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인력풀에 대한 모든 임명은 피고소인 연회의 감리사가 합니다. 인종, 연령, 민족, 성별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원이 지원자 후보에 포함되도록 특별히 배려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배심 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 감리사회, 안수 위원회, 조사 위원회 회원이었던 사람은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평신도 재판에서는 삼십육(36)명 이상의 후보로 피고소인 소속 연회의 다른 개체교회의 목회자 및 고백 교인 평신도 회원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임명은 피고소자의 감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감리사는 지방회 평신도 지도자 및 지역 교회 목회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e. 배심원 선택.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사회자는 제한된 예비 심사(간략한 집중 질문)를 진행하여, 잠재적 배심원들에게 공평하고 편견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배심원으로 선발되기 위해 각 잠재적 배심원은 재판 중에 자신이 보고 듣는 것만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 받은 다른 정보는 무시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후보 풀에서 여섯(6)명의 배심원과 한(1)명의 대체 배심원을 각각 선정해야 합니다. 열세 번째(13번째) 배심원은 사회자가 선출합니다. 다수의 원고 또는 피고인이 존재하는 경우, 의장이 당사자들 간에 배심원 선발 배분 방식을 결정합니다.

f. 기록 보관. 재판부 비서는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모든 재판 서류를 다음과 같이 송부해야 합니다:

현직 감독 재판의 경우, 총회 회의 총무에게 송부하며, 총무가 이를 보관합니다. 상소가 접수되면, 총무는 즉시 해당 자료를 연대상소협의회 서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소가 심리된 후, 기록은 총회 총무에게, 또는 사건이 새로 재판을 위해 환송된 경우 과정의장에게 반환합니다.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 재판의 경우, 연회 서기에게 송부하며 서기는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기밀 파일로 보관되어야 하며, 기소된 목회자와 재판 사회자 양측의 서명 동의 없이는 상소 또는 새로운 재판 외에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상소가 접수되면, 총무는 즉시 해당 자료를 연대상소협의회 서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소가 심리된 후, 기록은 연회 서기 또는 새 재판을 위해 환송된 경우에는 과정의장에게 반송합니다.

평신도 재판의 경우, 연회 서기에게 송부하며 서기는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기밀 파일로 보관해야 하며, 기소된 평신도와 사건을 판결한 사회자의 서명이 없는 한, 상소 또는 새로운 재판 목적 외에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상소가 접수될 경우, 서기는 즉시 관련 서류를 피고소인 관할 감리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감리사는 기록을 임시 연회 상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가 심리된 후, 기록은 연회 총무 또는 새 재판을 위해 환송된 경우에는 과정 의장에게 반송합니다. 회원 자격이 박탈된 평신도가 글로벌감리교회의 다른 교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의 존재(내용은 아님)를 공개해야 합니다.

12. 입증 기준. 모든 재판에서의 입증 기준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고소인은 해당 입증 기준에 따라 자신의

627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는 기각되는 결과가 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628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심원에게 제시된 증거가 해당 명세가 사실일 가능성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보다 매우 높고
629 실질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630 13. 배심원 지침, 결격 사유, 투표, 평결. 재판 법원(사회자와 소집된 배심원)은 그 사건을 심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집니다.
631 재판부는 혐의가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계속되는 기관이다. 배심원 정회원 또는 대체회원이, 변호인이 재판정에
632 제출하는 증거가 접수되거나 구두 변론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회기의 일부라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이후
633 배심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체회원으로 되고, 나머지 배심원은 평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634 14. 평결. 유죄 평결에는 회원 아홉(9)명 이상의 배심원 투표가 필요합니다. 재판 중 배심원 수가 13명 미만으로 감소하면,
635 3분의 2 투표가 필요합니다. 배심원단은 사회자에게 각 혐의 및 각 혐의에 따른 개별 명세에 대한 결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636 그 결과는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있습니다.

637 15. 처벌.

638 a. 재판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 403, 414-417, 420 조항의
639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을 먼저 고려 한후, 고백교인 멤버십 해지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640 있습니다.

641 b. 추가 증언이 청취될 수 있으며, 변호인이 형벌에 관해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형벌을 결정하며, 그
642 결정은 최소한 일곱(7) 명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배심원 수가 열세(13)명 미만이면 다수결 투표가 필요합니다.

643 c. 배심원단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644 피고소인의 고백 교인 교인자격을 박탈합니다;

645 피고소인의 연회 회원 자격을 종료하고 연회 회원자격, 안수, 봉헌 자격증을 철회합니다;

646 정해진 기간 동안 피고소인의 해당 직분 기능 수행을 정지시킵니다;

647 더 경미한 형벌을 정합니다.

648 d. 배심원단은 일정 기간 동안 형벌로 직무에서 정직 현직 감독 또는 목회자가 그 정직 기간 동안 주거, 급여, 및 복리후생을
649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650 e. 배심원이 정한 형벌은 재판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재판 법원이 정한 징계가 상소 절차의
651 결과로 변경 또는 감경될 경우, 피고소인이 감독이면 교회 전체에서, 목회자이면 연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복직 및/또는
652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호사 사용과 관련된 비용이나 수수료에 대한 보상이나
653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654 섹션 4. 상소

¶ 915. 상소 절차

1. 총론.

a. 모든 상소에서 상소인은 재판부의 평결 및 형벌 선고 또는 연대상소협의회 이외의 서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상소인은 해당 통지를 접수한 임원과 담당자와 상대측 변호인에게 상소의 근거를 명시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 기구의 심리는 해당 진술서에 명시된 근거로 제한된다.

b. 상소기구가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부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뒤집거나 사건을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에 환송하거나 재판부가 부당한 징계를 변경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조치 근거에 대한 진술서가 전해져야하고 피고소인, 고소인, 교단 변호인에게도 사본이 전달되어야 한다.

c. 조사 및 재판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소를 할 수 없다. 상소는 적절한 상소기관에서 심리되어야 하며, 다만 상소인이 재판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교회를 탈퇴하였거나, 상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상소인이 고소인 또는 상소를 심리한 교회법원과 관련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정행위로 상소권을 상실했다고 해당 상소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d. 상소권은 태만 또는 기타 사유로 (목회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떤 상소기구에 의해서도 회복될 수 없다.

e. 상소신청권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상소인이 생존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f. 모든 상소의 심리에서는 판결 기록 및 증거 자료만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g. 상소 기구는 다음 두 가지 질문만 결정한다:

혐의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는가?

교회법 적용에 있어 판결 및/또는 징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은 재판기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상소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을 심리하지 않고 교단과 피고소인의 변호인의 변론을 접수 및/또는 심리한다. 상소 기구에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소가 제기된 연회의 의장이 아닌 사람이 법률 고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h. 상소위원회가 받아들인 상소의 모든 사건에서 있어서, 혐의, 조사 결과 및 증거가 모두 열람되고 변론이 종결되면, 사건 당사자는 모두 물러나고, 상소위원은 그 사건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상소기구는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부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뒤집거나 판결 및/또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심리 또는 재판에서 부과된 것보다 높지 않은 징계가 부과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전체 또는 일부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하거나 징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위원회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없습니다. 상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685 이루어져야 한다.

686 i. 모든 경우에 증거제출권은 재판부에서 그 사건의 쟁점에 대해 한 번 심리하면 소진되나, 교단법에 대한 질문에는
687 단계적으로 연대상소위원회에 상소할 때 사용될 수 있다(¶ 921).

688 j. 교단은 재판부에서 얻은 자료로 상소할 권리가 없다. 단, 교회법 또는 행정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689 법원의 판단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교회는 상소위원회 및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690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교회법 또는 행정의 중대한 오류"란 교리와 장정이 요구하는 교회법 또는 사법 절차를
691 오해·곡해·오적용 또는 위반(고의든 아닌든)한 것으로, 이런 오류가 (상소기구의 판단에 따라) 재판 법원 또는 조사
692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소장을 인증하지 않기로 한
693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교단법이나 행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연대상소협의회가 이
694 규정에 따른 교회법 또는 행정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평결 및/또는 처벌에 관한 새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695 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조사위원회 의장이나 재판부 사회자에게 그 조치의 근거를 명시한 진술서를 반환하며, 이
696 진술서는 피고소인, 고소인 및 교회 변호인에게도 사본으로 송부됩니다. 이 조치는 일사부재리(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697 재판받지 않는)로 간주되지 않는다.

698 k. 사법절차에 관한 질문은 상소기구의 의장 또는 서기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답변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699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당사자는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상소기구의 위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700 논의해서는 안 된다(¶ 905).

701 2. 감독 또는 목회자의 상소

702 a. 재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현직 감독 또는 명예직 또는 행정적인 위치에 있는 목회자를 포함한 목회자는 ¶
703 915에 따른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704 b. 항소 통지가 법원 사회자에게 전달되면, 사회자는 연대상소협의회 회장 및 서기에게 통지하고 사건 서류를 제출해야
705 합니다. 연회 또는 총회 서기에게 문서를 보낸 경우, 감리사는 서기에게 해당 문서를 연대상소위원회 회장과 서기에게
706 보내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상소가 제기된 연회의 총리사(상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에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707 의장), 상소인 및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상소가 심리될 시간과 장소를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708 상소위원회에 통지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재판을 기소한 변호사는 ¶ 905 및 ¶ 911의 규정에 따라
709 교체되지 않는 한 상소 절차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710 c. 연대상소협의회가 연회에서 제기되어 협의회 앞에 출석하는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711 여행비, 체제비 또는 기타 합리적인 관련 비용, 그리고 협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법률 고문의 비용은 소송이
712 발생한 연회(피고가 활동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또는 총회(피고가 활동 감독인 경우)의 행정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713 합니다. 모든 비용은 연대상소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합니다. 교회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이 발생한 연회 또는 총회에서
714 지불합니다. 피고소인을 위한 변호 비용은 공정성을 위해 상소위원회가 연회 또는 총회에 피고소인에게 변상하도록
715 명령하지 않는 한 피고소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716 3. 평신도 교인의 상소

717 a.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평신도 회원은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유죄 판결 후 30일 이내에 담임 목사와 감리사에게

718 서면으로 사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19 b. 감리사는 임시상소위원회 소집의 일시와 장소를 관련자 모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는 감리사에게 상소
720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시상소위원회는 상소 통지 접수 후 삼십(30)일 이상
721 구십(9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722 c. 임시 연회상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공천위원회(¶ 710)는 상소인의 지방회(또는 재판이 진행된
723 지방회)가 아닌 연회 내 교회의 고백교인 평신도 11명을 임명하되, 이들은 개체교회 평신도대표 또는 연회 평신도대표로
724 직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그 누구도 재판위원회의 구성원이었어서는 안됩니다. 아홉(9) 명은 상소 위원회로, 두 명은 대체
725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726 d. 임시 연회 상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감리사가 피고소인 소속 교회의 목회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727 e. 상소 절차에서 발생하는 교단법에 대한 질문은 어느 당사자든 연대상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728 f. 평신도 회원이 제기한 상소건을 심리하고 상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고용된 법률 고문의
729 비용을 포함하여 상소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여비, 생계비 또는 기타 합리적인 관련 비용은 연회의 행정 기금에서
730 지급합니다. 감리사가 모든 비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교단의 자문 비용은 연회에서 지불합니다. 피고소인을 위한 변호사
731 비용은 공정성을 위해, 임시 연회상소위원회가, 연회는 피고소인에게 상환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피고소인이 지불해야
732 합니다.

733 ¶ 916. 교단법 적용에 대한 상소.

734 1. 법률 질문에 대한 상소는 다음과 같이 자동 상소됩니다:

735 a. 구역회 또는 지방회를 주재하는 감리사의 결정에서 연회를 주재하는 감독에게. 상소가 접수되면, 감독의 결의 사항은
736 연대상소협의회로 추가 상소할 수 있습니다;

737 b. 연회를 주재하는 감독 또는 총리사의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로;

738 c. 총회를 주재하는 감독의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로.

739 2. 회의 중 서면으로 법률 질문이 제기된다면, 총무는 제기된 질문의 정확한 내용과 의장 판결을 회의록과 연회록에
740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기는 질문과 판결의 사본을 작성 및 인증하고 상소를 접수한 사람이나 기관에
741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742 ¶ 917. 행정 결정에 대한 상소(¶ 906 참조).

743 1. 행정절차상의 이의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744 a. 목회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연회 행정심사위원회로;

- 745 b. 연회 행정심사위원회에서 연회 목회위원회 전체 회의로; 그리고
- 746 c. 연회 안수(목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목회자회의로.
- 747 d.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감독의 결정과 연대상소협의회의 검토를 위해 연회 목회자회의에서 제기되어야
748 합니다.
- 749 2. 이러한 모든 상소의 경우 상소인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소 통지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러한 통지를 받은 임원에게
750 상소 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상소기구에서의 심리는 해당 진술서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합니다.
- 751 3. 상소기구는 행정 심리의 소집권자와 상소인에게 조치의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보내야 하며, 이 진술서는 상소인의
752 인사 파일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 753 4. 피고소인이 행정심리 중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754 상소인이 위법 행위, 교회 탈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
755 이전에 교회 행정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소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해당
756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적절한 상소 기관이 상소를 심리해야 한다.
- 757 5. 상소권은 (직무)태만 또는 기타 사유로 한번 상실된 경우 어떤 후속 상소기구에 의해 회복될 수 없습니다.
- 758 6. 상소신청권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상소인이 생존해 있을
759 때와 마찬가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760 7. 모든 증거를 포함한 행정 절차의 기록 및 문서만이 상소심 심리에서 사용됩니다.
- 761 8. 상소기구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결정합니다: 행정 기구의 권고 또는 조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회법 또는
762 절차 오류가 있었는가? 행정 절차의 기록과 모든 당사자의 공식 대표의 주장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 상소기구는 어떠한
763 경우에도 증인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상소기구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률 고문(변호사)을 참석시킬 수
764 있습니다.
- 765 9. 상소 기구가 (교단법 적용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오류를 즉시 시정하거나 오류가
766 무해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위원회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767 명백한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심리를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없습니다. 상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768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 769 10. 모든 경우, 적법한 행정 심리 기구에서 사건의 쟁점이 한 차례 심리되면 증거 제출의 권리는 소진되나, 그 행정 심리
770 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관한 질문은 목회자 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771 연대상소협의회의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772 섹션 V. 기타 조항

773 ¶ 918. 기타 조항.

1. 소속 연회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는 목회자는, 위반이 발생한 연회의 해당 책임자들의 관할을 받습니다. 다만 두 연회의 감독들과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가, 공정성을 위하여 그 절차를 목회자의 소속 연회의 해당 책임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의하거나, 목회자가 선임지위를 선택한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연회의 해당 책임자들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현직 감독이나 목회자가 ¶ 906, 907, 또는 908에 따라 고소된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되어 그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글로벌 감리교회 탈퇴를 원하는 경우, 해당 감독 또는 목회자는 자격 증명서를 반환하고, 이름은 연회 회원명부에서 삭제됩니다. 이 경우 기록은 "고소에 따라 철회" 또는 "기소에 따라 철회" 중 적절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고소를 해결해야 하며, 고소 처리 절차는 고소 건이 종료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고소 또는 기소에 의한 탈퇴"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08).

3. 글로벌감리교회의 고백교인이 범죄 혐의로 고발되어 그 과정 중 언제라도 글로벌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를 원할 때, 구역회는 그 교인이 고백교인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록은 "고소로 인한 출교"로 한다. 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기소로 회부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교단 탈퇴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은 "기소로 인한 출교"로 기록된다. 그 사람이 고백교인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다른 지역 회중의 고백교인이 되려면) 먼저 고소를 해결해야 하며 고소 처리는 그 사안이 교단을 탈퇴함으로 고소 건이 중단된 시점에서 시작한다.

4. 절차상 목적을 위하여, 사법 절차는 고소가 과정의장에게 전달된 날짜에 효력이 있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섹션 6.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

¶ 919. 멤버십.

1. 연대상소협의회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위원회는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선출된 회원은 2년 또는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선출된 이는 2026년 총회에서 공천 자격이 있으며, 이 2년 기간은 여기 명시된 기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총회에서는 4명의 회원이 목회자이며 3명의 교인이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회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합니다. 위원은 최대 2회 연속하여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원수는 6년마다 교대하여 목회자는 해당 임기 동안 4명, 평신도는 다음 6년 임기 동안 4명으로 한다.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교인(목회자 또는 평신도)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연대상소협의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2. 대체자. 목회자와 평신도는 향후 6년 임기 동안 항소 연대협의회에서 봉사할 정원과 동일한 수의 교체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 유고시에는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위원이 협의회 회기 동안 해당 역할에 임해야 한다. 협의회 위원이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범주에서 다음으로 선출된 대체위원이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우며, 해당 임기는 최대 임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임기 만료. 연대상소협의회 위원과 그 대체위원의 임기는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는 교단총회 폐회와 함께 만료된다.

4. 부적격.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은 총회 대의원으로 또는 어떤 경우든 총회 또는 연회위원회, 위원단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806 5. 공천. 총회 개최 전에 행정공천위원회는 교회의 지리, 인종, 성별 다양성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평신도 및 목회자 범주의
 807 적절할 인원으로 구성된 총 스물한(21)명을 다수결로 공천해야 합니다. 교단총회 첫날에 목회자 또는 평신도의 공천을
 808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다. 이름, 연회 멤버십, 100자 이내 이력 등은 최소한 선거 사십팔(48) 시간 전에, 총회 대의원들이
 809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논의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810 ¶ 920. 조직 및 절차.

811 1. 사법 관행 및 절차.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리와 장정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자체 실무 및 절차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812 여기에는 협의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가 선출이 포함되며, 이들은 협의회 회원들이 선출합니다.

813 2. 회의 시기와 장소.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가 회집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총회가 폐회할 때까지
 814 계속됩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에 최소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와
 815 장소에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물리적 소집을 방해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816 경우, 협의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817 3. 정족수. 정식으로 참석한 7명의 회원 또는 대체자가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평신도 1명과 목회자 1명이 질병이나 다른
 818 이유로 사퇴한 경우 대체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교단총회의 어떤 결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려면 최소 5명의 협의회
 819 의원 또는 정당하게 회의에 참석한 대체 위원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연대상소협회의
 820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821 4. 재판 일람표 연대상소협의회 서기는 청구서 제출 마감일 최소 삼십(30)일 전에 각 모임에서 결정될 사안의 목록을
 822 공표해야 합니다. 계류 중인 각 사안에 대한 설명은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계류 중인 사안의 주제를 충분히 알 수
 823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824 5. 공개 접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대상소협의회에 적법하게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적 기록으로 간주되며, 글로벌
 825 감리교회 목회자 및 교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대상소협회의 다수결 투표로, 비밀 정보는 공개 기록에서 삭제할
 826 수 있습니다. 협의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그러나 협의회는 모든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827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828 ¶ 921. 관할권.

829 1. 연대상소협의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의 5분의 1의 상소 또는 감독회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의
 830 어떤 조치가 본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831 2. 연대상소협의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의 5분의 1 또는 감독회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제안된 입법이 본
 832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립니다.

833 3. 연대상소협의회는 해당 연회에 출석해 투표한 대의원의 5분의 1이 항소할 경우, 연회의 어떤 행위가 본 교리와 장정에
 834 부합하는지를 결정합니다.

835 4.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가 창설하거나 승인한 기구 또는 연회가 창설하거나 승인한 기구가 취한 모든 조치의 합법성을
 836 그 조치가 취해진 총회 또는 연회의 대의원 5분의 1의 출석과 투표 또는 창설 또는 승인한 기구의 위원 3분의 1의 출석과

837 투표 또는 감독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838 5.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 또는 연회가 창설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취한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839 연회 출석 대의원 5분의 1의 청원과 연회의 의결에 따라 이송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840 6.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리와 장정 또는 그 일부의 의미, 적용, 효력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또는 연회의
841 어떠한 행위나 입법의 적법성, 의미, 적용, 효력에 관하여 선언적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이송명령서를 부여할 수 있다.
842 사건 이송 명령서의 청원은 다음에 의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843 a. 총회 출석 투표 대의원 5분의 1의 찬성으로;

844 b. 감독회의 출석 투표 감독 과반수의 찬성으로;

845 c. 총회 또는 연회가 창설 또는 인가한 기관, 또는 해당 업무에 관련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그 기관 관리기구의
846 과반수 투표로; 혹은

847 d. 연회 출석 투표 대의원 5분의 1의 찬성으로.

848 7. 연대상소협의회는 연회나 총회에서 감독회의가 내린 법의 결정을 확인, 수정 또는 파기한다. 그러한 감독의 법률 결정은
849 연대상소협회의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결정이 내려진 연회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850 8. 연대상소협의회는 임시 연회항소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교리와 장정, 연대상소협회의의 선행 판결, 또는 다른
851 연회항소위원회의의 교회법 관련 결의 사항과 상충한다고 보이면, 그 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사건 이송 명령서를 부여할 수
852 있습니다.

853 9. 연대상소협의회는 구(9)부에 따라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854 10. 연대상소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855 a. 목회자 또는 현직 감독(¶ 915.8)에 대한 재판 법원의 결정을 확정, 변경, 환송 또는 파기합니다.

856 b. 교회가 상소한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법원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심리나 재판을 위해 환송할 수
857 있습니다(¶ 915.10).

858 c. 조사기관이 내린 불리한 이중위험 판정에 대한 피고소인의 항소를 심리·판단한다(¶ 905.8).

859 ¶ 922. 이송명령. 사건 이송 명령서는 다른 기관이 내린 이전 결정을 재심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사건 이송 명령서는
860 임의 사항이며, 연대상소협의회 위원 3명의 찬성 투표로 부여됩니다.

861 ¶ 923. 결정. 연대상소협회의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결정은 각 사안의 이해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하며
862 공개 검토를 위해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863 ¶ 924. 이전 판정의 유효성. 감리교회 및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와 같은 전신 감리교 기구의 결정은 연대상소협회의
864 변론에서 인용될 수 있지만, 연대상소협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전 판정의 유효성을 갖는다.

865 ¶ 925. 일정 및 마감일.

866 이 단락은 ¶ 901-918에 포함된 일정 및 마감일을 요약합니다.

867 1. 모든 통지는 심리 개최 삼십(30)일 전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905).

868 2. 심리에서 사용될 증거는 재판 개최 삼십(30)일 전까지 피고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905).

869 3. 감리대응은 육십(60)일 이내(한 번만 30일 연장 가능)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906, 909).

870 4. 조사 대응은 육십(60)일 이내(한 번만 30일 연장 가능)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906).

871 5. 관할 임원은 사법적 불만/고소에 대한 감리대응 종료 후 삼십(30)일 이내에 교회를 위한 변호인을 파송해야 합니다(¶
872 911).

873 6. 교회 측 변호인은 삼십(30)일마다 모든 당사자에게 고소 진행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911).

874 7. 사법적 불만/고소에 대한 응답은 피고소인이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875 911).

876 8. 조사 위원회는 사법적 불만/고소 접수 후 육십(6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911).

877 9. 조사 위원회 의장의 예비 판결은 심리 개최 오(5)일 전까지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912).

878 10. 심리 외부에서 증인을 심문할 경우, 삼(3)일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912, 913).

879 11. 고소장 및 진술서는 조사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오(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912).

880 12. 장소 변경 요청은 재판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13 및 914).

881 13. 재판 법원의 소집 담당관은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고소장 및 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교회
882 측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913).

883 14. 상소 통지는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915, 917, 906).

884 15. 임시상소위원회 심리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통지는 상소 접수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885 915).

886 16. 임시상소위원회 심리는 항소 접수일로부터 삼십(30)일에서 구십(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915).

887 ¶ 926. 우리 교단이 그 범위와 회원 모두에서 글로벌임을 인식하여, 이 제9부에 명시된 절차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문화적
888 차이나 제한 및 극도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연대협의회에 본 절차, 일정, 또는 마감일의 제한적인 예외를 신청할 수
889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각 사안별로만 허용되며, 어느 지역이나 연회에 대한 계속적 변경으로 인정되어선 안 됩니다.
890 이러한 차이는 교회법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891 연대상소협의회는 연대 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모든 변칙 신청 및 그에 대한
892 상소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고소 과정, 모든 일정 및 마감일을 정지시킵니다.

893 추가를 통한 수정:

894 ¶ 710.2.e ¶ 906에 명시된 행정 고소의 경우, 안수 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최소 한 명의 평신도 회원이 포함된 조사
895 위원회를 파송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ይህ ገጽ ሆነ ተብ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단락 번호 색인

기울임꼴 항목: 청원의 텍스트 선언에는 참조되어 있으나 헤더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

¶ 청원 (쪽)	¶ 청원 (쪽)
¶ 101.2 1409 (6)	¶ 211 1094 (444)
¶ 102.2 1324 (3)	¶ 212.1 1095 (445) · 1444 (446) · 1447 (447)
¶ 102.3 1325 (4)	¶ 212.2 1094 (444)
¶ 103 1056 (5) · 1409 (6) · 1461 (8)	¶ 213 1097 (448)
¶ 103.2 1403 (9)	¶ 213.1 1097 (448)
¶ 103.4 1056 (5)	¶ 213.2 1097 (448)
¶ 103.8 1404 (10)	¶ 213.3 1097 (448)
¶ 103.9 1461 (8)	¶ 302 1156 (51) · 1258 (62)
¶ 104 1060 (11)	¶ 302.1 1156 (51)
¶ 106 1441 (12) · 1231 (17) · 1321 (22)	¶ 302.2 1156 (51)
1322 (23) · 1323 (24) · 1446 (26)	¶ 302.3 1044 (55) · 1111 (56) · 1238 (57)
¶ 106.1 1231 (17) · 1321 (22) · 1322 (23)	1305 (58) · 1306 (59) · 1448 (60)
1323 (24) · 1326 (25)	1156 (51)
¶ 106.3 1446 (26)	¶ 302.4 1125 (61) · 1258 (62) · 1307 (63)
¶ 107 1077 (27) · 1443 (28)	1156 (51)
¶ 108 1434 (29)	¶ 302.5 1308 (64) · 1156 (51)
¶ 109 (신설) 1061 (33)	¶ 302.6 1156 (51)
¶ 201 1313 (419)	¶ 302.7 1006 (65) · 1020 (66) · 1467 (67)
¶ 204 1086 (420) · 1239 (421)	1156 (51)
¶ 206 1087 (422) · 1310 (423) · 1312 (367)	¶ 302.8 1007 (68) · 1021 (69) · 1127 (70)
¶ 206.1 1316 (424) · 1087 (422)	1468 (71) · 1156 (51)
¶ 206.4 1312 (367)	¶ 302.9 1457 (72) · 1156 (51)
¶ 207 1088 (425) · 1048 (431)	¶ 302.10 1156 (51)
¶ 207.1 1317 (427)	¶ 302.11 1156 (51)
¶ 207.2 1318 (428)	¶ 302.12 1156 (51)
¶ 207.4 1245 (429) · 1135 (234)	¶ 302.13 1156 (51)
¶ 207.8 1319 (430)	¶ 302.14 1156 (51)
¶ 208 1048 (431) · 1089 (432) · 1241 (433)	¶ 313 1011 (34)
1320 (434) · 1135 (234) · 1263 (321)	¶ 401 1359 (79) · 1361 (80) · 1363 (81)
¶ 208.1 1090 (435) · 1262 (436)	1364 (82)
¶ 208.5 1091 (437)	¶ 402 1365 (83) · 1373 (84) · 1376 (85)
¶ 208.9 1281 (438)	¶ 403 1410 (99)
¶ 208.10 1280 (439)	¶ 404 1434 (29)
¶ 208.13 1279 (440)	¶ 405 1410 (99)
¶ 209 1092 (441)	¶ 408 1378 (87) · 1410 (99)
¶ 210 1093 (442)	¶ 409 1138 (88) · 1199 (92)
¶ 210.1 1093 (442)	¶ 409.1 1138 (88) · 1199 (92)
¶ 210.3 1049 (443)	¶ 409.1-2 1380 (93)

¶ 청원 (쪽)

¶ 409.2	1199 (92)
¶ 409.3	1299 (94) · 1389 (95) · 1135 (234) 1138 (88)
¶ 411	1410 (99)
¶ 411.1	1098 (96)
¶ 411.2	1139 (97)
¶ 411.4	1031 (98)
¶ 413	1011 (34) · 1062 (35) · 1300 (36) 1135 (234)
¶ 416	1428 (37)
¶ 418	1140 (39) · 1405 (40)
¶ 419	1315 (41) · 1430 (42) · 1410 (99)
¶ 420	1406 (43) · 1410 (99)
¶ 421	1013 (44) · 1331 (45)
¶ 422	1410 (99)
¶ 422.1	1401 (103)
¶ 422.2	1400 (104)
¶ 422.3	1399 (105)
¶ 422.4	1398 (106)
¶ 422.5	1397 (107)
¶ 423	1142 (108) · 1396 (109)
¶ 424	1395 (110)
¶ 425	1145 (111) · 1394 (112)
¶ 426	1146 (113) · 1393 (114)
¶ 427	1392 (115)
¶ 428	1147 (116) · 1391 (117)
¶ 429	1388 (118)
¶ 429.1	1390 (119)
¶ 429.2	1388 (118)
¶ 429.3	1388 (118)
¶ 429.4	1388 (118)
¶ 429.5	1388 (118)
¶ 429.6	1387 (120)
¶ 429.7	1147 (116)
¶ 430	1386 (121)
¶ 431	1149 (122) · 1385 (123)
¶ 432	1150 (124) · 1384 (125)
¶ 433	1383 (126)
¶ 433 / ¶ 423	1144 (127)
¶ 434	1151 (128)
¶ 436.6	1302 (129)

¶ 청원 (쪽)

¶ 437.1	1138 (88)
¶ 437.2	1158 (130) · 1382 (131) · 1138 (88)
¶ 437.4	1159 (132)
¶ 438.2	1032 (133) · 1160 (134)
¶ 438.4	1159 (132)
¶ 438.5	1161 (135) · 1411 (136)
¶ 438.7	1162 (137)
¶ 438.8	1163 (138)
¶ 438.9	1164 (139) · 1416 (140)
¶ 439.2	1200 (141)
¶ 439.4	1201 (142) · 1379 (143)
¶ 439.5	1203 (144)
¶ 439.6	1203 (144)
¶ 439.7	1204 (145) · 1377 (146)
¶ 439.8	1204 (145)
¶ 439.10	1205 (147)
¶ 439.11	1206 (148)
¶ 439.12	1207 (149)
¶ 439.13	1205 (147)
¶ 440	1165 (150) · 1374 (151)
¶ 441	1166 (152)
¶ 442	1167 (153) · 1168 (156)
¶ 442.1	1124 (157) · 1296 (158) · 1372 (159)
¶ 442.1.f	1124 (157)
¶ 442.2	1303 (160) · 1371 (161)
¶ 442.3	1298 (162)
¶ 442.4	1079 (163) · 1168 (156)
¶ 443.1	1169 (164) · 1138 (88)
¶ 443.2	1370 (165)
¶ 443.3	1170 (166) · 1369 (167) · 1138 (88)
¶ 443.4	1171 (170) · 1172 (168) · 1368 (169)
¶ 443.5	1138 (88)
¶ 443.5; 443.6	1367 (171)
¶ 443.6	1159 (132) · 1367 (171)
¶ 444	1173 (172) · 1366 (173)
¶ 444.1	1173 (172)
¶ 444.2	1173 (172)
¶ 444.4	1173 (172)
¶ 445	1080 (174)
¶ 445.1	1209 (175) · 1362 (176)
¶ 445.2	1209 (175)

¶ 청원 (쪽)

¶ 445.4	1209 (175)
¶ 445.5	1210 (177)
¶ 445.6	1360 (178) · 1210 (177)
¶ 445.7	1210 (177)
¶ 445.8	1211 (179) · 1246 (182) · 1301 (184) 1080 (174)
¶ 445.8.a	1246 (182)
¶ 445.8.d	1301 (184)
¶ 446	1358 (185) · 1435 (186) · 1212 (187)
¶ 446.1	1212 (187) · 1357 (189)
¶ 446.2	1356 (190) · 1212 (187)
¶ 446.3	1213 (191) · 1355 (192)
¶ 446.4	1214 (193) · 1354 (196)
¶ 446.5	1214 (193)
¶ 446.5; 446.6	1353 (197)
¶ 446.6	1214 (193) · 1353 (197)
¶ 447	1174 (198)
¶ 447.1	1352 (201) · 1174 (198)
¶ 447.2	1351 (202)
¶ 447.3	1350 (203)
¶ 447.4	1174 (198)
¶ 447.5	1174 (198)
¶ 447.6	1349 (204) · 1174 (198)
¶ 447.7	1348 (205) · 1174 (198)
¶ 447.8	1174 (198)
¶ 447.11	1347 (206) · 1174 (198)
¶ 449	1004 (449)
¶ 449.1	1215 (450) · 1278 (451)
¶ 449.2	1216 (452)
¶ 449.3	1277 (454) · 1216 (452)
¶ 449.4	1216 (452)
¶ 449.6	1217 (455) · 1276 (456)
¶ 449.7	1065 (457) · 1217 (455)
¶ 449.8	1218 (458)
¶ 449.9	1275 (459) · 1217 (455)
¶ 449.10	1004 (449)
¶ 450	1176 (207)
¶ 450.1	1176 (207)
¶ 450.3	1176 (207)
¶ 451	1465 (460)
¶ 452	1178 (208)

¶ 청원 (쪽)

¶ 452.1	1345 (209)
¶ 452.2	1179 (210)
¶ 453.1	1344 (211)
¶ 453.2	1342 (212)
¶ 453.3	1341 (213)
¶ 455	1180 (214)
¶ 455.1	1180 (214)
¶ 455.2	1304 (216) · 1180 (214)
¶ 455.3	1180 (214)
¶ 455.4	1180 (214)
¶ 455.5	1180 (214)
¶ 456	1099 (217) · 1181 (218)
¶ 456.6	1099 (217)
¶ 5XX	1309 (226)
¶ 501.2	1449 (227) · 1138 (88)
¶ 502 / ¶ 405	1096 (220)
¶ 502.1	1339 (228)
¶ 502.2	1001 (229) · 1297 (230) · 1337 (231) 1338 (232) · 1343 (233)
¶ 502.2.a	1338 (232)
¶ 502.2.b	1297 (230)
¶ 502.2.d	1337 (231)
¶ 503	1309 (226)
¶ 503.1	1135 (234) · 1469 (86)
¶ 504.2	1135 (234)
¶ 505	1128 (242) · 1412 (245) · 1008 (250)
¶ 505.2	1022 (249)
¶ 505.8	1008 (250)
¶ 505.9	1009 (251)
¶ 506	1003 (252) · 1112 (254)
¶ 506.1	1295 (257) · 1460 (258)
¶ 506.1a	1003 (252)
¶ 506.2	1003 (252)
¶ 507	1070 (259) · 1085 (262) · 1131 (263) 1148 (268)
¶ 507.2	1294 (271) · 1346 (272) · 1085 (262) 1135 (234) · 1148 (268)
¶ 507.3	1070 (259) · 1085 (262) · 1135 (234)
¶ 507.4	1070 (259) · 1135 (234) · 1148 (268)
¶ 507.6	1431 (273)
¶ 508	1442 (274)

¶ 청원 (쪽)

¶ 508.2	1408 (275)
¶ 509	1413 (276) · 1135 (234)
¶ 509.1	1229 (278)
¶ 509.3	1413 (276)
¶ 509.4	1135 (234) · 1413 (276)
¶ 509.5	1135 (234) · 1413 (276)
¶ 509.6	1413 (276)
¶ 510	1415 (280)
¶ 511	1084 (282) · 1126 (283) · 1375 (284)
¶ 512	1047 (285) · 1083 (287)
¶ 512.1	1182 (289) · 1047 (285) · 1083 (287) 1135 (234)
¶ 512.2	1183 (290) · 1047 (285) · 1083 (287) 1135 (234)
¶ 512.3	1047 (285) · 1083 (287)
¶ 512.4	1047 (285) · 1083 (287)
¶ 514	1459 (291)
¶ 515	1450 (293)
¶ 516.1	1233 (295) · 1234 (296)
¶ 517	1235 (297) · 1420 (299)
¶ 517.1.e	1420 (299)
¶ 517.4	1420 (299)
¶ 518	1407 (300)
¶ 518.6	1328 (304)
¶ 519	1407 (300)
¶ 520	1005 (305) · 1419 (306) · 1407 (300)
¶ 521	1033 (307)
¶ 6XX	1429 (310)
¶ 603	1418 (312)
¶ 603.5	1051 (313)
¶ 603.8	1138 (88) · 1285 (341)
¶ 603.14	1418 (312)
¶ 604	1451 (314)
¶ 604.1	1260 (316) · 1292 (317)
¶ 604.2	1451 (314)
¶ 604.3	1261 (318) · 1451 (314)
¶ 604.4	1451 (314)
¶ 604.5	1198 (319) · 1451 (314)
¶ 604.8	1076 (320) · 1263 (321) · 1336 (322) 1262 (436)
¶ 605	1034 (323) · 1424 (324) · 1053 (499)

¶ 청원 (쪽)

1427 (328)	
¶ 605.1	1155 (325) · 1425 (326) · 1194 (478)
¶ 605.3	1053 (499)
¶ 605.4	1078 (327)
¶ 605.5	1427 (328)
¶ 606	1463 (368)
¶ 606.7	1054 (544)
¶ 607	1219 (330) · 1288 (331)
¶ 607.1	1293 (332)
¶ 607.1.h	1219 (330)
¶ 607.1.i	1219 (330) · 1285 (341)
¶ 607.1.j	1219 (330)
¶ 607.1.m	1219 (330)
¶ 607.1.o	1219 (330)
¶ 608	1014 (333) · 1184 (334) · 1456 (335)
¶ 609	1015 (336) · 1220 (338) · 1290 (340)
¶ 609.1	1015 (336) · 1220 (338)
¶ 609.2	1220 (338)
¶ 609.4	1285 (341)
¶ 609.5	1220 (338)
¶ 609.7	1015 (336)
¶ 609.8	1220 (338)
¶ 609.9	1220 (338)
¶ 609.11	1138 (88) · 1220 (338)
¶ 610	1285 (341)
¶ 610.5	1025 (344) · 1335 (346)
¶ 610.5.b	1335 (346)
¶ 610.5.c	1335 (346)
¶ 610.7	1024 (347) · 1052 (350) · 1221 (351) 1247 (353)
¶ 610.9	1222 (354) · 1334 (355)
¶ 610.10	1035 (356) · 1223 (357)
¶ 611	1432 (358) · 1464 (370)
¶ 611.1	1291 (359)
¶ 611.2	1185 (360)
¶ 612	1433 (361)
¶ 613	1436 (362)
¶ 613.4	1436 (362)
¶ 614	1438 (363)
¶ 614.1	1438 (363)
¶ 614.2	1438 (363)

¶ 청원 (쪽)

¶ 615	1439 (364)
¶ 703	1224 (372)
¶ 703.1	1225 (373) · 1224 (372)
¶ 703.2	1224 (372) · 1225 (373)
¶ 703.3	1224 (372) · 1225 (373)
¶ 703.4	1224 (372) · 1225 (373)
¶ 703.8	1224 (372) · 1225 (373)
¶ 703.8.d	1211 (179)
¶ 703.8.f	1211 (179)
¶ 703.8.h	1211 (179)
¶ 703.8.i	1211 (179)
¶ 703.8.j	1211 (179)
¶ 703.8.k	1211 (179)
¶ 703.8.m	1211 (179)
¶ 703.9	1100 (374) · 1226 (375)
¶ 703.10	1226 (375)
¶ 703.11	1226 (375)
¶ 703.14	1227 (376)
¶ 703.15	1227 (376)
¶ 703.16	1227 (376)
¶ 703.17	1227 (376)
¶ 703.18	1227 (376)
¶ 705	1463 (368)
¶ 705.1	1071 (377)
¶ 705.3	1314 (378)
¶ 706	1186 (379)
¶ 706.6	1036 (381)
¶ 708	1465 (460)
¶ 708 (신설)	1259 (382)
¶ 708.1	1037 (384) · 1187 (385) · 1465 (460)
¶ 708.7	1051 (313)
¶ 708.8	1051 (313)
¶ 708.9	1136 (386)
¶ 709.2	1188 (387)
¶ 709.6	1027 (388) · 1028 (389) · 1189 (391) 1287 (392) · 1135 (234)
¶ 709.9	1002 (393)
¶ 709.11	1464 (370)
¶ 710	1069 (394) · 1132 (395) · 1202 (396) 1113 (402) · 1190 (398)
¶ 710.f	1192 (407)

¶ 청원 (쪽)

¶ 710.1	1141 (397) · 1190 (398) · 1228 (399)
¶ 710.1.a	1141 (397)
¶ 710.2.e	1130 (584)
¶ 710.4	1064 (401)
¶ 710.5	1113 (402)
¶ 710.5.a	1113 (402)
¶ 710.5.b	1113 (402)
¶ 710.5.c	1113 (402) · 1265 (405)
¶ 710.5.h	1113 (402)
¶ 710.5c	1265 (405)
¶ 710.6	1191 (406) · 1069 (394) · 1132 (395)
¶ 710.6.f	1191 (406)
¶ 710.7	1192 (407)
¶ 710.9	1202 (396)
¶ 710.9 (신설)	1055 (408)
¶ 711	1193 (409) · 1063 (412)
¶ 711.1	1041 (411) · 1063 (412)
¶ 711.2	1059 (413)
¶ 712	1193 (409)
¶ 8XX	1026 (461)
¶ 8XX (신설)	1068 (463) · 1115 (464) · 1133 (466) 1177 (467) · 1283 (468) · 1333 (470)
¶ 801	1274 (471)
¶ 801.2 (신설)	1038 (472)
¶ 802	1273 (473)
¶ 802.3	1101 (474) · 1272 (475) · 1452 (476)
¶ 802.7	1102 (477)
¶ 803	1194 (478) · 1282 (492)
¶ 803.1	1072 (481) · 1194 (478)
¶ 803.2	1152 (482) · 1153 (484) · 1194 (478)
¶ 803.2.a	1152 (482)
¶ 803.2.c	1152 (482) · 1157 (489)
¶ 803.3	1143 (485) · 1194 (478)
¶ 803.4	1194 (478) · 1282 (492)
¶ 804	1282 (492)
¶ 804.1	1073 (486) · 1103 (487) · 1134 (488) 1157 (489) · 1089 (432) · 1123 (491)
¶ 804.2	1123 (491) · 1134 (488)
¶ 804.4	1282 (492)
¶ 805.1	1458 (493)
¶ 805.2	1286 (494)

¶ 청원 (쪽)

¶ 805.5	1470 (495)
¶ 807.1	1039 (496)
¶ 807.1.a	1039 (496)
¶ 807.2	1050 (497) · 1074 (498)
¶ 807.2.c	1074 (498)
¶ 807.4	1053 (499) · 1066 (501) · 1075 (502) 1121 (503) · 1122 (504) · 1270 (505) 1271 (506)
¶ 807.4.d	1066 (501) · 1271 (506)
¶ 807.4.i	1270 (505)
¶ 807.4.l	1053 (499)
¶ 808	1104 (507) · 1422 (513)
¶ 808.2	1242 (510) · 1268 (511) · 1269 (512) 1422 (513)
¶ 808.2.a	1269 (512)
¶ 808.2.b	1269 (512)
¶ 808.2.c	1242 (510) · 1268 (511)
¶ 808.2.d	1268 (511)
¶ 809	1267 (515) · 1437 (516) · 1422 (513)
¶ 809.2.c	1437 (516)
¶ 810	1105 (518) · 1129 (519)
¶ 810.2	1106 (522) · 1266 (523)
¶ 810.2.a	1105 (518) · 1106 (522) · 1266 (523)
¶ 810.3	1107 (524) · 1264 (525)
¶ 810.3.b	1105 (518) · 1107 (524)
¶ 810.4	1129 (519)
¶ 810.5	1129 (519)
¶ 811	1108 (526)
¶ 811.2	1329 (528)
¶ 811.2.f	1329 (528)
¶ 812.2	1029 (529) · 1109 (530)
¶ 812.2g	1029 (529)
¶ 813	1016 (531) · 1110 (535)
¶ 813.1	1257 (534) · 1016 (531)
¶ 813.2	1110 (535)
¶ 813.3	1256 (536)
¶ 813.5	1116 (537) · 1255 (538) · 1016 (531)
¶ 813.6	1254 (539) · 1016 (531)
¶ 813.7	1117 (540)
¶ 814.3	1118 (541)
¶ 814.6	1119 (542) · 1253 (543)

¶ 청원 (쪽)

¶ 815	1054 (544) · 1120 (548)
¶ 815.1	1252 (549)
¶ 815.1.c	1252 (549)
¶ 815.4	1040 (550)
¶ 815.5	1120 (548)
¶ 815.6	1251 (551) · 1120 (548)
¶ 815.6.m	1251 (551)
¶ 9XX (신설)	1284 (568)
¶ 903	1114 (570) · 1327 (571)
¶ 905	1045 (572) · 1081 (573) · 1440 (574)
¶ 905.11	1081 (573) · 1440 (574)
¶ 905.12	1081 (573)
¶ 906.2	1453 (575)
¶ 908.2	1082 (576) · 1421 (577) · 1423 (578)
¶ 908.2(g)	1421 (577)
¶ 908.2.d	1423 (578)
¶ 908.2.e	1423 (578)
¶ 908.2.f	1410 (99)
¶ 909.2	1311 (579)
¶ 917	1046 (580)
¶ 917.3	1046 (580)
¶ 920.1	1414 (581)
¶ 920.2	1053 (499)
¶ 920.4	1289 (582)
¶ 920.5	1154 (583) · 1194 (478)
¶ 1002	1332 (552)
¶ 1003	1332 (552)
¶ 1005.1	1195 (553)
¶ 1005.2.c	1147 (116)
¶ 1006	1196 (554)
¶ 1010	1249 (555)
¶ 1011	1196 (554)
¶ 1012	1208 (556)
¶ 1012.9	1197 (557) · 1248 (559) · 1417 (560)
¶ 1012.9.d	1248 (559)
¶ 1012.9.e	1197 (557)
¶ 1012.9.f	1197 (557)
¶ 1012.9.g	1197 (557) · 1417 (560)
¶ 1012.16	1208 (556)
¶ 1014	1250 (561)
Part IX / JPP	1130 (584)

¶ 청원 (쪽)

Resolution	1067 (564) · 1240 (46) · 1330 (566) 1454 (47) · 1455 (48) · 1462 (49) 1466 (73)
신설 ¶ 10XX	1250 (561)
신설 ¶ 7XX	1244 (414)
신설 ¶ 8XX	1243 (562)

청원 번호순 색인

번호	¶	제목	페이지
1001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 승인된 훈련과정의 명확화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 US: South Georgia · 단체 · 사역	229
1002	¶ 709.9	연회가 소속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Siloam Springs · US: Trinity · 개체 교회 · 연회	393
1003	¶ 506	안수 목회에 이르는 길: 전통 경로와 대안 경로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 US: Trinity · 단체 · 사역	252
1004	¶ 449	개체 교회 연대 기금 및 혜택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 US: Trinity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9
1005	¶ 520	선임지위 목회자 투표권 개정안 Marion Hanfield ·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 · 개체 교회 · 사역	305
1006	¶ 302.7	인간의 성 정체성과 결혼 Springfield Oaks · US: South Georgia · 개체 교회 · 사회적 증언	65
1007	¶ 302.8	부정한 형태의 성적 행동 및 성 정체성 표현 Springfield Oaks · US: South Georgia · 개체 교회 · 사회적 증언	68
1008	¶ 505.8	동성애 성직 안수에 반대하는 성명서 Springfield Oaks · 미국: 사우스조지아 · 개체 교회 · 사역	250
1009	¶ 505.9	성전환자 성직 안수 반대 Springfield Oaks · 미국: 사우스조지아 · 개체 교회 · 사역	251
1011	¶ 413	성례 권한에 관한 청원 Tera Ertz · Williamsburg Daybreak (US: Virginia) · 개인 · 교리 및 성례	34
1013	¶ 421	성찬의 의미 Joe Stallings · Lucama (US: North Carolina) · 개인 · 교리 및 성례	44
1014	¶ 608	감리사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Steven Taylor · 파나마 감리교회 미국: 북동부 · 개인 · 감리직	333
1015	¶ 609	감리사의 책임 통합 및 명확화 Steven Taylor · 파나마 감리교회 미국: 북동부 · 개인 · 감리직	336
1016	¶ 813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Ecumenical Relationships Commission · Global Methodist Church · 단체 · 헌법, 연대 ...	531
1020	¶ 302.7	기독교적 혼인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 개인 · 사회적 증언	66
1021	¶ 302.8	기독교적 혼인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 개인 · 사회적 증언	69
1022	¶ 505.2	교회의 성에 관한 가르침에 비춘 안수 기준 명확화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 개인 · 사역	249
1024	¶ 610.7	파송결정 절차 Jonathan Lee / 조너선 리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 개인 · ...	347
1025	¶ 610.5	타인종 / 타문화 교육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 개인 · 감리직	344
1026	¶ 8XX	글로벌 연합 위원단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 개인 · 헌법, 연대 ...	461

번호	¶	제목	페이지
1027	¶ 709.6	선거 절차 필수 총회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연회	388
1028	¶ 709.6	총회 대의원 선거 자격 목회자를 명확히 하는 청원 총회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연회	389
1029	¶ 812.2	총회 행정 위원회 추천자 제한 해제 청원 General Conference Commission · Global Methodist Church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	529
1031	¶ 411.4	회원 자격 명확화 총회 대표단 · 회원 자격 명확화 (미국: 대호수지방) · 단체 · 개체 교회	98
1032	¶ 438.2	잘못된 참조 제거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 US: Great Lakes · 단체 · 개체 교회	133
1033	¶ 521	모든 목회자를 위한 구역회 연대 총회 대표단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사역	307
1034	¶ 605	투표 비율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감리직	323
1035	¶ 610.10	연장사역 연대 유지 총회 대표단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감리직	356
1036	¶ 706.6	제목 참조 갱신 중 총회 대표단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연회	381
1037	¶ 708.1	본처 전도사 투표의 일관성 총회 대표단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연회	384
1038	¶ 801.2 (신설)	연대 위원단 공개 회의 총회 대표단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2
1039	¶ 807.1	연대 협의회 공개 회의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 US: Great Lakes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96
1040	¶ 815.4	투표 비율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0
1041	¶ 711.1	연회 연대 기금 총회 대표단 · 총회 대의원단 (미국: 노스조지아) · 단체 · 연회	411
1044	¶ 302.3	교리와. 장정 302.3항을 수정하는 청원입니다. Shreve Community · US: Allegheny West · 개체 교회 · 사회적 증언	55
1045	¶ 905	교리와. 장정 905항을 수정하는 청원. Shreve Community · 슈리브 지역 사회 교회 (미국: 오하이오) · 개체 교회 · 사법 행정	572
1046	¶ 917.3	교리와. 장정 917항을 수정하기 위한 청원. Shreve Community · 슈리브 지역 사회 교회 (미국: 오하이오) · 개체 교회 · 사법 행정	580
1047	¶ 512	교리와. 장정 512 단락 수정에 대한 청원입니다. Shreve Community · 슈리브 지역 사회 교회 (미국: 오하이오) · 개체 교회 · 사역	285
1048	¶ 208	교리와 장정 207과 208 단락을 수정하는 청원. Shreve Community · US: Allegheny West · 개체 교회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1
1049	¶ 210.3	교리와. 장정 210 단락을 수정하는 청원. Shreve Community · US: Allegheny West · 개체 교회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3
1050	¶ 807.2	연대 협의회에 대표되어 있는 신규 - 연대 위원단들 연대 협의회 · 연대 협의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97

번호	¶	제목	페이지
1051	¶ 603.5	총회와 연회 주재 연대 협의회 · 연대 협의회 · 단체 · 감리직	313
1052	¶ 610.7	파송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연대 협의회 · 연대 협의회 · 단체 · 감리직	350
1053	¶ 807.4	연대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공식 총원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99
1054	¶ 815	연대운영책임자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44
1055	¶ 710.9 (신설)	¶ 710 연회 임원회 및 위원회 수정에 대한 청원 Conferences Commission · Global Methodist Church · 단체 · 연회	408
1056	¶ 103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를 구함 마크 배로우 · Hendersonville Christ (US: MidSouth) · 개인 · 교리 및 성례	5
1059	¶ 711.2	총회에서의 공정하고 평등한 대의원 대표권 총회 대표단 · 미국: 중남부 · 단체 · 연회	413
1060	¶ 104	성경 권위에 대한 입장 강화 스콧 볼츠 · 코코모 자이언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개인 · 교리 및 성례	11
1061	¶ 109 (신설)	“제1부: 교리”에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문답” 추가 존 하워드 · 매디슨 베데스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개인 · 교리 및 성례	33
1062	¶ 413	훈련받은 평신도에게 성례전 권한 확대 알.씨. 물바이어 · Muncie Garden at Gethsemane (US: Great Lakes) · 개인 · 교리 및 성례	35
1063	¶ 711.1	연회의 활동과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연회의 역량 강화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 및 행정 위원단 · 단체 · ...	412
1064	¶ 710.4	연회의 재정 감사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 및 행정 위원단 · 단체 · ...	401
1065	¶ 449.7	개체 교회 연대기금 송금 방법 선택지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 Global Methodist Church · 단체 · 헌법, 연...	457
1066	¶ 807.4	교회 전체 예산의 90퍼센트 한도 제거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01
1067	Resolution	교리와 장정의 글로벌의 상황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64
1068	¶ 8XX (신설)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Laura Ballinger · 로렌스버그 디어본 힐스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463
1069	¶ 710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Laura Ballinger · 로렌스버그 디어본 힐스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개인 · 연회	394
1070	¶ 507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사역	259
1071	¶ 705.1	700번째 단락의 구식 참조 삭제 청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연회	377
1072	¶ 803.1	청원 - 800번째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81
1073	¶ 804.1	청원 - 800번째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86

번호	¶	제목	페이지
1074	¶ 807.2	청원 - 800번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98
1075	¶ 807.4	청원 - 800번대 항목에서 구시대적 참조 삭제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02
1076	¶ 604.8	600번대 조항에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20
1077	¶ 107	웨슬리 저작에 대한 포괄적 해석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교리 및 성례	27
1078	¶ 605.4	600번대 조항에서 불필요한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27
1079	¶ 442.4	대체행정 체제에 있어서의 구성원 기준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63
1080	¶ 445	목사 교체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투표를 요구합니다.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74
1081	¶ 905	공정 절차를 보복 금지와 회복적 소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기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사법 행정	573
1082	¶ 908.2	평신도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한 범죄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사법 행정	576
1083	¶ 512	임시목사의 명칭을 교구 목사로 변경 Burt Palmer ·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사역	287
1084	¶ 511	목회자 훈련 기금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82
1085	¶ 507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사역	262
1086	¶ 204	문법 수정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0
1087	¶ 206	개체 교회의 정의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2
1088	¶ 207	연회의 업무와 목적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5
1089	¶ 208	총회 회의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2
1090	¶ 208.1	교회 내 평신도 지도력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5
1091	¶ 208.5	연대 협의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7
1092	¶ 209	감독회 정의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1
1093	¶ 210.1	연대상소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2
1094	¶ 211	항소권을 제한 규칙의 언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규칙을 삭제하다.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4

번호	¶	제목	페이지
1095	¶ 212.1	2026년 총회에서 제안되는 교리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칙을 수정합니다.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5
1096	¶ 502 / ¶ 405	공인 평신도 사역자 _____ 목회 및 고등 교육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20
1097	¶ 213	개정 과정 명확화 및 구식 표현 삭제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8
1098	¶ 411.1	세례교인 정의의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96
1099	¶ 456	연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개체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과정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217
1100	¶ 703.9	연대 협의회를 정의하고 설립할 총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십시오.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74
1101	¶ 802.3	신규 - 연대 위원단들의 명칭을 명확히 함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4
1102	¶ 802.7	중복된 문구 삭제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7
1103	¶ 804.1	위원단 의장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87
1104	¶ 808	왕국 확장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07
1105	¶ 810	목회 및 고등 교육 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8
1106	¶ 810.2	사역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목회와 고등교육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22
1107	¶ 810.3	승인 절차에서 목회와 고등교육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24
1108	¶ 811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 역할 명확화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26
1109	¶ 812.2	총회 위원단 역할 명확화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30
1110	¶ 813.2	에큐메니칼 관계 위원단에서 불필요한 표현 삭제 _____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35
1111	¶ 302.3	태아와 산모의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문구 보완 _____ 셜리 반 안트웁 · Avon Bartlett Chapel/바틀렛 채플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개인 · 사회...	56
1112	¶ 506	목회 후보자 선발 및 사역 입문의 과정의 명확성 _____ Burt Palmer ·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사역	254
1113	¶ 710.5	연회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의 선출 과정과 운영 지침 _____ Daniel Fuller · Binghamton Hawleyton (미국: 북동부) · 개인 · 연회	402
1114	¶ 903	해결되지 않은 고소에 대한 추가적 유연성 _____ 연회 연대 협의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단체 · 사법 행정	570
1115	¶ 8XX (신설)	양호한 신분상태에 관한 청원 _____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위원단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64

번호	¶	제목	페이지
1116	¶ 813.5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37
1117	¶ 813.7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에서 연합 계획 과정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40
1118	¶ 814.3	연회 위원단 역할의 명확화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41
1119	¶ 814.6	연회위원단 역할에서 불필요한 언어 삭제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42
1120	¶ 815	연대 운영 책임자의 역할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48
1121	¶ 807.4	연대 협의회 교단 복지제도 역할 삭제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03
1122	¶ 807.4	교단 복지제도에서 "연금"을 삭제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04
1123	¶ 804.2	위원단 임원 선거 Beth Ann Cook /베쓰 앤 쿡 · Poseyville St Pauls UMC (미국: Great Lakes) · 개인 · 헌법,...	491
1124	¶ 442.1	평신도 지도자의 공인평신도 사역자 요건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올네이 · 개인 · 개체 교회	157
1125	¶ 302.4	조력자살 반대 David Watson · Lexington St Luke (US: Allegheny West) · 개인 · 사회적 증언	61
1126	¶ 511	목회자 훈련 기금-수정된 형식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83
1127	¶ 302.8	성 및 성별 정체성 David Watson · Lexington St Luke (US: Allegheny West) · 개인 · 사회적 증언	70
1128	¶ 505	안수받은 사역자의 인격과 역량. 목회 및 고등 교육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42
1129	¶ 810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 목회 및 고등 교육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9
1130	Part IX / JPP	사법 행정 과정(장정 및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통합 Chris Gadlage/크리스 갠라지 · Avon Bartlett Chapel/바틀렛 채플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584
1131	¶ 507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 및 고등 교육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63
1132	¶ 710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연회	395
1133	¶ 8XX (신설)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66
1134	¶ 804.1	위원단 임원 선거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88
1135	¶ 503.1	목회자 직분 회의 대표단 (총회) · 미국: 그레이트레이크스 · 단체 · 사역	234
1136	¶ 708.9	연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 선거 Gene Floore/진 플로어 · Destin / 데스틴 (미국: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 개인 · 연회	386

번호	¶	제목	페이지
1138	¶ 409	모든 교회를 위한 장로목사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올네이 · 개인 · 개체 교회	88
1139	¶ 411.2	고백 멤버십 정의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97
1140	¶ 418	고백 교인 멤버십 단락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교리 및 성례	39
1141	¶ 710.1	연회 위원회 멤버십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올네이 · 개인 · 연회	397
1142	¶ 423	멤버십 전송 과정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08
1143	¶ 803.3	총회 위원회 멤버십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올네이 · 개인 · 헌법, 연...	485
1144	¶ 433 / ¶ 423	글로벌 감리교회 멤버십 전송을 위한 새로운 과정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27
1145	¶ 425	구성교인 명부의 정의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11
1146	¶ 426	비지역 환경을 통한 교회 가입 방법에 대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13
1147	¶ 428	교적부, 교회 기록 및 기타 재산의 위치에 대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16
1148	¶ 507	장로목사 재정 및 행정 교육 요구 사항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올네이 · 개인 · 사역	268
1149	¶ 431	대학생 신고 의무를 지역 교회 또는 학원 선교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대체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22
1150	¶ 432	이동한 회원을 위한 절차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24
1151	¶ 434	다른 화폐 단위로 전송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다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28
1152	¶ 803.2	신규 - 연대 위원회들 및 연대 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1 / 3)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82
1153	¶ 803.2	행정 공천 위원회 제한 Dennis Rader · Ocean View Mariners Bethel (미국: 북동부)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84
1154	¶ 920.5	연대상소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2/3)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법 행정	583
1155	¶ 605.1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공천의 일관성 (3/3)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25
1156	¶ 302	우리의 증언 갱신 Samuel Padgett / 사무엘 패젯 · Olney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올네이 · 개인 · 사회적 증언	51
1157	¶ 804.1	신규 - 연대 위원회들의 리더십 연대 협의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89
1158	¶ 437.2	교회 위원회의 멤버십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30

번호	¶	제목	페이지
1159	¶ 437.4	모든 교회 위원회의 정족수를 정의하다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32
1160	¶ 438.2	구역회 멤버십에서 디아코날 목회자 및 시니어 목회자를 제거합니다. 총회 대표단 ·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34
1161	¶ 438.5	어떤 목사가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함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35
1162	¶ 438.7	전자 구역회를 허락하는 새로운 섹션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37
1163	¶ 438.8	구역회의 소집 권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38
1164	¶ 438.9	교회 총회에 관한 규정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39
1165	¶ 440	지역 교회 지도자의 기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50
1166	¶ 441	지역 교회 지도자의 기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52
1167	¶ 442	지역 교회 지도자의 의무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53
1168	¶ 442	재무와 재정 비서의 필요성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56
1169	¶ 443.1	교회 협의회의 역할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64
1170	¶ 443.3	교회 협의회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다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66
1171	¶ 443.4	주택 및 복지제도 검토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70
1172	¶ 443.4	주택 및 복지제도 검토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68
1173	¶ 444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의 멤버십 및 목적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72
1174	¶ 447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98
1176	¶ 450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요구 사항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207
1177	¶ 8XX (신설)	연회 평신도 지도자 위원회 설립 Gene Floore/진 플로어 · Destin / 데스틴 (미국: 엘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 개인 · 헌법, 연...	467
1178	¶ 452	지역 교회 폐쇄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208
1179	¶ 452.2	협동 본당 창설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210
1180	¶ 455	교회의 신앙적 충실성 보장 과정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214

번호	¶	제목	페이지
1181	¶ 456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절차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218
1182	¶ 512.1	본처 전도사 파송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사역	289
1183	¶ 512.2	본처 전도사를 위한 성례전 권한 연장의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사역	290
1184	¶ 608	감리사의 연례 평가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감리직	334
1185	¶ 611.2	명예 감독의 지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감리직	360
1186	¶ 706	청원 및 해상도 제출 과정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79
1187	¶ 708.1	연회 평신도 멤버십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85
1188	¶ 709.2	연회의 재정적 책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87
1189	¶ 709.6	연회 총회 대표단 정의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91
1190	¶ 710.1	연회의 협의회, 위원회 및 위원회를 개별 단락으로 분리하기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98
1191	¶ 710.6	조사 위원회에 관한 용어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406
1192	¶ 710.7	행정 심사 위원회에 관한 용어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407
1193	¶ 711	연대 기금과 델리게이트 산정 공식의 분리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409
1194	¶ 803	모든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를 위한 공천 및 선거 과정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8
1195	¶ 1005.1	현지 법률 준수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3
1196	¶ 1006	임원회 관련 단락 번호 재지정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4
1197	¶ 1012.9	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7
1198	¶ 604.5	604.5항을 수정하여 감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75%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다 Julius Julukon Nelson Jr · Refuge GMC (AF: Grain Coast (Liberia)) · 개인 · 감리직	319
1199	¶ 409	사목 책임의 정의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92
1200	¶ 439.2	구역회의 멤버십과 의무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41
1201	¶ 439.4	구역회 비서 선출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42

번호	¶	제목	페이지
1202	¶ 710	연회에서 평신도 위원회, 협의회의 설립 — · AF: 그레이н 코스트(라이베리아) · 연회 · 연회	396
1203	¶ 439.5	구역회의 교회 위원회 멤버십에 관한 권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44
1204	¶ 439.7	임면 후보자 심사에 있어 구역회의 책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45
1205	¶ 439.10	구역회에서 신고를 명확히 함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47
1206	¶ 439.11	구역회의 목회자 보상 결정 권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48
1207	¶ 439.12	구역회가 연대 기금에 대해 설명할 의무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49
1208	¶ 1012	구역회가 임원회의 요청을 인준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십시오.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6
1209	¶ 445.1	PPRC 멤버십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75
1210	¶ 445.5	PPRC 회의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77
1211	¶ 445.8	PPRC의 의무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79
1212	¶ 446.1	재단 이사회의 멤버십 및 목적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87
1213	¶ 446.3	재단 이사회의 조직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91
1214	¶ 446.4	재단 이사회 회의 및 책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개체 교회	193
1215	¶ 449.1	연대 기금의 웨슬리안 가치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0
1216	¶ 449.2	연대 기금 산정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2
1217	¶ 449.6	연대 기금의 설정, 이체 및 설명 절차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5
1218	¶ 449.8	선교 교회 지정 절차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8
1219	¶ 607	회의 감리사의 책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감리직	330
1220	¶ 609	감리사의 책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감리직	338
1221	¶ 610.7	파송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감리직	351
1222	¶ 610.9	임시 파송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감리직	354

번호	¶	제목	페이지
1223	¶ 610.10	기관목회/연장사역 파송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감리직	357
1224	¶ 703	총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72
1225	¶ 703.1	총회의 권한과 권위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73
1226	¶ 703.9	총회 권한의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75
1227	¶ 703.14	총회의 입법적 권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76
1228	¶ 710.1	연회 연대 협의회의 회의 및 멤버십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트리니티 · 단체 · 연회	399
1229	¶ 509.1	그리스도론적 질문 추가: 집사목사 안수 시험 총회 대표단 · 미국: 웨스트 플레인스 · 단체 · 사역	278
1231	¶ 106.1	개정된 믿음 총칙 C.Chappell Temple · 슈가랜드 트리니티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17
1233	¶ 516.1	목회자 전송 연회 사역 위원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단체 · 사역	295
1234	¶ 516.1	목회자 자격 증명의 이전 연회 사역 위원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단체 · 사역	296
1235	¶ 517	다른 교단 출신 목회자의 파송 연회 사역 위원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단체 · 사역	297
1238	¶ 302.3	낙태에 대해 명확하게 생명 존중 입장을 채택하십시오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사회적 증언	57
1239	¶ 204	모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 헌법 가치로 삼기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1
1240	Resolution	교리적 언어와 경계 명확화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교리 및 성례	46
1241	¶ 208	총회에서 이해 상충을 피하기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3
1242	¶ 808.2	도달하지 못한 종족 집단에 대한 지속적 헌신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0
1243	신설 ¶ 8XX	연대 청년 사역부의 설립 Frank Webere ·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 개인 · 헌법, 연대 ...	562
1244	신설 ¶ 7XX	기존 청소년 구조의 보호 Frank Webere ·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 개인 · 연회	414
1245	¶ 207.4	델리게이트 총회 선출 절차 Simon Mafunda · Genesis (AF: Zimbabwe)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9
1246	¶ 445.8	목회 협력 위원회 의무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82
1247	¶ 610.7	상담 파송 과정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감리직	353

번호	¶	제목	페이지
1248	¶ 1012.9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1012.9d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9
1249	¶ 1010	글로벌의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1010의 축소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5
1250	신설 ¶ 10XX	글로벌 통일성, 지역 유연성: 새로운 ¶ 1014에 대한 제안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61
1251	¶ 815.6	글로벌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5.6m 축소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1
1252	¶ 815.1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15.1c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49
1253	¶ 814.6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814.6의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43
1254	¶ 813.6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3.6에서 한 문장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39
1255	¶ 813.5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3.5의 축소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38
1256	¶ 813.3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3.3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36
1257	¶ 813.1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13.1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34
1258	¶ 302.4	태아 - 인식, 교육, 그리고 결의 사항 Fulshear Union Chappel · 미국: 트리니티 · 개체 교회 · 사회적 증언	62
1259	¶ 708 (신설)	신설 ¶ 708. 총회의 재정 사항 Sterling Allen · 휴스턴 코너스톤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연회	382
1260	¶ 604.1	감독 공천 방식 변경에 관하여 Danjuma Juji ·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 개인 · 감리직	316
1261	¶ 604.3	감독별 연회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 604:3 Danjuma Juji ·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 개인 · 감리직	318
1262	¶ 208.1	총회 연도와 감독의 임기 단축을 위해 ¶ 208 제VII조 및 ¶ 604:8 Danjuma Juji ·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6
1263	¶ 604.8	총회 연도와 감독의 임기 단축을 위해 ¶ 208 제VII조 및 ¶ 604:8 Danjuma Juji ·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 개인 · 감리직	321
1264	¶ 810.3	글로벌 일치와 지역적 유연성: ¶ 810.3 – 승인 위원회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25
1265	¶ 710.5c	연회 이사회 및 위원회 ¶ 710:5c Danjuma Juji · GMCN Karim-Maundi (AF: Northeast Nigeria) · 개인 · 연회	405
1266	¶ 810.2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10.2a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23
1267	¶ 809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09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5
1268	¶ 808.2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808c의 일부와 ¶ 808d 전체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1

번호	¶	제목	페이지
1269	¶ 808.2	글로벌의 통합, 지역의 유연성: ¶ 808.2.A.1-5 및 ¶ 808.2.b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2
1270	¶ 807.4	글로벌의 일치, 지역의 융통성: ¶ 807.4.i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05
1271	¶ 807.4	글로벌 연합, 지역의 유연성: ¶ 807.4.d.4-5의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06
1272	¶ 802.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 802.3의 개정안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5
1273	¶ 802	글로벌의 일치, 지방의 유연성: ¶ 802 개정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3
1274	¶ 801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융통성: ¶ 801 개정안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1
1275	¶ 449.9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9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9
1276	¶ 449.6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6에 형용사 추가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6
1277	¶ 449.3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3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4
1278	¶ 449.1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449.1 조항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51
1279	¶ 208.13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13의 언어 정비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0
1280	¶ 208.10	글로벌 일치와 지역적 유연성: ¶ 208.10의 문장 정비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9
1281	¶ 208.9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9의 추가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8
1282	¶ 804.4	총리사를 신규 - 연대 위원회들에 추가 Jay Therrell ·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92
1283	¶ 8XX (신설)	연대 위원회들의 이해 상충 Jay Therrell ·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68
1284	¶ 9XX (신설)	상소 협의회의 회피 및 이해 상충 Jay Therrell ·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 개인 · 사법 행정	568
1285	¶ 610	총리사가 파송을 확정하게 함 Jay Therrell ·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 개인 · 감리직	341
1286	¶ 805.2	규칙에 대한 항소의 필요성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94
1287	¶ 709.6	신설 교회에서 온 델리게이트에 대한 용돈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연회	392
1288	¶ 607	회의 총리사의 임기와 감독의 임기를 일치시키다. Jay Therrell ·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 개인 · 감리직	331
1289	¶ 920.4	상소 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대 허락 Jay Therrell · St Johns Mandarin (미국: 플로리다) · 개인 · 사법 행정	582

번호	¶	제목	페이지
1290	¶ 609	회의 총리사의 임무 위임에 대한 유연성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감리직	340
1291	¶ 611.1	전임 감독이 감독구에 배정되는 허용 조항 삭제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감리직	359
1292	¶ 604.1	AEC 회원의 선거를 연회에서 투표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감리직	317
1293	¶ 607.1	총리사의 의무 위임에 대한 유연성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감리직	332
1294	¶ 507.2	학위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십시오.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사역	271
1295	¶ 506.1	다른 교단에서 오는 목사/목회자들의 전환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사역	257
1296	¶ 442.1	지역 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임기 제한 설정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버지니아 · 단체 · 개체 교회	158
1297	¶ 502.2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과정 요구 사항 명확화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사역	230
1298	¶ 442.3	교회 협의회 의장의 기간 제한 설정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버지니아 · 단체 · 개체 교회	162
1299	¶ 409.3	담임 사역의 집행이 아닌, 촉진의 역할에 대한 명확화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개체 교회	94
1300	¶ 413	집사목사에게 성례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명확화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교리 및 성례	36
1301	¶ 445.8	SPRC/감리사 협력을 통한 지역 교회 담임목사 평가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버지니아 · 단체 · 개체 교회	184
1302	¶ 436.6	이 사안에서의 안전 확보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개체 교회	129
1303	¶ 442.2	연회 평신도 대표에 대한 멤버십 기간 요건 삭제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개체 교회	160
1304	¶ 455.2	감독 참여에 관한 유연성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개체 교회	216
1305	¶ 302.3	장애인의 신성한 가치를 확언함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버지니아 · 단체 · 사회적 증언	58
1306	¶ 302.3	우생학을 피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함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사회적 증언	59
1307	¶ 302.4	근로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명확화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사회적 증언	63
1308	¶ 302.5	빈곤의 원인에 대한 비난 삭제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Upper Midwest /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사회적 증언	64
1309	¶ 5XX	안수받은 직분의 본질과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 명확화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버지니아 · 단체 · 사역	226
1310	¶ 206	구역회에 대한 서두 성명서의 명확화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3

번호	¶	제목	페이지
1311	¶ 909.2	재판 대기 중 평신도 회원의 지도자직 정지 총회 대표단 · 미국: 버지니아 · 단체 · 사법 행정	579
1312	¶ 206	추가 구역회 허용의 명시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연회	367
1313	¶ 201	글로벌의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1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19
1314	¶ 705.3	하이브리드 총회에 대한 유연성 허용 총회 대표단 · 미국: 어퍼 미드웨스트 · 단체 · 연회	378
1315	¶ 419	제자를 삼음 총회 대표단 · 미국: 버지니아 · 단체 · 교리 및 성례	41
1316	¶ 206.1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6.1의 언어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4
1317	¶ 207.1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207.1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7
1318	¶ 207.2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 207.2의 문장 일부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28
1319	¶ 207.8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융통성: ¶ 207.8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0
1320	¶ 208	글로벌 일치, 지역적 유연성: ¶ 208에서 문장의 일부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34
1321	¶ 106.1	제7조 - "원죄 또는 출생죄"를 "아가페 사랑과 죄"로 대체 Victoria Campbell ·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22
1322	¶ 106.1	제8조 - 자유 의지에 관한 조항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하기 Victoria Campbell ·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23
1323	¶ 106.1	제2조 - 말씀, 곧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원죄"라는 구절을 삭제함. Victoria Campbell ·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24
1324	¶ 102.2	웨슬리안 구원의 길에서 피조물에 대한 '타락한' 용어 삭제 Victoria Campbell ·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3
1325	¶ 102.3	웨슬리안 구원의 길에서 "원죄" 함의 제거 Victoria Campbell ·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4
1326	¶ 106.1	제20조 -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물에 관하여...에서 "원죄" 제거... Victoria Campbell · 케이티 부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25
1327	¶ 903	온전한 성경적 책임감 Tyson Heins · Madison Ebenezer (US: Heartland) · 개인 · 사법 행정	571
1328	¶ 518.6	육아 휴직 복직 Hannah Hutchinson · Destin / 데스틴 (미국: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 개인 · 사역	304
1329	¶ 811.2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을 위한 연금과 복지제도 Wilton Odongo ·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 개인 · 헌법, 연...	528
1330	Resolution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을 위한 연금 혜택 설립 Wilton Odongo ·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 개인 · 헌법, 연...	566
1331	¶ 421	포도즙을 요구하지 않고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권한 Ethan Gross · Clear Lake (미국: 중서부 북부) · 개인 · 교리 및 성례	45

번호	¶	제목	페이지
1332	¶ 1002	연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탁 조항' 사용권 요청 — · 아프리카: 북부 나이지리아 · 연회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52
1333	¶ 8XX (신설)	청소년 위원회 설립 — · 아프리카: 북부 나이지리아 · 연회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0
1334	¶ 610.9	임시 목회자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감리직	355
1335	¶ 610.5	공개 순회에 대한 책임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감리직	346
1336	¶ 604.8	감독 선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감리직	322
1337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신원 조회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사역	231
1338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자격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사역	232
1339	¶ 502.1	공인 평신도 사역자 사역 분야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사역	228
1341	¶ 453.3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연대 책임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13
1342	¶ 453.2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에큐메니컬 회중을 위한 언약 요구 사항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12
1343	¶ 502.2	공인 평신도 사역자 양성 및 자격증 부여에 대한 지역 행정 연회 사역 위원회 · 미국: 하트랜드 · 단체 · 사역	233
1344	¶ 453.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에큐메니컬 회중 정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11
1345	¶ 452.1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협동 본당 구조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09
1346	¶ 507.2	교육 경로 연회 사역 위원회 · 미국: 하트랜드 · 단체 · 사역	272
1347	¶ 447.11	글로벌 연합, 개체 교회의 유연성: 보고 및 위원회 구성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06
1348	¶ 447.7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명확성: 재정 감사 요건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05
1349	¶ 447.6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정 정책 요구 사항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04
1350	¶ 447.3	글로벌 통일성, 지역 명확성: 예산 및 재정 감독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03
1351	¶ 447.2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정 스튜어드십 책임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02
1352	¶ 447.1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정위원회 구조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201
1353	¶ 446.5; 446.6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확성: 재단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97

번호	¶	제목	페이지
1354	¶ 446.4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회의의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96
1355	¶ 446.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조직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92
1356	¶ 446.2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명료성: 재단 이사 공석 및 제거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90
1357	¶ 446.1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 선거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89
1358	¶ 446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구조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85
1359	¶ 401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비전 성명서 언어 명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79
1360	¶ 445.6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유연성: 위원회 회의 요구 사항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78
1361	¶ 40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중복되는 신학적 성명서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80
1362	¶ 445.1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목회 협력 위원회 구조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76
1363	¶ 40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방법론적 및 설명적 언어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81
1364	¶ 401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비지시적 언어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82
1365	¶ 402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서술적 언어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83
1366	¶ 444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료성: 리더십 개발 구조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73
1367	¶ 443.5; 443.6	글로벌의 단결, 지역의 유연성: 위원회 멤버십 및 정족수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71
1368	¶ 443.4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교회 협의회 책임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69
1369	¶ 443.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회 협의회 회의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67
1370	¶ 443.2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프로그램 사역 설명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65
1371	¶ 442.2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료성: 연회 대표 파송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61
1372	¶ 442.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료성: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59
1373	¶ 402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글로벌 교회 정체성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84
1374	¶ 440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료성: 교회 지도자 선거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51

번호	¶	제목	페이지
1375	¶ 511	목회자 훈련 기금 수정 — · 미국: 노스조지아 · 연회 · 사역	284
1376	¶ 402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확성: 이상적이고 설명적인 언어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85
1377	¶ 439.7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후보자 추천 과정 명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46
1378	¶ 408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지역 교회 정의의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87
1379	¶ 439.4	글로벌 통합과 지역의 명확성: 구역회 기록 관리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43
1380	¶ 409.1-2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목회 책임의 구조 명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93
1382	¶ 437.2	글로벌의 연합, 지역의 명료성: 교회 리더십 자격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31
1383	¶ 433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회 간 교인 이적 절차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26
1384	¶ 432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멤버십 이전 및 목회적 감독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25
1385	¶ 431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강제할 수 없는 보고 조항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23
1386	¶ 430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확성: 멤버십 보고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21
1387	¶ 429.6	글로벌 연대, 지역적 유연성: 공유 교회의 보고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20
1388	¶ 429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불필요한 명부 목록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18
1389	¶ 409.3	글로벌 통일성, 지역적 유연성: 평신도 임명 및 계발에 대한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95
1390	¶ 429.1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멤버십 기록 요구 사항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19
1391	¶ 428	글로벌 통합, 지역적 명확성: 폐쇄된 지역 교회로부터의 교인 이적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17
1392	¶ 427	글로벌 통합과 지역적 유연성: 회중이 없는 환경에서의 교인 자격 부여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15
1393	¶ 426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비지역 교회 환경에서의 멤버십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14
1394	¶ 425	글로벌 통합, 지역적 유연성: 규정적인 구성교인 명부 요구 사항 제거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12
1395	¶ 424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협동 회원 및 준 회원 자격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10
1396	¶ 423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타 교단으로부터의 영접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09

번호	¶	제목	페이지
1397	¶ 422.5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연례 멤버십 갱신 요구 사항 폐지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07
1398	¶ 422.4	글로벌 연합, 지역적 명확성: 비활성 회원 조항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06
1399	¶ 422.3	글로벌 연합, 지역의 명확성: 회원 책임감과 복원 명확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05
1400	¶ 422.2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목회적 제자도 책임의 단순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04
1401	¶ 422.1	글로벌 연합과 지역의 명확성: 회원 참여 기대 사항의 간소화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03
1403	¶ 103.2	글로벌 통일성과 지역적 유연성: 열망 그 이상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교리 및 성례	9
1404	¶ 103.8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지역 교회를 위하여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교리 및 성례	10
1405	¶ 418	글로벌 연합, 지역적 유연성: 교인 자격 기대사항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교리 및 성례	40
1406	¶ 420	글로벌의 연합, 지역적 유연성: 신실한 교인 자격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교리 및 성례	43
1407	¶ 518	휴직 규정 개정 이 부쉬와일러 · Wisconsin Dells Dells Delton (US: Great Lakes) · 개인 · 사역	300
1408	¶ 508.2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역사적 질문 복원 캐서린 라일리 · 렉싱턴 세인트 루크 (미국: 미드텍사스) · 개인 · 사역	275
1409	¶ 103	언약적 연대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 Russellville (US: North Alabama) · 개인 · 교리 및 성례	6
1410	¶ 422	언약적 연대: 평신도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 Russellville (US: North Alabama) · 개인 · 개체 교회	99
1411	¶ 438.5	구역회 권한과 전교인 투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36
1412	¶ 505	언약적 연대: 목회자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 러셀빌 (미국: 노스앨라배마) · 개인 · 사역	245
1413	¶ 509	언약적 연대: 집사목사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 Russellville (US: North Alabama) · 개인 · 사역	276
1414	¶ 920.1	연대상소협의회에 선출될 성직자 및 평신도 인원수 설정 Vicky Johnson · Rogers Bland Chapel (US: Trinity) · 개인 · 사법 행정	581
1415	¶ 510	언약적 연대: 장로목사 케네스 "토비" 채스테인 · 러셀빌 (미국: 노스앨라배마) · 개인 · 사역	280
1416	¶ 438.9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 438.9항 삭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개체 교회	140
1417	¶ 1012.9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총회 대표단 · 미국: 미드텍사스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60
1418	¶ 603	제6부-감리직 개정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12

번호	¶	제목	페이지
1419	¶ 520	조건부 조항 삭제 Burt Palmer ·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사역	306
1420	¶ 517	글로벌 감리교회 내 유효한 장로목사 및 유효한 집사목사의 자격 기간 정의 Burt Palmer · 킹우드 (미국: 트리니티) · 개인 · 사역	299
1421	¶ 908.2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의 성적 비행에 대한 사법적 고소 Wilton T.A. Odongo / 윌튼 T.A. 오동고 ·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	577
1422	¶ 808.2	신설 위원회: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역 위원회 Ronald Toole · Destin / 데스틴 (미국: 엘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3
1423	¶ 908.2	평신도 회원의 징계 대상 행위 수정 Miguel Velez · Brookhaven Skyland (미국: 북조지아) · 개인 · 사법 행정	578
1424	¶ 605	GEC 멤버십의 적절한 배치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24
1425	¶ 605.1	GEC 공천을 위원회 및 협의회와 일치시키기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26
1427	¶ 605.5	GEC의 기대 사항 명확화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28
1428	¶ 416	세례 서약에 성결을 향한 성장 조항 추가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교리 및 성례	37
1429	¶ 6XX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대한 기대 명확화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10
1430	¶ 419	회원 서약에 성결 성장의 추가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교리 및 성례	42
1431	¶ 507.6	신학적 일치 증진을 위한 계속 교육 요건 총회 대표단 · 미국: 중남부 · 단체 · 사역	273
1432	¶ 611	이적하는 감독들을 명예 감독직으로 제한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58
1433	¶ 612	공석 사유 추가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61
1434	¶ 108	장정 기초 원리 섹션에 개정 총칙 배치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교리 및 성례	29
1435	¶ 446	비교인을 허용하도록 재단 이사회 구성원 자격 개정 아데보웨일 오나반조 · 랭커스터 마운트 자이언 (미국: 앨라게니 웨스트) · 개인 · 개체 교회	186
1436	¶ 613	재판 법원에 의해 면직된 자의 원로직 박탈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62
1437	¶ 809	제자도, 교리 및 윤리 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516
1438	¶ 614	휴직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제거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63
1439	¶ 615	고소 정보를 9섹션에 적절하게 배치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감리직	364
1440	¶ 905	다수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있는 고소의 처리를 위한 과정 글로벌 감독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법 행정	574

번호	¶	제목	페이지
1441	¶ 106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조항 _____ 제자도 및 교리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교리 및 성례	12
1442	¶ 508	목회자에 대한 교리적 기대 명확화 _____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사역	274
1443	¶ 107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대한 이해 명확화 _____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교리 및 성례	28
1444	¶ 212.1	총회가 웨슬리의 설교 및 노트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도록 허용 _____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6
1446	¶ 106.3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_____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교리 및 성례	26
1447	¶ 212.1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허용 _____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7
1448	¶ 302.3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항상 반대해야 합니다 _____ Michael Cooper · 게일로드 (미국: 그레이트 레이크스) · 개인 · 사회적 증언	60
1449	¶ 501.2	교단 공인 목회 직분에 선교사 포함 _____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27
1450	¶ 515	선교사 파송 자격 및 과정의 명확화 _____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93
1451	¶ 604	감독의 선거와 숙제 _____ 총회 대표단 · 미국: 노스 앨라배마 · 단체 · 감리직	314
1452	¶ 802.3	위원회 명칭 변경: 왕국 발전 위원회 _____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76
1453	¶ 906.2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 위원 공천 _____ 연회 사역 위원회 · 미국: 노스 앨라배마 · 단체 · 사법 행정	575
1454	Resolution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운동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기 _____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교리 및 성례	47
1455	Resolution	글로벌 감리교회 총칙과 신앙 고백에 관한 주해서 제정 결의안 _____ 윌튼 T.A. 오동고 · City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 개인 · 교리 및 성례	48
1456	¶ 608	608.1항을 추가하여 모든 연회에 지방 구조를 창설함 _____ 리멤버 마삼바 목사 · Nyamamowa (AF: Zimbabwe) · 개인 · 감리직	335
1457	¶ 302.9	성과 젠더에 있어서의 성경적 인간론과 성화 _____ 제프리 릭먼 · Yazoo City (US: Mississippi-West Tennessee) · 개인 · 사회적 증언	72
1458	¶ 805.1	운영의 탁월성: 위원회에 직접적인 인사 책임과 권한 부여 _____ James Wesley Griffin Jr · Center Point GMC (US: North Georgia) · 개인 · 헌법, 연대 ...	493
1459	¶ 514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의 명확화된 자격 및 목회자 전도자 파송 _____ 하나님 나라 발전 위원회 · 글로벌 감리교회 · 단체 · 사역	291
1460	¶ 506.1	감리사 또는 총리사에 의한 안수 후보자 공천 허용 _____ Jonathan Diggs · Williamsburg Daybreak (US: Virginia) · 개인 · 사역	258
1461	¶ 103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예배 _____ Jeff Jacob · 로레토 (미국: 미드사우스) · 개인 · 교리 및 성례	8
1462	Resolution	회중 찬송 자료의 인정 _____ Sterling Allen · 휴스턴 코너스톤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 개인 · 교리 및 성례	49

번호	¶	제목	페이지
1463	¶ 606	공개 회의 _____ 제프리 릭먼 ·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 개인 · 연회	368
1464	¶ 611	연회 웹사이트의 최소 기준 _____ 제프리 릭먼 ·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 개인 · 연회	370
1465	¶ 708	연회 설립 근거 제한 사항 _____ 제프리 릭먼 ·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60
1466	Resolution	글로벌 감리교회의 인증 신학 _____ 제프리 릭먼 · 야주시티 (미국: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 개인 · 사회적 증언	73
1467	¶ 302.7	거룩한 결혼 축하 _____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 개인 · 사회적 증언	67
1468	¶ 302.8	거룩한 결혼 축하 _____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 개인 · 사회적 증언	71
1469	¶ 503.1	거룩한 결혼 축하 _____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 개인 · 사역	86
1470	¶ 805.5	거룩한 결혼 축하 _____ Stewart Kouba / 스튜어트 쿠바 · 애틀랜타 (미국: Trinity / 트리니티) · 개인 · 헌법, 연대 조직...	495

검토되지 않는 청원들

철회되었거나 무효로 선언된 청원으로, 이 보고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번호	¶	제목
1000	¶ 421	The Meaning of Holy Communion (Withdrawn) Joe Stallings · Lucama (US: North Carolina)
1010	—	Certification of Mission Organizations (Withdrawn) Luther Oconer · Conference Connectional Council (PH: Mega Manila Philippines) · G...
1012	¶ 302	Allegiance as Christian Witness (Withdrawn) Chance Robinson · Paris Hutchison (US: MidSouth)
1017	—	Global Unity Commission (Withdrawn)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1018	¶ 610.7	The Process of Appointment-Making (Withdrawn)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1019	¶ 610.5	Cross-Racial/Cross-Cultural Training (Withdrawn)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1023	¶ 610.7	The Process of Appointment-Making (Withdrawn)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1030	¶ 401	Scripture Quotation Integrity (Invalid - Editorial, Not Legislative) Chris Gadlage ·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US: Great Lakes) · Group
1042	¶ 505.2	Clarifying Ordination Standards in Light of the Church's Teaching on Sexual (Withd... Jonathan Lee · Christ's Community Church (US: Upper Midwest)
1043	—	Seeking all the Power and Gifts of the Holy Spirit (Withdrawn) Mark Barrow · Hendersonville Christ (US: MidSouth)
1057	¶ 207.11	Petition to amend Paragraph 207 of the Book of Doctrines and Discipline (Withdr... Shreve Community (US: Allegheny West) · Church Leadership Board/Council · Group
1058	¶ 208	Petition to amend Paragraph 208 of the Book of Doctrines and Discipline (Withdr... Shreve Community (US: Allegheny West) · Church Leadership Board/Council · Group
1137	¶ 103	Covenant Fellowship (Invalid) Samuel Padgett · Olney (US: Great Lakes)
1175	¶ 450	Clarify Requirements for Organizing a New Church (Invalid) Jason Burnham ·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US: Trinity) · Group · Duplicate o...
1230	—	Establishment of a Connectional Young People's Ministry (Withdrawn) Frank Webere ·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1232	—	Mandatory Review by Connectional Young People's Council (Withdrawn) Frank Webere ·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1236	—	Protection of Existing Young People's Structures (Withdrawn) Frank Webere ·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1237	—	Implementation and Transition (Withdrawn) Frank Webere · Nairobi Kayole St John's (AF: Kenya-Ethiopia)
1340	—	Communion (Invalid) Jack Granger · Garner Mount Zion (US: North Carolina)
1402	¶ 410	Global Unity, Local Flexibility: Clarifying Pastoral Responsibilities in Membership (... Samantha Wilkins ·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US: MidTexas) · Group
1426	¶ 605.4	Deleting irrelevant timestamp (Withdrawn) Jason Burnham · GMC Global Episcopacy Committee · Group
1445	¶ 106	Adopt Clear Doctrinal Standard on Marriage (Invalid - Duplicate) John Lomperis · First Methodist Waco (US: MidTexas)
1381	¶ 438.9	Global Unity, Local Clarity: Removing Church Conference Structure (Withdrawn) Ryan Barnett · General Conference Delegation (US: MidTexas) · Group · Withdrawn ...